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9호 2013. 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강진원 | 고구려 陵園制의 정비와 그 배경 7

정운용 | 淸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築造와 運用 53

윤성환 | 고구려 영류왕의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 정책의 의미 93

조영현 |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 – 주제의 설정과 그 의미 141

김기훈 | 만주국의 국민 만들기의 이상과 현실 – 국적법 논쟁을 중심으로 183

서평

이평래 | 실�크로드의 현장 신장의 역사 225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233

Contents

Articles

Kang Jinwon ▮ The Organization and Background of the Royal Tomb System
in Koguryo 7

Jung Woonyong ▮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Koguryo's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in Cheongw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53

Yoon Sunghwan ▮ The Policy of King Yeongnyu of Koguryo toward Tang
China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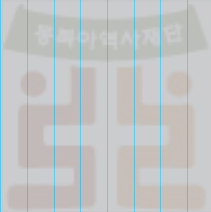
Cho Younghun ▮ “Silver Trade and Its Networks” in the High School Textbook
Tong Asiasa: Background and Rationale 141

Kim Kihoon ▮ The Ideal and the Reality in the Nation Building of Manchukuo:
Issues Surrounding the Nationality Law 183

Book Review

Lee Pyungrae ▮ The History of Xinjiang, the Site of the Silk Road 225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 陵園制의 정비와 그 배경

강진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I. 머리말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卒本, 즉 오늘날 桓仁에서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한 변의 길이가 10m를 넘는 대형고분이 축조되었다. 이들 고분의 墓主는 당시의 지배층일 것이다. 단, 이들은 높이가 3m를 넘지 않아 우월한 면모를 자랑하지도 않을 뿐더러 특정 지역에 집중된 분포를 보이지도 않는다.¹⁾ 따라서 이들 안에서 왕릉을 선별하고 그 묘주를 밝히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

외관상 최고위 지배층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高大한 적석총들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지역은 國內, 즉 오늘날의 集安 일대다. 이곳에 있는 무수한 적석총들 가운데 각 변의 길이가 30m 이상인 초대형 적석총들²⁾은 왕릉으로

※ 투고일: 2012년 7월 5일, 심사일: 2012년 11월 12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2일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범양한국고대사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1) 강현숙, 2006, 「중국 길림성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의 구조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1, 15~16쪽
- 2) 강현숙, 2006, 위의 글, 17쪽; 奇庚良, 2010, 「高句麗 國內城 시기의 왕릉과 守墓

추정되는 개체들로서, 그 묘주를 왕실 인물들로 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에 따라 묘주 비정이나 시간적 추이에 따른 변화상 파악 등 이들 고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는 국내도읍기 고구려의 역사상을 복원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다.

다만 종래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대시설을 포함한 이른바 陵園에 대한 문제다. 고구려의 왕릉급 고분들은 거대한 규모 외에도 왕실의 분묘라는 점에 부합하는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陪塚(陪葬墓)이나 능원의 안팎을 획정하는 담장(陵牆), 무덤 인근에 위치한 건축물 및 무덤 상부에 세워진 이른바 墓上建築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소홀히 다루어진 감이 있다.

물론 그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태왕릉을 광개토왕릉으로 보면서 능원체계를 추적하거나,³⁾ 국내도읍기 초대형 적석총의 묘주를 확정한 뒤 각 왕릉의 부대시설을 살폈고,⁴⁾ 천추총·태왕릉·장군총 등을 대상으로 그 부대시설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였으며,⁵⁾ 수요인 문제를 중심으로 광개토왕의 왕릉 관리를 추적하기도 하였다.⁶⁾

하지만 위 연구들은 왕릉급 고분 가운데 몇몇에만 주의를 기울였거나, 혹은 어떤 시설이 있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양상이 변해 갔는지에 대한 검토가 미진한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한 다방면에서의 접근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

- 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3쪽;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30쪽
- 3) 조법중, 2005, 「廣開土王陵 守墓人 構成과 陵園體系」,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역사재단
- 4) 東潮, 2006, 「高句麗王陵と巨大積石塚－國內城時代の陵園制」, 『朝鮮學報』 119·200; 東潮, 2009, 「高句麗王陵と陵園制－國內城～平壤城時代」,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5)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 복원 시고－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6)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高句麗渤海研究』 39

지 않았다.⁷⁾ 고구려의 왕릉급 고분 대다수는 부대시설을 동반하고 있다. 그 양상과 시기적 추이 및 그것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국내도읍기의 고구려 왕릉은 물론이요, 해당 시기 고구려사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는 데도 필요한 작업이다.

이에 먼저 고구려 왕릉으로 추정되는 고분들의 묘주를 비정하고, 각 고분 부대시설의 세부적인 면모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에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 방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해당 변화가 고구려사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일정한 견해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II. 국내도읍기의 고구려 왕릉과 陵園制 정비

1. 왕릉 선별과 墓主 비정

국내도읍기 고구려 왕릉의 부대시설이 시기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왕릉 비정 작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안 일대에는 남아 있는 수많은 적석총 가운데 각 변의 길이가 30m 이상인 경우를 왕릉급으로 분류한다. 중국 측에서는 무덤의 규모, 무덤 위에서의 기와 출토,陪塚과 이른바 祭臺의 존재, 입지 조건, 독립된 墓域, 왕권을 상징하는 특수한 의장류 출토, 陵寢 유구의 존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왕릉 후보군으로 선정된 대형 고분 24기 가운데 13기를 왕릉으로 확정하였다.⁸⁾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7) 능원제가 일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을 제기(임기환, 2009, 「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 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34쪽)한 정도에 머무른다.

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

〈표 1〉 집안 지역의 왕릉급 고분 현황⁹⁾

이름	입지	분구	매장부	
		외형	규모 (길이×너비-높이)	
마선구 626호분	산기슭의 경사지	階牆 ¹⁰⁾ 전방후원	48×41-6	石壙 ¹¹⁾
마선구 2378호분	산 정상부의 낭떠러지 변	계장전원후방	46×30-4	석광
칠선산 871호분	산기슭의 급경사지	계장방형	48×40-9.2	석광
산성하 전창 36호분	산기슭의 급경사지	계장전원후방	37×28-4.5	석광
임강총	산 정상부의 낭떠러지 변	계단방형	76×71-10	壙室
우산하 2110호분	평지	계단장방형	66.5×45-5.5	광실
칠성산 211호분	산기슭 아래 대지	계단방형	66×58-7	광실
서대총	산기슭의 경사지	계단방형	62.5×53.5-11	광실
우산하 992호분	완만한 산기슭 대지	계단방형	38.5×36.1-6.5	광실
마선구 2100호분	낮은 구릉 평탄지	계단방형	33×29.6-6	광실
천추총	경사지 위의 평탄면	계단방형	71×60-11	석실
태왕릉	경사지 위의 평탄면	계단방형	66×62-14	석실
장군총	산기슭 경사지 위 평탄면	계단방형	32.6×31.7-13	석실

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4쪽. 고구려 고분에서는 부장품이나 순장 등 장의행위와 관련된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때문에 배타적 입지를 선점한 고총고분을 가릴 때에는 규모나 시설 등 외형의 우월성 및 묘역에서의 독립적 우위성을 살펴보아야 한다(姜賢淑, 2002b, 「高句麗 高塚古墳의 登場과 政治發展」, 『文化財研究 國際學術大會 發表論文 第11輯 - 동아시아 大形古墳의 出現과 社會變動』, 國立文化財研究所, 3~4쪽).

- 9) 표 작성을 위해 참조한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編, 2004, 앞의 책, 5쪽; 강현숙, 2006, 앞의 글, 11쪽; 기경량, 2010, 앞의 글, 24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2-집안 통구분지편』, 진인진, 20~21쪽).
- 10) 階牆은 가공하지 않은 돌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아가며 분구의 高大化를 시도한 것이고, 階壇은 가공한 돌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여쌓는 방식인데, 전자가

이들 가운데 가장 후대에 조영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은 천추총·태왕릉·장군총인데, 그 이유는 석실 때문이다. 석실은 석광이나 광실보다 나중에 출현하였다. 따라서 위 3기의 왕릉급 고분이 다른 것들에 비해 후대에 조성되었을 것이다. 또 이들은 제작 방식에서 보아도 기술적으로도 가장 발전된 형태를 띠고 있다.

먼저 將軍塚이다. 장군총이 집안 일대의 초대형 적석총 가운데 가장 나중에 조영된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7)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그런데 평양 일대의 왕릉급 고분들은 모두 봉토석실분이다. 따라서 장군총은 평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왕인 광개토왕의 무덤일 것이다.

물론 장군총을 장수왕이 즉위한 이후 조영한 壽陵으로 볼 수도 있다. 단, 민중왕이 자신이 죽은 뒤 무덤을 만들지 말라고 지시한 점¹²⁾이나, 고구려 사회에서는 殯期와 喪期가 같아 三年喪은 3년간의 殯을 지낸 뒤 탈상하면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 방식이라는 점,¹³⁾ 수릉제를 기정사실화한다면 출토 와당

후자에 선행하는 방식이다(여호규, 2006,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 과정과 被葬者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41, 92~94쪽).

- 11) 石壙이나 壙室은 후대의 변형을 거친 결과이다. 원래는 木棺이나 木槨을 안치한 뒤 그 주위와 상부를 돌로 덮어 매장을 마감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木質 葬具가 부식된 결과 형성된 함몰부를 석광이나 광실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석광은 1인이 안치된 목관이나 목곽을 말하며, 광실은 석광보다 큰 크기의 목질 장구를 의미한다. 석광에는 목관이나 목곽이, 광실에는 더 큰 규모의 木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강현숙, 2011, 「3-4세기 고구려 횡혈식 무덤의 등장과 확산」, 『역사문화연구』 40, 24~25쪽).
- 12) 『삼국사기』 권 제14, 고구려본기 제2, 민중왕 4년 7월, “又田, 見石窟, 顧謂左右曰, 吾死必葬於此, 不須更作陵墓.”
- 13)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412년 10월에 사망한 후 23개월이 지난 414년 9월에 무덤에 매장되고 있다. 또 『복사』 고려전에 따르면 고구려인들은 屋內에서 3년간 빈을 지낸 뒤 길일을 택하여 장사지낸다(“死者殯於屋內, 經三年, 擇吉日而葬.”). 즉, 고구려에서는 殯期와 喪期가 같았던 것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죽은 이 후부터 매장하기까지의 실제 기간이 며칠에서 몇 개월 정도에 불과하였기에, 군주는 생전에 자신의 능을 미리 축조해두는 수릉제가 발달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매장하기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선왕이 죽은 뒤 신왕이 주도하여 능이 조성되었다(김시덕, 2004, 「고구려 상례문화의 정체성」, 『역사민속학』 18, 394쪽; 공석구, 2008, 「集安地域 高句麗 王陵의 造營」, 『高句麗渤海研究』

들이나 기년명 문자자료들의 해석에 모순과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¹⁴⁾ 등을 감안하면 壽陵制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가정은 무리가 있다.

한편 장수왕이 죽은 뒤 집안 일대에 歸葬했다고 보면 장군총이 장수왕릉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근거가 약하다. 解明太子의 경우 귀장이 이루어졌다면 무덤이 도성 지역에 마련되었어야 하지만, 정작 그는 자결 장소인 東原(槍原)에 묻혔다.¹⁵⁾ 또 椽那部 출신의 明臨答夫는 사후 연나부나 도성 지역이 아니라 자신의 식읍지인 質山에 묻혔다.¹⁶⁾ 그리고 산상왕의 형 發岐는 왕위를 둘러싼 상쟁에서 패배한 뒤 裴川에서 자결하였는데, 왕은 훗날 그 시신을 裴嶺에 장사지냈다.¹⁷⁾ 배령은 발기가 자결한 배천에서 가까운 곳일 것이다. 귀장을 한다면 발기는 도성으로 돌아와 묻혀야 하였으나 그러지 않고 죽은 장소에 묻혔다.¹⁸⁾ 이러한 사례들은 고구려인들이 귀장이라는 개념을 매우 생소하게 받아들였음을 말한다. 따라서 장수왕은 죽은 뒤에 60여 년간 자신이 머물렀던 新都 평양에 묻혔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장군총의 묘주는 장수왕 이전의 군주인 광개토왕으로 비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太王陵이다. 태왕릉의 경우 천추총과의 선후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논자에 따라서는 천추총이 태왕릉보다 뒤에 조성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¹⁹⁾ 그러나 천추총에서 卷雲文 瓦當과 6瓣 蓮花文 瓦當이 함께 출토되는 데 비해,

31, 127~130쪽).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죽음을 예감했거나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이른 왕의 경우에는 죽기 전에도 능을 조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단, 그것은 중국처럼 즉위하고 오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

14) 기경량, 2010, 앞의 글, 29쪽

15) 『삼국사기』 권 제13, 고구려본기 제1 유리명왕 28년 3월, “…… 乃往礪津東原, 以槍插地, 走馬觸之而死, 時年二十一歲, 以太子禮葬於東原, 立廟, 號其地爲槍原.”

16) 『삼국사기』 권 제16 고구려본기 제4 신대왕 15년 9월, “國相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17) 『삼국사기』 권 제16 고구려본기 제4, 산상왕 즉위조, “…… 發岐聞之, 不勝慙悔, 奔至裴川自刎死, 須哀哭, 收其屍, 草葬訖而還.”; 같은 책, 같은 권, 산상왕 원년 9월, “命有司, 奉迎發岐之喪, 以王禮葬於裴嶺.”

18) 기경량, 2010, 앞의 글, 29~30쪽

19) 東潮, 2006, 앞의 글, 29쪽 및 35쪽; 東潮, 2009, 앞의 글, 95~96쪽

태왕릉에서는 6판 연화문 와당과 8판 연화문 와당이 모두 출토되고, 장군총은 8판 연화문 와당만 나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와당의 편년 순서는 ‘권운문 → 6판 연화문 → 8판 연화문’이다. 또 천추총은 석재가 비교적 조잡하고 장대 석 표면의 가공이 태왕릉이나 장군총에 미치지 못하기에, 이들보다 앞선 시기의 산물이다.²⁰⁾ 따라서 조영 순서 역시 ‘천추총 → 태왕릉 → 장군총’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태왕릉은 광개토왕 이전 군주의 무덤, 즉 고국양왕릉이다.

千秋塚은 태왕릉 직전 단계에 조영된 무덤이다. 태왕릉이 고국양왕릉으로 비정되기 때문에, 천추총은 고국양왕릉 직전에 조성되었을 소수립왕이다. 천추총에서 출토된 권운문 와당과 6판 연화문 와당의 조성 시기가 마선구 2100호 분과 태왕릉 사이에 위치함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²¹⁾

이제 왕릉의 대다수를 점하는 석광 혹은 광실 고분의 피장자 문제를 살펴 보겠다.

우선 西大塚이다. 서대총은 한 변의 길이가 60m를 넘는 초대형 적석총이다. 護石이 초기 형태를 보이고 있어 천추총에 선행하는 무덤임을 알 수 있다. 서대총에서는 ‘己丑年’銘 기와와 ‘歲戊子年□在牟造’銘 기와가 발견되었다. 대개 ‘기축년=329년’, ‘무자년=328년’으로 보는데, 이는 미천왕이 죽은 해인 331년과 근접한 때다. 따라서 서대총은 미천왕릉이다.²²⁾ 서대총이 麻線區河, 즉 美川 근방에 위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²³⁾

20)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앞의 책, 1233쪽

21) 기경량, 2010, 앞의 글, 32쪽

22) 기경량, 2010, 위의 글, 33쪽

23) 종래에는 태왕향의 소하천을 東川, 통구하를 中川, 麻線區河를 西川으로 보았다. 그러나 1914년 조선총독부 간행, 『朝鮮古蹟圖譜』 1에도 보이듯 이들 외에 통구하와 태왕향 소하천의 사이, 즉 우산하 지역에서 시작하여 국내성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 하천은 현재도 확인 가능하다(정호섭, 2011, 앞의 책, 86쪽). 따라서 그 하천을 中川, 통구하를 西川, 마선구하를 美川에 비정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렇게 볼 경우 미천왕릉(서대총)이 마선구하(미천) 근방에 위치하는 등, 장지에 근거한 왕릉 비정 작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음은 禹山下 992號墳이다. 이 무덤에서는 ‘丑’銘 기와와 함께 ‘戊戌年’銘 기와가 함께 발견되었다. ‘丑’銘 기와는 그 형태가 서대총의 ‘己丑’銘 기와와 같으므로 서대총의 己丑年과 같은 329년을 가리킨다고 여겨진다. 무술년은 338년이다. 그래서 기년명과 재위 기간이 겹치는 고국원왕(재위 331~371)의 무덤이라 비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술명 기와가 만들어진 338년은 고국원왕이 사망한 371년과 시간적 간극이 너무 크다.²⁴⁾

그 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천왕릉이 도굴되고 미천왕의 시신이 탈취된 이듬해(343) 그 시신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다. 훼손된 기존 왕릉에 다시 부친을 매장하는 것은 탐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미천왕릉을 조영했다고 여겨진다. 이때 原미천왕릉에서 쓸 만한 기와들을 옮겨와 재활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서대총과 우산하 992호분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己丑’銘 기와가 바로 그 흔적일 것이다. 나아가 본디 왕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戊戌’銘 기와²⁵⁾가 우산하 992호분에서 나오는 것은 해당 고분이 비상시국에 조영되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국원왕은 파괴된 기존 미천왕릉(서대총)의 기와와 몇 해 전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던 무술명 기와를 활용하여 미천왕의 두 번째 왕릉을 만들었던 것이다. 서대총과 우산하 992호분의 와당 무늬가 서로 근접해 있음²⁶⁾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즉, 우산하 992호분은 미천왕 2차릉이다.

다음으로 麻線區 2100號墳이다. 이 고분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황금 장식품이나 옷칠한 鐵鏡 및 금으로 장식한 鐵刀 등이 발견되므로 왕릉이다.²⁷⁾ 더욱이 여기서는 천추총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와당 형식이 나타났다. 이는 마선구 2100호분과 천추총(소수림왕릉)의 축조가 연달아 일어났음을 말해 준다. 소수림왕의 재위기간이 13년으로 길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마선구

24) 정호섭, 2011, 앞의 책, 76쪽

25) 임기환, 2009, 앞의 글, 41쪽

26) 기경량, 2010, 앞의 글, 34~35쪽

27)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앞의 책, 1351쪽

2100호분의 피장자는 소수림왕의 부친 고국원왕일 가능성이 크다.²⁸⁾慕容廆가 故國原에 이르러 서천왕릉을 도굴하려 한 일²⁹⁾을 보면 고국원과 서천왕릉이 인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뒤에서 언급하듯 서천왕릉은 칠성산 211호분이고, 이 고분과 가까운 고분이 마선구 2100호분이므로 그 묘주는 고국원왕이라 하겠다.³⁰⁾

다음은 臨江塚·禹山下 2110號墳·七星山 211號墳이다. 이들 세 고분은 계장에서 계단으로 가는 과도기에 위치한다. 한 변의 길이가 모두 60~70m를 넘어 왕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³¹⁾ 임강총은 집안 일대에서도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고분이며, 東川에 비정되는 太王鄉의 小河川이 주변을 지나고 있다. 따라서 임강총은 東川之原(東壤)에 조성된 동천왕릉이다.³²⁾ 우산하 2110호분에서는 임강총에서 출토된 人形車轄과 거의 유사한 인형거할이 출토되어 양자의 조성 연대는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우산하 2110호분 근처에는 국내성 우산하에서 국내성 남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은 中川에 비정된다. 따라서 우산하 2110호분은 中川之原에 조성된 중천왕릉이다. 그리고 西川으로 비정되는 通溝河 너머 서쪽 지대에 자리한 칠성산 211호분은 이들과 동일한 외형과 매장부를 갖춘 초대형적석총이다. 그러므로 西川之原(西壤)에 조성된 서천왕릉이다.

마지막으로 麻線區 2378號墳·麻線區 626號墳·七星山 871號墳이다.

28) 기경량, 2010, 앞의 글, 35쪽

29) 『삼국사기』 권 제17 고구려본기 제5 봉상왕 5년 8월, “慕容廆來侵 至故國原 見西川王墓 使人發之 役者有暴死者 亦聞壤內有樂聲 恐有神乃引退.”

30) 이에 대해 禹山下 540號墳(34.5×31.5~5.2m)을 고국원왕릉으로 보기도 한다(정호섭, 2011, 앞의 책, 84~87쪽 및 92~94쪽). 하지만 우산하 540호분의 파괴분이라 내부 구조가 명확치 않으며(여호규, 2010, 「高句麗 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17쪽 주79), 대략 5세기 전후로 편년(동북아 역사재단 편, 2008~2011, 앞의 책, 268쪽)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 더욱이 이 고분 주변에서는 별다른 부대시설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왕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31) 여호규, 2006, 앞의 글, 96~97쪽

32) 여호규, 2010, 앞의 글, 21쪽

이들은 계장석광 구조를 가진 이른 시기의 고분들로 피장자를 비정할 자료가 전무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검토는 어렵다. 단, 이후 단계의 산물이 임강총(동천왕릉)이기 때문에 동천왕 이전에 재위했던 군주들의 능일 것이다. 한편 山城下 塹廠 36號墳을 신대왕릉으로 보는 견해³³⁾도 있으나 한 변의 길이가 30여 m에 불과하여 초대형 적석총 가운데는 소형급이며, 왕릉으로 볼 수 있는 다른 지표도 부재하다.³⁴⁾ 또 다른 왕릉들과는 달리 고위 귀족층의 묘지인 통구하 동안 중류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산성하 전창 36호분은 고위 귀족이나 왕족의 무덤일 것이다.³⁵⁾

이상을 종합하면 마선구 626호분·마선구 2378호분·칠성산 871호분은 동천왕 이전의 왕릉, 임강총은 동천왕릉, 우산하 2110호분은 중천왕릉, 칠성산 211호분은 서천왕릉, 서대총은 1차 미천왕릉, 우산하 992호분은 2차 미천왕릉, 마선구 2100호분은 고국원왕릉, 천추총은 소수림왕릉, 태왕릉은 고국양왕릉, 장군총은 광개토왕릉이다. 개개 고분의 피장자 비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자면, '마선구 2378호분·마선구 626호분·칠성산 871호분', '임강총·우산하 2110호분·칠성산 211호분', '서대총·우산하 992호분·마선구 2100호분', '천추총·태왕릉·장군총' 등으로 나뉘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앞의 비정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하겠다.³⁶⁾

33) 정호섭, 2011, 앞의 책, 90쪽

34) 열상 배치된 산성하 전창 38호·39호·40호분을 전창 36호분의 배총으로 보기도 하지만, 개별 독립분으로 보고한 예도 있다. 또 해당 고분들 사이의 동시성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배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강현숙, 2006, 앞의 글, 24~25쪽).

35) 기경량, 2010, 앞의 글, 39쪽

36) 시간적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토기와 기와·와당 및 마구의 편년을 통해 왕릉급 고분들의 전후 순서를 추정해 보면, '마선구 2378호분·산성하 전창 36호분·마선구 626호분·칠성산 871호분 → 임강총·우산 2110호분·칠성산 211호분 → 서대총 → 우산 992호분·마선구 2100호분 → 천추총 → 태왕릉 → 장군총'이 된다(崔鍾澤, 2006, 「集安 '高句麗 王陵' 出土遺物の 諸 問題」, 『韓國古代史研究』 41, 166쪽). 글에서 밝힌 바와 상통한다.

2_ 왕릉의 거대화와 능원제 정비

이제는 국내도읍기 고구려 왕릉과 그 부대시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궤적을 밟아 나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들 고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石臺, 陪塚, 墓域 鋪石, 守墓建築, 墓上建築, 陵牆 등이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다면 능원제 관련 사항을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본격적인 변화 과정을 검토하기에 앞서 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石臺이다. 국내도읍기 왕릉 대부분에서는 석대가 발견된다. 중국 측에서는 이를 祭臺로 보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분 축조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 비해, 이 유구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완비되어 가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대부분의 왕릉에서 제사 행위의 흔적이 없고 床面 시설도 부재하며, 해당 유구가 평양 지역의 왕릉급 고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³⁷⁾ 서대총(1차 미천왕릉)이나 우산하 992호분(2차 미천왕릉)의 경우 양방향에 석대가 있다³⁸⁾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에 따라 이 석대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표출되었다. 먼저 寢殿으로서의 성격을 갖춘 제대로 보기도 한다.³⁹⁾ 그러나 침전이라고 확정할 만한 유물이나 흔적이 나오지도 않았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보기 힘들다. 다음으로 葬送儀禮나 墓前儀禮를 위해 임시로 축조했다고 보기도 한다.⁴⁰⁾ 그런데 이 추정기 성립하기 위해서는 석대가 고분 옆이나 뒤에 위치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7) 강현숙, 2006, 앞의 글, 20~22쪽

38)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106쪽 및 124~125쪽

39) 耿鐵華, 2004, 『高句麗考古研究』, 吉林文史出版社, 148쪽; 조법중, 2005, 앞의 글, 238쪽

40) 정호섭, 2008, 「고구려 적석총 단계의 祭儀 양상」, 『선사와 고대』 29, 204~205쪽; 정호섭, 2011, 앞의 책, 259~262쪽

그런데 중국 측에서 제대라 칭한 유구와 비슷한 형태의 적석 기단이나 석대 가운데 陪塚群으로 여겨지는 사례들이 있어 주목된다. 칠성산 871호분 북쪽의 적석 기단은 제대와 비슷하지만, 동서로 연결하는 4기의 배총이다.⁴¹⁾ 또 칠성산 211호분(서천왕릉) 북쪽 12m 지점과 우산하 992호분(2차 미천왕릉) 서쪽 16m 지점에 있는 석대도 본디 4기의 배총일 가능성이 있다.⁴²⁾ 천추총(소수림왕릉) 역시 애초에는 동쪽 30m 지점에 石堆 형태의 배총군이 있었다.⁴³⁾ 이는 석대가 배총과 성격을 공유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면이 좀 더 여실히 드러나는 것은 장군총(광개토왕릉)이다. 장군총의 석대는 2호 배총과 불과 30cm 거리다. 제대라고 보기에는 배총과의 간격이 너무 가깝다. 더욱이 이 석대 바로 뒤는 언덕이기 때문에⁴⁴⁾ 입지적으로도 제대라 생각하기 어렵다. 1930년대 보고에 따르면 장군총 주변에 4~5기의 陪塚이 있었는데,⁴⁵⁾ 현재 석대를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⁴⁶⁾ 그러므로 장군총의 석대는 본디 陪塚群이었는데, 시일이 흐름에 따라 각 배총들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여겨진다. 이는 다른 왕릉의 석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보고를 보아도 제대인지 배총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중소규모 적석총은 시일이 지나 파괴되면 石堆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판별이 쉽지 않다. 그런데 제대는 아닐 가능성이 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왕릉 인근에 석대를 조성했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 실체는 배총과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 종래 배총군으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석대를 배총

4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46~47쪽

4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86~87쪽 및 125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앞의 책, 495쪽

4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212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위의 책, 1232쪽

4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347~350쪽; 여효규, 2006, 앞의 글, 125쪽

45)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앞의 책, 117쪽

4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347쪽

으로 보기에는 무리다.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배총의 묘주들은 대개 군주와 같은 시기에 죽지 않았을 것이므로, 왕릉 조영 이후 추가적으로 배총이 조성되었을 것이다. 그날을 대비하여 미리 왕릉 가까이 배총을 만들 자재들을 구비해 놓았던 것이 아닐까? 즉, 배총으로 보기 힘든 석대는 훗날을 위한 배총용 석재일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돌을 이용하여 배총을 조영해도 되지만, 특정 왕릉의 배총이므로 해당 왕릉이 조성될 때 배총용 석재까지 미리 마련하여 그 의의를 높이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배총이 왕릉의 일부이자 왕릉에 종속된 존재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왕릉과 같은 석재를 이용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 유구가 '배총'과 연관되기 때문에 '陪臺'라 부르는 게 어떨까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배총이 아닌 왕릉 근방의 석대를 陪臺라 칭한다.

다음으로 배총을 보자. 이는 배대의 성격을 밝히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주목할 부분만 다루겠다. 우선 마선구 626호 서변 북쪽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⁴⁷⁾ 동쪽에 배대가 있었고, 서쪽에는 실제로 배총이 조성된 사례라 하겠다. 이러한 사례는 태왕릉(고국양왕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시기의 보고에 따르면 태왕릉 북쪽 90m 지점에 능장(土壘)이 존재하였고, 그 안쪽 20m 지점에 배총 5~6기가 붕괴된 흔적이 있었다.⁴⁸⁾ 태왕릉 동쪽에 배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마선구 626호분과 비슷한 사례라 하겠다.⁴⁹⁾ 한편 마선구 2378호분의 경우에는 지근거리에 있는 마선구 2381호분을 배총으로 보는데, 양자의 거리가 50cm에 불과하므로⁵⁰⁾ 본래는 하나의 고분이거나, 배총이 등장하기 이

47)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36쪽

48) 여호규, 2006, 앞의 글, 124~125쪽;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앞의 책, 285~286쪽

49) 이 외에 태왕릉 남쪽 3m 지점에서도 배총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257쪽). 하지만 이 유구는 태왕릉보다 먼저 조성되었다고 여겨지는데다 형식도 태왕릉과 다르고, 능과의 거리도 너무 가까우며 고분 남쪽에 배총이 위치한 사례도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강현숙, 2006, 앞의 글, 24쪽; 강현숙, 2009, 앞의 글, 331~332쪽).

50)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15~16쪽

전의 초기 왕릉이라 그럴 수도 있다.

다음으로 墓域 鋪石이다. 초기 왕릉인 마선구 626호분과 칠성산 871호분에서는 각기 동면과 서면에서 존재가 확인되는데 원래는 散水 역할을 했다고 여겨진다.⁵¹⁾ 이후 우산하 2110호분(중천왕릉) 서면에서도 보이며, 마선구 2100호분(고국원왕릉)에 이르면 서·남·북 삼면에서 포석이 확인된다.⁵²⁾ 사면을 포석했다고 단정할 만한 첫 사례는 태왕릉(고국양왕릉)이며,⁵³⁾ 장군총(광개토왕릉)에서는 사면 30m 범위를 포석하였다.⁵⁴⁾ 배수 기능으로 시작하여 묘역 전면을 포석하는 형태로 나아간 것이다.

다음으로 守墓 건축이다. 칠성산 871호분 서북쪽 22m 지점에서는 기와를 갖춘 建築址가 발견되었는데,⁵⁵⁾ 이후에도 다수 왕릉에서 이러한 모습이 엿보인다. 왕릉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왕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을 것이지만, 구체적인 성격 규명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전한시대 帝陵 가까이(陵)廟가 세워졌음을 생각하면,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 이 건축물을 廟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廟는 원래 조상을 제사하는 장소라는 뜻을 담고 있던 까닭에⁵⁶⁾ 한국 고대에는 墓가 廟로 여겨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가야의 首露王陵이 首露王廟라 불린 것⁵⁷⁾이나 신라 味鄒王陵이 大廟로 운운되었던 것⁵⁸⁾은 그 일례이

51)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36쪽 및 46쪽

52)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74쪽 및 145~146쪽

53)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254쪽; 여호규, 2006, 앞의 글, 123쪽

54)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345쪽

55)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47쪽

56) 池田末利, 1981, 「釋廟」, 『中國古代宗教史研究－制度と思想』, 東海大學出版會, 331~332쪽

57)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제2, 駕洛國記, “元君乃每歌螺枕, 悲嘆良多, 隔二五歲, 以獻帝立安四年己卯三月二十三日而殂落, 壽一百五十八歲矣. 國中之人若亡天只, 悲慟甚於后崩之日, 遂於闕之良方平地, 造立殯宮, 高一丈 周三百步而葬之, 號首陵王廟也.”

58) 『삼국유사』 권 제1, 기이 제1, 味鄒王竹葉軍, “非末鄒之靈, 無以遏金公之怒, 王之護國, 不爲不大矣. 是以, 邦人懷德, 與三山同祀而不墜, 躋秩于五陵之上, 稱

다. 王陵이 곧 王廟로 여겨진 것이다.⁵⁹⁾ 미천왕릉(서대총)을 美川王廟라 한 것⁶⁰⁾에서 보면 고구려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록을 보면 美川王廟는 파헤쳐질 수 있는 구조이고 그 안에 미천왕의 시신이 있었으므로, 무덤 근처에 세워진 陵廟가 아니라 미천왕릉을 가리킨다. 고구려에서 무덤은 죽은 이의 사후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그를 제사하는 廟이기도 했던 것이다.⁶¹⁾ 따라서 해당 건축지를 (陵)廟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⁶²⁾ 다음으로 해당 건축물에서 제사 관련 유물들이 그다지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廟라면 응당 제사 관련 유물들이 나와야 마땅하다.⁶³⁾ 또 후한 이후 陵廟가 사라진 채 陵園 안에는 寢殿(陵寢) 정도가 존재하였다는 점도 참조된다.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陵廟가 부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외에 건축지를 묘주의 혼령이 거처하는 寢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전환의 宣帝 杜陵이나 후한시대 제릉의 침전이 능원 가까이에 있었음을 보면,

大廟云.” 大廟는 太祖廟 혹은 始祖廟를 가리킨다(諸橋轍次, 1968, 『大漢和辭典』 3, 大修館書店, 444쪽).

59)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77~78쪽

60) 『삼국사기』 권 제18, 고구려본기 제6, 고국원왕 12년 11월, “發美川王廟, 載其尸, 收其府庫累世之寶, 虜男女五萬餘口, 燒其宮室, 毀丸都城而還.”

61) 姜辰垣, 2007, 「高句麗 始祖廟 祭祀 研究 - 親祀制의 成立과 變遷을 중심으로」,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58~59쪽

62) 전국시대 중국에서도 墓를 廟로 인식했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기원전 278년 秦將 白起가 楚의 수도 郢을 공격하여 王墓 지구인 夷陵을 불살랐는데, 이때 秦의 相인 范雎가 백기를 질책하며 “그 廟를 태웠다”고 하였다. 훗날 元의 吳師道는 『戰國策校注』에서 “廟를 태웠다는 것은 墓를 태웠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하였다(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중국 역대 陵寢 제도』, 서경, 50~51쪽). 陵廟制가 전한 景帝代에 시작되므로(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前漢皇帝陵の研究』, 學生社, 287쪽), 그 해석은 타당하다.

63) 물론 칠성산 871호분에 부속된 건축물에서는 四坡水の方形陶屋頂과 獸首形脊飾 등이 나왔으므로(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47쪽) 이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칠성산 871호분과 건축지 사이의 거리는 22m에 불과하고, 칠성산 871호분의 파괴 양상이 심각하므로, 이들은 칠성산 871호분 매장부나 그 인근에 있던 유물들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이 하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왕릉과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건축물이 세워진 경우에는 그 근처에 제사 관련 유물이 거의 없다.

그 거리도 너무 멀고 또 제사 관련 유물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점도 문제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묘상건축이 寢으로 여겨졌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해당 건축지는 守墓 건축으로 보는 편이 좋을 것이다. 신대왕대 明臨答夫墓에 대한 수묘 조치가 이루어졌음⁶⁴⁾을 감안하면, 이 시기에 왕릉에 대한 수묘도 행해졌을 것이다. 수묘는 왕릉의 청결 유지를 포함하여 보호와 관리를 총괄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중심이 되는 건축물이 존재했으리라고 여겨지는데, 고구려 왕릉 인근에서 발견되는 건축지가 그러한 수묘 건축의 흔적일 것이다.⁶⁵⁾

다음은 墓上建築이다. 애초 중국 측에서는 기와가 다량으로 수습된 경우에는 묘상건축의 존재를 긍정하였다. 그런데 방수를 위해 기와가 사용되었을 수 있고, 중소형 적석총의 적석부에서도 기와가 나왔으며, 평양도읍기의 왕릉급 고분인 경신리 1호분(漢王墓)의 경우 기와가 석실 상부를 덮은 채로 발견되므로,⁶⁶⁾ 기와의 존재를 묘상건축의 유무와 직결시켜서는 곤란하다. 더욱이 묘상건축이 주는 비중도 상당했을 것이므로, 묘상건축이 세워지려면 분구가 계단식으로 축조된 이후라야 가능할 것이다.⁶⁷⁾ 계단적석총 단계, 즉 임강총(동천

64) 『삼국사기』 권 제16, 고구려본기 제4, 신대왕 15년 9월, “國相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65) 수묘 건축의 방위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대 제릉의 廟나 寢 및 능원 관련 건축의 방위도 모두 일률적이지 않다. 禮學에 대해 관심이 깊었던 한대에도 실정이 그러하였으므로, 고구려 왕릉의 경우에도 이를 이상하게 볼 일은 아니다. 이에 대해 수묘인이 입주할 공간에 따라 그 방위가 결정되었다는 설(강현숙, 2009, 앞의 글, 327~328쪽)도 있다. 중국의 경우 전한 太上皇陵 서북쪽 950m 지점에서 守陵人 거주지로 추정되는 건축지가 발견되었고(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205쪽), 文帝 司馬昭의 崇陽陵 능장과 相連하여 수위와 관련된 건축지 2기가 발견되었는데(羅宗真, 2001, 『魏晉南北朝考古』, 文物出版社, 77~78쪽), 고구려의 수묘 건축 또한 수묘인들의 거주지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건축물을 陵邑과 연관시켜 보기도 한다(강현숙, 2009, 앞의 글, 327~328쪽). 단, 전한 제릉의 능읍은 일종의 신도시였고(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314~319쪽), 능읍 조성은 宣帝 杜陵을 마지막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과연 그런지는 의문이다.

66) 강현숙, 2006, 앞의 글, 26~28쪽

67) 강현숙, 2006, 위의 글, 39쪽

왕릉) 이후이다. 단, 그렇다고 모든 계단식 적석총에 묘상건축이 존재했다고 보기도 무리인데, 그 면에서 주목되는 것이 와당이다. 누수 방지 등을 위해 와당까지 사용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⁶⁸⁾ 따라서 와당이 출토된 계단식 적석총에서는 묘상건축물의 존재를 긍정해도 좋을 것이다.⁶⁹⁾

그렇다면 묘상건축은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 이에 대해 享堂으로 보기도 하는데,⁷⁰⁾ ‘향당’이라는 이름은 후대에 사용되었기 때문에⁷¹⁾ 문제가 있다. 또 廟로 볼 수도 있겠으나, 후술하듯 중국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廟가 능원 밖에 두어지기 때문에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한편 실제적인 기능이 없이 왕릉의 장엄함을 나타내기 위한 기념비식 건조물로 파악할 수도 있다.⁷²⁾ 그러나 실질적인 기능이 없음에도 굳이 이러한 건축물을 분정에 세웠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 건축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피폐하게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 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殷代 및 춘추전국시대 군주들의 능묘 위에 寢殿의 성격을 가진 묘상건축을 세웠다는 점이다. 죽은 이의 혼령이 무덤 안에 머문다고 여겼기 때문에, 혼령에게 음식과 기거를 제공하는 寢을 그 가까이 세운 것이다.⁷³⁾ 고구려에서도 무덤은 죽은 이의 거처로 여겨졌으므로, 고구려의 묘상건축 또한 寢으로 이해하는 편

68) 강현숙, 2009, 앞의 글, 192쪽; 정호섭, 2011, 앞의 책, 251쪽

69) 이에 대해 계장적석총인 마선구 626호분 위에 平臺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른 시기부터 묘상건축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한다(정호섭, 2008, 앞의 글, 196~197쪽; 정호섭, 2011, 앞의 책, 249쪽). 그런데 계장식의 경우에는 하층을 견딜 수 있을지가 의문일뿐더러, 진시황의 驪山陵이나 昭帝 平陵 및 成帝 延陵 등에서는 봉토 정상부에 平臺가 조성되었음에도 묘상건축의 흔적은 부재하다(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126쪽 및 197쪽; 신용민, 2008, 『中國 古代 帝陵과 三國時代 大形古墳 비교 검토』, 『石堂論叢』 40, 6~7쪽). 평대의 존재가 묘상건축 유무와 직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70) 李亨求, 1982, 『高句麗의 享堂制度研究』, 『東方學志』 32, 2~4쪽 및 10~11쪽

71)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54쪽

72) 김용성, 2005,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北方史論叢』 3, 137쪽

73)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46쪽

이 타당할 것이다.⁷⁴⁾

마지막으로 陵墻이다. 현재 능장 흔적이 확인되는 왕릉은 서대총(1차 미천왕릉)·마선구 2100호분(고국원왕릉)·천추총(소수림왕릉)·태왕릉(고국양왕릉) 정도다. 발견된 능장의 중앙 부분에서는 모두 門址가 발견되었다. 또 서대총의 동쪽 배대 외곽에 능장이 있다고 여겨지고,⁷⁵⁾ 태왕릉 또한 동쪽 배대 외곽에서 능장이 확인되므로,⁷⁶⁾ 능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고분 → 배대 → 능장’으로 외연이 확대된다.⁷⁷⁾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74) 寢은 조상의 혼령이 생활하는 곳으로 제사 장소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위의 책, 54~55쪽 및 65쪽). 그러나 寢에서 죽은 이의 기거를 돕고 四食을 올리며 특별한 날에 新物을 올리는 행위 자체는 엄연한 제사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사 장소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272~273쪽; 來村多加史, 2001, 『唐代皇帝陵の研究』, 學生社, 440~441쪽). 후한시대에 陵廟가 사라지고 종래 종묘에서 하던 일들을 陵寢에서 하게 되면서 제사 장소로서의 능침의 위상이 더 높아진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실제 전한 제릉 배장묘에 두어진 祠堂은 寢과 廟의 성격을 겸비하였고(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308~311쪽; 黃曉芬 著, 김용성 譯, 2006,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417쪽), 후한의 유력층 무덤 가까이에 있는 침전류의 건축은 ‘廟’로 불리기도 하였다(黃曉芬 著, 김용성 譯, 2006, 위의 책, 415쪽). 고구려 묘상건축(寢) 또한 당시에는 조상을 제사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廟로도 칭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예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美川王廟이다. 이는 넓게 보면 미천왕릉(서대총) 전체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좁게 보자면 그 정상부에 있는 묘상건축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75) 東潮, 2006, 앞의 글, 2쪽; 東潮, 2009, 위의 글, 54쪽

76)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254~257쪽

77) 장군총 서남쪽 일부에서 발견된 石墻을 능장으로 볼 경우 장군총에도 능장이 있었다고 여길 수 있으나, 이는 보호 축대(護坡)이기 때문에 능장과는 성격이 다르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위의 책, 345쪽; 여호규, 2006, 앞의 논문, 122쪽). 장군총은 능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외에도 분구 규모가 국내도움기 왕릉 가운데 가장 작으며 능원 영역도 축소되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글을 통해 밝히겠다.

〈표 2〉 국내도읍기 고구려 왕릉 능원제의 양상⁷⁸⁾

고분명	묘주	배대	배층	묘역 포석 (길이×너비)	수묘 건축	묘상 건축	능장	비고
마선구 2378호분	동천왕 이전 군주		마선구 2381호분?					마선구 2381호분은 배층이 아닐 가능성
마선구 626호분		동쪽 20m	서면 북쪽 1기	동면				
칠성산 871호분			북쪽 11m에 4기	서면 (너비 6m)	서북쪽 22m			
입강총	동천왕	동쪽 13.5m						
우산하 2110호분	중천왕	동쪽 10~14m		서면 (56×18.5)				
칠성산 211호분	서천왕		북쪽 12m에 4기					가장 동쪽 배층은 9×9-0.5m
서대총	미천왕	동쪽 40m, 서쪽				○	북쪽 40.5m	北牆에 北門址
우산하 992호분	미천왕	동쪽 17m, 서쪽 16m				○		
마선구 2100호분	고국원왕			서·남· 북면	서남쪽 200m	○	남쪽 30m	동면의 포석은 파괴 가 심하여 파악 곤 란, 南牆에 南門址
천추총	소수림왕		동쪽 30m에 배층군	서면	서남쪽 300m	○	남쪽 40m	南牆에 南門址
태왕릉	고국양왕	동쪽 50~68m	북쪽 70m에 5~6기	서·남· 북면	동북쪽 120m	○	남쪽 100m, 동쪽 150m	분구 남쪽 석봉은 배층 가능성 희박, 南牆에 南門址
장군총	광개토왕		북쪽 약 30m에 배층군	사면 30m 범위	서남쪽 100m	○		

78) 표의 m는 각 왕릉 분구로부터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고구려 왕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대시설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능원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단속적으로 나타나는 시설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안 일대가 고구려 멸망 당시 큰 타격을 입었고, 오늘날까지 지속적인 훼손이 이루어진 점을 생각하면, 능원을 이루는 부대시설 가운데 상당수는 도중에 사라져버렸을 것이다. 장대한 능원을 자랑하던 전한의 경우에도 개별 제릉을 살펴보면 상호 간 탈락 부분이 있고, 능원을 완비한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애초 그러한 시설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어지는 동란과 세월의 풍파 속에 훼손되거나 파괴된 결과로 보는 편이 합리적 이므로, 현재 전한 능원제는 대략적인 추세를 통해 그 정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런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능원제의 정비 과정 안에서도 계선을 그을 수 있다. 먼저 마선구 2378호분·마선구 626호분·칠성산 871호분 단계로 대략 3세기 전반 이전까지다. 해당 고분들은 길이와 너비가 모두 40~50m에 달한다. 부대시설 면에서도 묘역 일부를 포석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배대와 배대 및 수묘 건축이 조성된다. 외관상 일반 왕족·귀족묘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왕릉이 축조되었고, 그에 상응하는 시설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를 'I기'라 한다.

다음은 임강총(동천왕릉)·우산하 2110호분(중천왕릉)·칠성산 211호분(서천왕릉) 단계로 3세기 중엽~말이다. 이 시기가 되면 분구의 규모는 더욱 거대해져 한 변의 길이가 70m를 넘기도 한다. 단 부대시설 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 배대와 분구 사이의 거리는 I기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이 시기에 분구 자체는 더욱 高大해졌으나 墓域은 이전 시기에 비해 그다지 확장되지 않았다. 이를 'II기'라 한다.

마지막은 서대총(1차 미천왕릉)·우산하 992호분(2차 미천왕릉)·마선구 2100호분(고국원왕릉)·천추총(소수림왕릉)·태왕릉(고국양왕릉)·장군총(광개토왕릉) 단계로 4세기 이후다. 이때는 묘상건축(寢)과 능장이 새롭게 등장한다. 또 배대나 배총군이 두 방향으로 나타나고, 묘역 全面에 포석이 행해지는 등 기존에 있던 부대시설들도 과거에 비해 더욱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 덧붙

여 배대와 분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나, 분구와 능장 및 수묘 건축의 거리를 보면 I·II기에 비해 묘역이 크게 확장되고 있다. 이 시기의 왕릉과 능원이 화려하고 장대한 외양을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⁹⁾ 이를 ‘III기’라 한다. III기는 고구려 능원제가 완비된 때다.⁸⁰⁾

요컨대 국내도읍기 고구려 왕릉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분구 자체가 고대해졌을 뿐 아니라, 능원제를 구비하여 갔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외양이 변화해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이를 부제제가 해체되고 집권력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은주시대까지 분구를 축조하지 않았으나, 춘추시대 중기 이후 각국의 군주들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분묘 축조에 힘을 기울여 웅장한 분구묘가 성행하기 시작한다.⁸¹⁾ 고구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단, 이를 전적인 배경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삼국시대 백제나 신라의 경우 왕권이 강화되었다 해도, 거대한 분구묘가 조성되었을 뿐 능원제가 정비되는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도읍기 고구려 권력이 단순히 분구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능원제를 구비해 나간 데에는 다른 특정한 배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79) 물론 우산하 992호분(2차 미천왕릉)과 마선구 2100호분(고국원왕릉)처럼 상대적으로 왜소한 고분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해당 왕릉들이 어려운 시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이지(기경량, 2010, 앞의 글, 45~46쪽), 능원제 자체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니다. II기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서대총(1차 미천왕릉)에서 새롭게 등장한 능장이나 묘상건축과 같은 요소들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80) 중국의 경우 제릉의 주변을 두르는 담장을 陵園이라 칭하였는데, 능장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해자 등을 이용하여 능원을 설정하기도 하였으며, 전국시대 이후 담장으로 구획되는 능원이 등장하였다(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256~258쪽). 명확한 능원은 전국시대 이후에 출현한 것이다. 고구려에서 명확한 능원이 등장한 것은 III기에 이르러서다. 또 III기에는 본문에서 서술하였듯이 기존의 능원 관련 요소가 확대되거나 새롭게 출현하고 있어 능원제가 정비되었다고 할 만하다.

81)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236쪽; 黃曉芬 著, 金勇성 譯, 2006, 앞의 책, 308~312쪽

Ⅲ. 국내도읍기 陵園制 발달의 배경

1_ 중국 고대 능원제의 지향과 중국계 인물들의 유입

고구려는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백제나 신라에 비해 중국과 오랫동안 교섭을 지속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중국의 문물제도는 고구려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불교나 태학, 율령 등이 그 예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능원제 또한 중국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국의 능원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단순히 무덤만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종의 부대시설을 함께 두는 사례는 殷代부터 나타난다. 河南省 安陽市 殷墟에 위치한 婦好墓나 大司空村 11·12·301·311·312호묘 위에서는 寢의 성격을 가진 묘상건축이 발견되었다.⁸²⁾ 이어 周代가 되면 太公望이 사후 文王墓 부근에 매장되는 등 陪葬墓가 출현한다.⁸³⁾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면 王墓의 묘역 표시가 뚜렷해지고 매장묘군과 함께 묘상건축(寢)이 세워지는 등 능원이라 칭할 만한 모습들이 나타난다.⁸⁴⁾ 그 양

82)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위의 책, 235쪽 및 276~277쪽;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54쪽 및 60~61쪽; 신용민, 2008, 앞의 글, 4~5쪽

83)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위의 책, 299쪽

84) 춘추시대 만기~전국시대 초기 越王墓인 浙江省 紹興市 蘭亭鎮 印山大墓와 춘추시대 만기 齊의 무덤인 山東省 淄博市 齊故城의 M5묘 또한 방형 周溝묘 묘역을 나타냈다. 秦에서도 陝西省 鳳翔縣 雍城 西陵 지구 단계에 이미 매장묘를 거느리고 園壕로 묘역을 나타낸 公墓 조영이 성행하였으며 묘상건축도 조성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咸陽都邑期の 왕묘 지역인 臨潼縣 芷陵(일명 東陵) 지구에서도 이어진다. 환호가 아니라 능장을 통해 묘역을 드러내는 방식도 유행한다. 河北省 邯鄲市 三陵鄉陳 三陵村 3호 趙王大墓는 능장과 매장묘를 구비하였다. 또 邯鄲의 趙王墓에서는 묘상건축의 존재 역시 긍정된다. 河南省 輝縣 固圍村에 있는 전국시대 중기 魏王墓도 좌우에 매장묘를 거느린 채 능장과 묘상건축을 구비하고 있다. 한편 齊故城 동남쪽 8km 지점에 있는 전국시대 齊王墓인 '四王塚'과 牛土山 정상부에

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는 河北省 平山縣 三汲鄉의 전국시대 중기 中山王墓이다. 中山王墓를 중심으로 좌우에 4기의 배장묘가 들어섰고, 이들 모두 묘상건축(寢)이 존재하였다. 외곽에는 내외 두 겹의 능장(宮垣)이 마련되었으며 남쪽 능장 중앙에는 문도 있었다. 중산왕묘의 宮垣은 전한의 능장(周垣), 중산왕묘의 남쪽 宮垣 중앙문은 전한 능원의 司馬門에 해당하며, 중산왕묘의 묘상건축은 전한의 陵寢에 해당한다.⁸⁵⁾ 전한 능원제의 기본적인 구도가 전국시대에 출현하였던 것이다.

진시황릉(驪山陵)에 이르면 그러한 흐름은 한층 가속화된다. 분구 북쪽에서는 침전 유적이 발견되었으며, 飲官(食官)이라는 제사 담당 기구도 설치되었다. 또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의 능장(城垣)이 마련되었고, 외성 동쪽 350m 지점에는 배장묘군이 조성되었다.⁸⁶⁾ 이 구조는 전한의 능원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전한시대에는 고대 중국 능원제가 완비된다. 황제릉과 황후릉 능원 각 면의 중앙에는 각기 하나씩의 문(司馬門)을 마련하였고, 사마문 밖에는 界標의 역할로서 雙闕을 설치하였다. 능원 안에는 廚房이 설치되었고, 거마 등도 두어졌다.⁸⁷⁾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陵旁入廟’와 ‘陵側起寢’, 즉 ‘능 가까이에 廟를 세우고, 능 곁에 寢을 세우는’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특히 ‘陵旁入廟’, 즉 (陵)廟의 설립은 이전까지 없던 일이었다. 전한에서도 애초부터 廟가 제릉 부근에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景帝가 前元 원년(기원전 156) 문제 패릉의 陵廟를 건조하고, 中元 4년(기원전 146) 자신의 수릉인 陽陵 가까이에 陵廟를 조성

자리한 ‘二王塚’는 각기 배장묘군과 함께 하였다.

85)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256쪽; 尹張燮, 1999, 『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35쪽;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52~55쪽; 黃曉芬 著, 김용성 譯, 2006, 앞의 책, 291쪽 및 406쪽

86)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위의 책, 277쪽 및 299~300쪽;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위의 책, 57쪽; 黃曉芬 著, 김용성 譯, 2006, 위의 책, 407~410쪽; 신용민, 2008, 위의 글, 6~8쪽

87)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위의 책, 233~235쪽 및 256~267쪽

한 이래 제도로 정착하게 된다.⁸⁸⁾ 陵旁入廟 제도가 시행된 것은 당시 사람들이 무덤과 그 곁의 寢을 죽은 이의 혼령이 머무는 거처로 여겼기 때문이다. 廟란 죽은 이의 혼령을 위한 제사가 행해지는 주된 장소였으므로, 그 혼령이 제사를 쉽게 받도록 여러 황제의 廟를 陵寢 가까이에 건립한 것이다.⁸⁹⁾ 한편 ‘陵側起寢’의 원리에 따라 전대의 흐름을 이어 전한 제릉 곁에는 寢이 자리하였다. 寢은 죽은 이의 영혼이 노니는 곳이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처럼 날마다 四食을 올리는 제례를 거행하였다.⁹⁰⁾

배장묘의 경우 대개 제릉의 동쪽에 분포하였고 배장묘의 피장자가 皇親國戚일 경우에는 園邑과 祠堂까지 두어졌다. 원읍의 규모는 수백 家에 이르렀는데, 이들은 해당 배장묘를 관리·담당하는 守墓에 종사하였다. 祠堂은 제릉의 寢廟와 기능이 비슷하다. 전한 중만기에 이르면 일반 관리들이 墓地에 사당을 세우는 현상도 보편적으로 나타난다.⁹¹⁾ 그 밖에 제릉에서 가깝게는 1~2리, 멀게는 5~6리 거리에 陵邑이 설치되어 유력가나 巨富가 대대적으로 徙民되었다.⁹²⁾

후한시대에 이르러도 거대한 분구묘를 축조한다든가 능침이 두어지는 현상은 그대로 이어진다. 단 몇 가지 달라진 부분도 존재한다. 우선 明帝 顯節陵으로 대표되는 후한의 전형적인 능원에서는 능장 대신에 行馬⁹³⁾를 설치하여 능원 안팎을 구분하였다. 또 전한시대 능장 밖에 위치하던 침전은 능장 안 동쪽으로 옮겨 왔으며,⁹⁴⁾ 분구의 규모가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왜소해지

88)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위의 책, 287쪽

89) 陵廟의 위치와 제릉에서의 거리는 각양각색이었다(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37~39쪽).

90) 전한 초기에는 진시황릉처럼 능원의 안쪽이자 제릉의 북측에 침전이 존재하였으나, 景帝 陽陵 이후로는 능원 밖 동남쪽에 위치하게 된다(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272~275쪽 및 281쪽).

91)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위의 책, 300쪽 및 308~310쪽; 신용민, 2008, 앞의 글, 12~13쪽

92)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위의 책, 314~319쪽

93) 人馬를 막는 나무로 만든 경계 시설.

94) 來村多加史, 2001, 앞의 책, 453쪽;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기도 한다.⁹⁵⁾

하지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陵旁入廟가 사라지고, 陵寢이 가지는 의의가 격상되었다는 사실이다. 명제는 즉위 이듬해(58) 본래 조정에서 열리던 정월의 元會儀를 光武帝 原陵에 가서 거행한다. 上陵禮의 시작이다. 또 종묘에서 행해지던 8월의 酎祭禮도 능침으로 옮겨와 거행케 하였다. 그 결과 종묘의 지위는 하락하였고 능침의 위상은 높아졌다. 또한 그는 임종 시(75)에 遺詔를 내려 陵旁入廟 제도를 폐지하고, 자신의 신주는 光武廟에 보관토록 하였다. 이후 다른 황제들도 그 전례를 따르게 되니, 많은 황제들의 신주는 모두 祖廟(太廟)에 존재하게 되었다.⁹⁶⁾ 요컨대 陵廟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종래까지 일상적인 제사 활동의 장소였던 陵寢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⁹⁷⁾

한편 河南省 洛陽市 城西 墓園 유적에서 보이듯 후한시대에도 王侯 이하 지방 호족묘에서 능원을 모방하여 담장을 두르고 침전을 조성하는 등 墓園을 조성하는 것이 성행하였다. 또 중소형 분묘의 경우에도 무덤 앞에 벽돌이나 돌로 작은 사당을 축조하는 것이 성행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후한 만기에 이르면 더욱 가속화된다.⁹⁸⁾ 전한에 이어 후한에서도 부대시설을 구비한 무덤이 일정 정도의 지위를 가진 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것이다.

이상에서 중국 고대 능원제는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한시대에 완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위진시대 이후 큰 변화가 생긴다. 曹操의 高陵은 그의 終喪에 따라 不樹不封한 형태를 갖춘다.⁹⁹⁾ 이어 曹偉 文帝 曹丕는 黃初 3년(222) 고릉의 침전(殿屋)마저 철거하고 거마와 의복을 능 부근에 두지 못하

80~81쪽

95) 劉敦禎 著, 鄭沃根·韓東洙·梁鎬永 共譯, 1995, 『中國古代建築史』, 世進社, 109쪽; 來村多加史, 2001, 앞의 책, 453쪽

96)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71~73쪽 및 78~79쪽

97) 본디 조정과 종묘에서 의식이 있을 때 사용하는 큰 중을 거는 鐘虞가 후한의 제릉 능원에서는 필수 부대시설로 등장한 것(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위의 책, 80~81쪽)은 능침의 높아진 면모를 잘 보여준다.

98) 黃曉芬 著, 김용성 譯, 2006, 앞의 책, 413~416쪽

99) 羅宗眞, 2001, 앞의 책, 76쪽

게 한다. 이로써 능침 제도는 폐지된다.¹⁰⁰⁾ 또한 문제는 같은 해(222) 수릉인 首陽陵을 조영하면서, 박장과 아울러 침전을 비롯한 능원을 폐지하는 終制(임종의 제도)를 작성한다.¹⁰¹⁾ 그리고 이 조치는 큰 영향력을 가지며 이후에도 장기간 이어지게 된다. 삼국시대에 큰 陵墓 유적을 찾기 어렵거나¹⁰²⁾ 오늘날까지도 조조 고풍이나 문제 수양릉의 위치가 모호한 것은 그 때문이다. 요컨대 조위 문제 이후 능침이 제거되었을 뿐 아니라, 상릉례 역시 폐지되었으며¹⁰³⁾ 능원과 분구묘까지 사라지게 되었다.¹⁰⁴⁾

조위 이후에도 그러한 추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西晉에서는 宣帝 司馬懿부터 惠帝 司馬衷에 이르기까지 5기의 陵墓를 조영하였지만 능원제는 물론 이요 능침과 상릉례도 부활하지 못하였다.¹⁰⁵⁾ 오호십육국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능원에 진출하였던 종족들의 군주는 대부분 潛埋 방식을 채용하였고 분구를 축성하지 않았다. 동진의 경우에도 제릉 대부분은 분구를 축조하지 않은 채 산능터에 墓坑을 뚫어서 마련하여 묘실을 감추었다.¹⁰⁶⁾

이상을 종합하면 중국의 능원제는 은대 묘상건축에서 그 단초가 보이기 시작하여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며 일정 정도의 규격을 갖추었고, 진한시대에 이르면 장대한 규모와 정연한 구조를 자랑하게 된다. 그러나 조위 이후 능원제가

100)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85~86쪽

101) 羅宗眞, 2001, 앞의 책, 76~77쪽; 來村多加史, 2001, 앞의 책, 22쪽

102) 尹張燮, 1999, 앞의 책, 103쪽

103)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86쪽

104) 이 시기에 박장이 대두하게 된 원인으로서는 후장의 결과 도굴이 성행하게 된 역사적 경험, 사회적 불안정과 왕권의 쇠락, 장기간의 전란과 분열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춘추전국시대 이래 미미하게 이어져 오던 박장 사상의 영향, 군주들의 술선수범 등을 거론할 수 있다(盧仁淑, 2001, 「中國에서의 喪禮文化의 展開」, 『儒敎思想研究』 15, 81~83쪽; 洪廷珂, 2003, 「魏晉南北朝時代 凶門柏歷에 대하여」, 『魏晉隋唐史研究』 10, 100~101쪽).

105)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87쪽. 물론 司馬昭의 崇陽陵이나 武帝 司馬炎의 峻陽陵에서 보이듯, 부분적으로 능원을 구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羅宗眞, 2001, 앞의 책, 77~78쪽) 전반적으로 조악한 수준이다.

106)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위의 책, 87~90쪽; 朴漢濟, 2008, 「魏晉南北朝時代 墓葬習俗의 變化와 墓誌銘의 流行」, 『東洋史學研究』 104, 46~48쪽

쇠퇴하였으며, 이러한 양상은 고구려의 평양 천도 이전 시기까지도 계속된다.

그렇다면 이제는 중국 고대 능원제가 고구려의 능원제 정비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지를 살펴보겠다. I·II기 왕릉이 분구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배대와 배층을 구비하였고, 묘역 포석이 행해지거나 수묘 건축이 조성된 점에서 공통됨은 이미 서술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정 정도의 능원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인데, 그 가운데 조위 이전 중국 고대 능원제와 유사한 면모를 보이는 점이 있어 주목된다.

배층이나 배대는 국내도읍기 고구려 왕릉 대부분에서 발견된다.¹⁰⁷⁾ 배층군을 조성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배대를 조영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준다.¹⁰⁸⁾ 배층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능원의 일부로 나타나는 현상은 고대 중국에서 엿보인다. 수묘 건축도 마찬가지다. 명림답부에 대한 수묘 조치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2세기 말 이미 왕릉의 수묘가 일정 정도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¹⁰⁹⁾ 전한 제릉의 陵邑이나 특정 매장묘의 園邑 및 부호층의 冢

107) 유일하게 배층이나 배대를 갖추지 않은 마선구 2100호분의 경우 분구 東邊을 鄉路가 통과하고 南邊은 경작지이며 북측은 본디 麻線中學이 위치하고 있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앞의 책, 138쪽), 그러므로 애초 배대나 배층군이 있었으나 파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108) 배층이 한국고대사상 고구려만의 전유물은 아니다. 단, 이는 시기적으로 후대일 뿐 아니라, 고구려 왕릉의 경우처럼 장기간에 걸쳐 배층군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성격에 차이가 있다.

109) 물론 신라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묘에 관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삼국사기』 권 제3, 신라본기 제3, 소지마립간 7년 4월, “親祀始祖廟, 增置守廟二十家.”; 같은 책, 권 제6, 신라본기 제6, 문무왕 4년 2월,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 같은 책, 권 제43, 열전 제3, 金庾信下, “至秋七月一日, 薨於私第之正寢, 享年七十有九. 大王聞訃震慟, 贈賻彩帛一千匹租二千石, 以供喪事, 給軍樂鼓吹一百人, 出葬于金山原. 命有司立碑, 以紀功名, 又定入民戶, 以守墓焉.”). 단, 그것은 비교적 후대에 행해진 일들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 소지마립간 7년(485) 始祖廟의 守廟家 증치는 다른 신라 왕릉에 대해서도 모종의 수묘 조치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고구려와 신라의 문화적 교류가 빈번하였으므로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결과가 아닐까 한다. 더욱이 문무왕 4년(664)에 이르러야 개별 왕릉에 대한 수묘 체제가 확립되었다고 여겨지므로, 이미 2세기 말 신대왕대에 수묘제가 자리를 잡았던 것으로 여겨지는 고구려와는 상황이 다르다.

숨¹¹⁰⁾ 등을 보면, 해당 시기에는 무덤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국내도읍기 고구려 왕릉에서 나타나는 수묘 건축은 당시의 수묘 행위도 이처럼 정연하게 행해졌음을 말하는 흔적일 것이다. 중국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상당한 규격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상과 같이 I·II기 왕릉 및 부대시설에서 중국 고대 능원과의 유사점이 확인되는데, 이는 중국 고대 능원제의 영향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비록 5세기 이후의 끊임없는 교류에 비할 바는 못 되지만, I·II기에 해당되는 2~3세기에도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지속적으로 교섭하였다. 그 과정에서 중국 고대 능원의 면모가 알려진 결과, 고구려 권력은 자신들의 권세와 위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거대한 분묘의 축조와 아울러 부대시설 확충을 지향하였을 것이다. 이때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한대, 더 좁혀 말하자면 후한대의 능원(墓園)일 것이다.

물론 당시 고구려 측에서 중국 중심부의 경관을 살피기 어려웠을 것임을 들어 그 영향을 부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후한시대에 이르면 관인이나 부호들도 능원의 축소판이라 할 만한 墓園을 구축하고 있는 점이나 傳聞이나 서적을 통해서도 그 면모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중국 사회 곳곳에 부대시설을 갖춘 무덤들이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도 능원제를 지향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다. 단, 당시만 해도 집권체제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여 장대한 능원을 조성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고, 능원제에 대한 이해가 깊은 중국계 인물의 내투 현상이 드물었기에, 능원제 정비에는 한계가 있었다.¹¹¹⁾

이제 III기, 즉 4세기 이후의 왕릉들을 살펴보겠다. 이 시기에는 사면에 묘

110) 冢숨는 기능이 사당과 비슷하지만 한 단계 급이 낮고 수묘인의 거주지이기도 했다(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311쪽).

111) 산상왕 21년(217) 후한의 平州人 夏瑤가 1,000여 戶를 이끌고 내투한 것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가 지역 유력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중원 왕조에서 일정 정도의 지위를 가진 인물은 아니었다. 더욱이 내투 이후에도 柵城에 안치한 것 외에 별다른 기록이 남지 않은 것을 보면 그다지 중용되지도 않았던 것 같다. 고구려 중앙권력이 하요란 인물의 활용도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역 포석이 넓게 이루어진 것이나 배대·배층의 분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진 것 외에도 능장이나 묘상건축이 등장하였다. 그런데 능장 설치를 통한 능원 획정은 중국 고대 능원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요소다.¹¹²⁾ 다음으로 분구 頂部에 위치한 묘상건축(寢)의 경우에도 殷代 및 전국시대의 王墓에 寢이 묘상건축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중국 고대 능원제의 영향이라고 여겨진다.

능장을 통해 능원 안팎을 구분하고, 무덤 가까이에 침이 존재하는 것은 중국 고대 능원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따라서 Ⅲ기에 이르면 중국 고대 능원제의 핵심적 요소가 구현되고 있다 하겠다. 그런데 어떤 외래 문물이든 해당 요소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측에서 그 핵심적 부분을 수용하고 재현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¹¹³⁾ 예컨대 고구려 중앙은 3세기 후반~4세기 초 중국과의 접촉을 통해 황혈식 葬法을 채용하였으나, 당시까지만 해도 천장이나 벽면을 갖춘 완전한 석실을 조성하지는 못하였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은 황혈식묘를 사용하던 중국계 인물들의 유입이 이루어진 4세기 중엽에 가서였다.¹¹⁴⁾ 황혈식 석실 구조를 제대로 체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집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능원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永嘉의 난(307~312)으로 촉발된 중원의 혼란 탓에 4세기 초 이래 한 세기

112) 이에 대해 후한 제릉의 다수는 능장을 두지 않고 行馬를 마련하여 능원 안팎을 구분했다는 점을 들어, 능장 설치를 중국 고대 능원제의 영향으로 보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후한에서도 제릉이 아닌 王公이나 지배층의 무덤의 경우에는 墓園에 담장을 설치하여 그 안팎을 구분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행마를 통해 능원을 표시하는 일 또한 능원 경계 지대에 구조물을 설치하여 그 안팎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 성격은 능장과 통하는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후한시대에도 능원 경계 지점에 구조물을 세우는 관행 자체는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 문제 제기는 적절치 않다.

113) 서대총이나 천추총을 보면 능장의 한 변 길이는 130~150m를 넘어서고, 태왕릉은 260m를 넘는다. 능장은 네 둘레에 둘러졌으니 총 길이는 500m를 넘어 1km를 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장대한 능장을 조성한다는 것은 묘역에 포석을 한다거나 중소형 규모의 배층을 조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묘상 건축도 그 성격이 능침이기 때문에 궁궐 건축 등과는 또 다른 축조 기술과 규격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114) 강현숙, 2011, 앞의 글, 36쪽

동안 많은 중국계 이주민이 고구려로 내투한다. 그들 중 상당수는 한족 출신 관료들이었는데,¹¹⁵⁾ 冬壽나 鎮 및 高撫·高顧 가문과 王濫의 조상들,¹¹⁶⁾ 그리고 우산하 3319호분의 묘주 中郎의 사례에서 보이듯 고구려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본지에서의 지위도 일천하지 않았던 엘리트 계층으로 중국 문물에 대한 이해도 밝았을 것이며, 고구려가 보다 정비된 능원을 구현하려 할 때 큰 역할을 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그런데 정작 4세기 당시 중국에서는 이렇다 할 능원은 고사하고 능이라 칭할 존재마저도 부재하였다. 그럼에도 Ⅲ기 능원의 양상은 이전보다 한 단계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물론 보다 정연한 능원을 구비하려던 고구려 입장에서 당시 중국의 모습은 동떨어진 지게 다가왔기 때문에, 중국계 이주민들에게 능원제의 확충을 요구했을 것이다. 다만 간과하면 안 될 점은 그들이 고구려 권력의 의도에 부합하려 해도, 능원이나 묘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 실현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 중국계 인물들은 고대 중국 능원제나 묘원의 면모, 즉 자신들이 살아 가던 때보다 앞선 시기의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이때 고구려로 내투한 중국계 인물들은 중국이 안정되고 통일되었던 시기에 대한 향수가 있었다. 우산하 3319호분은 중국산 물품을 부장한 채 전한 말 이래 중국에서 유행하였던 塼室¹¹⁷⁾을 내부 구조로 하였다. 또 冬壽는 중국 왕조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의 지명을 출신지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그 시기를 대상으로 幽州刺史를 자칭한 鎮도 마찬가지다.¹¹⁸⁾ 동수와 같은 漢人系 士人들이 중국 왕조에 대한 모용외의 勤王 정책을 보고 前燕 정권에

115) 孔錫龜, 2003,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문헌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2, 133쪽 표1 및 142쪽

116) 孔錫龜, 2003, 앞의 글, 155~156쪽; 孔錫龜, 2004, 「高句麗에 流入된 中國系 人物의 動向-4~5世紀의 考古學 資料를 中心으로」, 『高句麗研究』 18, 491쪽

117) 黃曉芬 著, 金용성 譯, 2006, 앞의 책, 263쪽

118) 余昊奎,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韓國古代史研究』 53, 176~177쪽 및 187~188쪽

참여한 것¹¹⁹⁾이나, 鎭이 漢·晉 정치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 前秦에서 활동한 것¹²⁰⁾ 등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4세기 이래 고구려에 내투하여 중용되었던 중국계 인물들은 중국 왕조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 즉 漢代를 이상적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400여 년에 걸쳐 중원을 통치하였고,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한 그 시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들의 한대에 대한 동경에는 분열되기 이전 중국 왕조의 문물에 관한 관심과 이해 또한 함께 하였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사실 후한 말까지만 해도 중국 각지에는 사당 건축과 담장 시설 등을 갖춘 墓園이 건설되었다. 조위 이후에도 이들 상당수는 그 흔적을 남겼을 것이므로, 일정 정도의 소양을 갖춘 중국계 인물들이 각지에 존재하는 과거의 화려했던 매장 문화를 아는 것은 당연하다. 박장이 성행하던 본토의 풍토와는 달리, 중국계 인물들이 고구려에서 조영한 무덤이 화려한 양상을 띠는 것은 그들의 한대 매장 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를 말해 준다. 후장과 능원(묘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중국계 인물들이 중용됨에 따라, 고구려에서도 중국 고대 능원제의 핵심 시설이라 할 만한 능장과 묘상건축(침)이 출현하였다.¹²¹⁾ 고구려 측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왕릉의 부대시설을 구비하여 왔던 데다가, 분구묘를 축조하지 않던 호족 왕조의 습속을 낫설게 느꼈기에 새로운 시설을 더하는 데에 별다른 거부감이 없었으리라 여겨진다.

실제 고구려 권력은 중국 문물, 특히 한대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 거부감이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내성이다. 3세기 이후에 사용되었다고 여겨지는 국내성의 경우 중앙부에 왕궁(宮城)이 조성되었다.¹²²⁾ 그런데 3세기 이후

119)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35~43쪽(余昊奎, 2009, 위의 글, 177쪽에서 재인용)

120) 余昊奎, 2009, 위의 글, 191쪽

121) 후한 세력가들의 묘원에는 담장이 둘러졌는데, 이것이 고구려 왕릉의 능장을 조성할 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122) 김희선, 2010, 「高句麗 國內城 研究」, 『白山學報』 87, 143~144쪽; 박순발, 2010, 「東아시아 古代 都城 比較를 위한 몇 가지 觀點」, 『국립 경주·부여·가야 문화재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韓國의 都城』, 국립경주문

중국의 도성 구조는 궁성이 도성 북부에 위치하는 ‘坐北朝南’ 형태로, 국내성의 왕궁 배치는 한대 도성의 공간 구조와 상응한다.¹²³⁾ 고구려 권력이 최신 경향을 받아들이지 않고 前代의 한대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율령에서도 보인다. ‘광개토왕비문’에서 나타나듯 ‘敎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구려 율령의 수찬 과정은 진한대와 유사하다. 율령 반포(373) 이후 고구려 율령의 법전 체계가 泰始律令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중국 율령이 아니라, 그보다 이전 시기의 모습을 지녔던 것이다.¹²⁴⁾ 이상의 예를 보면 고구려 중앙권력이 지향하였던 중국의 문물과 제도는 한대를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구려의 능원제가 조위 이후의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후장과 장대한 능원이 조성된 그 이전의 행태를 지향하였던 것과도 통한다. 고구려 측이 분열과 혼란을 맞이한 당대 중국의 문물보다는, 통일제국으로서 변형하던 시절의 문물을 보다 선호하였던 것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다.¹²⁵⁾

다만 이렇게 생각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진한시대 능원제는 무덤이 죽은 이의 거처라는 관념 아래서 이루어진 후장의 일환이었다. 그렇다면 당시 고구려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중국과의 교류를 통한 문화 접촉 증가와 중국계

화재연구소, 211쪽

123) 여호규, 2011b,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제122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한국고대사학회, 68쪽

124) 洪承祐,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47~50쪽

125) 국내도읍기 고구려 능원제의 모델을 전국시대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I·II기와 연접한 시기가 한대이므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한대의 능원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전국시대의 능원은 현대에 이르러 발굴 조사 결과 밝혀진 사례들이기에 당시 고구려는 물론이요, 중국계 인사들도 그 전모를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단, 그럴 경우 고구려의 침이 한대처럼 평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왜 묘상건축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 침은 죽은 이의 영혼이 거처하는 곳이므로 그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했으며, 그에 따라 무덤 인근에 세워졌다(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45쪽). 고구려 적석총의 매장부는 분정 가까이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죽은 이의 영혼이 쉽게 이동하고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구 정상부에 침을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게 아닌가 한다.

인물들의 유입 결과 낯선 외래의 산물을 수용했던 것일까, 아니면 고구려 사회 안에서 이미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일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거론해 보겠다.

2_ 계세사상과 무덤 중시 관념

중국의 경우 능원이나 묘원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진 시기는 후장이 성행한 때이기도 하다. 화려한 부장품을 넣고 죽은 이를 위한 성대한 장례를 행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능원이나 묘원이 나타난 것이다. 박장이 성행한 조위 이후 능원제가 쇠락한 것은 양자의 관련성이 깊음을 잘 말해 준다. 고구려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략 3세기 후반의 사정을 전하는 『삼국지』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금은과 재물을 힘껏 써서 장례를 후하게 치렀다. 또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松柏을 줄지어 심는다고도 하는데,¹²⁶⁾ 이를 통해 후장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財力을 동원하여 장례를 치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봉분을 쌓고 송백을 심는 것 또한 후장의 상징적 행위다. 실제 중국에서 ‘不樹不封’은 박장의 대명사였다. 물론 발굴 상황을 근거로 실제로는 박장이었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적석총이 도굴 등의 위협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 그리고 현재 온전히 보존된 적석총이 전무에 가깝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파괴 정도가 심한 무기단적석총에서도 상당수 청동 제품이 출토되었고, 이른 시기의 석광적석총에서 생산용구나 토기·장식품이 나왔으며, 4세기 이후의 계단광실적석총 단계부터는 병기나 장식성 명기·철제품이 출토되는 사례가 많아 박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¹²⁷⁾ 또 후장이란 부장품의 많고 적음뿐 아니라 상장례의 길고 성대한 과정, 대규모 잔치, 장대한 무덤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¹²⁸⁾ 막대한 재력

126) 『삼국지』 권30, 위서30, 동이전 제30, “其俗淫, 男女已嫁取,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127) 정호섭, 2011, 앞의 책, 272쪽

128)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144쪽

을 써서 장례를 치르고 위압적인 적석총을 만든 뒤 그 주변에 松柏을 심는 풍속은 고구려 사회에서 애초부터 후장이 성행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후장이 이루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그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이 바로 계세사상이다. 계세사상은 사람이 죽으면 지하에서 현세의 功罪 여하와 무관하게 현세와 마찬가지로 물질적 생활을 계속한다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생활 용품을 비롯하여 장식품이나 사치품·화폐 등을 가득 부장하였다.¹²⁹⁾ 요컨대 계세사상은 후장의 토대가 된 것이다.

후장이 성행하였던 중국 한대에도 그 바탕에는 계세사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계세사상 속에서 죽은 이의 주된 거처를 무덤으로 여겼던 漢代人들은 혼령이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무덤을 현실에서의 주택처럼 축조하고 많은 물품들을 부장하였다.¹³⁰⁾ 이는 황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惠帝 安陵묘에 5천 호의 ‘倡優樂人’을 이주시킨 것은 제릉 안에 머무는 혜제 혼령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였다.¹³¹⁾ 제릉이 先帝의 거처라는 믿음 아래 陵廟와 陵寢이 건설되었으며, 황제들은 조세의 3분의 1을 수릉 축조 비용으로 쓸 만큼 막대한 후장을 행하였다. 이러한 후장 풍습은 후한시기에 더욱 발전하였다.¹³²⁾

국내도읍기 고구려에서 계세사상이 존재하였음을 보다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는 동천왕 8년(234) 태후 于氏의 죽음을 앞두고 벌어진 일에 대한 기록이다.¹³³⁾ 이를 통해 태후는 물론 고국천왕의 혼령마저 현세에 부부였기 때문에,

129) 邊太燮, 1958, 「韓國古代的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上)」, 『歷史教育』 3, 58~59쪽 및 63~64쪽

130) 具聖姬, 2001, 「漢代 喪葬禮俗에 표현된 靈魂觀과 鬼神觀」, 『東國史學』 35·36, 76~77쪽; 盧仁淑, 2001, 「中國에서의 喪禮文化的 展開」, 『儒敎思想研究』 15, 78~80쪽; 具聖姬, 2004, 「漢代的 靈魂不滅觀」, 『中國史研究』 28, 37~38쪽 및 53~54쪽

131)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67~68쪽

132) 구성희, 2004, 앞의 글, 50~53쪽

133) 『삼국사기』 권 제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 8년 9월, “太后于氏薨, 太后臨終遺言曰, 妾失行, 將何面目見國壤於地下, 若臣不忍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 遂葬之如其言. 巫者曰, 國壤降於予曰, 昨見于氏歸於山上, 不勝憤, 遂與之戰, 退而思之, 顏厚不忍見國人, 爾告於朝, 遮我以物. 是用植松七重於陵前.”

내세에도 그러한 삶이 이어지는 것이 순리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장자의 현세에서의 생활이 사후에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염원 아래서 생활풍속계 고분 벽화가 등장한 점¹³⁴⁾을 감안하면, 계세사상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한대의 사례에서 보이듯, 계세사상에서는 죽은 이의 거처를 무덤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무덤이 중시되었다. 계세사상과 후장 및 무덤 중시 풍조가 상호 연관되며, 그 기저에는 무덤이 죽은 이의 거처라는 인식이 자리했던 것이다. 무덤을 죽은 이의 생활공간으로 여기는 생각은 고대 한국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동옥저의 大木柳葬에서 쌀을 담아 괘의 문 옆에 매달았던 것은 大木柳 안에 거주하는 죽은 이를 위해 양식을 마련해둔 것이며, 금관총·금령총·천마총 등에 솔이 부장된 것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¹³⁵⁾ 또 金后稷의 혼령이 죽은 뒤에도 진평왕에게 忠諫을 한 것¹³⁶⁾이나 김유신의 혼령이 무덤 속에서 슬퍼한 것,¹³⁷⁾ 미추왕릉 속에서 미추왕과 김유신의 혼령이 대화를 나눈 것¹³⁸⁾ 등은 신라 사회에서 무덤이 죽은 이의 거처로 여겨졌음을 여

134)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124쪽 및 350쪽. 현재 벽화가 그려진 적석총들의 경우에도 그 주제는 인물 및 생활풍속도 계열로 추정된다(정호섭, 2011, 앞의 책, 279~280쪽).

135) 金基雄, 1991, 「古墳에서 엿볼 수 있는 新羅의 葬送儀禮」, 『新羅文化祭學術發表論文集』 5, 272~273쪽

136) 『삼국사기』 권 제45, 열전 제5, 金后稷, “他日, 王出行, 半路有遠聲, 若曰莫去, 王顧問, 聲何從來, 從者告云, 彼后稷伊之墓也, 遂陳后稷臨死之言. 大王然流涕曰, 夫子忠諫, 死而不忘, 其愛我也深矣, 若終不改, 其何顏於幽明之間耶, 遂終身不復獵.”

137) 『삼국사기』 권 제43, 열전 제3, 金庾信下, “夏四月, 旋風起, 自庾信墓, 至始祖大王之陵, 塵霧暗冥, 不辨人物, 守陵人聞其中若有哭泣悲嘆之聲, 惠恭大王聞之恐懼, 遣大臣致祭謝過, 仍於鷲仙寺, 納田三十結, 以資冥福, 是寺, 庾信平麗濟二國, 所營立也.”

138) 『삼국유사』 권1, 기이 제1, 味鄒王竹葉軍, “越三十七世惠恭王代, 大曆十四年己未四月, 忽有旋風, 從庾信公塚起, 中有一人乘駿馬如將軍儀狀, 亦有衣甲器仗者四十許人, 隨從而來, 入於竹現陵, 俄而陵中似有振動哭泣聲, 或如告訴之音, 其言曰, 臣平生有輔時救難匡合之功, 今爲魂魄, 鎮護邦國, 攘災救患之心, 暫無渝改, 往者庚戌年, 臣之子孫無罪被誅, 君臣不念我之功烈, 臣欲遠移他所, 不復勞勤, 願王允之. 王答曰, 惟我與公不護此邦, 其如民庶何 公復努力如前, 三請

실히 보여주고 있다.¹³⁹⁾

국내도읍기 고구려의 경우에도 앞서 살펴본 고국천왕의 혼령 이야기나 서천왕릉 도굴 시도 때의 이적¹⁴⁰⁾을 보면, 무덤을 죽은 이의 거처로 여겼음은 확실하다. 특히 서천왕의 혼령은 ‘神’으로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그 편린은 고고학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으니, 바로 천추총이나 태왕릉에서 보이는 家形石槨이다. 천추총과 태왕릉 단계에 이르러 석실 구조를 갖추어 동시에 그 안에 家形의 석곽을 마련하고, 다시 그 내부에 관을 안치하였다. 이는 무덤을 묘주의 혼령이 거처하는 주택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가형석곽에 여단 이문까지 있었던 것은 혼령이 무덤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고 믿었음을 말한다.¹⁴¹⁾

이러한 생각은 육체혼(body-soul)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고대인들은 영혼을 육체혼과 자유혼(free-soul)으로 나누어 생각하였는데, 육체혼이 육체에 깃들어 육체와 운명을 같이한다면, 자유혼은 육체를 떠나 타계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였다.¹⁴²⁾ 육체혼 관념 아래서의 영혼은 일종의 물질이기 때문에 생활 용품이 필요하였고, 사후세계도 물질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덤을 중시하고 후장이 행해지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¹⁴³⁾ 물론 자유혼 관념 또한 존재

三不許，旋風乃還。”

139) 죽은 수장의 祖靈이 무덤에 머문다는 관념은 彌生時代 북부 구주의 왕이나 왕족의 무덤에서도 보이는 바이다(寺澤薰, 2003, 「首長靈觀念の創出と前方後圓墳祭祀の本質－日本の王權の原像」, 『古代王權の誕生』 1, 角川書店, 68~69쪽 주 96).

140) 『삼국사기』 권 제17 고구려본기 제5 봉상왕 5년 8월, “慕容廆來侵，至故國原，見西川王墓，使人發之，役者有暴死者，亦聞壙內有樂聲，恐有神乃引退。”

141) 전국시대 중기 이래 楚墓에서는 곽 안에 네모난 구멍을 뚫어 각 공간을 통하게 한 것도 죽은 이의 영혼이 곽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기 위한 통로를 마련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강화되어 장식문이나 장식창을 그리는 단계를 거쳐, 전국시대 만기에는 자유롭게 여단기가 가능한 模造門扉까지 등장한다. 무덤이 죽은 이의 혼령이 거처하는 곳이며, 그 혼령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의 산물이다(黃曉芬 著, 김용성 譯, 2006, 앞의 책, 126~132쪽).

142) 나희라, 2008, 앞의 책, 24~25쪽

143) 나희라, 2008, 위의 책, 49~57쪽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육체혼이 먼저 우위를 점했으므로, 고구려 또한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자발적인 순장이 3세기 중엽까지도 존재하였고,¹⁴⁴⁾ 후장 습속이 있었던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육체혼 관념의 중시나 계세사상의 영향 아래 무덤을 죽은 이의 거처로 여겼기 때문에, 무덤에 대한 존재감 또한 당연히 커졌다. 사료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무덤에 얽힌 국내 전승이 비교적 자세히 전해지는 것이나, 국내도읍기 대부분의 왕들이 葬地名 諡號를 칭함과 아울러 장지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남기고 있는 것은 고구려에서 무덤이 중시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사례들이다. 천추총 출토 “千秋萬歲永固”·“保固乾坤相畢”銘磚 및 태왕릉 출토 “願太王陵安如山固如岳”銘磚도 그러하다. 오랫동안 왕릉이 보존되기를 희망했던 것은 선왕의 혼령이 무덤에 머문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덤이 중시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행위 또한 성대하게 거행되었다. 功臣 怪由의 무덤에서 사시에 제사가 행해졌다는 전승¹⁴⁵⁾을 보면 왕릉에 대한 제사 행위도 당연히 존재했을 것이다. 임강총(동천왕릉) 부근에서 출토된 人形車轄은 제사와 관련된 물품이므로¹⁴⁶⁾ 고구려에서 묘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墓祭의 면모를 더욱 잘 보여주는 사례는 始祖廟 제사다. 고구려에서 무덤은 곧 죽은 이의 사후 생활공간임과 동시에 그를 제사하는 廟이기도 했다. 따라서 始祖廟는 시조의 葬地라고 전해지는 곳에 조성된 虛墓를 가리킨다. 국내도읍기 新王의 즉위 후 행해지는 시조묘 제사는 즉위의례의 일환으로 대단한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¹⁴⁷⁾ 그런데 당시 고구려에는 조상 제사의 장소로서 무덤 외에도 종묘가 있었다.¹⁴⁸⁾ 그러므로 종묘에서도

144) 『삼국사기』 권 제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 22년 9월, “王薨葬於柴原, 號曰東川王, 國人懷其恩德莫不哀傷, 近臣欲自殺以殉者衆, 嗣王以爲非禮禁之. 至葬日至墓自死者甚多, 國人伐柴以覆其屍, 遂名其地曰柴原.”

145) 『삼국사기』 권 제14, 고구려본기 제2, 대무신왕 5년 10월, “怪由卒 …… 王善其言, 又以有大功勞, 葬於北溟山陽, 命有司以時祀之.”

146) 최중택, 2006, 앞의 글, 145쪽

147) 강진원, 2007, 앞의 글, 51쪽 및 58~59쪽

148) 『삼국지』 권30, 위서30,동이전 제30,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代人,

모종의 제사가 행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존하는 문헌상으로는 그 흔적의 편린마저 찾기 힘들다. 이는 시조묘에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사가 행해진 것이나 왕릉에서 이적이 일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고구려 권력이 조상 제사의 증추를 왕릉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¹⁴⁹⁾ 왕릉이 조상을 제사하는 장소 가운데 대표적인 聖所로 인식된 것이다.¹⁵⁰⁾

요컨대 국내도읍기 고구려에서는 무덤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무덤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즉 墓祭의 위상도 높았다. 이는 후한의 사례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墓祭는 은주시대부터 행해졌으나¹⁵¹⁾ 후한에서는 前代의 흐름을 강화시켜 墓祭(陵祭)의 비중이 다른 곳에서의 제사를 압도했다. 上陵禮와 酎祭禮가 대표적이다. 그 결과 종묘의 지위는 하락하고 능침의 그것은 부상하였다. 이처럼 墓祭가 번성하게 된 것은 제릉을 선제 혼령의 거처로 여겼기 때문이다.¹⁵²⁾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고구려에서는 죽은 이의 거처인 무덤을 중시하였고 그와 연관된 제사의 위상도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권력은 선왕의 무덤을 크게 조성함과 아울러 정연한 능원제를 갖추는 일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다. 애초 고구려에서는 능원제를 받아들일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진한시기 능원제 수용이 외래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제릉이 先帝의 사후 거처라는 관념 아래 능원 자체가 또 하나의 궁전으

得稱古雛加，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삼국사기』 권 제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 21년 2월, “王以丸都城經亂，不可復都，築平壤城，移民及廟社.” 중국에서는殷代부터 무덤과 종묘가 조상 숭배의 두 중심지로 구별되었다고 한다(Wu Hong 著, 김병준 譯, 2001, 『순간과 영원-중국 고대의 미술과 건축』, 아카넷, 276쪽).

149) 강진원, 2007, 앞의 글, 61쪽

150) 단, 이는 어디까지나 종묘 개편(修宗廟) 이전의 상황임을 알려둔다. 종묘 개편 이후에는 조상 제사의 증추가 종묘로 옮겨졌다(강진원, 2007, 위의 글, 66~67쪽). 개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쓸 예정이다.

151)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270~272쪽; 岡村秀典, 2003, 「王墓の成立とその祭祀」, 『古代王權の誕生』 1, 角川書店, 224쪽

152) 來村多加史, 2001, 앞의 책, 440~441쪽;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앞의 책, 71~77쪽

로 인식되었던 결과 廟나 寢, 陪葬墓群 등이 형성된 것¹⁵³⁾처럼, 국내도읍기 고구려의 능원 역시 先王의 또 다른 居所로 자리매김하였던 것이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국내도읍기의 왕릉을 살펴보면, 이들은 분구가 거대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왕릉과 부대시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I기(마선구 2378호분·마선구 626호분·칠성산 871호분), 즉 3세기 전반까지는 高大한 분구가 조성됨과 함께 묘역 일부에 포석이 행해지고 陪塚이나 陪臺 및 守墓 건축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은 II기(임강총·우산하 2110호분·칠성산 211호분), 즉 3세기 중엽~말까지 이어진다. III기(서대총·우산하 992호분·마선구 2100호분·천추총·태왕릉·장군총), 즉 4세기 이후에는 I·II기의 양상이 지속됨과 아울러 묘역이 확대되고 陵牆과 묘상건축(寢)도 등장한다. 陵園制가 완비된 것이다.

이처럼 부대시설이 확충되면서 정연한 능원을 갖추어간 데에는 집권력 강화라는 측면 외에도 다른 배경이 있었다. 그 면에서 주목되는 것이 중국 고대 능원제의 영향이다. 당시 고구려는 중국 세력과 지속적인 교섭을 행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 고대 능원제를 알게 된 고구려 측은 자신들의 권세와 위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부대시설을 구비했던 것이다. 단,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 고대 능원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만한 능장과 寢의 건축은 이루

153)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앞의 책, 300쪽; 신용민, 2008, 앞의 글, 12~13쪽

어지지 못한다. 능원제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던 고구려 측에서 그 핵심 요소를 재현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능장과 침이 나타나면서 능원제가 완비된 것은 4세기 이후 중국 고대 능원제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중국계 인물들이 고구려로 내투한 이후였다. 당시 중국에서는 이미 능원제가 쇠퇴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안정되고 통일되었던 漢代를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들은 前代의 능원(墓園)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고, 고구려 측에서는 이들을 적극 활용하여 능원제를 완비하기에 이른다. Ⅲ기 왕릉 인근에서 나타나는 면모가 그것이다.¹⁵⁴⁾

그런데 이는 중국 문물의 무분별한 도입만은 아니었다. 종래 고구려 사회에서는 계세사상의 영향 아래 후장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죽은 이의 거처인 무덤을 중시하는 풍조도 강했다. 고구려 권력이 선왕의 무덤을 크게 조성함과 아울러 능원제를 갖추는 일에 그다지 거부감이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애초 고구려에서는 거대한 분구묘를 중심으로 한 정비된 능원제를 구현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즉, 능원제를 지향할 내적인 토대가 마련된 상황 속에서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섭 결과 그들의 고대 능원제와 유사한, 그러나 적석 분구나 묘상건축 등에서 보이듯 고구려만의 독자성을 가진 고구려적인 능원제가 나타났다고 하겠다.

154) 이와 관련하여 최근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中國文物報》2013년 1월 4일자 제 2판 및 《新文化報》2013년 1월 15일자에 따르면, 麻線河 舊橋 아래 100m 지점 河床에서 고구려의 수묘 관련 조차 등을 담은 비석이 발견된 것이다. 이 비석(이하 '麻線(溝)高句麗碑'로 칭함)은 광개토왕대를 전후한 시기의 산물로 여겨진다. 필자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마선구고구려비' 碑首의 형태가 한대 이래 묘비 등에서 널리 유행한 圭形이라는 점이다(羅宗真, 2001, 앞의 책, 108쪽).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국내도읍기의 고구려 능원제가 한대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연동하여 생각해볼 만한 일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렇게 볼 경우 '광개토왕비'는 한대 비석과 형태가 다르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겠는데, 그것은 당시 고구려의 기술 수준으로는 초고대 석조물에 여러 가공 행위를 더하기 힘들었기에 자연석을 원용하는 방향을 택했을 가능성, 혹은 '광개토왕비'와 '마선구고구려비'의 기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 또는 양자의 조성 시기 사이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 등을 유추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상세히 논하기로 하겠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보다 큰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능원제의 검토 범위를 평양도읍기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 나아가 墓祭에 대한 접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삼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三國志』

2. 단행본

나희라, 2003, 『신라의 국가제사』, 지식산업사

나희라, 2008, 『고대 한국인의 생사관』, 지식산업사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尹張燮, 1999, 『中國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전호태, 2000,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정호섭, 2011, 『고구려 고분의 조영과 제의』, 서경문화사

楊寬 著, 장인성·임대희 譯, 2005, 『중국 역대 陵寢 제도』, 서경

Wu Hong 著, 김병준 譯, 2001, 『순간과 영원-중국 고대의 미술과 건축』, 아카넷

劉敦禎 著, 鄭沃根·韓東洙·梁鎬永 共譯, 1995, 『中國古代建築史』, 世進社

黃曉芬 著, 김용성 譯, 2006,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耿鐵華, 2004, 『高句麗考古研究』, 吉林文史出版社

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集安市博物館 編, 2004, 『集安高句麗王陵-1990~2003年
集安高句麗王陵調查報告』, 文物出版社

羅宗真, 2001, 『魏晉南北朝考古』, 文物出版社

來村多加史, 2001, 『唐代皇帝陵の研究』, 學生社

諸橋轍次, 1968, 『大漢和辭典』 3, 大修館書店

池田末利, 1981, 『中國古代宗敎史研究-制度と思想』, 東海大學出版會

劉慶柱·李毓芳 著, 來村多加史 譯, 1991, 『前漢皇帝陵の研究』, 學生社

3. 논문

姜辰垣, 2007, 「高句麗 始祖廟 祭祀 研究-親祀制의 成立과 變遷을 중심으로」, 서울
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姜賢淑, 2002a, 「高句麗 古墳 研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姜賢淑, 2002b, 「高句麗 高塚古墳의 登場과 政治發展」, 『文化財研究 國際學術大會

- 發表論文 第11輯 - 동아시아 大形古墳의 出現과 社會變動, 國立文化財研究所
- 강현숙, 2006, 「중국 길림성 집안 지역 고구려 왕릉의 구조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研究』 41
- 강현숙, 2009, 「고구려 왕릉 복원 시고 - 천추총, 태왕릉, 장군총을 중심으로」,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강현숙, 2011, 「3-4세기 고구려 황혈식 무덤의 등장과 확산」, 『역사문화연구』 40
- 孔錫龜, 2003, 「4~5세기 고구려에 유입된 중국계 인물의 동향 -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32
- 孔錫龜, 2004, 「高句麗에 流入된 中國系 人物의 動向 - 4~5世紀의 考古學 資料를 中心으로」, 『高句麗研究』 18
- 공석구, 2008, 「集安地域 高句麗 王陵의 造營」, 『高句麗渤海研究』 31
- 공석구, 2011,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광개토왕의 왕릉관리」, 『高句麗渤海研究』 39
- 具聖姬, 2001, 「漢代 喪葬禮俗에 표현된 靈魂觀과 鬼神觀」, 『東國史學』 35 · 36
- 具聖姬, 2004, 「漢代의 靈魂不滅觀」, 『中國史研究』 28
- 奇庚良, 2010, 「高句麗 國內城 시기의 왕릉과 守墓制」,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김시덕, 2004, 「고구려 상례문화의 정체성」, 『역사민속학』 18
- 김용성, 2005, 「고구려 적석총의 분제와 묘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北方史論叢』 3
- 김희선, 2010, 「高句麗 國內城 研究」, 『白山學報』 87
- 나희라, 2004, 「고대 한국의 이데올로기와 그 변화」, 『韓國思想史學』 23
- 盧仁淑, 2001, 「中國에서의 喪禮文化의 展開」, 『儒教思想研究』 15
- 박순발, 2010, 「東아시아 古代 都城 比較를 위한 몇 가지 觀點」, 『국립 경주 · 부여 · 가야문화재연구소 개소 2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 韓國의 都城』, 국립경주 문화재연구소
- 朴漢濟, 2008, 「魏晉南北朝時代 墓葬習俗의 變化와 墓誌銘의 流行」, 『東洋史學研究』 104
- 邊太燮, 1958, 「韓國古代의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上)」, 『歷史教育』 3
- 신용민, 2008, 「中國 古代 帝陵과 三國時代 大形古墳 비교 검토」, 『石堂論叢』 40
- 余昊奎, 1997,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여호규, 2006, 「集安地域 고구려 超大型積石墓의 전개과정과 被葬者 문제」, 『韓國古代史研究』 41
- 余昊奎, 2009, 「4세기 高句麗의 樂浪 · 帶方 경영과 中國系 亡命人의 정체성 인식」,

- 『韓國古代史研究』 53,
- 여호규, 2010, 「高句麗 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 여호규, 2011a,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역사문화연구』 39
- 여호규, 2011b, 「고구려 國內城 지역의 건물유적과 都城의 공간구조」, 『제122회 한국고대사학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한국고대사학회
- 李道學, 2008, 「集安 地域 高句麗 王陵에 관한 新考察」, 『高句麗渤海研究』 30
- 李道學, 2009, 「高句麗 王陵 研究의 現段階와 問題點」, 『高句麗研究』 34
- 李亨求, 1982, 「高句麗의 享堂制度研究」, 『東方學志』 32
- 임기환, 2009, 「고구려의 장지명 왕호와 왕릉 비정」,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정호섭, 2008, 「고구려 적석총 단계의 祭儀 양상」, 『선사와 고대』 29
- 조법중, 2005, 「廣開土王陵 守墓人 構成과 陵園體系」, 『고구려의 사상과 문화』, 고구려역사재단
- 崔鍾澤, 2006, 「集安 ‘高句麗 王陵’ 出土遺物의 諸 問題」, 『韓國古代史研究』 41
- 洪承祐, 2011, 「韓國 古代 律令의 性格」, 서울대학교 博士學位論文
- 洪廷姮, 2003, 「魏晉南北朝時代 ‘凶門柏歷’에 대하여」, 『魏晉隋唐史研究』 10
- 岡村秀典, 2003, 「王墓의 成立とその祭祀」, 『古代王權의 誕生』 1, 角川書店
- 東潮, 2006, 「高句麗王陵と巨大積石塚－國內城時代の陵園制」, 『朝鮮學報』 119·200
- 東潮, 2009, 「高句麗王陵と陵園制－國內城～平壤城時代」, 『고구려 왕릉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 門田誠一, 2012, 「高句麗王陵의 築造思想にみる 儒敎と佛敎－追孝から追福へ」, 『佛敎大學歷史學部論集』 2
- 寺澤薰, 2003, 「首長靈觀念의 創出と前方後圓墳祭祀の本質－日本の王權の原像」, 『古代王權의 誕生』 1, 角川書店

4. 디지털자료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8~2011, 『중국 소재 고구려 유적·유물2-집안 통구분지편』, 진인진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Background of the Royal Tomb System in Koguryo

Kang Jinwon

Large mounds and additional facilities characterize the royal tombs built while Koguryo's capital was at Gungnae (國內). Before the fourth century, large, high mounds were built, and roads were paved with stones in some areas near the boundaries of the tombs. Also, additional tombs (陪塚), additional embankments (陪臺), and guard buildings were constructed. Further, after the fourth century, the boundaries of graves were enlarged while barriers were built around the tombs and buildings were constructed on the tombs. This indicates that the royal tomb system (陵園制) had been fully established.

The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was not the only cause of the expansion of additional facilities and the organization of royal tombs. Another cause was the influence of the Chinese system of royal tombs. Trade between Koguryo and China caused the people of Koguryo to encounter the Chinese system for royal tombs, and the ruling classes of Koguryo adopted this system in order to represent their power and authority. This tendency intensified when a number of Chinese intellectuals moved to Koguryo after the fourth century. However, Koguryo people did not uncritically accept Chinese culture. They had already attached importance to tombs, viewing them as residential areas for the dead. This prevented them from feeling a sense of difference

about the idea of enlarging the tombs of deceased kings and organizing the royal tombsystem.

Keywords

royal tombsystem (陵園制), additional facilities, additional tombs (陪塚), additional embankments (陪臺), guard buildings (守墓建築), grave boundaries (陵牆), buildings constructed on tombs (墓上建築), Chinese system of royal tombs, Chinese intellectual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清原 南城谷 高句麗 山城의 築造와 運用

정운용 | 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근래 한강 유역의 고구려 보루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고구려와 백제 관계 및 고구려의 한강 유역 장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 북부 지역인 임진강 유역을 비롯하여, 성남·용인·화성 등을 비롯한 경기도 중·남부 지역과,¹⁾ 충청권의 충주·대전·부여 등지에서 확인된²⁾ 고구려 계통의 유적·유물을 둘러싼 해석의 문제도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한 지역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한 해석은 해당 유적·유물의 편년 설정을 비롯하여, 그 역사적 의미의 부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혼

※ 투고일: 2012년 11월 14일, 심사일: 2013년 2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2일

1) 양시은, 2009. 10, 「최신 고고자료를 통해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경영」, 『정치적 공간으로서의 한강 II』, 서울경고고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집(이를 보완한 것은 양시은, 2010. 6,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권 1호, 중부고고학회 참조) 및 白種任, 2009. 11,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35, 高句麗渤海學會 참조.

2) 공석구, 2005. 8, 「대전·충남일대의 고구려유적」, 『白山學報』 72, 白山學會 참조.

선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³⁾ 이는 논자마다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해당 유적·유물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0년의 지표조사와⁴⁾ 2001년의 시굴조사⁵⁾ 결과 그 존재가 확인된 남성골 산성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남성골[南城谷]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남성골 고구려 산성은 2001년부터 1차 발굴조사가 실시되고, 2002년의 2차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 2004년에 발굴보고서가⁶⁾ 간행되었다. 이를 통하여 남성골 산성은 고구려에서 축조한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그 이후 2006년도에 추가적인 발굴조사와 함께 그에 대한 보고서가 2008년에 간행됨으로써⁷⁾ 그 구체성이 확인된 바 있다. 아울러 남성골 산성에 대한 이와 같은 조사 과정에서 2003~2004년 사이에는 청원군 부용면 지역에 위치한 10개 산성(〈도면 1〉)에 대한 지표조사가 수행되어⁸⁾ 이 지역 산성들의 축성 시기 및 경영 주체 등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⁹⁾

3) 최근 성남·용인·화성 등 한강 유역과 충청권의 고구려 유적·유물을 검토한 양시은의 경우는 고구려가 475~551년까지 한강 유역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으며, 5세기에는 몽촌토성을 중심으로 한강 유역 전체를, 또 6세기에는 아차산 보루를 중심으로 한강 이북 지역을 경영하였다고 파악한 바 있다. 양시은, 2010. 6,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권 1호, 중부고고학회, 55쪽. 한편 동일한 자료를 검토한 백종오의 경우는 고구려가 한강 이남 지역을 장악한 것은 반세기 남짓의 짧은 기간이었으며, 해당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편년하고 있다. 白種伍, 2009. 11, 앞의 글, 236·243쪽

4) 忠北大學校 博物館, 2000, 『芙蓉·清原 I.C.間 道路擴張 및 鋪裝工事區間 文化遺蹟 地表調査 報告書』

5) 충북대학교 박물관, 2001, 『청원 I.C.~부용간 도로화장 및 포장공사구간내 (남성골 산성·유물산포지)시굴조사 완료보고서』; 차용걸 외, 2002, 『靑原 南城谷(남성골)山城 試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6) 차용걸 외, 2004, 『靑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北大學校 博物館

7) 차용걸 외, 2008, 『靑原 I.C.~芙蓉間 道路工事區間內 靑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6年度 追加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8) 차용걸 외, 2005, 『靑原 芙蓉面地域 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靑原郡

9) 2009년도 이 글의 작성 과정에서 필자는 남성골 산성의 발굴조사 및 부용면 일원 산성에 대한 지표조사에 참여한 바 있는 중원문화재연구원 김정인 선생의 안내를 받아, 부용면 지역 관방 시설에 대한 두 차례의 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김정인 선생의 후회에 감사드린다.



〈도면 1〉 부용면 지역 및 주변 산성 분포도 (2005년도 보고서, 16쪽)

이러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근래의 관련 연구자들은 고구려의 백제 한성 공략 이후,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한강 유역의 현 서울 지역을 장악하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고구려가 한성을 장악한 이후, 그를 바탕으로 충청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왕에 알려진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을 기초하여 백제의 충청 지역 장악을 논할 경우, '5세기 후반을 전후로 한 시기'¹⁰⁾로 편년되는 남성골 고구려 산성은 4~5세기 후반의 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신봉동 백제 고분군과 중첩되는 편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성골 산성을 중심으로 하여 고구려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파악하는 것은 당시의 삼국 정세를 간과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5세기 중반 또는 후반의 상황을 전하고 있는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볼 경우, 고구려의 중원·충주 지역 진출은 보다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고구려의 충주 지역 진출은 남한강 상류 지역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¹¹⁾

따라서 이 글은 남성골 산성의 축조와 운용이 중원고구려비와의 상관성 아래 검토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진행하고자 한다.¹²⁾ 즉, 현재의 충주 지역인 중원을 안정적 군사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던 고구려가¹³⁾ 그를 바탕으로 고구려의 옛 지역이라고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경북 북부 내륙 및 충청권 일원에 영향력을 확장한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고구려의 중원고구려비 건립 의도에 대한 파악과 함께 충청권에 대한 고구려 세력의 진출 과정을 좀 더 분명히 밝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10) 차용걸 외, 2004, 앞의 보고서, 297쪽

11) 고구려의 충주 일원 진출을 남한강 상류로부터의 진출로 이해하는 견해는 鄭雲龍, 1989. 6,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高大史學會 참조.

12) 이와는 달리 고구려 세력의 확장을 한강 유역에서의 축차적 남하로 이해하고는 있으면서도 청주 인근 지역의 고구려 유적·유물을 검토한 김영관의 경우는 고구려의 청주 지역 진출이五谷에서 백제가 고구려에게 패한 529년 이후의 일로 파악하고 있다. 金榮官, 2006. 12,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先史와 古代』 25, 韓國古代學會

13) 鄭雲龍, 1989. 6, 앞의 글 참조.

청원 남성골 고구려 산성의 축조와 운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현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인 서울 한강 유역에 대한 삼국의 점유 상황도 구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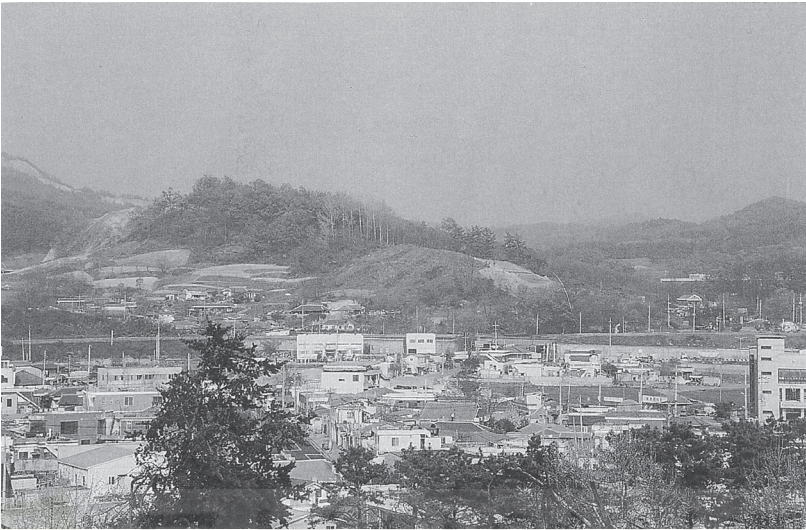
II. 南城谷 山城의 存在 現況

1_ 南城谷 山城의 立地

남성골 산성은 청원군 부강리 남성골 마을의 동북쪽 해발 105.1m 정상의 산 정상부에서 서쪽으로 뻗고, 서북쪽으로 낮아진 대지에서 남향으로 작은 곡간을 이룬 능선의 해발 85m 이상 높이의 대지를 감싸고 있는 산성 유적이다(〈사진 1〉). 부강리는 금강의 본류가 남쪽의芙蓉峰을 돌아가면서 북쪽으로 휘어든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 白川川을 건너 황우산성(〈사진 2〉)이 있는 황우산 너머로 금강 최대 지류인 美湖川이 금강에 합류하는 합강리가 있다. 금강 남쪽 건너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이 있다.

부강리는 북쪽의 은적산 남쪽에서 백천천이 흘러 작은 물줄기들을 합쳐 금강에 합류하는 곳인데, 중심부에는 테피라는 낮은 구릉이 있으며, 이곳에도 토성으로 추정되는 테피산성이 입지해 있다. 이곳이 현재 부강리의 중심부이며, 남성골 산성은 테피의 동쪽에 위치한다. 테피와 이곳 남성골을 중심으로 사방의 산 위에는 삼국시대 이래 여러 산성이 자리 잡고 있는데, 부강 장터는 이들 산성으로 둘러싸여 있다. 금강의 물줄기는 부강을 거슬러 상류에서는 여울이 있지만, 하류에는 여울이 없어 이 지역이 예로부터 水路와 陸路의 요충에 해당한다.¹⁴⁾

14) 이상의 서술 내용은 차용결 외, 2004, 앞의 보고서, 25쪽



〈사진 1〉 테묘산성에서 본 남성골 산성 (2004년 보고서, 369쪽)



〈사진 2〉 백천천 남단에서 바라다본 황우산성 (필자 촬영)

남성골 산성 주변은 금강 연변과 백천 유역의 작은 평야 외곽으로, 낮은 구릉지대가 북쪽과 서쪽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입지로 인하여 부강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밀한 성터의 분포를 이룬 곳에 해당하여, 부용면 관내에만 9개소의 성터가 알려져 있다. 이곳은 금강 南岸 대전광역시의 蘇文城과 관련한 전설이 집중 분포하는 곳이기도 하다.¹⁵⁾ 남성골 유적과 바로 인접한 북쪽에는 성재산성이 있고, 거기서 뺀 남향의 작은 능선과 봉우리에서는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유적이 있다. 이 유적에서는 백제 횡혈식 석실분 3기와 통일신라시대 석곽묘 1기 등이 확인된 바 있는데, 이 중 백제 석실분은 대체로 5세기대로 편년하고 있다.¹⁶⁾

2001~2002년의 발굴조사에서는 남성골 유적이 작은 규모의 土壘로 이루어진 산성 형식이란 점에서 城柵의 발생 초기 양상을 보여줄 수 있다거나, 외측의 낮은 구릉성 대지가 단절된 지형에 발달한 방어 취락과 관련된 유적일 가능성, 둥근 구덩이의 존재가 掘立柱 및 그와 유사한 구덩이들과 함께 존재하므로 木柵 등의 시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 등을 주목하였다. 그러나 발굴 결과 토루는 단순한 토루가 아니었다. 목책을 세운 柱列로 인해 내곽으로 보였던 것과 외곽으로 보였던 것이 이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木柱도 내외 2열이었다. 또 내곽으로 보았던 토루는 목책 위에 2차로 축조한 것이고, 북쪽 사면 등에는 石築으로 보강을 한 흔적도 확인되었다. 산성의 둘레는 270~360m 정도로 추정된다.¹⁷⁾

2001~2002년도 조사 유구는 A·B·C지구로 구분하였으며(〈도면 2〉), 도로공사 구간 내에 추가로 편입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2006년도 조사 유구는 D-I, D-II 지구로 구분하였다(〈도면 3〉). 이 경우 D-I 지구는 정상부 북서 사면의 임야 부분으로, 1차 발굴조사에서 내곽의 북쪽 및 북서쪽 외면을 따라 조성된 목책 구덩이 열이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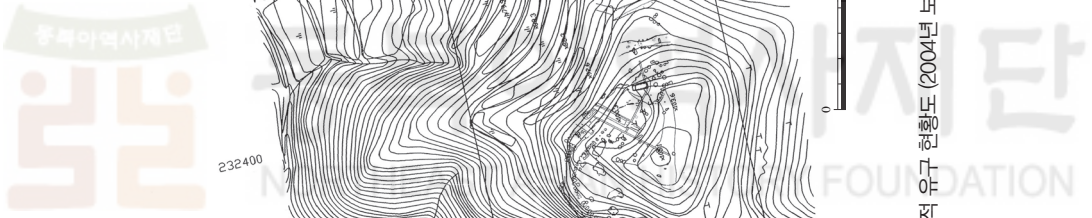
15) 이상의 서술 내용은 차용결 외, 2008, 앞의 보고서, 21쪽

16) 李弘鍾 外, 2002, 『芙江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韓國高速道路建設公園

17) 이상의 서술 내용은 차용결 외, 2004, 앞의 보고서, 23쪽 참조.



〈도 2〉 남성평면지구유구현황도 (2004년 보고서, 29쪽)



올러 D-II 지구는 사면의 아래 부분으로, 1차 발굴조사에서 B지구와 C지구로 나누어 조사를 한 부분의 남쪽에 해당한다.

2_南城谷山城遺構의特徵

1) A지구 유구의 특징

남성골 산성은 정상에서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면서 경사가 급해지는 外緣의 안쪽과 바깥쪽을 따라 목책 기둥 구덩이가 열을 이루고 있다. 이 목책 기둥 구덩이들은 내·외측 목책 木柱列이 지나는 위치, 내측과 외측의 간격, 내측과 외측 구덩이의 굴착 방법, 외측 목책 기둥과 기둥 사이의 보강벽 구축 방법, 내측 목책 기둥 구덩이에 밀착되어 만든 원형 구덩이의 연속성, 밖으로 돌출된 지형을 이용한 雉城의 설치 방식 등에서는 규칙성이 찾아진다. 반면에 기둥 구덩이 하나하나의 크기와 깊이 및 모양, 얇은 보조기둥 구덩이의 형태와 깊이, 기둥 구덩이 사이의 간격, 성벽 방향으로의 연결 방식 등에서는 통일성이 부족하다(〈도면 4〉, 〈사진 3〉).¹⁸⁾

한편 북쪽 回折部の 외측에 위치한 치성의 경우는 雉의 돌출 부분이 외측 목책열에서 300cm 정도 돌출되어 있는데, 폭은 400cm 정도다.¹⁹⁾ 정상부 북동쪽으로 낮아져서 삼태기 모양의 평탄부를 이룬 부분의 경우, 당초 추정 성벽 선에서 1.4m 깊이 아래로는 할석과 붉게 산화된 粘土·燒土·木炭을 혼합하여 성벽을 쌓은 흔적이 아래쪽 너비 1.6m, 높이 70cm의 범위로 노출되었으며, 이 부분의 바로 안쪽과 아래쪽에서 기둥흔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그 안쪽으로는 기반암 풍화토를 L자형으로 삭토하여 성벽 안쪽으로 壕를 형성한 U자형 토층 흔적도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마도 성벽 사용 당시의 배수로 혹은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동문지에서 정상부 북사면에 이르기까

18) 이상의 내용은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28쪽 참조.

19)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39쪽



〈도면 4〉 내관 유구 현황도 (2004년 보고서, 31쪽)



〈사진 3〉 남성골 산성 북쪽 내측 목책 구덩이 열 (2004년 보고서, 371쪽)

지 사면을 덮은 석축부가 길게 경사면을 따라 성벽 진행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당초 계곡부를 성토하여 성내를 평탄화한 다음 외측 경사면 성토 축성 부분의 유실을 특별히 방지하면서 성벽을 계곡의 좌우측과 거의 높이가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한 부분적인 고려를 곁들인 것으로 보인다.²⁰⁾

이러한 시설의 중복성과 동북 성문터와의 관계에서 보면, 성문터의 목책 기둥 구덩이로 형성된 성벽과 이곳 계곡부의 목주에 의한 성벽은 거의 같은 시기의 유구이고, 성문터의 석축 성벽과 계곡부의 성토 후 다짐한 성벽이 후대의 보완에 따라 축조된 2차 성벽으로 여겨진다. 이 경우 1차 성책의 목책 기둥 구덩이는 청동기시대 유구를 파괴하면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할석으로 피복된 부분의 표토 아래로는 고구려 토기편 등의 유물이 많이 발견되므로, 이 성벽의 보완을 고구려에서 한 뒤 얼마 안 되어 전반적인 파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이후 다른 시기의 유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

20) 차용걸 외, 2004, 위의 보고서, 42쪽

벽의 재사용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²¹⁾

그리고 내곽의 동쪽 문터에서 동쪽으로 낮아지며 東走하는 능선을 가로지르며 4개의 壕가 분포하고 있다. 조사자들은 이들 호를 대부분 防禦用 또는 排水用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중 '壕 1'로 명명된 유구가 주목된다. 즉 '壕 1'의 경우, 그 내부는 작은 할석과 주먹 크기 정도의 냇돌 조각이 가득 메워진 형태로 남아 있다. 이 호는 너비가 최대 3.6m이며, 호를 건너기 위한 교각용 나무 기둥 자국도 확인되었다. 이 호의 위치는 문터에서 바로 내려다보는 곳에 해당한다. 이곳에는 다른 3개의 호와는 달리 투석용 냇돌이 집중 분포하며, 쇠 화살촉이 포함되어 있다. 메워진 흙이 재와 숯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전투 행위가 있는 후 곧바로 폐기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²²⁾

이 이외에 성격을 알 수 없는 많은 수혈 구덩이와 함께, 내곽 정상부 北西 斜面과 西斜面에서 3기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또 내곽 정상부 북사면 아래의 평탄부에는 1호 주거지에서 동쪽으로 2.5m 떨어진 곳에서 토기 가마도 확인되었다.²³⁾

2) B지구 유구의 특징

내측 목책열은 B지구 서쪽 사면대지 外延 바로 안쪽을 따라 진행하고 있다. 목책 구덩이는 말각방형 혹은 말각장방형으로, 기반암 풍화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목책은 직경 20cm 정도의 기둥을 세웠으며, 목책 기둥 사이의 간격은 150cm 내외이다.²⁴⁾ 한편 외측 목책열은 내곽에서 서사면으로 내려와 B지구가 시작되는 부분인 내측 목책 구덩이 1·2호의 외측과 B지구 하단부의 내측 목책 구덩이 36·37호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목책 구덩이의 북동 모서리 외측부에 연결하여 보조기둥이 1~2개 확인되었다. 보조기둥의 형태는 말각방형

21)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45쪽

22)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50쪽

23)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87~95쪽 참조.

24)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108쪽

혹은 원형의 형태를 띠며, 크기는 직경이 45~70cm 정도이고, 깊이는 30~44cm이다. 발굴 당시 이 부분은 표토를 제거하자 전면에 숯과 소토가 깔려 있었으며, 붉게 산화된 강돌[石丸]이 무더기로 노출되었다. 주기둥의 외측 모서리에 보조기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망루 같은 시설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불에 전소되어 무너져서 바닥면에 소토와 숯이 깔리고, 산화된 강돌 무더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⁵⁾

한편 원통형 얇은 구덩이, 원통형 깊은 구덩이, 원뿔대형 구덩이, 가마솥형 구덩이, 바닥에 기둥홈이 있는 구덩이 등의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100여 개 수혈 구덩이의 용도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수혈 구덩이의 벽면이 붉게 산화되었으며 내부에 소토와 숯, 붉게 산화된 할석이 채워진 것과, 바닥면에 회색계의 점질토가 깔리고 토기편 등이 출토되는 것 등으로 구분된다. 이 수혈 구덩이의 토층 상태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서서히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일시에 매몰된 것으로 보여, 남성골 산성의 폐기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²⁶⁾

그리고 경사면을 따라 남서향 방향의 평탄면을 만들고 경사면 방향에 직교하여 구들이 있는 집터가 조성되어 있다. 좌측 구들은 거의 직선으로 3.6m의 길이, 우측 것은 위로 올라가면서 서측으로 휘어진 상태로 5.5m 정도가 남아 있다. 이 집자리에서 채취된 숯의 AMS 연대는 서쪽 구들에서 채취한 것이 1640 ± 40 , 동쪽 구들에서 채취한 것이 1530 ± 40 으로, 서기 연대로는 각각 280~350년과 390~470년에 해당한다.²⁷⁾

이러한 유구 이외에 굴뚝주 건물터를 비롯하여, 6기의 토기 가마도 확인되었다. 이 중 2호 토기 가마는 출토된 숯의 AMS 연대가 1580 ± 60 으로 서기 400~540년에 해당되며, 3호 토기 가마의 경우는 1690 ± 40 으로 서기 320~420년에 해당된다.²⁸⁾

25) 차용걸 외, 2004, 위의 보고서, 116쪽

26) 차용걸 외, 2004, 위의 보고서, 121쪽

27) 차용걸 외, 2004, 위의 보고서, 190쪽

28) 차용걸 외, 2004, 위의 보고서, 205·208쪽

3) C지구 유구의 특징

C지구에서는 C지구 외연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측 목책열이 확인되었다. 목책 구덩이는 주기등을 세운 목책 구덩이와 보조기등을 세운 목책 구덩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체로 지그재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주기등을 세운 목책 구덩이는 말각장방형의 형태로 깊게 굴착되어 있으며, 보조기등을 세운 목책 구덩이는 말각(장)방형 혹은 원형의 형태로, 주기등을 세운 목책 구덩이보다 규모가 작다. 주기등을 세운 목책 구덩이의 중심 간격은 180cm 정도다.²⁹⁾ 외측 목책열은 내측 목책열에서 외측 하단으로 2.6~3.1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경사면 상에 있는 것은 내곽(A지구) 북서쪽부 외측 목책 구덩이와 동일하게 도랑처럼 깊게 굴착한 다음 목책이 세워질 부분만 약간 깊게 굴착하여 목책을 세우고, 목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석축 담장을 쌓고 있다. 내측 목책열이 위치한 부분에서 외측 사면으로 낮아져 평탄부를 이룬 부분에 조성된 것은 단독의 목책 구덩이를 굴착하여 목책을 세우고 있다. 이 외측 목책열 상에서 외측 목책열과 직교하게 외측으로 돌출된 2개의 雉가 C구역 동쪽부와 서쪽부에서 확인되었다.³⁰⁾

이 경우 1~3호 목책 구덩이를 통해 살펴볼 때, 석축 담장의 외측으로는 회갈색 사질토 위로 황갈색과 적갈색 점토층이 10~14cm 내외의 두께로 깔려 있으며, 그 위로 소토+숫층이 14~18cm 두께로 형성되어 있다. 이로 보아 목책을 세운 후 목책을 지지하는 석축 담장을 쌓고 석축 담장의 하단부 높이 정도에 황갈색과 적갈색 점토를 깔아 당시의 床面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석축 담장의 윗부분인 목책의 노출된 부분의 일정 높이까지는 火攻에 대비하여 점토를 발랐던 것으로 추정된다.³¹⁾

이 C지구에서도 17개소의 수혈 구덩이와 함께, 7기의 추정 토기 가마가 확

29)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235쪽

30)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246쪽

31) 차용길 외, 2004, 위의 보고서, 247쪽

인되었다. 아울러 전체 발굴 지역의 지표에서 상당 수량의 토기류와 함께 철촉 편·철부편 등의 철제 유물과 솥돌 등이 수습되었다.

4) D-I 지구 유구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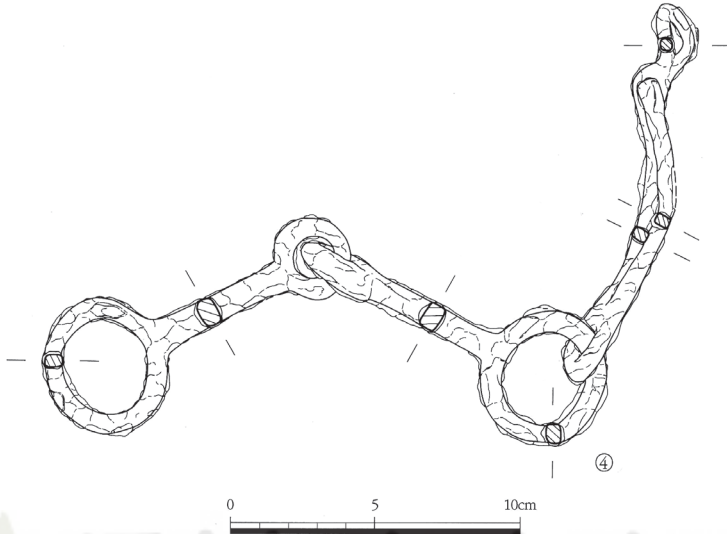
D-I 지구에서는 사면의 상단부와 중간부분에서만 온돌 유구 1기, 수혈 유구 2기, 수혈 구덩이 12기, 기둥구멍 3개가 조사되었다. 아울러 1차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정상부 북쪽 및 북서쪽 외연을 따라 진행되던 목책 구덩이 열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음으로써 정상부 내곽 전체를 목책으로 두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남성골 산성의 내·외 이중으로 된 목책은 내곽과 외곽이 각각의 목책으로 돌려져 내곽과 외곽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내곽과 외곽이 하나의 목책으로 돌려져 연결된 구조를 보이고 있다.³²⁾

한편 온돌 유구는 해발 86.50m 위치의 급경사면에서 확인되었다. 기반암을 ‘L’자형으로 넓게 굴착하여 약간의 평탄부를 만든 후, 평탄부의 끝부분에 할석을 이용하여 온돌을 조성하였다. 온돌 시설 설치를 위한 바닥면 굴착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길이 40~70cm, 두께 5~12cm 정도의 판석을 이용한 덮개석은 일부가 유실된 채 확인되었다. 온돌의 남서쪽 부분에서 온돌과 직교한 방향으로 아궁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³³⁾

이 D-I 지구 북서 사면의 표토 제거 과정에서 고구려 계통으로 보이는 鐵製鑣轡가 출토되기도 하였다(〈도면 5〉). 부식이 심한 상태로 발견된 이 표비는 二連式으로, 銜棒은 꼬지 않은 한 가닥의 철봉으로 되어 있다. 銜 내외의 環은 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내환에 비하여 외환의 직경이 상대적으로 크다. 외환과 내환은 철봉을 감지 않고 접합하였다. 引手는 한쪽만 잔존하고 있으며, 二條線으로 되어 있다. 고삐 이음쇠는 철봉을 감지 않고 시작 부분에서 접합하였다. 합의 길이는 11.5cm, 내환 직경 2.6cm, 외환 직경 4.5cm, 고

32) 차용걸 외, 2008, 앞의 보고서, 33~34쪽

33) 차용걸 외, 2008, 위의 보고서, 46쪽



〈도면 5〉 D-1 지구 지표 수습 철제 표비 (2008년 보고서, 210쪽)

삐이음쇠 길이 13,3cm 정도다.³⁴⁾

5) D-II 지구 유구의 특징

B·C지구 남쪽 부분에 해당하는 D-II 지구는 상단 경사면과 중간 경사면, 하단부의 평탄지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D-II 지구에서는 수혈 구덩이 39기, 온돌 유구 1기, 온돌 주거지 2기, 수혈 유구 23기, 木槨庫 1기, 溝狀 유구 5기, 柱穴群, 토광묘 2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D-II 지구의 하단 외연을 따라 내·외 목책 구덩이 열이 조사되었다. 아울러 내외 목책 구덩이 열은 D-II 지구의 하단부에서 확인되었으며, 1차 발굴조사 지역의 C지구 서쪽 雉 부분과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곳의 목책 구덩이는 1차 발굴조사에

34)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200쪽

서 확인된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³⁵⁾

한편 외측의 목책 구덩이 열은 동쪽 부분에서는 2열로 진행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서쪽 부분으로 갈수록 1열로 겹쳐진다. 안쪽의 기둥열을 기준으로 볼 때 외측 목책 구덩이 열은 내측 목책 구덩이 열과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당초 외측 목책 구덩이 열은 안쪽의 목책 구덩이 열이었다가 후에 바깥쪽으로 목책 구덩이를 파고 木柱를 세워 외측 목책을 改補修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측 목책 구덩이의 안쪽에 조성된 목책 구덩이와 바깥쪽에 조성된 목책 구덩이는 형태와 규모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목책 구덩이의 상단부에서는 석렬이 확인되는데, 이는 목주를 세우고 외측에서 보아 외측 성벽 벽면을 이루는 부분에 10~40cm 내외의 활석을 적갈색 점토를 섞어 석렬 담장을 쌓아 기둥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담장이 남아 있는 높이는 40~90cm 정도다.³⁶⁾

한편 해발 61.2m 지점에 위치한 온돌 유구는 동·서 방향의 경사면을 따라 조성되었는데, 경사가 급한 곳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주거의 목적으로 조성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³⁷⁾ 주거 목적의 온돌 주거지는 해발 60.3m에 위치한 1호 주거지와 58.5m 지점에 위치한 2호 주거지다. 경사면을 ‘L’자 모양으로 파내고 평탄면을 조성한 후 축조된 1호 주거지는 1차 발굴조사 때 발견되었던 주거지와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다. 온돌의 길이는 370cm이며 너비는 60cm이다. 온돌의 하단부에서 아궁이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부에서 온돌 상단부까지는 약 50cm 정도 높게 만들었다.³⁸⁾ 2호 주거지의 경우는 갈색 기반암 풍화토를 굴착하여 조성한 것인데, 기둥 구덩이들과 중복되어 있고 삭평이 심하여 유구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덮개석도 남은 것이 없다. 현 상태로 보아 온돌은 길이 160cm, 너비 70cm 정도가 잔존하여 있다. 아궁이부에서 잔존하는 온돌 상단부까지는 25cm 정도 높게 조성되어 있는데, 이는 배연을 위한 것으로 보

35) 이상의 서술은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57쪽

36) 이상의 서술은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63~64쪽

37)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100쪽

38)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102쪽



〈사진 4〉 남성골 산성 목곽 저장시설 (필자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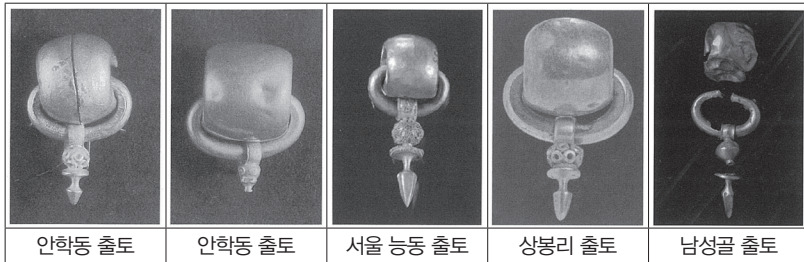
이다.³⁹⁾

이와 함께 D-II 지구에서 주목되는 유구는 저장을 위한 木槲庫이다(〈사진 4〉). 적갈색 기반암 풍화토를 굴착하여 조성한 목곽고는 유적 하단부 평탄지의 해발 57.60m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굴착한 기반암 풍화토 위로 20cm가량의 회갈색 사질 점토를 채운 후 그 위로 황갈색과 적갈색 점토를 3~5cm 정도 깔았다. 점토 위로 유기물층과 목재흔이 잔존하는 회백색 점토가 3~5cm 정도 확인된다. 바닥면의 흑갈색 사질 점토를 제거하자 너비 4cm 내외의 얇은 목재편들이 다량으로 확인되었다. 목곽고는 벽에서 30cm가량 띄어서 두께 5cm 정도가 남아 있는 목재를 길이 340cm의 방향으로 짜 맞추었다.⁴⁰⁾

이 목곽고의 바닥면에서는 부식된 다량의 철못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39)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109쪽

40)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111쪽



〈사진 5〉 남성골 산성 출토 금제이식 및 고구려식 이식 (2008년 보고서, 217쪽)

건물의 지붕을 조성할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둥들은 대부분 안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기둥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목곽고가 폐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목곽고에서 출토된 유물은 흑색의 접시와 甌, 회갈색의 甌, 보주형 꼭지가 달린 뚜껑 등이다. 이 출토 유물은 고구려 토기들로, 목곽고의 조성 주체가 고구려 세력임을 보여준다.⁴¹⁾

이 이외에 D-II 지구 중간 경사면의 13호 수혈 유구 옆 퇴적층에서는 金製耳飾이 출토되었다(〈사진 5〉). 이 이식은 고구려계 太環式 금귀걸이로, 귀에 다는 직경 2.1cm의 主環과 장축 직경 2.8cm의 중간 연결고리, 길이 2.9cm의 中間飾 끝부분이 분리된 채로 서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서 출토되었다. 태환식의 귀에 다는 고리는 평면 형태가 둥글며, 중간 부분에 접합으로 인한 선이 확인된다. 중간 연결고리는 평면 타원형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속에는 청동이 확인되어 청동에 금을 입힌 형태로 보인다. 중간 장식은 직경 1.05cm의 球形으로 만들고 그 바로 밑에 圓錐形의 끝장식을 직접 붙인 형태다. 원추형 장식은 1.7cm 정도다.⁴²⁾ 평양 안학동 출토품이나 청원 상봉리 출토품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연대는 5세기 후반 이후의 것으로 보인다. 이 이외에 복원 입지름 12cm의 三足土器片도 지표에서 수습되었다.⁴³⁾

41) 차용걸 외, 2008, 위의 보고서, 112쪽

42) 차용걸 외, 2008, 위의 보고서, 186·217쪽

Ⅲ. 南城谷 山城 周邊의 三國時代 狀況

금강 유역권은 북으로부터 진천과 음성, 청주와 청원, 보은과 옥천, 그리고 영동으로 나뉜다. 남한강 수계는 태백산 줄기와 같은 방향으로 발달하였는데, 단양과 제천, 충주와 괴산을 가르는 선이 된다.⁴⁴⁾ 이때 청주·청원을 비롯하여 남성골 산성이 입지한 부용면 일원의 삼국시대 각축에 대한 것은 문헌 자료를 통한 고찰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쟁패에 관한 개략적인 상황은 그 지역에서 출토된 고고 자료에 기초하여 고찰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의 하나다.

추풍령을 통해 영남·호남 지방으로 통하는 남북 교통로의 주요 길목에 해당하는 청주 지역에서는 신봉동 고분군, 명암동 주거지, 우암산토성, 정북동토성, 부모산성 등과 청원 저산성, 쌍청리 주거지, 주성리 고분군 등의 백제 유적이 낮은 구릉성 산지와 평야지대에 걸쳐 있는 미호천 주변에서 다수가 확인되었다. 반면에 신라 유적은 청주 명암동 유적과 청원 문의 미천리 유적 등만이 조사되었다. 이 경우 신라의 청주 지역 진출은 고대의 교통로를 감안할 때, 소백산맥의 고대 추풍령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경우, 특히 475년 고구려의 침공으로 인하여 漢城을 잃은 백제가 웅진 천도 이후 지배세력 간의 다툼 등 내우외환을 겪고 있을 무렵에 신라가 금강 상류 지역을 확보했을 것으로⁴⁵⁾ 파악하기도 한다. 이때 구체적인 교통로는 신라가 보은(삼년산성)에서 懷仁을 거쳐 皮盤嶺을 넘어 청주로 진출하는 것과, 보은에서 보은군 내북면 창리, 청원군 미원면을 거쳐 청주로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의면 일원 米川里 壤城

43) 차용길 외, 2008, 위의 보고서, 202쪽

44) 장호수, 2007. 6, 「고고학에서 보는 중원문화-최근 충청지역의 고고학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歷史와 實學』 32, 歷史實學會, 111쪽

45) 梁起錫, 1999. 12,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文化史學』 11·12·13, 韓國文化史學會, 359·361쪽

山城을 一牟山城으로 비정한다면 문의 일원으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크다.⁴⁶⁾

이 경우 현재 양성산성을 중심으로 작두산성, 장군봉산성 등의 산성이 외곽에 분포하고 있고, 또 문의 서쪽의 부용면 일대에는 북쪽으로 성재산성, 북두산성, 독안산성과 남쪽으로 노고봉산성, 성산성 등이 대치하는 형태로 남아 있는⁴⁷⁾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지표조사 이외에, 이들 산성에 대한 구체적인 학술조사는 진행된 바 없다. 아울러 청주 일원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백제 유적 또한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남성골 산성과 시기적으로 중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부강 주변의 청원 남이 사동리 복두산성, 청원 남이 산막리의 독안산성, 청원 부용 등곡리의 성재산성·노고산성·애기바위산성·성산성, 청원 부용 부강리의 테피산성 등 無心川과 鳥川이 美湖川과 합류하는 지역이나 부강 주변의 산성들은 주로 백제 계통의 산성이다. 이와는 달리, 문의 지역 주변 산성들은 양성산성을 비롯하여 그 동·서로 보조적인 산성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백제를 방어하기 위한 신라 계통의 산성으로 파악된다.⁴⁸⁾ 이들 유적을 종합하여 살펴볼 경우, 청주 지역은 6세기 전반까지 백제의 영역이었으며, 그 이후 신라가 장악하였다고 판단된다.⁴⁹⁾ 이는 신라 고분과 신라 양식의 토기들은 금강 유역의 영동 지역과 남한강 상류 충주, 제천 지역에서 6세기 중엽부터 나타난다는⁵⁰⁾ 점과도 연관된다.

한편 문헌 자료를 통해 5세기의 삼국 관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었던 5세기 전반의 和好 분위기를⁵¹⁾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세기 삼국 관계, 특히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을 직접적으로 받아야 하는 백제와

46) 梁起錫, 1999. 12, 위의 글, 366·367쪽

47) 車勇杰, 1990, 「清州地域 百濟系 山城의 調査研究」, 『百濟論叢』 2, 百濟文化開發研究院, 381쪽

48) 梁起錫, 1999. 12, 앞의 글, 376쪽

49) 梁起錫, 1999. 12, 위의 글, 384쪽

50) 장호수, 2007. 6, 앞의 글, 129쪽

51)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17年(433)·18年(434) 및 卷25 百濟本紀 3 毗有王 7年(433)·8年(434) 참조.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으로 인하여 외교적 예측도가 점차 심화되어 가던 신라는 결국 고구려의 압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5세기 초반의 삼국 관계는 결국 신라와 백제가 서로 우호를 모색하는 것이 자국의 실리를 도모하는 길이 되었던 것이다.⁵²⁾ 이는 고구려 장수왕의 평양 천도로(427) 인하여 비롯된 것이었다. 즉, 신라와 백제가 자신들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자 고구려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던 것이다. 백제의 경우는 고구려에 대한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또 신라는 자국의 성장·발전에 제약요소로 작용하던 고구려의 압력을 배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호 간의 우호 관계 성립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⁵³⁾

5세기 후반까지 경상북도 내륙지방과 동해안 방면의 신라 영토에까지 고구려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으며,⁵⁴⁾ 449년 즈음에 건립된⁵⁵⁾ 중원고구려비에는 신라 영토 내에 자국의 幢主를 주둔시키고 있는 고구려 국왕이 신라 국왕에게 의복을 하사하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최소한 449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구려는 충주 지역을 군사적 거점으로 장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충북 일원에서 좀 더 확실한 편년을 갖고, 해당 유적의 실상 파악이 용이한 것이 바로 470년에⁵⁶⁾ 신라가 축조한 보은의 삼년산성이다. 486년에⁵⁷⁾

52) 5세기 신라와 백제 사이의 관계는 정운용, 2008. 10, 「5世紀 新羅의 對百濟關係와 相互 認識」, 『郷土서울』 72, 서울特別市史編纂委員會, 77~120쪽 참조.

53) 梁起錫, 1994. 2,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慶州市, 77~79쪽 참조.

54) 鄭雲龍, 1989. 6, 앞의 글, 27쪽

55) 任昌淳, 1979. 11, 「中原高句麗古碑 小考」, 『史學志』 13, 檀國大學校 史學會, 57쪽; 金貞培, 1979. 11,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史學志』 13; 金貞培, 1980, 『韓國古代史論의 新潮流』, 高麗大學校出版部, 165쪽. 中原高句麗碑의 건립 연대에 대한 연구사적 검토는 鄭雲龍, 2005. 11, 「中原高句麗碑 研究의 몇 가지 問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논문집』 6, 163~165쪽 및 鄭雲龍, 2006. 12,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年代」, 『白山學報』 76, 白山學會, 156~160쪽과 張彰恩, 2006. 3, 「中原高句麗碑의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 189, 歷史學會, 304~314쪽 참조.

5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3年(470)

57)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3 炤知麻立干 8年(486)

신라는 삼년산성을 개축하면서 一善郡에서 役夫 3,000명을 징발하였다. 이것은 신라가 보은 일대에서 백제의 역부를 징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⁵⁸⁾ 즉, 나제동맹을 결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라는 백제의 목시적동의 하에 금강 상류 지역에 산성을 축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⁵⁹⁾

이 이후 475년에 백제는 고구려에게 수도인 한성을 공격당하였다.⁶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때 고구려가 서울 지역을 장악하고 적극적인 남진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몽촌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에 주목하는 경우에는, 고구려의 주력 부대는 철수하였으나 잔류 부대가 몽촌토성에 주둔하면서 남하하는 고구려군의 보급과 업무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⁶¹⁾ 보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사료에는 신라의 구원병 파견으로 인하여 고구려가 漢城에서 퇴각하였음과 아울러 백제가 왕도 한성을 되찾았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⁶²⁾

현재 한강 北岸의 아차산, 흥련봉, 용마산, 망우산, 시루봉 등지에는 고구려의 堡壘들이 남아 있다. 한강을 둘러싼 전술적 측면에서 볼 때, 이들 보루는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관방 시설들과 연결되고 있다.⁶³⁾ 이 중 아차산 제4보루의 경우 대략 100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출토된 유물 중 토기류는 모두 26개 기종에 538개체 분이다. 이들 토기류의 대부분은 6세기 이후의 토기로 편년되고 있으며, 보고자들은 이 제4보루 유적을 5세기 중반~

58) 徐榮一, 1997. 9, 「6世紀 新羅의 北進路와 清原 飛中里 石佛」, 『史學志』 30, 檀國大學校 史學會, 91쪽

59) 鄭雲龍, 1989. 6, 앞의 글, 12쪽

60)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 蓋鹵王 21年(475) 및 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63年(475)

61) 양기석, 2008,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김태식 외), 서경문화사, 69쪽

62) 李南奭, 1997. 12, 「熊津時代 百濟 遺蹟의 存在 意味 - 百濟의 熊津遷都와 關聯 하여」, 『百濟文化』 26,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31쪽

63) 白種任, 2007. 6,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 韓國古代學會, 301쪽

6세기 중반으로 편년하고 있다.⁶⁴⁾ 그러나 출토 토기류를 통해 판단한다면 해당 유적은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강 이남 지역의 경우 몽촌토성에서는 고구려 유물이 확인된 바 있다. 즉, 몽촌토성에서는 모두 15개 기종의 343개체 분의 고구려 토기가 확인되었다. 이것은 아차산 제4보루에 비해 많은 숫자의 군대가 주둔한 것치고는 토기의 수량이 매우 적은 것이다.⁶⁵⁾ 또 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에서도 소량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된 바 있다.⁶⁶⁾ 따라서 몽촌토성의 경우는 고구려가 백제의 한성을 공략할 때 점령하여 일시 주둔하면서 유물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풍납토성은 고구려에게 함락되었으나 곧 이은 신라 구원병의 도착으로 고구려군이 퇴각했기 때문에 고구려 유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풍납토성에서는 고구려는 물론 가야의 토기도 출토되었기 때문에 풍납토성 출토 고구려 토기를 고구려의 풍납토성 주둔 등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무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웅진 천도 이후 백제의 주력은 공주로 옮겨갔으나,⁶⁷⁾ 문주왕의 즉위나 徙民 등과 관련한 『삼국사기』의 기사를 보면,⁶⁸⁾ 475년 이후에도 백제는

-
- 64) 임효재 외, 2000,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14·224쪽
- 65) 최중택, 2002, 3, 「夢村土城 內 高句麗遺蹟 再考」, 『韓國史學報』 12, 高麗史學會, 29~30쪽
- 66) 풍납토성에서 고구려 토기의 발견 가능성은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2008년 풍납토성 경당지구에 대한 서울역사박물관과 한신대학교 박물관의 조사에서 중국 청자와 시유도기, 고구려와 가야 토기 등의 많은 외래품이 출토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한신대학교 박물관, 2008, 5,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참조. 고구려 토기에 대한 이와 같은 발굴 성과는 그 이듬해에 발굴조사보고서로 간행되어, 기왕에 한성 말기 백제 토기로 파악하던 몇몇 토기편류에 대하여 고구려 토기로의 새로운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역사박물관·한신대학교 박물관, 2009, 『風納土城 X-慶堂地區 遺物包含層出土 遺物에 대한 報告』, 127쪽
- 67) 강중원, 2005, 8, 「수춘리 백제고분군 조영세력 검토」, 『百濟研究』 42,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52쪽
- 68) • (475)文周王 蓋鹵王之子也 …… 蓋鹵在位二十一年 高句麗來侵圍漢城 蓋鹵嬰城自固 使文周求救於新羅 得兵一萬 麗兵雖退 城破王死 遂即位 性柔不斷

한수(한강) 이남 지역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다. 아울러 현존하고 있는 한강 北岸의 고구려 보루를 통해, 475년 이후 고구려는 한수 이북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렇게 고구려의 한성 공략은 결국 한강을 중심으로 하여 백제와 고구려가 각각 강남과 강북을 차지하며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⁶⁹⁾

이 경우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과 관련하여, 청주·청원 지역은 처음에 백제가 진출했다가 5세기 후반경 고구려의 진출에 따라 삼국이 접경을 이루고, 6세기 중반에 신라가 차지하였던 것으로⁷⁰⁾ 이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강 이남의 漢城 일원이 여전히 백제에 장악되어 있었다면, 고구려 세력의 청주·청원 지역 진출 문제는 북쪽에서의 축차적 침공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 이때 남성골 산성은 결국 고구려 세력이 굳건하게 장악하고 있던 충주⁷¹⁾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순리라 판단된다.⁷²⁾

而亦愛民 百姓愛之 冬十月 移都於熊津.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即位年)

• (476) 春二月 修葺大豆山城 移漢北民戶.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 4 文周王 2年)

69) 정운용, 2007, 「신라와의 관계」, 『百濟의 對外交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10~111쪽

70) 徐榮一, 1997. 9, 앞의 글, 95쪽

71) 2007년 현재 충주 지역에서 冶鐵 유적으로 조사된 곳은 모두 77개소다. 이 중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제철로 주변에서 출토되는 백제 토기로 보아 칠금동 유적이 유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주 일원의 세력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길경택, 2007. 6, 「충주지역의 야철유적」, 『歷史와 實學』 32, 歷史實學會, 891쪽 참조.

72) 다만 현재까지 충주 중원고구려비 발견 지역에서 청원군 부강면까지의 교통로 상에서 고구려 유적이 확인된 바 없다. 이 글의 논리상 가장 큰 약점이라 생각한다. 향후의 조사 성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IV. 南城谷 山城의 築造와 運用

성곽의 형태는 축성 당시의 정치·군사적 여건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이나 축성 기술자 집단의 기술 유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우리나라의 성곽은 木柵에서 토성으로, 또 토성에서 석성으로 발달한 것이라 이해하고 있다.⁷³⁾ 이 경우 토성의 축조 공법은 단순 성토, 성토다짐, 夾板을 사용한 판축다짐, 기단 석축을 결들인 판축다짐 등의 순서로 발달해 온 것으로 짐작된다.⁷⁴⁾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판축 토성에서 대부분의 유적들은 表土를 제거하고 생토층 또는 퇴적암층 위에 基底部를 형성하였으며, 기저부에서의 지하수 湧出 및 성벽 하부 측면에서의 물의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갈색 점토계 흙을 20~30cm 두께로 까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⁷⁵⁾

한반도 내의 삼국시대 이전 토성에서는 거푸집을 이용한 전형적인 판축 공법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 성토나 성토다짐 정도의 공법이 응용되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는 4세기경에 기단 석축이 등장하고 5세기에는 기단 석축을 갖춘 판축 공법이 응용되었음이 확인된다.⁷⁶⁾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목책·토축·석축이 혼재하고 있는 남성골 산성은 그 조성 방법에서 매우 독특한 공법을 보이고 있다. 또 본래 고구려 산성의 입지는 교통이 편리하고 강·하천에 접해 있거나 산세가 험하여 천연의 절벽을 구비하고 있어 방어에 용이하고 인공적인 축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

73) 심광주, 2007. 1, 「중부 내륙지역 고대산성의 성격과 특성」,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48쪽

74) 閔德植, 1998. 12, 「漢城百濟期の 方形土城」, 『史學志』 31, 檀國大學校 史學會, 64쪽

75) 민덕식, 2005. 8, 「발굴조사 자료로 본 고구려 성곽의 축조공법-체성(體城)의 축조공법을 중심으로」, 『史學志』 37, 檀國大學校 史學會, 72쪽

76) 민덕식, 2005. 8, 위의 글, 91쪽

는 경향이 크다.⁷⁷⁾

게다가 남성골 산성은 그 둘레가 270~360m 정도로 추정되는 소형의 산성이다. 고구려의 축조가 확실하다면, 여타 고구려 산성의 조성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토축을 기초로 한 아주 소규모의 산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성골 산성은 5세기까지 백제 혹은 고구려의 성곽에서 요새화된 지형의 선택과, 휘어 드나들고 함정과 차단용 참호를 가진 성문의 존재 및 장방형의 치성을 배치하고 투척용 石丸을 구역에 따라 준비하는 등의 전형적인 양상은 확인이⁷⁸⁾ 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고구려가 특정 지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고 축조한 산성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인 군사적 점령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자신의 군사력을 담보하기 위해 급조한 것이라는 인상을 준다.

또한 충주 지역의 예로 보면, 충주 지역에 분포하는 산성은 모두 남북 왕래의 교통로로 이용되는 陸路와 水路에 인접한 군사 요충에 축조되었다. 또 성의 위치가 대부분 남한강의 남쪽에 입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모가 큰 성들은 산세가 험준하고 높은 지대를 택하여, 관측이 용이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성곽의 위치는 대부분 背山臨水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여 적이 쉽게 접근하거나 공격하기 어려운 곳을 택하고 있다.⁷⁹⁾ 이러한 입지 조건은 남성골 산성의 경우와 상반되는 것이다.

이 경우 남성골 산성의 주 방어 방향이 북쪽 또는 북서쪽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남성골 산성이 입지한 곳은 육로와 수로의 거점 지역인데, 사실 그 지역에서 좀 더 중요한 위치는 지표에서도 백제 토기가 출토되는 테피산성이라 생각된다. 테피산성은 부용면 부강리 퇴피마을 뒷산에 입지하고 있는데, 토루로 되어 있으며 해발 62.8m 낮은 구릉의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서쪽과 남

77) 심광주, 2007. 1, 앞의 글, 63쪽

78) 차용걸, 2007. 1, 「중부내륙지역 산성군의 성격과 특성의 검토 - 한국 산성의 일반적 성격·특징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14쪽

79) 이상의 서술은 崔根泳, 1998. 9, 「忠州 薔薇山城考」, 『史學研究』 55·56, 韓國史學會, 35~36쪽 참조.

쪽에는 북에서 南流하는 백천천이 70~300m 정도 떨어져서 흘러 금강에 합류하고, 남쪽으로 700m 정도의 거리에 금강이 흐르고 있다.⁸⁰⁾ 이 테피산성에서는 적갈색 연질 굵다리 접시편, 회청색 경질 개배편, 회청색 경질甕 구연부편, 격자문이나 繩文이 타날된 토기 동체편 등이 출토되었는데, 모두 4~5세기에 해당하는 백제 토기편이다.⁸¹⁾

이와 함께 부용면 금호리 황성골의 황성골 보루도 주목된다. 城山城과 관련된 소규모 보루로 추정되는 이 황성골 보루는 해발 214m의 정상에 활[弓]모양 평탄부를 갖고 있는 곳에 입지하고 있는데, 정상부의 둘레는 220m 정도며, 너비는 최대 10m에서 최소 5m이다. 남동쪽에 있는 원형상의 돌무더기는 직경이 12m이며 높이는 1.6m 정도 잔존하고 있다. 이 보루 내에서는 유물이 수습되지 않았으나, 그 일원에서 격자문 등이 타날된 백제 토기편이 수습되었다.⁸²⁾

이처럼 테피산성을 비롯한 부용면 지역의 산성들이 백제에서 축조하고 운용한 것이 확실하다면,⁸³⁾ 5세기 즈음 동일 시기 동일 지역에 백제와 고구려의 남성골 산성이 혼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충주·청원 지역과 관련한 백제의 세력을 감안한다면, 남성골 산성이 있는 지역은 일단 테피산성을 중심으로 한 백제의 장악이 선행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449년을⁸⁴⁾ 전후하여 충주 지역에 군사 거점을 확보하고 충북·경북 북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고구려가 충주-괴산-보은 방면을 거쳐 청원 지역으로 진출한 것이 아닌가 생

80) 차용걸 외, 2005, 앞의 보고서, 27쪽

81) 차용걸 외, 2005, 위의 보고서, 36쪽

82) 차용걸 외, 2005, 위의 보고서, 159·166쪽

83)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군 부대의 주둔으로 출입이 용이하지 못한 성재산성에서도 백제 토기편이 수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용걸 외, 2005, 위의 보고서, 197쪽. 아울러 부용면 지역 관광 시설에 대한 답사를 안내해 준 중원문화재 연구원의 김정인 선생에 따르면, 비록 정식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테피산성에서 백천천을 따라 금강에 합류하는 지점인 합강리 일원 세종특별자치시 동면 명학리 황우산의 황우산성에서도 백제 토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고 한다.

84) 중원고구려비의 건립 연대 및 비문에 보이는 사건의 발생 연대에 대한 논의는 鄭雲龍, 2006. 12, 앞의 글 참조.

각된다. 백제에 대한 고구려의 이러한 군사적 압박으로 인하여, 470년에 신라가 백제 영역이었던 보은에 삼년산성을 축조할 수 있었던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입지한 고구려의 성곽들은 449년을 전후하여 충주를 중심으로 확장된 고구려 세력에 비하여 다소 이른 시기의 산물로 보인다. 이 경우 연천 은대리토성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를 舟月里 출토품보다 늦은 시기이며, 몽촌토성 출토품에 비해 약간 빠른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면, 은대리토성이 5세기 전·중반경에 단기간에 걸쳐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⁸⁵⁾ 점도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성골 산성은 5세기 중·후반에 고구려에서 일시적으로 축조·사용하였던 산성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은 남성골 산성의 조사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즉, 조사자 스스로 A지구 유구를 설명하면서 할석으로 피복된 부분의 표토 아래에서 고구려 토기편 등의 유물이 많이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성벽이 고구려가 보완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전반적인 파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거나,⁸⁶⁾ B지구의 경우 수혈 구덩이의 토층 상태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일시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는⁸⁷⁾ 등에서 백제의 공격에 따라 남성골 산성이 폐기되는 상황이 추측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찍이 신라 지역에서도 木柵의 흔적을 추정할 수 있는 토성이 조사된 바 있다. 즉, 梁山 蕁池里土城이 바로 그것이다. 이 토성은 山城山의 서북쪽 계곡을 중심으로 정상부 능선을 따라 축조하였는데 서쪽 계곡 부분을 할석으로 內托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토성으로 축조하였다. 성의 둘레는 약 950m이다. 축성 공법은 토성의 경우 기본적으로 판축법에 의해 축조되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기초 부분에서 조사된 柱穴 흔적이다. 이 주혈은 판축 城牆 양 측면에서 城幅과 평행을 이루면서 일직선상에 1m

85) 민덕식, 2005, 앞의 글, 76쪽

86) 차용걸 외, 2004, 앞의 보고서, 45쪽

87) 차용걸 외, 2004, 위의 보고서, 121쪽

간격으로 나타나 있다. 주혈의 크기는 직경 45cm, 생토층에서의 깊이는 48cm 이다. 비교적 경사도가 완만한 곳은 주혈 내부에 단단한 점토로 메워져 있고, 경사도가 심한 곳에는 木柱를 그대로 세워둔 채로 판축을 실시하여 판축 층 내부에는 木柱가 썩었기 때문에 목주가 세워졌던 부분이 空穴로 남아 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柱穴이 단순한 판축을 위한 木柱穴인지 아니면 토성 이전에 목책이 있었으나 후에 개축하면서 남게 된 흔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⁸⁸⁾ 향후 남성골 산성의 목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다.⁸⁹⁾

한편 신라의 경우 稟主에서 調府를 분리·설치한 시점과 육상 교통 官府인 乘府의 설치 시점이 진평왕 6년(584)으로 동일하다. 이는 효율적인 국가 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교통 관부를 정비했음을 의미한다. 즉, 기왕에 교통로를 政治·軍事路로서 중시하던 것과는 달리, 그에 덧붙여 교통로를 국가 재정의 확충 수단으로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⁹⁰⁾ 그런데 이에 앞서 5세기 후반 당시,

-
- 88) 朴相份, 1998. 12, 「新羅의 築城事業과 築城術」, 『古文化』 52, 韓國大學博物館協會, 39쪽. 박상일의 서술에 따르면, 이 토성의 주혈에 대하여 발굴조사자는 보고서에서 목책의 흔적이라(沈奉謹, 1983, 『梁山葦池里土城』, 336쪽) 주장하였으나, 그 후 백제 木川土城에서 이와 같은 遺構가 확인된 후 판축을 위한 木柱穴인 것 같다고(沈奉謹, 1988, 「新羅城의 築城手法 二例」, 『百濟의 國家發達과 城郭』, 第4回 百濟研究國際學術大會 發表要旨,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67쪽) 견해를 수정하였다 한다. 그러나 근래 목천토성의 경우는 토성의 축조 기법이 洪城 神衿城과 동일하기 때문에 忠州 見鶴里土城 등과 함께 9세기에 豪族과 관련하여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李康承 外, 1994, 『神衿城』, 忠南大學校 博物館, 283쪽; 성정용·이성준, 2001. 8, 「大田 九城洞土城」, 『百濟研究』 3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184~185쪽; 朴淳發, 2004. 4, 「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0, 湖西考古學會, 47쪽. 아울러 웅진 시대 초기에 100~150m 정도의 나지막한 山峰에 입지했던 백제 산성들이 사비시대에 들어서는 표고 250m 정도의 험산에 입지하는 점으로 보아, 신금성·목천토성·구성동토성 등은 그 입지의 측면에서 백제 산성이 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서정석, 2004. 4, 「웅진·사비시대 백제 석성의 현단계」, 『湖西考古學』 10, 湖西考古學會, 36쪽
- 89) 최근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구리시 시루봉보루 조사 과정에서 남성골 산성의 목책과 비교할 수 있는 고구려 보루의 목책이 확인되었다. 남성골 산성의 목책에 대하여는 시루봉 보루의 조사보고서가 간행된 이후 정확한 판단을 하고자 한다.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9. 12, 「구리시 아차산 시루봉보루 발굴조사(4차) 약보고」 참조.
- 90) 한정훈, 2006. 3, 「6·7세기 新羅 交通機構의 정비와 그 성격」, 『역사와 경계』

신라는 대 고구려 전투에서 백제군과의 연합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신라와 백제 사이의 교통로가 나제동맹군에게 완벽하게 장악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죽령로나 계림령 방면에 비하여 청주 방면으로 공격을 집중한 것은 이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⁹¹⁾ 사실 대체로 5~6세기로 편년되는 남한 내의 고구려 고분의 분포가 하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⁹²⁾ 지적 또한 고대의 전쟁에서 교통로의 중요성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남성골 산성은 5세기 중·후반 일시적으로 청원 지역에 군사적 진출을 한 고구려가 해당 지역 백제 세력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급조한 산성으로 판단된다. 이는 남성골 산성 북쪽에 입지한 성재산성 남향의 작은 능선과 봉우리에서 조사된 3기의 백제 황혈식 석실분이 5세기 때로 편년되고⁹³⁾ 있음과도 상관성을 갖고 있다. 고구려가 남성골 산성으로 진출함으로써 백제는 아마 신라의 삼년산성 축조를 묵인하면서, 고구려 세력의 확산 방지에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남성골 산성을 기반으로 청원 지역에 군사적 진출을 기도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입지한 백제 세력으로 인하여 더 이상 군사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남성골 산성은 고구려 세력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다가 백제의 방어로 인해 일시에 퇴락된 것으로 보인다.

58. 부산경남사학회, 143~144쪽

91) 徐榮一, 1997. 9, 앞의 글, 98쪽

92) 白種伍, 2009. 11, 앞의 글, 234쪽

93) 李弘鍾 外, 2002, 앞의 보고서

V. 맺음말

이상의 검토를 통해 남성골 산성은 환호·목책·석벽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외 이중의 방어 구조를 갖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발굴보고서에서는 해당 시설들이 어떠한 목적하에 축조되었는지, 성의 구조 형식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은 어떠한지 등은 아직 명확하게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남성골 산성이 고구려에서 축조하였음은 확실하나, 고구려가 어느 방면의 군사작전선을 이용하여 남성골로 진출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2004년도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남성골 산성은 금강의 北岸에 위치한 고구려 산성으로, 중부 내륙 지역에서는 최초로 조사·확정된 고구려 유적이다. 이 유적은 내·외곽을 이중으로 둘러 木柵과 내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차단하는 4개의 濠, 그리고 내곽 정상부 東門址의 석축 성벽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다수의 수혈 구덩이와 토기 가마, 주거지 등이 조사되었다. 이 경우 토기를 비롯한 출토 유물의 대다수는 한강 유역의 고구려 토기 및 집안·환인 지역의 고구려 토기와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철촉과 鐵斧 등 또한 고구려 유물로 판단된다. 이 경우 남성골 산성은 5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도 보고서에서는 고구려 계통의 토기와 함께 깊이가 2m가 넘는 대형 수혈 구덩이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온돌 유구도 조사되었는데, 보고서에서는 이 온돌 유구가 고구려식임을 확인하였다. 조사자들은 대형 수혈 구덩이를 저장 시설로 파악하고, 이 시설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산성이 방어 목적을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아울러 퇴적층에서 한성백제시대의 토기가 출토됨으로써 남성골 산성이 고구려에 앞서 백제에서 경영하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렇다면 일단 남성골 산성은 백제에서 경영하다가 고구려에게 장악되었던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또 2004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자 스스로 A지구 유구를 설명하면서 할석으로 피복된 부분의 표토 아래에서 고구려 토기편 등의 유물이 많이 발견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성벽의 보완을 고구려에서 한 뒤 얼마 되지 않아 전반적인 파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B지구의 경우 수혈 구덩이의 토층 상태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자연적으로 매몰된 것이 아니라 일시에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하였다. 이는 곧 백제의 공격에 따라 남성골 산성이 폐기되는 상황을 추측하게 한다.

그런데 고구려가 남성골 산성을 장악하고 있던 5세기 후반에 백제는 여전히 한강 이남 지역의 한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고구려는 중원고구려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충주 지역에 강력한 군사 거점을 확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둘 때, 고구려의 남성골 산성 진출은 한성 지역에서의 축차적 남하가 아니라, 충주 지역에서의 진출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필자는 남성골 산성의 축조와 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지적하고자 한다.

남성골 산성은 5세기 중·후반에 고구려에서 축조하였다. 당시 백제는 한성(서울) 지역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남성골 산성 축조는 북쪽 방면에서의 진출이 아니라, 충주·중원 지역에서의 진출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목책 등으로 서둘러 축조한 남성골 고구려 산성을 고구려에서 유지하였던 기간은 비교적 짧은 동안이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남성골 산성 B지구 수혈 구덩이의 토층 상태를 염두에 둘 때, 남성골 산성이 고구려의 퇴각 이후 백제에 장악되었음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이때 남성골 고구려 산성의 고구려 세력은 청주 신봉동 백제 고분군을 유지하던 백제 세력에게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남성골에서 고구려 세력이 백제에 퇴출되었던 이유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보은 삼년산성 축조 등 나제 동맹군의 군사 활동에도 그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백제 한성 공략을 전후한 중부 지역의 고구려 세력은 지금의 서울 강북 지역과 남한강 상류를 이용하여 충주·중원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여타의 지역은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결국 남성골 고구려 산성의 역사적 의미는 중원고구려비의 존재와 상관성을 가지며,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반도 중부 지역에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고구려 세력의 반영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1. 보고서

- 서울대학교 박물관, 2009. 12, 「구리시 아차산 시루봉보루 발굴조사(4차) 약보고」
- 서울역사박물관·한신대학교 박물관, 2008. 5, 「서울 풍납토성 경당지구 2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집」
- 서울역사박물관·한신대학교 박물관, 2009, 『風納土城 X-慶堂地區 遺物包含層出土 遺物에 대한 報告』
- 李康承 外, 1994, 『神衿城』, 忠南大學校 博物館
- 李弘鍾 外, 2002, 『芙江里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韓國高速道路建設 公團
- 임효재 외, 2000, 『아차산 제4보루-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학교 박물관·서울 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차용걸 외, 2002, 『靑原 南城谷(남성골)山城 試掘調査 報告書』, 忠北大學校 博物館
- 차용걸 외, 2004, 『靑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忠北大學校 博物館
- 차용걸 외, 2005, 『靑原 芙蓉面地域 山城 地表調査 報告書』, 中原文化財研究院·靑 原郡
- 차용걸 외, 2008, 『靑原 I.C.~芙蓉間 道路工事區間內 靑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6年度 追加 發掘調査)』, 中原文化財研究院

2. 연구논문

- 강종원, 2005. 8, 「수춘리 백제고분군 조영세력 검토」, 『百濟研究』 42, 忠南大學校 百 濟研究所
- 공석구, 2005. 8, 「대전·충남일대의 고구려유적」, 『白山學報』 72, 白山學會
- 길경택, 2007. 6, 「충주지역의 야철유적」, 『歷史와 實學』 32, 歷史實學會
- 金榮官, 2006. 12, 「고구려의 청주지역 진출 시기」, 『先史와 古代』 25, 韓國古代學會
- 金貞培, 1979. 11,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史學志』 13
- 閔德植, 1998. 12, 「漢城百濟期の 方形土城」, 『史學志』 31, 檀國大學校 史學會
- 민덕식, 2005. 8, 「발굴조사 자료로 본 고구려 성곽의 축조공법-체성(體城)의 축조공 법을 중심으로」, 『史學志』 37, 檀國大學校 史學會
- 朴相份, 1998. 12, 「新羅의 築城事業과 築城術」, 『古文化』 52, 韓國大學博物館協會

- 朴淳發, 2004. 4, 「湖西地域 平地·野山城에 대하여-築造時點 및 性格을 中心으로」, 『湖西考古學』 10, 湖西考古學會
- 白種伍, 2007. 6, 「南韓地域 高句麗 關防體系」, 『先史와 古代』 26, 韓國古代學會
- 白種伍, 2009. 11, 「南韓內 高句麗 古墳의 檢討」, 『高句麗渤海研究』 35, 高句麗渤海學會
- 徐榮一, 1997. 9, 「6世紀 新羅의 北進路와 清原 飛中里 石佛」, 『史學志』 30, 檀國大學校 史學會
- 서정성, 2004. 4, 「웅진·사비시대 백제 석성의 현단계」, 『湖西考古學』 10, 湖西考古學會
- 성정용·이성준, 2001. 8, 「大田 九城洞土城」, 『百濟研究』 34,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심광주, 2007. 1, 「중부 내륙지역 고대산성의 성격과 특성」,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 梁起錫, 1994. 2, 「5~6世紀 前半 新羅와 百濟의 關係」,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15, 慶州市
- 梁起錫, 1999. 12, 「新羅의 淸州地域 進出」, 『文化史學』 11·12·13, 韓國文化史學會
- 양기석, 2008, 「475년 위례성 함락 직후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김태식 외), 서경문화사
- 양시은, 2010. 6,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권 1호, 중부고고학회
- 李南奭, 1997. 12, 「熊津時代 百濟 遺蹟의 存在 意味-百濟의 熊津遷都와 關聯하여」, 『百濟文化』 26, 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 任昌淳, 1979. 11, 「中原高句麗古碑 小考」, 『史學志』 13, 檀國大學校 史學會
- 張彰恩, 2006. 3, 「中原高句麗碑의 연구 동향과 주요 쟁점」, 『歷史學報』 189, 歷史學會
- 장호수, 2007. 6, 「고고학에서 보는 중원문화-최근 충북지역의 고고학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歷史와 實學』 32, 歷史實學會
- 鄭雲龍, 1989. 6, 「5世紀 高句麗 勢力圈의 南限」, 『史叢』 35, 高大史學會
- 鄭雲龍, 2005. 11, 「中原高句麗碑 研究의 몇 가지 問題」,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는 문집』 6,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 鄭雲龍, 2006. 12, 「中原高句麗碑의 建立 年代」, 『白山學報』 76, 白山學會
- 정운용, 2007, 「신라와의 관계」, 『百濟의 對外交渉』,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정운용, 2008. 10, 「5世紀 新羅의 對百濟關係와 相互 認識」, 『鄉土서울』 72, 서울특

別市史編纂委員會

- 車勇杰, 1990, 「清州地域 百濟系 山城의 調査研究」, 『百濟論叢』 2, 百濟文化開發研究院
- 차용걸, 2007. 1, 「중부내륙지역 산성군의 성격과 특성의 검토 - 한국 산성의 일반적 성격 · 특징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반도 중부내륙 옛 산성군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상 선정 학술회의 발표집』, 한국성곽학회
- 崔根泳, 1998. 9, 「忠州 薔薇山城考」, 『史學研究』 55 · 56, 韓國史學會
- 최종택, 2002. 3, 「夢村土城 內 高句麗遺蹟 再考」, 『韓國史學報』 12, 高麗史學會
- 한정훈, 2006. 3, 「6 · 7세기 新羅 交通機構의 정비와 그 성격」, 『역사와 경계』 58, 부산경남사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Koguryo's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in Cheongwon, North Chungcheong Province

Jung Woonyong

This paper examines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Koguryo's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in Bugang-ri, Buyong-myeon, Cheongwon-gun, North Chungcheong Province. As noted in the investigation report, Koguryo constructed the mountain fortress in the middle or the latter half of the fifth century. Nevertheless, not as reported earlier, the advance of Koguryo power to Cheongwon in order to construct the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occurred through the Chungju and Jungwon districts. This understanding is based on the view that Baekje ruled Hanseong at that time.

Koguryo's maintenance of the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done hurriedly with wooden barricades, seems to have been soon ended. Further, the main defense of the mountain fortress must have been undertaken toward the north. The Baekje-related articles excavated at the mountain fortress show that Baekje dominated the mountain fortress after Koguryo had retreated. It is possible that Koguryo forces in the mountain fortress were defeated by Baekje forces that maintained the Baekje mounds in Sinbong-dong, in Cheongju, and also by the joint resistance of Baekje's Temoe Mountain Fortress in Bugang-ri, near the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and the area around Yeongi-gun,

The reason Koguryo power's left Baekje remains unclear; the allied army of Baekje and Silla may have affected that, too. These point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Koguryo power was taking control of administration in the area north of today's Seoul and the Chungju and Jungwon districts, and Baekje in the rest of the area when Koguryo was about to attack Baekje's capital at Hanseong. Thus the historic importance of Koguryo's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is related to the Jungwon Koguryo Monument and is the reflection of Koguryo's intent to expand its military power into the central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Namseong Gol Mountain Fortress, Baekje mounds in Sinbong-dong, Samnyun Mountain Fortress, the Jungwon Koguryo Monument, Chungju, Cheongju

고구려 영류왕의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 정책의 의미

윤성환 |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재학



I. 머리말

7세기를 살아갔던 대다수 고구려인들은 무엇을 가장 소망했을까?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평화’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알다시피 598~668년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는 중원 통일제국 수·당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다. 전쟁은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대규모로, 그리고 장기간 전개되었다.

榮留王의 재위 기간(618~642)은 이 전쟁 기간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는 7세기 고구려사에서 유일하게 전쟁이 없던 시대였다. 이 시기의 사회상을 전해 주는 자료는 거의 없지만 아마 고구려인들은 이 평화의 시기를 맞아 對隋戰爭으로 피폐화된 생업에 다시 나서고, 전후 재건에 한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평화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당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고구려는 千里長城을 축성하는 등 방비태세에 돌입했고,

※ 투고일: 2012년 4월 30일, 심사일: 2013년 2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2일

그로부터 15년쯤 지나 전쟁은 또다시 재현되었다.

그러면 서쪽에서 밀려오는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평화를 지속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었던 수단으로는 무엇이 있었을까? 무엇보다 ‘외교’, 즉,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사실 고구려에는 오래전부터 외부의 다양한 세력들과 폭넓게 접촉하며 쌓은 외교적 경험이 있었다. 이것은 당대의 대외적 현실과 국제적 상황에 대한 통찰력의 바탕이 되었고, 이에 고구려는 대중국관계에서 때로 전쟁을 불사하기도 했지만, 역사 속 대부분의 기간은 중국과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국제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외교 전략 수립을 강구하곤 하였다. 심지어 隋·唐과의 전쟁 중에도 대중외교 자체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고구려 집권층들에게 ‘외교’는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었다. 영류왕대의 對唐政策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간 영류왕의 대당정책을 北守南進策, 온건화평책, 親唐政策 등으로 규정해 왔지만 최근 영류왕대 대당정책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 글의 문제의식도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영류왕대 대당정책과 외교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을까?

영류왕대 고구려·당의 관계는 양국 관계의 고비를 이루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분기점을 잡아볼 때 크게는 ‘고구려와 당의 友好期(619~629)’, ‘고구려와 당의 對立期(631~638)’, ‘고구려와 당의 對立 小康期(639~641)’로 구분할 수 있겠고, 이 중 ‘우호기’의 경우 다시 624년 당 고조의 三國王 동시책봉을 분수령으로, ‘고구려와 당의 關係設定期(619~624)’와 ‘고구려와 당의 關係調整期(625~629)’로 좀 더 세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624년 당의 영류왕 책봉을 끝으로 일단 이후의 고구려·당 관계의 틀이 定立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이 무렵 당 내부에서는 대고구려정책 기초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이 글은 ‘고구려와 당의 관계 설정기’에 주목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지를 전개한다. 먼저 620년대 초 영류왕이 당에 책력을 요청한 사실에 주목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찰했다. 그런 뒤 영류왕이 책력 반포를 요청한 의도와 그 속에 내재된 외교 전략은 무엇인지로 초

점을 옮겨간다. 이어 이를 해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5세기 이래 영류왕대에 이르기까지 고구려의 조공책봉관계 인식의 변천에 대해 살펴본 다음, 당 건국 직후 당의 대고구려정책과 그 맥락을 구체적으로 살핀다. 뒤이어 이 시기 고구려의 대당정책을 살펴본 뒤 양자를 대응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양국관계의 전개상을 그린다. 그리고 이런 맥락 속에서 영류왕이 당에 책력 반포를 요청한 이면에 숨어 있던 외교 전략과 의도, 그것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밝혀 볼 것이다. 특히 4장과 5장의 경우 최대한 촘촘하게 당시의 상황과 양국의 관계를 그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여러 선생님들의 귀중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II. 책력 반포 요청의 의미

620년대 초반, 고구려의 榮留王은 당에 使者를 보내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였다.

(武德) 7년(624) 2월, (영류왕이-필자) 사신을 보내 內附하고 正朔을 받았으며, 책력을 반포해 줄 것을 요청하자 그것을 허락하였다. (『通典』 卷186 邊防2 東夷 下)

(武德 7년 2월) 丁未(7일)에 고려왕 건무가 사신을 보내 책력 반포를 청하였다. 사신을 보내 건무를 遼東郡王·高麗王으로, 백제왕 扶餘璋을 帶方郡王으로, 신라왕 金眞平을 樂浪郡王으로 삼았다. (『資治通鑑』 卷190 唐紀6 高祖 武德 七年 二月)

이와 같은 내용이 『三國史記』에도 동일하게 전하는데¹⁾ 여기서 알 수 있는

1)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7年

사실은 영류왕이 먼저 당에 사신을 보내 책력 반포를 요청하고, 그 직후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는 점일 것이다. 『通典』에서는 正朔을 받은 사실까지 아울러 전하고 있다.

그간 이 사실은 고구려가 먼저 당에 사신을 보내 책력 반포를 요청했다는 점에서, 이는 이 시기 고구려의 유화적인 대당외교노선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²⁾ 실제 韓·中 史書의 고구려사 관련 기록을 통틀어 고구려가 중국 왕조에 책력 반포를 요청한 사례는 이것이 유일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살펴볼 점이 있다. 먼저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내 책력 반포를 '요청'한 시점이다. 위의 기록들에서는 한결같이 624년 2월로 기록하고 있다.³⁾ 더욱이 『資治通鑑』과 『唐會要』에서는 '2월 정미일(7일)'이라는 구체적 日字까지 적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검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위에서 인용한 『자치통감』의 기록에서는 영류왕의 책력 요청 직후 당이 삼국에 사신을 보내 삼국의 왕을 각기 책봉한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얼핏 당이 삼국 왕 책봉 결정을 내린 시점을 624년 2월 이후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舊唐書』와 『冊府元龜』는 당의 삼국 왕 책봉 결정 시점을 624년 정월로 뚜렷이 기록하고 있다.⁴⁾ 이로 보건대 『자치통감』이 기술하고 있는 시점은 당의 冊封使가 삼국으로 출발한 시점에 주목한 결과이지, 그 자체 당의 삼국 왕 책봉 결정 시기를 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아울러 『삼국사기』에는 624년 3월 당의 책봉사가 신라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⁵⁾ 이러한 기록들을 종합

2) 임기환, 2004, 「6~7세기 정치 세력의 동향과 귀족 연립 체제」,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300쪽

3) 『唐會要』卷95 高句麗 및 『玉海』卷10 律歷 歷法 下에도 이와 같이 전한다. 『冊府元龜』 권977 外臣部22 降附 武德 七年 二月條에도 『통전』과 같은 내용의 기록이 기술되어 있다.

4) 『舊唐書』卷1 本紀 第一 高祖 武德 七年 春正月; 『冊府元龜』卷964 外臣部9 封冊 2 (武德) 七年 正月

5)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6年 3月. 이 기록은 중국 사서에서 그 典據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라 측 독자의 전승인 것 같다.

해 보면, 당이 삼국 왕 책봉을 결정한 시점은 624년 정월이었으며, 이후 책봉사가 長安에서 출발해 한반도에 도착한 시점이 대체로 624년 3월경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자치통감』의 年月日 상의 착오가 사건의 진행 순서마저 誤導하고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고구려 사절단의 책력 반포 요청 '직후' 당이 삼국 왕을 책봉했다는 내용 전개상의 순서마저 틀린 것일까?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623년 12월 고구려에서 당에 朝貢使를 파견한 사실이다.⁶⁾ 이 기록대로라면 623년 12월 고구려의 조공사가 이미 入唐한 상황이었는데, 불과 2개월 만인 이듬해 2월에 고구려가 재차 당에 사신을 파견한 것이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연속적인 사신 파견이 그 자체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때의 경우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왜냐하면 『舊·新唐書』本紀 및 高麗傳에서 624년 2월 고구려의 조공사가 입당했다는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책부원귀』卷970 外臣部15 朝貢3 武德 7年(624) 條에는 이해 당에 遣使朝貢한 중족·국가들이 월별로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해 2월에는 契丹만이 조공했을 뿐 고구려는 빠져 있다. 고구려는 이해 12월어야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난다.⁷⁾ 뿐만 아니라 기록에서 전하는 대로 624년 2월 초에 고구려 사신이 당에 체류하며 책력 반포 요청을 했다면 2월은 동일한 사신이 평양에서 파견된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고구려 측에서 624년 2월에 파견된 사신의 경우 이미 2월 초에 장안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사신으로서의 공식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같은 달에 평양에서 파견되었다고 보기는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것이 아닐까 한다.⁸⁾ 또 상식적으로도 『당회요』나 『자

6) 『册府元龜』卷970 外臣部15 朝貢3 武德 六年 十二月;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6年

7) 물론 註 3)에서 언급했듯 『册府元龜』권977 外臣部22 降附 武德 七年 二月條에는 『동진』과 동일한 기록을 별도로 전하고 있다.

8) 권덕영은 각국의 遣唐使가 唐帝 對面을 전후해 2, 3개월 정도 장안에 머무르던 것이 常例였던 점을 들어 624년 2월 책력 반포를 요청했다는 고구려 사신은 623년 12월에 입당한 견당사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권덕영, 1997, 「遣唐使 관련 기록의 검토」,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11쪽).

치통감』에서 전하듯 고구려 사신의 ‘遣使內附’, ‘受正朔’, ‘請頒曆’이 624년 2월 7일 하루 동안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로 볼 때 624년 2월 고구려가 당에 조공사를 파견했다는 일부의 기록은 착오로 보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즉, 고구려의 책력 반포 요청은 624년 2월이 아닌 623년 12월에 파견된 조공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시간상의 전개 순서를 그려 보면, 623년 12월 고구려가 당에 사신을 보내 정사를 받고 책력을 요청했고, 이듬해 1월 당 조정이 삼국 왕에 대한 책봉 결정을 내렸으며, 곧이어 624년 3월경에 당의 책봉사가 삼국에 도착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자치통감』의 기록은 비록 연월일 기술에서는 착오를 빚었지만 사건 진행상의 先後관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⁹⁾

다만 『당회요』·『자치통감』 등의 기록에서 고구려 사신의 책력 요청 시점을 구체적인 日字까지 적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당에 책력 요청을 한 고구려 사절단은 623년 12월 평양에서 파견된 이들이지만, 이들이 당 조정에 책력 반포를 ‘요청’한 시점을 624년 2월 7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고구려 조공사 도착(623년 12월) → 당의 책봉 결정과 책봉사 파견(624년 정월) → 고구려 조공사의 책력 요청과 허락(624년 2월 7일) 순으로 진행된 셈이 된다.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들 기록과 대조해 볼 만한 기록을 찾을 수 없기에 이상과 같은 두 가지 先後 順序 가능성 중 어느 쪽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며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통전』·『당회요』 등에서 전하는 ‘許之’만큼은 최소한 2월 7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전술한 대로 2월 7일 하루 동안 ‘遣使內附’, ‘受正朔’, ‘請頒曆’, ‘許之’가 연속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견사내부’는 623년 12월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통전』·『당회요』 등의 기록은 623년 12월 고구려 사신이 入唐한 이후 ‘許之’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의 전 과정을 모두 포

9) 다만 『자치통감』에서 고구려의 책력 반포 요청 시점을 624년 2월 정미일(7일)로 적기하고 있는 것은 『당회요』를 참조한 결과로 보인다. 唐代의 기록인 『통전』에는 ‘2월 7일’이라는 구체적 시점까지 적기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실제 『玉海』에서도 『당회요』의 기록을 인용해 ‘2월 정미일’로 쓰고 있다.

괄해 서술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 사절단의 ‘請頒曆’은 이미 2월 7일 이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책봉’과 ‘受正朔’, ‘請頒曆’ 간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은, 정사를 수여받았는데 반력을 요청했다는 것이 서로 앞뒤가 맞는 것인가라는 점이다. 정사는 본래 正月과 朔日을 의미했던바, 이후 그 자체로 책력과 동일시되었다. 곧 정사·책력은 동일하게 曆法을 의미하며, 중국 古代 이래 매년 정월 天子가 諸侯에게 정사를 반포해 자신이 세계시간질서의 주재자임을 드러냈다. 孔子가 『春秋』에서 반드시 ‘春正月’이 아닌 ‘春王正月’로 표기한 것도 이와 관련된 尊王思想의 한 표현이었다. 이에 정사의 확산은 곧 중국적 천하질서의 확대를 의미했다. 이 점은 唐代에도 마찬가지였다.¹⁰⁾

그러므로 당에서 정사를 받은 뒤에 고구려 사절이 또다시 반력을 요청했다고 보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면 ‘반력 요청’과 당의 ‘책봉’ 간의 先後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 다음 吐谷渾의 사례가 주목된다.

(토욕혼 왕 慕容順이 [...] 부하에게 살해된 뒤 그 아들 燕王 諾曷鉢을 세웠다. 낙갈밭은 어려서 대신들이 권력을 다투었으므로 황제(당 태종)가 侯君集을 보내 그 기강을 잡게 하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頒曆과 子弟의 入侍를 요청하였다. 조칙을 내려 낙갈밭을 河源郡王에 봉하고 烏地也拔勒豆可汗으로 불렀다.)¹¹⁾

여기서 頒曆 요청은 책봉에 앞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반력은 그 의미나 성격상 책봉과 不可分の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중국 역법의 사용

10) 예컨대 『舊唐書』 卷84 列傳 第34 劉仁軌에 “初, 仁軌將發帶方州, 謂人曰: ‘天將富貴此翁耳’, 於州司請曆日一卷, 并七廟諱, 人怪其故. 答曰: ‘擬削平遼海, 頒示國家正朔, 使夷俗遵奉焉.’ 至是皆如其言”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서도 唐의 정사를 확산시키는 것이 곧 당의 天下秩序를 확대하는 상징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新唐書』 卷221上 列傳 第146上 西域上 吐谷渾, “順久質華, 國人不服, 卒爲下所殺, 立其子燕王諾曷鉢. 諾曷鉢幼, 大臣爭權, 帝詔侯君集就經紀之. 始請頒曆及子弟入侍, 詔封諾曷鉢河源郡王, 號烏地也拔勒豆可汗.”

은 중국 측의 책봉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토욕혼의 반력 요청에 당 태종이 낙갈발을 책봉한 사실은 이를 말해 준다. 반력 요청은 곧 책봉 요청이나 다름없었다. 고구려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간 고구려가 對中 朝貢册封關係를 유지해 오면서 최소한 형식상 으로나마 중국 측의 정식을 받아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찍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쌓아 [...] 또 靑丘의 바깥에서 모두 職貢을 다하고, 碧海 가까이에서 함께 ‘正朔’을 받는데 [...] ¹²⁾

朕은 寶命을 삼가 받들어 온 세상에 군림하여 [...] 왕은 일찍이 遼左를 다스리며 세세토록 藩服에 살며, ‘正朔’을 받아 가고자 하여 멀리서 職貢에 순종하였다. ¹³⁾

위의 기록은 각기 612년 수 양제가 고구려 침공 당시 반포한 조서 및 622년 당 고조가 고구려에 포로교환을 부탁하며 영류왕에게 전달한 국서의 일부다. 여기서 공통적으로 고구려가 중국의 ‘정식’을 받아왔던 사실이 언급되고 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 역법 사용의 ‘前提’로서 조공책봉관계의 定立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로 보아 고구려 사절의 반력 요청은 책봉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순조롭다. 『자치통감』에서 고구려의 반력 요청 뒤에 당의 삼국 왕 책봉이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 역시 이러한 순서가 자연스런 것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623년 12월에 입당한 고구려 사절은 賀正使의 임무도 지니고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반력 요청이 使行의 주된 목적이었을 것이다. 중국 측 기록에서 모두 ‘사신을 파견하여 책력을 요청하였다’는 식으로

12)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3年, “曾不懷恩, 爲長惡, 乃兼契丹之黨, 虔劉海戍, 習鞅鞬之服, 侵遼西. 又靑丘之表, 咸修職貢, 碧海之濱, 同稟正朔, 遂復攘琛, 絕往來, 虐及弗辜, 誠而遇禍.”

13) 『舊唐書』卷199 東夷列傳 第149 高麗, “朕恭膺寶命, 君臨率土. 王既統攝遼左, 世居藩服, 思稟正朔, 遠循職貢.”

서술한 점은 이를 말해 준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반력 요청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난다. 즉, 그것은 영류왕이 당에서 책봉을 받고자 한 것이었다.¹⁴⁾ 그러면 영류왕이 당의 책봉을 받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이 의문을 매듭지으려면 이 시기 고구려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인식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Ⅲ. 榮留王代 고구려의 조공책봉관계 인식

1_ 5~6세기 고구려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인식의 흐름

총래 고구려와 중국왕조 간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국내학계 논의의 틀은 두 가지다. 하나는 ‘名實論’으로, 조공책봉관계가 명분상 설정한 수직적 上下關係는 실제 현실의 전개양상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으며, 이 점은 특히 고구려와 중국왕조 간의 조공책봉관계에서 두드러졌다는 것이다.¹⁵⁾ 이는 당시의 국제역학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결과로 그 의미가 적지 않지만, 현상분석에 그쳐 고구

14) 다만, 여기서 한 가지 解明할 점은 624년 2월 7일에 이루어진 ‘許之’의 의미다. 『통전』·『당회요』의 기록에서는 ‘許之’가 ‘請頒曆’에 대한 ‘허락’으로 읽히지만, 이상에서 본대로 그것은 성립할 수 없다. 당시 장안에 입성한 견당사들은 대개 2, 3개월 정도 체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권덕영, 1997, 앞의 책, 238쪽), 그렇다면 624년 2월 초 무렵은 623년 12월 장안에 입성한 고구려 사절이 귀국길에 올라야 할 시점과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624년 2월 7일은 고구려 사절이 당의 冊封使 沈叔安과 함께 귀국길에 오른 시점이 아니었을까 한다. 실제 이것은 결국 고구려가 요청한 頒曆 곧 책봉을 당이 ‘허락’했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고구려 사절이 당 측에서 정식을 받은 시점은 아마 책봉이 결정된 시점이 아니었을까 한다.

15) 노태돈, 1999,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篠原啓方, 2006, 『高句麗의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창석, 2010, 「6~8세기의 동아시아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려가 조공책봉관계를 지속한 근원적 동기는 설명에서 제외된 인상을 준다. 다음으로 '獨自勢力圈論'이 있다.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는 중국왕조와의 조공책봉관계 수립을 자국의 독자세력권을 공인받는 절차로 인식했으나 중국 중심의 一元的 국제질서를 지향한 隋는 이를 부정했고 이러한 양국 간의 인식차가 상호 충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¹⁶⁾ 이렇게 볼 경우 책봉을 통한 독자세력권의 공인이 고구려인들에게 과연 '超時代的'으로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졌을지의 문이 생긴다. 아울러 고구려가 중국왕조의 책봉을 통해 독자세력권을 공인받은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한반도 내 고구려가 구축한 질서와 對中 조공책봉관계 간의 상호관계는 간과된 아쉬움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 내 고구려적 질서와 對中 조공책봉관계 간의 상호관계에 역점을 두고 고구려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인 나름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최초의 인식은 廣開土王碑文에서 확인된다.¹⁷⁾ 비문에서는 '朝貢' 또는 '貢'이라는 용어가 총 4회 확인된다. 비문에 따르면 백제·신라·東夫餘는 전통적으로 고구려에 조공해 왔으며, 息愼은 永樂 8년 정벌을 계기로 고구려에 조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백제·신라·동부여는 모두 '屬民'으로 기술되고 있다.¹⁸⁾ 여기서 확인되는 고구려인들의 '조공관계'에 대한 인식은 '속민'인 국가·종족이 고구려에 조공하는 형태로 '上下關係'였음이 뚜렷하다. 백제의 아신왕이 광개토왕에게 영원히 '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한 것이나 신라의 내물왕이 '노객'을 自稱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이때의 상하관계가 '主·奴관계' 차원임을 시사한다. 고대의 身

16)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임기환, 2003,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 관계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여호규, 2006, 「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冊封關係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여호규, 2006,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임기환,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17)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8)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이나 “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中叛不貢”의 구절은 이를 말해 준다.

分制的 질서를 국제관계에 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¹⁹⁾ 이는 對中 조공책봉관계에서 상하관계를 君臣관계로 수식한 것과는 다른바, ‘土着的’인 느낌이 훨씬 강하다. 아울러 조공국이 중간에 배반하면, 곧 征討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인식도 확인된다. 물론 조공국이 위협에 처했을 때 被朝貢國인 고구려가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도 미약하게나마 엿보인다. 예컨대 ‘전통적 조공국’인 신라왕이 영락 9년 ‘노객’을 자칭하며 倭의 군사적 위협을 호소하자 광개토왕이 신라의 충성을 ‘矜恤’히 여겨 왜를 막을 계책을 제시하고, 이듬해 출병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은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고구려인들이 중국왕조와의 ‘조공책봉관계’에서도 반드시 이와 같이 인식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광개토왕비에 기술되어 있는 백제·신라·동부여와의 ‘조공(공납)관계’는 고구려가 중국왕조와 맺은 ‘조공책봉관계’와는 질적으로 달라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異見이 분분한 영락 9년조의 “以奴客爲民歸王請命”이라는 구절이 주목된다.²⁰⁾ 일단 文理대로만 직역해 보면, 이 구절 전체는 “노객이 민이 되어 왕에게 귀의하여 명령을 청합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순조로운데, 종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그러나 이를 광개토왕비에 묘사된 조공관계에 介在된 名分的 질서가 고대적 신분질서였음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된다. 즉, 고대의 신분제적 질서 속에서 관념상으로나마 ‘奴’의 신분으로는 ‘主’인 왕에게 講을 할 수 없었을 것이고, 이에 신라왕이 광개토왕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 스스로를 ‘民’으로 수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이는 분명 중국왕조와의 조공책봉관계 속에서 작동한 명분적 질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19) 김영하, 2012, 「廣開土大王陵碑의 정복기사해석」, 『한국고대사연구』 66, 239쪽

20) 『역주 한국고대금석문』에 따르면, 정인보·박시형·김석형·천관우 등은 이를 “신라왕인 저 노객은 고구려왕인 당신의 백성이 되어 있으므로”라고 풀었으며, 반면 武田幸男은 노객을 백제왕으로 보고 “(이전부터 고구려왕의) 奴客(이었던 백제왕)을 (왜의) 民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뜻으로 풀었다고 한다. 반면 노태돈은 “왜가 고구려왕 당신의 노객인 신라왕을 (왜의) 民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라고 해석하였다.

그런 면에서 비문이나 충주고구려비에서 ‘책봉’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역시 주목된다. 종래 이 점은 의문이었는데²¹⁾ 사실 고구려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비문의 맥락상 만일 고구려가 신라를 책봉한 사실이 있다면 분명 이를 특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 고구려가 신라를 책봉하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 다만 비문에서는 고구려가 백제·신라·동부여를 책봉하는 대신 ‘노객’의 맹세를 받거나 포로나 전리품을 가지고 ‘귀환’하는 행위만이 확인된다. 그러면서 이를 왕의 ‘恩惠’로 포장하고 있다. 예컨대 영락 6년조에서 백제왕이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고 맹세하자 태왕이 ‘恩赦’했다는 기술이나, 영락 20년조에서 광개토왕이 이끈 군대가 동부여의 왕성에 이르자 “왕의 은혜가 두루 미쳐 이에 귀환하였다(王恩普覆 於是施還)”라는 구절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중국 天子의 책봉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德化論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주지하다시피 책봉 행위에 깔려 있는 중국 황제의 덕화론은 ‘오랑캐’를 황제의 덕을 통해 教化, 복종시킨다는 것이었다.²²⁾ 그런데 비문에 설정되어 있는 왕의 ‘은혜’는 왕의 군대가 상대를 충분히 병탄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강하다. 이는 중국과는 다른 고구려적 특징인 동시에 고구려왕의 자애로움과 덕을 표출하는 방식이 중국 천자와는 차이를 나타낸다. 즉, 고구려왕이 백제·신라·동부여를 책봉하지 않은 것은 고구려왕이 스스로를 중국천자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²³⁾

아무튼 이로 볼 때 광개토왕비의 내용에는, ‘대중관계’에 적용되던 고구려

21) 임기환, 2003, 앞의 글, 27쪽

22) 堀敏一·지음·정병준 외 역, 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65~70쪽

23) 이에는 당시의 현실적인 면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한다. 즉, 당시의 역사적 발전단계로 볼 때 중국과의 교섭이 거의 없었던 신라나 동부여를 상대로 중국식의 책봉을 행하고, 그것의 의미를 인식시키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충주고구려비 단계에서는 신라를 ‘東夷’라 지칭하는 등 중국적 華夷觀을 원용한 면이 엿보인다. 이는 충주고구려비 단계로 가면서 고구려가 중국적 질서나 명분을 한반도 내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식 책봉과 그 의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고구려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임기환, 2003, 앞의 글, 27쪽).

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인식이 표면상에 드러나 있지 않은 셈이다.²⁴⁾ 그리고 이처럼 중국과 다른 고유의 질서 이념을 갖고 있었다면, 고구려는 중국적 조공책봉관계의 이념적 질서를 內在化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적인 고유한 질서가 그대로 유지, 추구되는 한 그것은 계속 그러하였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고구려가 중국왕조와 조공책봉관계를 유지한 것은, 그 자체 일차적으로 중국왕조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했음을 짐작케 한다. 단적으로 北魏·北齊·隋·唐과의 관계에서 고구려가 필요나 상황에 따라 조공을 중단하기도 하고, 재개하기도 한 사실은 이를 말해 준다. 단, 그럼에도 조공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인의 多元的·並存的 天下觀과²⁵⁾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고구려는 이러한 독자적 질서를 북중국왕조의 책봉을 통해 공인받았다. 이때의 '독자세력권 공인'이란, 고구려가 그간 구축한 독자세력권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經略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²⁶⁾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고구려의 독자세력권이 안정적으로 관리, 유지되는 전제 위에서 가능한 것이다. 고구려 사신 芮悉弗과 북위 世宗 간의 대화내용은 이를 말해 준다.²⁷⁾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에서 고구려의 '專制海外'에만 주목해 왔지만, 예실불이 백제와 勿吉이 고구려의 독자세력권을 위협해 기존의 조공품인 황금과 珮를 진상할 수 없게 되었다며 호소한 사실은, 고구려가 독자세력권을 잘 통제하고 있을 때 對北魏 조공 역시 조공품목의 변동 없이 안정적 지속이 가능했음을 시사한다. 또 이에 대해 북위 세종이 백제와 물길을 평정해 종래 貢獻해 온 토산물을 빠트리지 말라고 당부한 사실은, 북위 측이 고구려의 독자세력권을 공인해 준 의미에 대한 '확인'으로서 고구려의 조공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고구려의 독자

24) 다만 여호규는 광개토왕비의 영락 5년(395)조에서 後燕과의 치열한 각축전을 통해 요동지역을 확보한 사실이 광개토왕의 순수라는 형태로 둔갑되어 있음을 들어 고구려의 二重的 對中認識이 드러난다고 하였다(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25) 노태돈, 1999,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앞의 책, 386~387쪽

26) 박한제, 1995(重版),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일조각, 214~215쪽

27) 『魏書』 卷100 列傳 第88 高麗

세력권이 균열된다면, 그래서 조공품목 등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면 북위 측이 고구려의 독자세력권을 ‘공인’해 준 의미가 半減, 퇴색되고 말 것이었다. 북위 세종의 당부는 그런 면에서 음미해볼 만하다.

그런데 6세기 중엽을 고비로 고구려가 한반도 내에 구축해 놓은 독자적 질서는 무너졌다. 신라와의 密約은 이를 상징했다.²⁸⁾ 고구려가 수세적 입장에서 신라와 通好했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 질서는 대등한 단계로 전환되었다. 6세기 말 고구려 집권층 내에서 제기된 담론인 故土回復論은²⁹⁾ 이런 反轉을 극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내 국가와 중국이 직접 연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565년 眞興王이 北齊로부터 최초로 책봉을 받았던 것이다.³⁰⁾ 물론 여기서 백제는 조금 예외였다.³¹⁾ 백제는 일찍이 중국과 교섭하며 책봉을 받았고, 비문에 묘사되어 있듯 倭와도 연결을 도모하며 고구려적 질서에 순응치 않았다. 그래서 그간 한반도 내 고구려적 질서는 주로 신라를 통해 관철되어 왔다. 충주고구려비는 이를 상징한다. 따라서 북제의 신라 책봉은 한반도 내 고구려적 질서의 균열을 상징했다. 한편, 서북방에서 종래 고구려가 契丹과 靺鞨을 대상으로 구축해 놓은 질서와 세력권은 일단 유지는 되었지만, 이조차 수와 突厥에게 위협받은 바 있었다.³²⁾

이러한 고구려적 질서의 균열은 종래 고구려인들이 독자세력권의 자율권을 공인받는 수단으로 인식한 책봉의 의미가 半減되어 재조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의미했다.³³⁾ 그러면 이는 어떤 형태로 변질되었을까? 고구려적 질서

28) 노태돈, 1999, 「6세기 중반의 정세변동」,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429~434쪽

29) 윤성환, 2011a,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지배세력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民族文化』 37, 155~160쪽

3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6年

31) 이용현은 비문의 백제를 ‘일시적으로 노객이 되었던 대상’으로 파악하였다(이용현, 2006,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동아시아 인식」, 『고구려연구』 22, 192쪽).

32) 이용범,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 企圖와 突厥」, 『사학연구』 4; 노태돈, 1999, 앞의 책; 이성제, 2005, 앞의 책; 임기환, 2006, 앞의 글 등 참조.

33) 물론 7세기까지도 서북방 지역의 거란, 말갈 등을 대상으로 고구려가 구축해 놓은 질서 혹은 세력권은 상당부분 유지되었다고 여겨지므로, 6세기 후반 이후 중국왕조가 책봉을 통해 고구려 독자세력권을 공인했을 때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적어도

의 균열은 최초로 신라와 중국왕조가 직접 연결되어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고구려는 564~565년 급박하게 대북제외교를 재개했다. 중단한 뒤 對陳外交를 개시하는 한편, 그간 관계가 없던 왜에 사절을 보냈다.³⁴⁾ 고구려가 중국왕조와 한반도 세력 간의 상호 연결을 크게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수의 등장으로 중원 통일제국과 삼국 간 力關係의 연결이 시급하고 우려스러운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차 고구려·수 전쟁이 막 종결된 598년 9월, 백제는 隋軍의 길잡이가 될 것을 청했다. 이에 隋文帝는 전쟁이 종결되고 고구려를 용서했음을 들어 이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고구려는 영양왕이 직접 나서 백제를 공격해 엄중히 경고했던 것이다.³⁵⁾

그러면 고구려가 ‘독자세력권 공인’을 중원 통일제국이 한반도 내 국가와 연결해 고구려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재규정하고, 이를 중국 측에 요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와 관련해 수 문제가 1차 고구려 침공 직후 백제의 길잡이 요청에 대해 고구려를 용서했음을 들어 거절한 사건이 주목된다. 고구려를 ‘용서(=赦之)’했다는 것은 수 문제가 처음 고구려를 침공할 때 삭탈했던 영양왕의 책봉호를 다시 복구시켜 준 것을³⁶⁾ 의미한다. 여기서 잠시 수의 영양왕 책봉 과정을 보면, 수는 영양왕을 ‘上開府儀同三司·遼東郡公’에 책봉했는데 이는 거란보다 낮

고구려 서북방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는, 北魏代의 그것과 같을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6세기 중반 이후 중국왕조의 책봉을 통한 고구려 독자세력권 공인이 지니는 의미는, 고구려 서북방과 남방에 각기 차별적으로 적용된 셈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후속 논고의 과제로 미룬다.

34) 이성시, 1990, 「高句麗와 日隋 外交」, 『백사이우성교수정년퇴직기념논총-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上, 창작과비평사; 이성제, 2009,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 交涉과 그 意味」, 『한국고대사탐구』 2

35)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年;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威德王 45年. 윤성환, 2011b,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鄉土서울』 79, 31쪽

36)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9年; 『隋書』 卷81 東夷列傳 第46 高麗

고 백제와 동급의 책봉호로 고구려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³⁷⁾ 이듬해 영양왕은 遣隋使를 보내 수의 증원통일(祥瑞)을 축하하고 요동군공에서 '高麗王'으로 책봉호 승격을 요청했고, 수 문제는 이를 허락했다.³⁸⁾

이상에서 확인되듯 영양왕 책봉과정에서 고구려가 중시한 것은 郡公號를 本國王號로 승격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여전히 고구려가 책봉을 통해 독자세력권을 공인받는 측면을 중시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南北朝末 이후 중국왕조의 책봉호에서 持節號, 將軍號, 都督諸軍事號가 탈락되는데, 이는 더 이상 주변제국의 현실적 지배력을 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³⁹⁾ 그러면 고구려는 이러한 책봉호 구성의 변화가 지니는 의미를 인식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책봉호 구성에서 그간 고구려의 독자세력권을 상징하던 '東夷校尉'나 '東夷中郎將'이 빠진 것에서⁴⁰⁾ 이 점은 확연했는데 말이다. 아무리 고구려가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종전 인식에 젖어 있었을지라도 이 같은 변화의 숨意마저 감지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수 문제는 책봉호를 통해 동방세계에서 고구려의 우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이러한 수의 의지를 고구려가 몰랐을까? 그렇지 않다. 영양왕이 책봉호 구성을 수와의 외교현안으로 여겨 교섭에 나선 사실 자체가 이를 말해 주기 때문이다. 이처럼 남북조 말 이후 중국 측의 책봉이 피책봉국의 독자세력권을 공인하던 것에서 그 의미가 변질되었음을 인지했음에도 고구려는 종전의 의미를 최소한으로나마 살려두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구려가 '독자세력권 공인'의 의미를 종래의 그것에서 재조정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무렵 고구려가 對新羅攻勢를 병행하여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590년대 초 무렵 溫達은 鷄立峴과 竹嶺以西 지역을 목표로 出征했다.⁴¹⁾ 그런데 이는 신라와 수의 연결

37) 여호규, 2002, 앞의 글, 26쪽

38) 『隋書』卷81 東夷列傳 第46 高麗;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卽位年·2年條

39) 이와 관련해서는, 여호규, 2002, 앞의 글; 여호규, 2006, 앞의 글 참조.

40) 여호규, 2002, 위의 글, 15~17쪽

41) 『三國史記』卷45 列傳5 溫達

을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 실제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대수관계를 수립하는바, 신라의 대수외교 개시가 미뤄진 데에는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⁴²⁾

이로 보건대 고구려는 被册封의 의미 속에 수가 한반도 내 국가와 연결해 고구려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새롭게 부여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598년 전쟁 직후 수 문제가 백제의 제의를 ‘영양왕의 책봉호 복구 사실’을 들어 거절한 사실이 비로소 이해된다. 사실 수로선 백제의 제안이 매우 소망스러웠을 것임에도⁴³⁾ 대놓고 백제의 제안을 수용하지 못한 것은 수가 책봉에 대한 고구려의 새로운 의미 규정을 고려한 결과일 것이다.⁴⁴⁾ 전쟁이 수

42) 이영재, 2012, 「6세기 말 고구려의 정국과 대외교섭 재개의 배경」, 『역사와 현실』 83, 42~43쪽

43) 윤성환, 2011b, 앞의 글, 31쪽

44) 한편, 여기서 645년 당의 제1차 고구려 침입 때까지 수·당은 백제·신라의 군사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고구려를 협공하려는 전략을 채택한 적이 없으므로 애당초 수·당은 백제·신라에 별 관심이 없었고, 따라서 고구려가 한반도 중남부 국가와 수·당의 연결을 크게 우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북제와 신라의 연결에 예민하게 반응한 바 있고, 또 그러한 고구려의 우려는 수·당 대외정책의 노선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였다. 예컨대 수·당이 백제·신라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취할지라도 반대로 백제·신라가 고구려를 염두에 두고 수·당에 적극적 입장을 취한다면, 고구려의 안위와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고구려로서는 반드시 백제·신라와 수·당 간의 ‘군사적 차원의 협력’만이 우려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동북아 내에서 ‘외교적 차원의 反고구려 동맹’이 형성될 경우 이 역시 고구려로서는 대비해야 할 문제였다. 수 문제의 경우 백제 사신이 처음 수를 찾았을 때 매년 入貢하지 않아도 된다며 백제와의 관계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590년 수가 영양왕의 책봉호를 백제와 동급으로 수여한 사실은 수 문제의 대고구려정책 시야 안에 백제가 제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는 598년 단독으로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는 당시까지 외교적으로는 수의 지평 내에 백제·신라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군사적으로는 그러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수의 단독 고구려 침입은 실패했고, 그 직후 백제의 사절이 길잡이 요청을 했다. 이에 대한 수 문제의 반응은 백제 사신을 후대한 것으로서 이전과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반응이었다. 아무튼 1차 고구려 침공의 실패는 수의 고구려를 향한 ‘군사적 시야’ 안에 백제·신라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양제가 백제 무왕의 길잡이 요청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613년에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 대고구려 협공을 제의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때는 백제·신라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수의 시도가 무산되었다. 백제는 兩端策을 쓰

의 패배로 귀결되고, 영양왕의 책봉호를 복구시킨 직후의 상황에서 수로서는 고구려의 입장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는 책봉에 대한 인식을 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인식의 틀은 종전의 인식에 기초한 것이었으나, 그 내용은 종전과 다른 것으로서 중원 통일제국과 한반도 내 국가가 상호 협력해 고구려를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고구려 집권층들은 6세기 중엽 이후의 현실을 겪으며 국제관계에서 구축된 어떤 '질서'가 可變의이고 유동적인 것임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라 예상된다.⁴⁵⁾ 물론 고구려가 옛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복고적' 시도를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중원에서 강대한 통일제국이 등장한 탓에 廣開土王代처럼 남쪽에 군사력을 집중시켜 백제·신라를 몰아붙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고구려는 7세기 초에 이르러 종래 적대적이던 백제와 연결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⁴⁶⁾

이처럼 자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주변질서가 균열되는 경험을 한 고구려 집권층들이 국제질서를 고정불변의 제도화된 질서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적다.

며 정세를 관망하고 있었고,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위협을 들어 수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이다(윤성환, 2011b, 위의 글, 20~32쪽). 그런 한편 이때 신라군은 단독으로 北進해 고구려의 南境을 공략했다. 이는 당시까지 한반도에 닿은 수의 구심력의 파장이 구속력을 지니지 못했음과 더불어 이 시기 동북아 국제질서를 이해할 때 백제·신라의 주체적 입장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뜻한다. 이후 당은 삼국 간 力關係에 적극 개입하려 시도했다. 624년 삼국 왕 동시 책봉이나 627년 백제의 대 신라 공격에 대한 개입 등은 이를 보여준다. 또 645년 당의 고구려 침입 시에는 실제 신라군이 이에 호응해 복진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고려할 때, 고구려로서는 수·당의 反고구려적 입장이나 백제·신라의 反고구려적 입장 모두 우려스러운 것이었고, 미래에 대비하려면 양자가 연결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5) 그런 점에서 "고구려와 중국의 관계는 책봉체제나 조공관계와 같은 제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국 및 주변 여러 나라들의 역학관계 여하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었다"는 지적은(박대제,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47쪽) 중요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46) 윤성환, 2011b, 앞의 글, 35~38쪽

물론 광개토왕비 단계에서도 고구려적 질서의 존재를 근거로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를 대중외교의 '수단'으로 여겼지만, 6세기 중엽 이후 이러한 인식은 변함없이 한층 더 강화되었을 것이다. 수 문제는 590년 고구려에 보낸 璽書에서 “왕이 해마다 사신을 보내 항상 조공하며 비록 번부라 칭하기는 하지만, 성절을 다하지 않는다”⁴⁷⁾며 책망했던바, 이는 고구려 측에서 조공책봉관계를 외교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활용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실제 평원왕이나 영양왕이 수와의 관계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책봉을 받은 이후에도 장기간 조공을 중단했던 사실들은⁴⁸⁾ 이 점을 극명하게 말해 준다.

수 문제는 새서에서 수와 고구려의 관계를 천자·신하의 질서로 규정했고, 실제 598년 2월 고구려가 요서를 선제공격하자 수 문제는 영양왕의 官爵을 삭탈했다.⁴⁹⁾ 조공책봉관계의 명분상 '藩臣'인 영양왕이 '천자'인 수 문제에게 정면 도전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 결과, 수 문제의 언명과 시도가 지닌 허위성이 드러났다. 한편 이때 영양왕은 수에 보낸 표문에 “遼東糞土臣元”이라 썼는데⁵⁰⁾ 여기서 '臣'을 표방한 것은, 비록 수가 영양왕의 관작을 삭탈했지만, 그간 수가 요구하던 천자·신하의 질서를 근거로 활용하여 신하임을 자처해 수군의 퇴각명분을 주려는 의도로 읽힌다. 즉, 고구려는 조공책봉관계에서 수가 내세운 '질서'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며, 수군의 침공 명분을 희석시키고, '명예로운 撤軍'을 유도했던 것이다. 수 역시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에 이러한 고구려의 대응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퇴각했다. 하지만 수 양제의 조서에 나오듯 이후에도 고구려는 '번신의 예'를 다하지 않았다.⁵¹⁾ 이러한 사실들은 고구려가 조공책봉관계에 내재된 질서를 내면화하지

47) 『隋書』卷81 東夷列傳 第46 高麗

48)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기록만 보더라도 평원왕은 585~590년까지, 영양왕은 593~596년, 601~618년의 기간 동안 對隋朝貢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면적 현상만 보아도 고구려가 수와의 조공책봉관계를 그 자체로 내면화·내재화한 것이 아니며, 도구적 수단으로 여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49) 『隋書』卷2 帝紀 第2 高祖 下 開皇 18年 6月

50) 『隋書』卷81 東夷列傳 第46 高麗

51) 『隋書』卷4 帝紀 第4 楊帝 下 大業 八年 正月 壬午

않은 채 그것을 대중외교의 수단으로만 활용했음과 더불어 조공책봉관계의 현실적 규정력이 고구려의 태도에 의해 실질적일 수 없었음을 말해 준다.

2. 對隋戰爭 이후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부

고구려와 중국왕조 사이에는 6세기 말~7세기에 걸쳐 치열한 격돌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 시기 전쟁은 고구려가 수·당과 맺은 조공책봉관계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웅변해 주는 것이었다.⁵²⁾ 그러므로 수와의 대규모 전쟁을 거치며 고구려의 조공책봉관계 인식에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앞의 논의에 연속해 두 가지 면부터 살펴보자. 앞서 6세기 후반 이후 고구려 측에선 책봉을 통한 ‘독자세력권 공인’의 의미를 조정했음을 살폈다. 그러면 이때 재조정된 인식이 영류왕대에도 지속되었을까? 이와 관련해 625년과 626년, 신라·백제가 각기 당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가 길을 막아 조공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한 사실이 주목된다. 또 이때 신라는 고구려가 자주 침입한다는 호소도 함께 했던바,⁵³⁾ 이 기록을 백제·신라의 전략적 외교 차원으로 해석해 허위적(修辭)로 보는 시각도⁵⁴⁾ 있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⁵⁵⁾ 여기서 신라 측 호소에 따르면, 고구려는 신라의 대당외교 차단과 대신라공세를 병행하여 추진했던 셈이다. 즉, 고구려의 對新羅政策에서 대당외교 차단과 무력공세는 서로 무관치 않았다. 이와 함께 백제와 신라가 당에 호소한 시점이 당의 삼국 왕 동시책봉 직후인 점이 주목된다.

624년 당은 영류왕에게 정2품의 勳官인 上柱國을, 무왕과 진평왕에게는 종2품인 柱國을 수여해 고구려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⁵⁶⁾ 그런데 그 직후 고구

52) 박대제, 2007, 앞의 글, 52쪽

5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7年;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27年

54)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 2, 한길사, 171쪽

55) 윤성환, 2011 가을, 「영류왕, 대당온건파로 꺾맞춰진 오류」, 『내일을 여는 역사』 44, 279~280쪽

56) 여호규, 2006, 앞의 글 48쪽

려는 백제·신라의 대당외교 차단에 나섰다. 이에는 당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와 함께 삼국 왕을 동시책봉한 당의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깃들어 있었을 것이다. 당의 삼국 왕 동시책봉은 삼국 간 역관계를 활용하고, 그것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⁵⁷⁾ 고구려의 책봉에 대한 인식과 정면충돌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직후 백제·신라의 대당조공을 차단하려 시도한 것을 보면, 이때까지도 고구려 집권층은 6세기 후반 재조정된 책봉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실은 고구려가 여전히 조공책봉관계를 대종외교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조공책봉관계의 규범적 원칙상 피책봉국은 다른 피책봉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거나 책봉국과의 연결을 차단해선 안 되었다. 이는 책봉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당은 백제·신라의 호소 직후 즉각 삼국 간 관계증수에 나섰다.⁵⁸⁾ 그럼에도 고구려는 피책봉국의 조공을 방해했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가 對南方政策에서 책봉국인 당의 입장이나 규범상의 원칙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곧 고구려가 조공책봉관계에서 작동하는 질서나 규범을 내재화하지 않고, 그것을 도구적 수단으로만 인식했음을 말해 준다. 이로 보면 영류왕대에도 이러한 '전통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었던 셈이다. 실제 영류왕 역시 당의 위협이 있자 곧 대당조공을 중단했다.⁵⁹⁾

그렇다면 對隋전쟁 이후에도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종전의 인식-6세기 후반 이래 재조정된 인식-에 근원적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왜 그랬을까? 아마 전쟁이 조공책봉관계의 '허구성'을 폭로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현실 속에서 조공책봉관계는 고구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 물론 고구려 집권층은 이 점을 대수전쟁 이전에도 인식하고 있었다. 평원왕이 수와 조공책봉관계를

57) 윤성환, 2011 가을, 앞의 글, 285쪽

58)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9年; 『三國史記』卷27 百濟本紀5 武王 27年;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8年 종합.

59) 631년 당 태종은 고구려에 대해 무력시위를 했던바(『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14年) 이후 고구려의 대당조공외교는 639년에야 재개된다(『舊唐書』卷3 本紀 第3 太宗下 貞觀 13年).

수립했음에도 수의 중원통일소식을 접한 뒤 ‘大懼’하여 ‘拒守之策’을 강구한⁶⁰⁾ 사실은 이를 보여준다. 즉, 대수관계를 조공책봉관계 차원이 아닌 國際力學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영류왕대에도 마찬가지여서 641년 고구려를 방문한 唐使 陳大德은 당 태종에게 당시 고구려의 분위기를 “그 나라가 高昌이 망한 것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⁶¹⁾ 보고했던바, 이에서 나타나 듯 고구려 집권층은 당의 세력팽창을 근거로 곧 그 예봉이 고구려로 향하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이로 보아 고구려 집권층은 국제관계가 국제역학의 운동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인식은 대수전쟁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을 것이다.

한편, 책봉에 대해 6세기 후반 재조정된 인식이 영류왕대까지 이어졌다면, 영류왕이 당에서 책봉을 받으려한 데에는 당과 백제·신라가 공조해 고구려를 위협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⁶²⁾ 실제 고구려는 당의 책봉 직후 백제·신라의 대당조공외교를 방해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구려의 방해가 영류왕이 당에서 책봉을 받고자 했던 필연적인 동기가 될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책봉이 고구려의 그런 인식을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당에서 책봉을 받을지라도 백제·신라의 대당조공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었을 뿐더러, 당 또한 고구려와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고라도 백제·신라와의 외교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수전쟁을 거치며 고구려 집권층의 조공책봉관계에 내포한 허구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런 만큼 영류왕대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인식’ 차원의 접근으로는 영류왕의 頒曆 요청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판단

60)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32年

61)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4年, “其國聞高昌亡, 大懼, 館候之勤加於常數.”

62) 실제 수는 613년 신라에 王世儀를 사신으로 보내 신라와의 공조를 통해 대고구려 전쟁을 수행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었다. 다만 당시 수의 이러한 시도는 신라의 거부로 무산되었다(윤성환, 2011b, 앞의 글, 27~30쪽). 따라서 고구려는 당과 백제, 신라가 협력해 고구려를 위협하는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충분히 지닐 수 있었다고 보인다.

된다. 이제 620년대 전반 고구려와 당을 둘러싼 정세와 상호 인식, 정책으로 눈길을 돌릴 차례다.

IV. 619~624년 당의 對高句麗 정책

1_ 당이 영류왕을 책봉하지 않은 까닭

618년은 공교롭게도 고구려에서는 왕위교체가 이루어지고, 중원에서는 수·당교체가 이루어진 해였다. 이어 이듬해 2월 고구려는 당에 사신을 보냈다.⁶³⁾ 대단히 신속하고 능동적인 외교행보로, 이 시기 고구려가 대륙의 정세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고구려의 중원 정세변화에 대한 기민한 외교행보는 이미 平原王代에도 나타난 바 있다.⁶⁴⁾ 이처럼 고구려는 조공·책봉 관계를 매개로, 늘 자국을 둘러싼 대외현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중원의 정세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고, 이러한 전통이 영류왕대 대당외교 開始에도 투영되었을 것이다. 다만, 619년의 경우 중원의 정세가 아직 유동적인 상황에서 고구려의 사신 파견이 이루어진 점, 고구려와 당 양국 간에 곧바로 조공·책봉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이전과의 차이를 지적해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무렵 당은 일개 群雄세력에 불과했고, 그런 면에서 굳이 고구려가 당을 선택한 까닭이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당은 長安을 장악하고, 형식상

63)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2年

64) 가령 577년 北周가 北齊를 병탄하고, 북중국을 통일하여 고구려와 경계를 맞대게 되자 평원왕은 이해 즉각 북주에 사신을 파견해 외교관계를 수립했다(『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19年). 또한 그로부터 4년 뒤인 581년, 수가 건국되었을 때도 고구려는 그해를 넘기지 않고 수에 사신을 보내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했다(『三國史記』 卷19 高句麗本紀7 平原王 23年).

으로나마 수를 계승한 절차를 취해 명분과 실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⁶⁵⁾ 하지만 당이 관중지역을 장악했을지라도 이는 고구려에 밀착된 문제는 아니다.

중원의 정세변화도 중요했지만 전통적으로 고구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은 遼西지역이었다. 隋代에도 요서지역 諸種族의 동향이 高·隋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바, 요서지역의 향배는 고구려의 대외정책과 직결되어 있었다. 특히 營州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북아 諸種族의 각종 물류·정보의 집결지였고, 고구려로서는 요동방위에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자 북방 유목세계와 통하는 통로였다.⁶⁶⁾ 이 점을 중시할 때 수·당 교체의 과정에서 나타난 요서지역의 향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618년 12월 수의 襄平太守 鄧暲가 柳城·北平 두 郡을 거느리고 唐에 내항하자 그를 영주총관에 임명한 사실이 주목된다.⁶⁷⁾ 영주지역은 등고가 당에 귀부함으로써 그 향배가 결정된 것이다. 당 건국 초 변방의 요충에 해당하는 州에 총관부를 설치하고, 총관으로 하여금 몇 개 주의 군사를 통솔하게 했던 만큼⁶⁸⁾ 등고의 영주총관 임명은 당 측에서 이 일대에 대한 그의 군사 통솔을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영주의 향배, 즉 당으로의 귀속이 이듬해 2월 고구려가 당을 선택해 사신을 파견하는 데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 이 사실은 고구려가 수·당교체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요서지역에 대한 공세적 활동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중원과의 외교적 교섭의 방향을 택했음을 드러낸다. 이는 이 시기 고구려의 내부 사정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⁶⁹⁾

65) 김진한, 2009,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117, 319쪽

66) 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북방사논총』 5, 151~155쪽

67) 『資治通鑑』卷186 唐紀2 高祖 武德 元年 12月 丁酉

68) 『資治通鑑』卷185 唐紀1 高祖 武德 元年 6月, “時天下未定, 凡邊要之州, 皆置總管府, 以統數州之兵.”

69) 영류왕 2년의 시조묘 제사를 근거로 영류왕의 즉위과정과 정통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임기환, 2004, 앞의 책, 300~301쪽) 최근에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거나 영류왕권의 안정을 보여주는 사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방용철, 2011, 「高句麗 榮留王代の 정치 동향과 對唐 관계」, 『대구사학』 102,

한편, 고구려와의 최초 교섭에서 당은 영류왕을 책봉하지 않았다. 이로써 양국 간에는 623년까지 공식적인 조공책봉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채로 교섭이 지속되었다.⁷⁰⁾ 당이 이전 왕조와 달리 영류왕을 즉각 책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당 초기의 주변국 책봉 현황을 『구·신당서』 외국전에서 탐색해 보면, 624년 삼국 왕 책봉 이전까지 확인되는 책봉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이 시기 당이 책봉한 대상은 西突厥의 (泥橛)處羅可汗,⁷¹⁾ 서돌궐의 關達設,⁷²⁾ 牂牁蠻의 수령 謝龍羽⁷³⁾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謝龍羽를 제외하면 처라가한과 궤달설에 대한 책봉은 외국 군주에 대한 책봉이 아니었다. 처라가한은 양제의 고구려 침공에 중군한 바 있었고, 우문화급이 李密에게 대패한 뒤 장안으로

4쪽; 정일주, 2011,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16쪽. 그러나 이 같은 문제를 떠나 분명한 점은, 당시 고구려가 대내적으로 대수전쟁에 따른 피해와 그것의 사회적 영향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시기 고구려 사회는 전후재건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풀어야 했고, 이것이 군사동원보다 중원과의 외교적 교섭 방향을 택한 이유였을 수 있다.

- 70) 김진한은 고구려가 당과의 우호관계를 추구한 데는 요해지역으로 침투해 오는 동돌궐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보았다(김진한, 2011, 앞의 글, 325~326쪽). 그러나 武德 初, 당이 돌궐을 능가할 역량을 지니지 못한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고, 고구려는 사신 파견을 통해 이러한 정황을 탐지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당 초기 돌궐과의 관계를 놓고 보면, 고구려의 대당교섭 자체가 동돌궐 견제에 효과적일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돌궐의 영향력이 고구려 서부 국경지대까지 직접적으로 미쳤는지도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 시기 돌궐이 거란을 예측시킨 것은 사료 상에도 나오지만, 앞서 본 대로 전통적으로 고구려의 이해와 직접적으로 맞닿은 영주 지역은 일찍부터 당에 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성제는 이 무렵 고구려가 거란의 이탈로 인해 요서지역에 대한 주도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았다. 수대 동돌궐과 고구려의 교섭에는 거란이 중개 세력으로 개입되어 있었는데, 거란이 일찍부터 당으로 기울어진 탓에 이후 고구려는 요서지역을 통해 동돌궐과 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이성제, 2005, 앞의 글, 159~161쪽).
- 71) 『舊唐書』 卷194下 列傳 第144下 突厥 下 處羅可汗. 泥橛處羅可汗은 수 양제로부터 曷薩那可汗이라는 칭호를 하사받았으며, 『자치통감』에는 曷婆那可汗으로 표기되어 있다. 동돌궐의 처라가한과는 다른 존재다.
- 72) 『舊唐書』 卷194下 列傳 第144下 突厥 下 關達設; 『資治通鑑』 卷185 唐紀1 高祖 武德 元年 7月
- 73) 『舊唐書』 卷197 列傳 第147 南蠻·西南蠻 牂牁蠻

귀순했다. 이에 고조는 그를 우대하고 歸義郡王에 책봉했다. 그러나 동돌궐의 시필가한은 그를 죽이라고 요구했고, 이에 당은 결국 그를 죽였다.⁷⁴⁾ 궐달설은 처음 수의 會寧郡에서 부락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隋末 可汗을 자칭하며 자립했고, 618년 당에 內屬해 吐烏過拔闕可汗을 받았으나 李軌에게 멸망당했다.⁷⁵⁾ 즉, 처라가한과 궐달설은 隋 이래 중원 內地에서 활약했고, 당에 귀순해 당 내지에 머물게 되면서 책봉호를 받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책봉국과 피책봉국의 입장에 입각한 책봉이 아니다. 이는 시필가한의 요구에 처라가한을 결국 죽인 상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처럼 건국 직후의 당은 주변국 군주를 거의 책봉하지 않았다. 당이 주변 국가에 대한 책봉을 본격화하는 것은 624년 삼국 왕 동시책봉 이후로, 특히 동돌궐을 제압한 이후인 630년 이후 두드러진다.⁷⁶⁾ 이러한 외형적 양상이 보여 주듯 당의 책봉행위는 당이 처한 대외현실과 무관하지 않았다. 여기서 당 초기 대고구려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건국 직후 당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국 직후 당은 각지의 군웅집단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고, 동돌궐과의 관계에서는 절대적 열세에 놓여 신속되어 있었다. 수말 천하대란의 틈을 타 굴기한 동돌궐의 위세는 “등으로 거란·실위에서 서쪽으로 토욕혼, 고창 諸國이 모두 신속하였고, 기마궁사가 1백만에 달해 北狄의 성세가 이 같은 적이 없어 陰山을 우러러 보고 中夏를 가볍게 여겼다”는 『구당서』 돌궐전의 표현에서 잘 드러나는바, 수말에 일어난 군웅들은 대부분 신하로서 돌궐을 받들었다. 李淵 역시 태원에서 봉기할 때 돌궐의 원조를 받았고, 그래서 이연이 장안에 입성한 직후부터 돌궐 사신은 매번 찾아와 우대를 받으며 물자를 챙겨갔다. 심지어 이

74) 『舊唐書』 卷194下 列傳 第144下 突厥 下;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舊唐書 外國傳 譯註 上』, 동북아역사재단, 160~162쪽 참조.

75) 위와 같음.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舊唐書 外國傳 譯註 上』, 동북아역사재단, 162~163쪽 참조.

76) 무덕, 정관 연간 당의 주변국 책봉 현황은 여호규, 2006, 앞의 글, 50~51쪽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연은 돌궐사신을 御座에 앉게 하기도 했다. 이때 당의 돌궐에 대한 태도를 두고 『신당서』 돌궐전에서는 ‘屈禮’로 표현하고 있다.⁷⁷⁾ 그런데 돌궐이 당과의 力關係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중원 내부의 혼란이 중요했다.⁷⁸⁾ 실제 돌궐은 薛舉 등 군웅집단과 내통하는 방식으로 당을 불안하게 만들며 뇌물을 울궈내기도 하고, 조금 뒤 劉黑闥과 연합해 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은 군웅세력과 대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외적 주도권을 질 수 없었고, 또 대외적 안정이 절박했기 때문에 돌궐에 대한 우대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⁷⁹⁾

그럼에도 돌궐의 힐리가한은 621년부터 본격적인 중원 공략을 개시했다. 이 과정에서 돌궐은 조금만 불리하면 일시 화친했다 다시 공격을 재개하는 양상을 반복했다.⁸⁰⁾ 그러나 실제로는 이 역시 돌궐이 중원의 혼란을 활용한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은 돌궐의 화친이 진정성이 없는 것임을 알고도⁸¹⁾ 중원내부의 사정을 고려해 이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속에서 당 고조는 625년 8월 이전까지 돌궐을 대등관계를 의미하는 ‘敵國禮’로 대했다.⁸²⁾ 이처럼 618~623년까지 당은 대내적 혼란으로 돌궐과 대등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또 여기에 가중된 돌궐의 침입으로 인해 해외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었다. 이로 보면 당이 고구려를 비롯한 주변국을 즉각 책봉하지 않고, 曆法을 수여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책봉은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명목상으로

77) 『新唐書』卷215上 列傳 第140上 突厥 上,“(頡利可汗이-필자)視中國爲不足與,書辭悖慢,多須求.帝方經略天下,故屈禮,多所舍貨,贈賚不貲,然而不厭無厭之求也.”

78) 『舊唐書』卷194上 列傳 第144上 突厥 上,“始畢自恃其功,益驕踞,每遣使者至長安,頗多橫恣.高祖以中原未定,每優容之.”

79) 『舊唐書』卷194上 列傳 第144上 突厥 上,“頡利初嗣立……有憑陵中國之志.高祖以中原初定,不違外略,每優容之,賜與不可勝計.”

80) 『舊唐書』卷194上 列傳 第144上 突厥 上,“侍臣咸曰,夷狄無信,先自猜疑,盟後將兵,忽踐疆境.可乘其便,數以背約,因而討之.”

81) 『新唐書』卷215上 列傳 第140上 突厥 上,“明年(622),還順德等,且請和,贊魚膠,給云,固二國之好也.帝雖未情,釋其使特勒熱寒等,厚與金還之.”

82) 『新唐書』卷215上 列傳 第140上 突厥 上

나마 구축하려는 것인데, 당 초기의 상황은 그와는 정반대였던 것이다.

2_ 당 초기 대고구려정책의 두 潮流와 그 배경

622년 당 고조는 한 통의 국서를 고구려에 보냈다. 그는 隋末 고구려 침입에 동원된 戰士들 가운데 포로로 사로잡혀 고구려에 거주하는 이들을 모두 송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州縣으로 하여금 중원 땅에 끌려온 고구려인들을 찾아 고구려로 돌려보내도록 했다.⁸³⁾ 즉, 고구려에 편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쌍무적 실천을 제안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 우위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라 '대등한 교환'을 제안한 것이었다. 이는 아직 양국 간에 조공책봉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명분상으로나마 상하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던 상황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는 당 고조의 대고구려 정책 기초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다음을 보자.

짐은 삼가 寶命을 받들어 온 세상에 군림하여 [...] 왕은 일찍이 遼左를 다스리며 세세토록 藩服에 살면서, 正朔을 받아 가고자 멀리서 職貢에 순종하며 사자를 보내 산천을 넘어 정성을 드러내 보이니 짐이 매우 기쁘게 여긴다. [...] 바야흐로 화목함을 펼쳐 영원히 교빙과 우호를 터서 각기 疆場을 보전하면 어찌 매우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다만 수말기 병력 동원과 난리가 연이어져 싸우는 곳마다 각기 그 백성을 잃어 마침내 골육이 헤어지고 집안이 흩어진 채 세월이 흘러가 원한을 풀지 못하였다. 지금 두 나라가 평화를 통해 의리에 막힘과 다름이 없어 여기에 있는 고려인들은 이미 명을 내려 찾는 즉시 돌려보내도록 하였다. 그곳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왕이 放還하여 撫育의 방도를 다해 仁恕의 도를 함께 넓혀 나가야겠다.⁸⁴⁾

83) 『資治通鑑』 卷190 唐紀6 高祖 武德 5年

84) 『舊唐書』 卷199 東夷列傳 第149 高麗;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8 榮留王 5年

이 국서는 당 고조의 대고구려 인식뿐만 아니라 당의 대고구려 정책기조, 외교적 방침의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고구려에 처음으로 전달된 국서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포로교환은 당 고조가 고구려에 제기한 첫 번째 외교 현안이어서 의미가 컸다. 이 국서에서 당 고조는 포로교환 문제가 ‘仁恕의 道’를 넓히는 인도적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 관계 진전의 전제로 隋代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이와 같은 국서가 나오게 된 상황과 맥락을 살펴보자.

수 양제의 고구려 침입과 대규모 병력동원은 중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사실 이미 양제가 고구려 침입에 나서기 전부터 이러한 상황이 우려되고 있었던바, 본격적인 전쟁 동원에 돌입한 611년경부터 각지에서 群盜가 창궐해 無向遼東浪死歌가 유행하였고, 뒷날 군웅으로 떠오른 두건덕은 文帝 때 백만 병력을 동원했음에도 고구려 침공에 실패했는데, 지금 수재로 백성이 곤궁하고 西征까지 감행해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속에서 군사를 징발하는 만큼 天下大亂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 예견했다. 이것이 당시 수 인민들의 일반적 정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서는 遠征에 실패해 전쟁터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어 이산가족이 대량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준비과정에서 노역에 동원되어 희생당한 경우가 속출하면서 폭발했다. 이런 사정은 수말 군웅들이 봉기의 이유를 밝히며 선동할 때 곧잘 활용되었다. 613년 양현감이 ‘요동에서 죽은 자만 만 명에 달한다’며 起兵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모두 만세를 불렀고, 이해 三甾의 군사들은 양제의 고구려 재침 계획을 접하자 612년 당시 ‘고구려 정벌에 동원된 군사 태반이 귀환하지 못했음’을 들어 劉元進에게 대부분 망명했다. 615년 양제 일행이 北塞를 순시하다 돌궐에 포위당했을 때 양제의 측근들은 하나같이 양제가 고구려 정벌중단을 선포해야 사졸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간언했다.⁸⁵⁾ 심지어 李淵조차 처음 거병할 때 劉文靜으로 하여금 민심을 충동질하고자 거짓척서를 작성토록 했던

85) 이상 『資治通鑑』 卷182 隋紀6 煬帝 大業 7·9·11年條 중합.

바 그 내용은 고구려 침입을 위해 곧 민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⁸⁶⁾

이처럼 양제의 잇따른 고구려 원정이 낳은 사회적 후폭풍은 수의 인민과 병사들로 하여금 고구려 원정을 그 자체로 저주의 대상으로 여기게 하였고, 이는 厭戰의식과 反煬帝 정서가 결합하는 형태로 발현되어 봉기에 참여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따라서 당 고조가 고구려와의 관계에서 첫 현안으로 포로교환을 제안한 의미는 일차적으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당 고조는 이를 해결함으로써 사회 안정시책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대내로는 수 왕조와의 차별화인 동시에 고구려에는 당의 수 왕조 계승을 천명하는 효과를 지닐 수 있었다. 이처럼 당은 隋代 대고구려관계에서 파생된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고려하며 대고구려정책을 추진했다.

다음으로 위의 국서에서 대고구려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王旣統攝遼左, 世居藩服”과 “方申輯睦, 永敦聘好, 各保疆場, 豈非盛美”가 그것이다. 고구려의 역사성과 요동 지역에 대한 고유의 통치권을 존중하고 있으며, 교빙과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해 각자 강토를 보전하지는 지향을 담고 있다. 이에 바로 뒤이어 수대의 전란을 기술해 이러한 지향과 수의 대외팽창정책을 대비시켜 그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당 고조는 이 국서에서 당의 대고구려정책은 수의 그것과는 다를 것임을 고구려 측에 각인시키려 한 듯하다. 이런 맥락에서 고구려의 ‘역사적’, ‘공간적’ 독자성을 존중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며, 이는 포로교환을 쌍무적으로 추진하며 먼저 고구려인 포로부터 송환한 고조의 조치와도 통한다.

한편, 당 고조가 이와 같은 의지를 피력했던 배경으로는 흔히 그의 대고구려 인식에 주목하고 있다.⁸⁷⁾ 그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사실이 고조가 배구·운 언박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⁸⁸⁾ 여기서 고조는 ‘명분과 실제의 차이’를 운운하며

86) 『資治通鑑』卷183 隋紀7 恭帝 義寧 元年

87) 여호규, 2006, 앞의 글, 47~48쪽; 김진한, 2011, 앞의 글, 322쪽

88) 『舊唐書』卷199 東夷列傳 第149 高麗

분명 전향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조의 대외인식조차 역사적 현실과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것인 동시에 內政에 대한 고려가 수반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제 고조의 발언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고조는 고구려가 수에 명분상 '칭신'했지만 실제로는 끝내 거역한 '역사적 현실'을 상기시키며 명분과 실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고조의 이 같은 인식에는 당 초기의 상황 역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수에 臣屬했던 돌궐이 수말 혼란기를 틈타 강성함을 떨쳐 '敵國禮'로 대해야 했던 현실적 경험은 고조가 이적과의 관계에서 명분과 실제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였을 것이다. 아울러 고조는 천자의 존대함을 자처하고자 명분상의 稱臣을 강요하고, 또 이를 관철시키고자 국력을 소모하며 인민을 수고롭게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그의 '夷狄'과의 평화공존론은 對民안정책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이는 수양제의 정책과는 정반대의 것으로서 수의 역사적 경험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⁸⁹⁾ 그렇기에 이를 고조 자신의 대고구려 인식이라는 측면만으로 접근해서는 그 본질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이해할 때 후술할 당 초기 대고구려정책의 이중성이 이해될 여지가 생긴다.

그런 면에서 당 고조의 대고구려정책 기초와 관련해서는 전술한 당 초기의 상황을 빼놓고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시기 당으로서는 주변국가와의 평화적 관계 유지가 최선이었고 희망하는 바였다. 만일 대외적 불안이 야기될 경우 돌궐과의 관계나 중원 평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당의 입장에서 대외적 불안요인이자 변수였다. 그러나 당의 처지로는 그 변수를 제거할 역량이 없었고 이러한 '수세적' 맥락에서 당 고조는 고구려에 평화적 관계에 기반한 각자의 강토보전을 제안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기조는 미래에 당이 안정되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도 했다. 또 당 조정이 대고구려정책 기초를 내부적으로 확정된 것은 고조와 배구, 온언박의 관련

89) 실제 수 양제의 고구려 친정을 만류했던 수 관료들은 대부분 양제가 친정에 나설 경우 그 노력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左光祿大夫 郭榮이나 太史令 庚質의 언급에서 이런 내용이 확인된다(『資治通鑑』 卷182 隋紀6 煬帝 大業9年).

논의가 진행된 625년 3월⁹⁰⁾ 이후로, 622년 포로교환 제안과 국서의 내용에는 당 조정의 확정된 대고구려정책 방침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다. 이 같은 사정은 한편으로 이 시기 고구려에 대한 경계의식이 반영된 정책이 나타나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621년 3월 당은 靺鞨 渠帥 突地稽를 燕州總管에 임명했다.⁹¹⁾ 당 건국 이후 이민족 출신을 총관으로 임명한 사례는 이것이 최초였다.⁹²⁾ 곧 이례적 조치였는데, 『구당서』에는 돌지계가 먼저 당에 間使를 파견해 오자 이에 그 部落에 연주를 설치하고, 그를 연주총관에 임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⁹³⁾ 그러나 당은 일찍부터 연주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미 618년에 燕州總管府를 설치했던 것이다.⁹⁴⁾ 따라서 당이 618년 연주총관부를 설치하고 이 지역 경영에 관심을 기울이자 이에 돌지계가 당에 사신을 보냈고, 이어 당이 돌지계를 연주총관에 임명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해 당은 營州와 幽州에도 총관부를 설치해 요서지역에 대한 각별한 경영 의지를 드러냈다. 물론 이는 당이 618년 변방의 중요한 주에 총관부를 설치하고 여러 州의 병력을 통솔하게 한 조치와 관련이 깊을 것이다.⁹⁵⁾ 그런데 이때 당은 이 지역 총관부의 관할을 누층적으로 편제했다. 예컨대 618년을 기준으로 유주총관부의 관할 州를 보면 역시 총관

90) 『通典』 卷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91) 『資治通鑑』 卷189 唐紀5 高祖 武德 4年 3月 庚申

92) 글쓴이가 『자치통감』의 618~621년 3월 기간의 기사 중 주의 총관에 임명한 기록들을 탐색해본 결과 돌지계의 연주총관 임명 이전까지 이민족 출신을 주의 총관에 임명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치통감』의 찬자가 돌지계의 연주총관 임명을 기술하면서 굳이 ‘말갈 거수 돌지계’라 표기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한편, 618~621년 3월의 기간 동안 당이 주의 총관에 임명한 사례를 보면 대개 隋의 장수와 郡縣, 그리고 도적의 우두머리로서 항복해 온 자들을 임명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 같은 양상이 빚어진 데에는 당이 아직까지 靺鞨府州를 설치한 단계가 아니었던 점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93) 『舊唐書』 卷199 北狄列傳 第149 靺鞨

94) 『舊唐書』 卷39 志 第19 地理2 燕州; 『太平寰宇記』 卷71 河北道 燕州. 한편, 당이 618년 연주총관부를 설치하고 이어 돌지계 집단과 사신을 통한 사실은 당의 세력이 일찍부터 요서지역에 닿았음을 시사한다.

95) 『資治通鑑』 卷185 唐紀1 高祖 武德 元年 6月

부가 설치되었던 영주와 연주가 포함되어 있다.⁹⁶⁾ 또 영주총관부의 관할 주에는 연주가 포함되어 있다.⁹⁷⁾ 이는 총관부 간의 유기적인 군사적 협조와 연결을 꾀한 조치로 보인다.

그럼 연주는 어떤 지역이었나? 영주총관부는 수대의 遼西郡이었다.⁹⁸⁾ 수는 612년 영주의 경계(營州之境)에 있던 汝羅故城에 요서군을 두었던바, 요서군은 遼西·懷遠·瀘河 3縣을 관할했다.⁹⁹⁾ 618년에 설치된 영주총관부의 관할 현 역시 동일했다. 그런데 요서군은 동으로 고구려와 잇닿아 있었다. 예컨대 611년 煬帝는 고구려 침공에 쓰일 군수물자를 노하·회원 두 鎮에 쌓아두었다고 전하며¹⁰⁰⁾ 614년 양제가 고구려 再侵을 도모하다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자 懷遠鎮에서 회군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¹⁰¹⁾ 즉, 노하·회원은 수군의 고구려 침입 당시 고구려로 이어지는 진격로였다.¹⁰²⁾ 또한 요서군 경내에는 白狼水가 흘렀는데¹⁰³⁾ 백랑수가 대릉하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¹⁰⁴⁾ 이처럼 요서군=영주총관부는 동으로 고구려로 이어지고 있었고, 양제의 요서군 설치는 이 시기 고구려 침공 추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한편, 돌지계는 粟末靺鞨 거수 출신으로 고구려에 대항하다 이기지 못하자 開皇 연간 부락과 병력을 이끌고 수에 來降한 인물이었다. 이에 수는 돌지계 집단을 柳城에 거주토록 하였고¹⁰⁵⁾ 변방사람들과 왕래하게 했다.¹⁰⁶⁾ 이어

96) 『舊唐書』卷39 志 第17 地理2 10道郡國2 河北道 幽州大都督府

97) 『太平實宇記』卷71 河北道 營州

98) 『舊唐書』卷39 志 第19 地理2 燕州; 『新唐書』卷39 志 第29 地理3 幽州 范陽郡

99) 『新唐書』卷39 志 第29 地理3 幽州 范陽郡; 『太平實宇記』卷71 河北道 燕州

100) 『資治通鑑』卷181 隋紀5 大業 7年 12月

101)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25年

102) 실제 612~613년 양제가 이끌던 병력은 회원진을 통해 요하를 도하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호규,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 91, 177쪽 참조.

103) 『隋書』卷30 志 第25 地理 中

104) 윤용구, 2005,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북방사논총』 5, 55~56쪽

105) 『北蕃風俗記』(『太平實宇記』卷71 河北道 燕州 條에 인용되어 있음)

106) 『隋書』卷81 東夷列傳 第46 靺鞨

양제는 그를 요서태수에 임명했는데,¹⁰⁷⁾ 요서군이 612년에 설치되었으니 그의 임명도 이때였을 것이다. 그런데 요서군 설치가 고구려 침공 수행과 밀접했던 것처럼 돌지계가 요서태수에 임명된 것 역시 고구려 침공과 관련이 깊었다. 이는 돌지계가 양제를 따라 그 무리를 이끌고 고구려 침공에 종군했다는 기록으로¹⁰⁸⁾ 증명된다. 수로서는 고구려에 대항하다 내부해 온 돌지계 집단을 이와 같이 활용할 가치가 충분했을 것이다. 돌지계 집단은 고구려군과 여러 차례 대적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고구려군의 전략 전술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은 이 같은 인물인 돌지계를 고구려와 맞닿아 있던 연주의 총관에 임명했던 것이다. 이는 돌지계에게 연주총관부가 관할하는 지역의 군사 통수를 담당케 한 조처였다. 당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 조처를 취했는지 확인되진 않지만, 이는 고구려를 염두에 둔 조처라 볼 수밖에 없다. 돌지계가 연주총관에 임명된 것은 그가 요서태수를 역임한 전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인바, 그런데 그가 양제에 의해 요서태수에 임명된 것은 고구려 침공의 첩병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치는 당의 입장에서 그 이상이었다. 돌지계 집단은 이제 고구려와의 전면전에 종군한 경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 건국 이후 이민족 출신을 총관에 기용한 최초의 경우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설령 그러한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이는 고구려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이었다. 고구려로서는 反高句麗의 인물과 집단을 또다시 대적하게 된 꼴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당이 연주총관부로 하여금 유주총관부와 영주총관부의 관할을 동시에 받도록 한 조처 역시 이해된다. 사실상 이 조처는 연주총관부가 배후의 유주·영주총관부의 지원을 받도록 해 그 군사적 경계와 입지를 강화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위와 같은 연주의 위치나 위상으로 볼 때 이 역시 고구려를 염두에 둔 조처라 생각된다. 더욱이 연주 일원은 隋末에 반란이 일어난

107) 『舊唐書』卷199 北狄列傳 第149 靺鞨

108) 『隋書』卷81 東夷列傳 第46 靺鞨

지역이 아니었다. 수말 요서지역에서 일어난 高開道와 같은 群盜들은 처음에는 북평·어양 일대에서 활약하다 619년 영주총관에게 격파되었고, 621년 이후로는 지금의 북경과 천진 일대를 공략하고 있다.¹⁰⁹⁾ 그렇기에 그보다 훨씬 동쪽에 치우친 연주총관부의 배후를 강화해 군사적 경계를 강화한 것은 동으로 이어져 있던 고구려를 겨냥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당이 고구려와 마주하고 있던 대릉하유역의 군사적 안정을 추구했음은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당 건국 직후의 대고구려정책은 수대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에서 자유롭지 않았고, 그것을 활용하거나 극복하려는 형태였다. 당 고조의 포로교환 제의가 수대의 대고구려관계에서 파생된 경험과 기억을 극복하려던 것이었다면, 돌지계의 연주총관 임명은 그것을 활용한 것이었고, 한편으로는 고구려에 대한 경계의식의 발로였다. 이에는 중원의 혼란과 돌궐의 침입이라는 당이 처한 상황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 당 고조가 신라 사신을 특별히 우대한 사실 역시 주목된다. 신라 사신은 621년 10월 장안에 도착했다.¹¹⁰⁾ 그런데 이 무렵 고구려의 견당사 역시 당에 체류하고 있었다. 『자치통감』에는 고구려 사신이 621년 7월 10일에 입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¹¹¹⁾ 『책부원귀』에는 10월에 입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¹¹²⁾ 정확한 시점은 종잡을 수 없지만, 삼국의 견당사가 대체로 2, 3개월 정도 장안에 체류했던 사실을 고려하면 고구려 사절이 7월에 입조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제 막 장안에 입성한 신라 사절과 짧게나마 함께 체류했을 가능성

109) 고개도 세력의 동향과 관련해서는 『資治通鑑』 卷186 唐紀2 武德 元年 12月; 『資治通鑑』 卷187 唐紀3 武德 2年 3月; 『資治通鑑』 卷189 唐紀5 武德 4年 11月; 『資治通鑑』 卷190 唐紀6 武德 5年 3月, 9月 및 6年 3月, 5月, 8月 條 참조.

110)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平王 43年條에는 621년 7월 신라에서 견당사를 보내 조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15 朝貢3 武德 4年 10月條에는 같은 해 10월에 신라 사신이 조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상의 간격은 신라 견당사가 본국을 떠나 당에 입조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권덕영, 1997, 앞의 책, 228쪽).

111) 『資治通鑑』 卷189 唐紀5 武德 4年 7月 乙丑

112)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15 朝貢3 武德 4年 10月

이 높다. 또 이해 10월에는 백제 사절 역시 장안에 도착했다.¹¹³⁾ 우연하게도 삼국의 사절이 동시에 입당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당 고조는 고구려·백제 사절과 달리 신라 사절에게는 친히 사신의 노고를 묻고 通直散騎侍郎 庾文素를 신라에 사신으로 보내 새서와 그림병풍, 錦綵 3백단을 전달했다.¹¹⁴⁾ 이 같은 조처는 고구려와 백제 사절에게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니 특별히 신라를 우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고조가 삼국을 상대로 차별적인 대우를 했던 맥락을 찾아보자. 이와 관련해 고조가 “이미 海東三國이 틈이 벌어져 원한이 맺힌 지 오래되어 번갈아 서로 공격한다는 사실을 듣고”¹¹⁵⁾ 신라 사신에게 그 이유를 물었던 사실이 주목된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고조가 ‘이미’ 삼국 간 역관계의 실상을 누군가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던 점이다. 그러면 고조에게 삼국의 상황을 전한 이는 누구일까? 당시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이는 당 조정 내 고조의 참모라기보다 三國人 가운데 누군가가 전달한 정보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전술했듯 이 시기 당은 신생국가로서 만만찮은 대내외적 난관에 직면해 있었고, 특별히 해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여력을 지닐 형편은 못 되었다. 또 이 시기 당 조정 내 인사들 가운데 특별히 삼국의 사정에 관심을 가졌거나 정통한 전문가가 존재했던 것 같지도 않다. 이로 볼 때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당 고조에게 삼국의 상호관계를 전한 이는 삼국인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고, 이런 견지에서 본다면 삼국인 중에서 고구려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왜냐하면 621년 10월 이전 당 고조와 접촉한 삼국인은 고구려 사절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면 고구려는 최소한 대당외교를 통해 삼국 간 역학관계의 현황을 당에 인식시키려 했던 셈이 된다. 그런데 그런 고조가 삼국 사절 중 신라 사절을 특별히 우대하고 答訪使까지 파견했던 것이다. 이 답방사는

113) 『三國史記』 卷27 百濟本紀5 武王 22年; 『冊府元龜』 卷970 外臣部15 朝貢3 武德 4年 10月

114) 『舊唐書』 卷199上 東夷列傳 第147上 新羅

115) 『舊唐書』 卷199上 東夷列傳 第147上 新羅, “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乃問其使爲怨所由……”

당이 한반도에 파견한 최초의 사절이었으며, 그런 점에서 이 조처는 당 고조의 의도적인 외교행보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역시 같은 시기 사신을 보냈던 백제를 염두에 둔 외교행보라기보다 당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고구려를 의식한 조처라 볼 수밖에 없다. 즉, 고구려에 대한 견제, 경계의식이 투영된 외교행보였던 것이다. 특히 신라는 고구려·隋전쟁 기간 동안 고구려의 南境을 공략해 성과를 거둔 바 있었다.¹¹⁶⁾ 또한 당 고조의 이러한 외교적 조처는 당시 당이 內憂外患으로 새외문제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음에도 대고구려관계만큼은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것이 수대의 경험과 무관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당 초기의 대고구려정책은 ‘안정과 경계의 동시 추구’였고, 이는 수대의 역사적 경험과 기억을 극복하거나 활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V. 영류왕의 대당 조공책봉관계 수립 정책의 의도

이상에서 618~623년 무렵 당의 대고구려정책이 지닌 특징과 그것의 맥락을 검토해 보았다. 그러면 이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영류왕 재위 초기의 대당정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면밀하게 그려볼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지만, 그러나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그 단서를 포착해내고, 이를 당의 대고구려정책의 맥락과 조응해가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전술한 대로 고구려는 619년 2월, 621년 7월, 622년 세 차례에 걸쳐 당에

116) 이와 관련해서는 서영일, 2001,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35~36쪽 참조.

사신을 파견했다. 이때의 대당외교는 조공책봉관계에 입각한 형태가 아니었으므로, 北魏 이래 전통적 대중외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외적 외교'상태의 지속이었다. 그럼에도 고구려가 견당사 파견을 지속했던 것은 무엇보다 당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지속적인 使行을 통한 중원 대륙 전반에 대한 '정보수집'의 의미를 지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같은 '정보수집'은 대당정책의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했을 것이다. 즉, 당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게 됨으로써 당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맞추어 능동적인 대응외교가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전제 위에서 이 시기 고구려의 대당정책을 살필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려할 점은 고구려가 앞서 살펴본 당의 대고구려정책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특히 당 조정이 연주총관부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고, 돌지계를 연주총관에 임명한 조치는 즉각 고구려에 알려졌을 것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수대의 기억을 떠올려 볼 때 명약관화했다. 고구려로서는 요서지역의 군사적 동향이 遼東 방위, 더 나아가 요서지역 諸種族과의 관계와 직결되었던 만큼,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돌지계의 연주총관 임명으로부터 불과 4개월 뒤에 고구려 사절이 入唐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이를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술한 대로 당은 고구려에 대해 경계, 견제의식을 지니고 있었지만, 고구려 역시 당의 이러한 몇 가지 조치를 지켜보면서 당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예외상태 속에서의 빈번한 사절 파견은, 아직 당의 대고구려정책 기초가 불투명한 동시에 고구려가 의구심을 품을 만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속에서 그 향방을 가늠해 보려던 외교적 노력이었을 수 있다. 단, 그럼에도 고구려가 요서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세의 방향을 택하지 않은 것은¹¹⁷⁾ 이 시기 고구려 대당외교의 지향점에 많은 시사를 준다. 고

117) 고구려는 廣開土王代 이래 때로 요서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세 역시 적절히 구사해 왔다. 401년 對後燕 宿軍城 공격, 436년 北燕 和龍城 입성, 520년대 중후반 요서 진출, 598년 영양왕의 요서 공격 등은 그 대표적 사례다.

구려 역시 대외적 분쟁이 아닌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고구려 사회는 五斗米敎의 유행에서 엿볼 수 있듯 수와의 오랜 전쟁의 피해와 후유증이 사회 전반에 노정되며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것이다.¹¹⁸⁾

이와 함께 앞서 추론한 대로, 고구려는 당 고조에게 삼국 간 ‘相爭’과 그에 얽힌 ‘원한감정’을 주지시키려 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¹¹⁹⁾ 그 의도는 추측컨대 당이 고구려와의 우호적 관계를 원한다면, 앞으로 백제·신라와 친밀해져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러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실제 625년과 626년 고구려가 백제·신라의 대당통교를 차단한 사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현재 자료적 뒷받침을 할 수 없어 한계를 지닌 것이지만, 일단 최소한 고구려가 당 고조에게 삼국 간의 상쟁과 원한을 주지시킨 것은 향후를 대비한 외교적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전술한 6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가 취해 온 외교적 방침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이처럼 이 시기 고구려는 당을 상대로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다. 그것은 당이 수를 계승한 왕조라는 측면에서도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그러나 621년 10월 당 고조는 이례적으로 신라 사절을 우대하고 答訪使 파견을 추진함으로써 고구려의 기대와는 어긋나고 있었다. 하지만 당의 상황은 아직 고구려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처지나 역량을 갖춘 것이 아니었기에 그러한 대고구려 견제 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621년 4월부터 돌궐이 본격적으로 당을 공략하기 시작했고, 이런 사정은 이후 매년 지속되었다. 뿐만 아니라 621년 7월 산둥에서 반란을 일으킨 柳黑闥이 점차 세를 떨치더니 이해 12월에는 급기야 예전 수말의 군웅으로 세력을 떨쳤던 竇建德의 영역을 모두 회복했고, 622년 3월까지 크게 세력을 떨쳤다.¹²⁰⁾

118) 『三國遺事』卷3 興法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이와 관련해서는 별고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119) 당 측의 기록에서 당 고조가 “이미 海東三國이 틈이 벌어져 원한이 맺힌 지 오래 되어 서로 번갈아 공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사절은 고조에게 삼국 간의 상쟁사실뿐만 아니라 그것에 얽혀 있던 ‘원한 감정’까지 특별히 부각시켜 전달했던 것 같다.

120) 『資治通鑑』卷189 唐紀5 武德 4年 7月, 12月; 『資治通鑑』卷190 唐紀6 武德

고구려 역시 622년에도 견당사를 파견했던 만큼 동돌궐의 잇따른 당 침입 사실 역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622년 고구려와 동돌궐이 나란히 사신을 파견해 왔다는 기록을¹²¹⁾ 고려하면, 이때 고구려 사절은 동돌궐과 당의 관계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목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당은 동돌궐을 ‘대등관계’를 의미하는 ‘敵國禮’로 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622) 당 고조가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국서를 전하고, 포로교환을 요청해 왔다. 특히 국서는 여태껏 불분명하던 당의 대고구려정책 기조를 최초로 공식화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고구려로서는 중요하게 여겼을 것인바, 그 내용은 역사적으로 고유한 고구려의 요동 통치사실을 존중하고, 상호 우호적 평화관계를 유지하며 각자의 강토를 보전하자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 무렵의 당은 돌궐의 지속적인 침입으로 대고구려관계의 안정과 평화가 절대적이었고, 이에 이전과는 다른 맥락의 이와 같은 대고구려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던 것 같다. 고구려 역시 당의 사정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이러한 당의 정책기조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이로부터 1년 뒤 고구려가 당에 책력 반포를 요청한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고구려가 당의 포로교환 요청에 ‘호응’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포로송환 요청이 선뜻 달가운 것일 수만은 없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에게 포로는 대수전쟁 승리의 상징물이었다. 618년 8월 고구려가 倭에 사절을 보내 양제의 30만 병력을 격파했음을 알리며 포로 2명을 보낸 사실은¹²²⁾ 이를 말해 준다. 따라서 영류왕과 고구려 집권층이 당 고조의 요청을 수용한 배경에는 정책적 판단과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고구려가 당 고조의 국서에 표방되어 있던 대고구려정책 기조에 ‘호응’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고구려 역시 고조가 보낸 국서의 메시지에 만족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年 3月

121) 『册府元龜』 卷970 外臣部15 朝貢3 武德 5年, “是年, 突厥 頡利可汗及高麗, 並遣使朝貢.”

122) 『日本書紀』 卷22 推古天皇 26年 秋 8月

이후 고구려의 견당사가 입당한 시점이 623년 12월이었고, 이때 반력요청 곧 책봉요청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622년 포로교환 이후 623년 말에 이르기까지 고구려 조정 내에서 대당정책의 향방을 둘러싼 긴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당에 먼저 책봉을 요청하기로 한 정책은 단시일에 결정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당 고조의 국서전달과 포로교환 이후부터 623년 12월 견당사 入唐에 이르기까지 향후 대당정책의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외교현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623년에 들어 당은 고구려의 입장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조치를 취했다. 즉, 연주를 영주로부터 남쪽으로 옮겨 幽州城 내에 壽治했던 것이다.¹²³⁾ 그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되지 않지만 고구려 사절이 입당한 시점이 623년 연말인 만큼 당의 이 같은 조치는 고구려 사절이 입당하기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연주를 유주성으로 壽治한 당의 의도는 현전자료로 파악할 수 없지만 만일 고구려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면, 622년 당 고조가 국서에서 표방한 지향의 가시적 조치였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지라도 이는 고구려와의 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이 조치를 당 고조의 국서에 담긴 지향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23년에 이루어진 당의 이 같은 조치가 고구려의 책봉요청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높다.

그렇다면 영류왕의 책봉요청은 일차적으로 이 같은 당 고조의 대고구려정

123) 『太平實宇記』卷71 河北道 燕州; 『舊唐書』卷39 志 第19 地理2 燕州, “(武德)6年, 自營州南遷, 壽治于幽州城內.” 물론 이 조치는 돌지계 집단의 이주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지만, 그렇다고 이것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太平實宇記』卷175 四夷4 勿吉國에 따르면, 돌지계는 유혹달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토벌에 공을 세웠고 또 그에 이어 그 부락을 유주의 昌平城으로 옮겼다고 한다. 다만 그 시점이 적기되어 있지 않는데, 『新唐書』卷110 列傳 第35 諸夷蕃將 李謹行에 따르면, 돌지계는 유혹달 토벌에 나서면서 秦王 이세민에게 글을 올려 節度를 청했다 한다. 이세민이 유혹달 토벌에 나서 활약한 시점이 622년 정월부터 3월까지였으므로(『資治通鑑』卷190 唐紀6 武德 5年 正月, 3月) 돌지계가 유혹달 토벌군에 합류한 때도 이 무렵이었을 것이고, 돌지계 집단이 유주의 창평성으로 옮겨 간 것도 이 무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주가 유주성내로 기치된 것은 그 다음해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책 기조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공책봉관계 수립이 명목상 군신관계를 설정하는 것임을 상기해볼 때 고구려의 先책봉 요청은 당의 대고구려정책 기조에 '호응'하고, '동의'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호응', 곧 책봉요청이 당에 전할 수 있었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앞서 622년 고구려가 당과 동돌궐의 '적국(대등)관계'를 목도한 사실을 언급했지만 고구려의 책봉요청은 무엇보다 대당외교에서 동돌궐과 차별화하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당시 돌궐과 당은 형식상 '대등관계'였고, 현실적으로는 '침략·피침략'의 관계였다. 그런데 고구려가 당과 수립하고자 했던 조공책봉관계는 최소한 외형상으로나마 '君臣'관계를 설정하는 것인 만큼 당시 동돌궐·당의 관계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런데 이 시기 고구려가 돌궐과 당의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영류왕의 책봉요청은 동돌궐의 당에 대한 태도와 차별화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이었다. 특히 당과 대등관계를 유지하던 동돌궐이 끊임없이 당을 侵寇하던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영류왕의 책봉요청은 고구려에 대한 당의 경계심을 풀어 주고, 당 고조가 국서에서 표방한 뜻대로 양국관계를 운영해 나가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에 이는 한편으로 당 조정을 상대로 고조가 표방한 대고구려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 줄 수도 있었다. 아울러 고구려 측이 먼저 당에 책봉을 요청하는 능동적·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영류왕의 책봉요청에는 당 고조가 표방한 대고구려정책 기조를 고구려의 입장에서 '활용'하려는 측면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책봉 직후 고구려가 백제·신라의 대당통교를 방해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사실 이는 책봉국인 당에게 이윤배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구려가 이런 이윤배반적 정책을 추구했던 것은 고구려의 책봉요청이 '수동적 호응'의 일환에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기조를 고구려의 안위에 적극 활용하려는 '적극적 호응' 노선의 산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류왕의 책봉요청은 당의 대고구려정책 기조에 호응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했던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고, 당의 대고구려정책 기조를 고구려의 입장에서 활용해 고구

려의 국제적 이해관계와 일치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이를 단순히 親唐 政策으로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영류왕의 대당 책봉요청은, 당시 당이 처한 국내외적 정세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토대를 두고 추진된 것으로서, 당 고조가 표방한 ‘평화공존’의 대고구려정책 기조에 호응하고 그것을 고구려의 입장에서 활용하려는 외교 전략이었다. 그렇기에 이에는 당의 대고구려정책 기조를 고구려의 국제적 이해관계에 일치시키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 면에서 영류왕의 대당 책봉요청은 정세변화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려 했던 ‘적극적 호응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¹²⁴⁾

VI. 맺음말

이상에서 623년 영류왕의 對唐 책봉요청이 당 고조가 표방한 평화공존의 대고구려정책 기조를 고구려의 안위와 국제적 이해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124) 한편, 글쓴이는 일전에 영류왕의 대당 책봉요청이 왕권의 정통성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파악했었다(윤성환, 2011 가을, 앞의 글, 286~287쪽). 그런데 이와 같은 견해가 성립하려면, 그 전제로 고구려왕이 중국이 수여한 책봉관직을 자신의 권위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여겼는지의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그런데 5세기 고구려 왕실은 天孫意識에 입각한 독자적 천하관과 국제질서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러한 의식은 7세기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 예컨대 5세기 금석문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왕실의 ‘日月之子’ 의식은, 607년 왜가 수에 보낸 국서에서(“日出處天子 致書日沒處天子無恙”) 확인되는바, 이는 고구려 승려로 왜에서 활약한 慧慈의 영향 때문이었다(이성시, 1990, 앞의 글, 68~79쪽). 또 왜의 孝德天皇은 645년 고구려에 보내는 국서에서 고구려왕을 ‘高麗神子’라고 지칭했는데(『日本書紀』卷25 孝德天皇 大化元年 秋 7月)이 역시 고구려 왕실의 천손의식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보인다. 따라서 7세기 고구려 왕권이 정통성 강화를 위해 당에 책봉을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자리를 빌려 글쓴이가 기왕에 개진한 견해를 정정코자 한다.

수단으로 추진된 것임을 밝혀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기보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의미를 지적하는 것으로 글을 끝맺고자 한다.

종래 삼국시대 이래 전통적 한중관계의 형식을 구성해 온 조공책봉관계의 의미를 둘러싸고 한중일 학계 간에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체로 중일 학계가 조공책봉관계의 현실적 규제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면, 한국 학계는 고대사에 국한시켜 볼 경우, ‘명실론’이나 ‘독자세력권론’을 통해 이를 극복하려는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영류왕대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 사실은 종래의 설명으로만 해결키 어려운 면이 있다. 고구려가 먼저 책봉을 요청한 점에서도 그렇거니와 책봉 직후 백제·신라의 대당통교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그러하다. 일면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고구려의 외교행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를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현상적 분석 차원이나 그것에 대한 인식 차원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이 시기 고구려와 당 양국이 처한 내외정세와 이에 대한 양국의 정책 및 상호관계에 대한 면밀한 이해에 기초해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였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중국왕조와 격돌이 이루어지며 복잡하게 전개된 7세기대의 조공책봉관계는 한반도왕조와 중국왕조 간의 관계 및 상호정책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었고, 그 점에 주목할 때 그것의 본질과 실체가 명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즉, ‘國際政治’의 시야에서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조공책봉관계의 수립을 외교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해 자국의 국제적 이해관계와 일치시키려 한 영류왕대의 사례는 이를 명료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영류왕의 對唐 조공책봉관계 수립정책은 정세변화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

참고문헌

1. 자료

-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唐會要』, 『隋書』, 『新唐書』, 『玉海』, 『魏書』, 『資治通鑑』, 『冊府元龜』, 『太平寰宇記』, 『通典』, 『日本書紀』
- 국사편찬위원회 편, 2006, 『韓國古代史料集成 中國篇』 2~4, 학연문화사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舊唐書 外國傳 譯註 上』,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舊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11, 『新唐書 外國傳 譯註 上』, 동북아역사재단
- 사마광 지음 · 권중달 옮김, 2008·2009, 『資治通鑑』 19~20, 삼학
- 정구복 외 번역, 2012, 『역주 삼국사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고전번역원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中華民國 中央研究院·歷史言語研究所 漢籍電子文獻資料庫(<http://hanchi.ihp.sinica.edu.tw>)

漢川草蘆(<http://www.sidneyluo.net>)

360doc 個人圖書館(<http://www.360doc.com>)

2. 단행본 및 연구논문

- 권덕영, 1997, 『古代韓中外交史』, 일조각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박한제, 1995(重版),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일조각
- 여호규 외, 2006,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이성제, 2005, 『高句麗의 西方政策 研究』, 국학자료원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篠原啓方, 2006, 『高句麗的 國際秩序認識의 成立과 展開』,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堀敏一 지음 · 정병준 외 역, 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 西嶋定生 지음 · 송완범 역(이성시 엮음), 2008, 『일본의 고대사 인식』, 역사비평사

- 김영하, 2012, 「廣開土大王陵碑의 정복기사해석」, 『한국고대사연구』 66
- 김진한, 2009, 「榮留王代 高句麗의 對唐關係와 西北方情勢」, 『정신문화연구』 117
- 김창석, 2010, 「6~8세기의 동아시아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 박대제,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 방용철, 2011, 「高句麗 榮留王代의 정치 동향과 對唐 關係」, 『대구사학』 102
- 서영일, 2001, 「6~7世紀 高句麗 南境 考察」, 『고구려연구』 11
- 여호규,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국사관논총』 91
-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46
- 여호규, 2005, 「광개토왕릉비에 나타난 고구려의 대중인식과 대외정책」, 『역사와 현실』 55
- 여호규, 2006, 「책봉호 수수(授受)를 통해 본 수·당의 동방정책과 삼국의 대응」, 『역사와 현실』 61
- 윤성환, 2011a, 「6세기 말~7세기 고구려 지배세력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 『民族文化』 37
- 윤성환, 2011b, 「6세기 말~7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연구」, 『鄉土서울』 79
- 윤성환, 2011 가을, 「영류왕, 대당은건파로 꺾맞춰진 오류」, 『내일을 여는 역사』 44
- 윤용구, 2005, 「隋唐의 對外政策과 高句麗 遠征」, 『북방사논총』 5
- 이성시, 1990, 「高句麗와 日隋外交」, 『민족사의 전개와 그 문화』上, 창작과비평사
- 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 『북방사논총』 5
- 이성제, 2009, 「570年代 高句麗의 對倭交渉과 그 意味」, 『한국고대사탐구』 2
- 이영재, 2012, 「6세기 말 고구려의 정국과 대외교섭 재개의 배경」, 『역사와 현실』 83
- 이용범, 1959, 「高句麗의 遼西進出 企圖와 突厥」, 『사학연구』 4
- 이용현, 2006,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동아시아 인식」, 『고구려연구』 22
- 임기환, 1994,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한국사』 4-고대사회에서 중세사회로2, 한길사
- 임기환, 2003,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 關係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32
- 임기환, 2006, 「7세기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전쟁」,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정원주, 2011, 「榮留王의 對外政策과 政局運營」, 『고구려발해연구』 40

[ABSTRACT]

The Policy of King Yeongnyu of Koguryo toward Tang China

Yoon Sunghwan

The reign of King Yeongnyu (榮留王) has received little attention in studies of Koguryo history. This monarch's policy toward Tang(唐) China has been understood as a moderate policy. Thus, King Yeongnyu has been considered a moderate toward Tang. On the other hand, YeonGaesomun (淵蓋蘇文) has been seen as a hard-liner toward Tang. Such views have passed over the dynamics of King Yeongnyu's policy toward Tang. King Yeongnyu sent envoys to China in 618. This was a rapid diplomatic response. There also were frequent missions dispatched to gather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in China. At this time, Tang appointed Tudiji (突地稽), who was of an anti-Koguryo disposition, as the administrator (總管) of Yanzhou (燕州). In this way, the ruling group in Tang remained alert and checked Koguryo. This awareness regarding Koguryo among Tang's ruling group had taken root during the Sui (隋) period. However, China continued to consider this an unstable situation, and pursued a stable relationship. Koguryo acted similarly, too. King Yeongnyu pushed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冊封-朝貢) between Koguryo and Tang in 623. In this way, King Yeongnyu pushed a policy toward Tang based upon the strategic importance of Koguryo. Thus, King Yeongnyu was not a moderate toward Tang, and his policy toward that country expressed caution.

Keywords

King Yeongnyu (榮留王), YeonGaesomun (淵蓋蘇文), policy toward Tang China (對唐政策), diplomatic relations (冊封-朝貢), strategic importance, moderat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

- 주제의 설정과 그 의미 -

조영헌 |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머리말

지난 2007년 한국에서 『동아시아사』라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역사과 선택과목의 하나로 신설되었다. 이른바 한국·중국·일본을 포괄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역사서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의 형태로 등장한 것이다. 세계 대부분의 역사 교과가 自國史-世界史 구조의 2분법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흐름을 감안할 때,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 형태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동아시아사’의 등장은 분명 그 자체만으로도 논쟁과 관심이 될 것임에 분명했다. 이후 2009년 개정 교육과정(‘미래형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라는 3분법 체제로 구성된 역사 교과목을 선택하도록 역사과목의 골격이

※ 투고일: 2012년 11월 16일, 심사일: 2013년 2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2일

* 이 글의 부족한 점에 대한 자세한 지적과 제목 등에서 수정 제의를 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미처 다 반영하지 못한 점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확립되었고, 교육현장에서는 2012년 1학기부터 『동아시아사』가 선택과목으로 교육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문제제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보아 그 신설 과정의 ‘急進性’,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의 ‘不分明性’ 혹은 ‘可變性’, 동아시아 지역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교과서 저술 목표의 ‘當爲性’, 유럽 중심주의(Euro-centrism) 혹은 중국 중심주의(Sino-centrism) 나 自國史 중심주의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에 대한 ‘脫中心主義論’, 그렇다면 과연 한국에서 유통되는 동아시아사의 서술 주체는 누구여야 하겠는가의 ‘主體性’,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한정된 분량으로 완성된 교과서 내용 서술의 ‘舍目的性’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다.¹⁾ 이 외에도 1990년대 이후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어 온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도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²⁾

이 글에서 이 수많은 논쟁점에 대해 한꺼번에 언급할 겨를이 없을 뿐 아니

- 1) 안병우 연구책임자, 2006,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보고서);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동아시아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황지숙, 2007, 「상대화 시각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역사교육연구』 5; 김성수, 2007, 「동아시아론의 전개와 역사 텍스트 속의 동아시아」, 『역사교육』 102; 김기봉, 2007, 「탈근대에서 국사와 동아시아사」, 『역사학보』 197; 백영서, 2007,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196; 신성근, 2008,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연민수 등,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정연, 201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검토」,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연구』 14; 역사학회 편, 2012,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관련하여』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2012. 10. 6, 서울대학교)
- 2) 한국의 대표적인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는 정문길 외 엮음, 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 다』, 창작과비평사; 정문길 등 엮음, 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박명규, 2005,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지식사회학적 이해」, 김시업·마인섭 엮음,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학교출판부; 최원식, 2009,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최원식 등 엮음, 2009,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논형 등을 참조. 한편 이러한 동아시아 담론에 깔린 ‘진보적’ 이념 및 지나친 ‘志士’적 구호에 대한 비판은 이성규, 2006, 「무엇을 위한 ‘동아시아’인가?」, 『인문학연구』(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36 참조.

라 능력도 없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여러 쟁점을 비교적 집약적으로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서 내의 한 내용요소³⁾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필자가 선정한 내용요소는 대단원 IV장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에 포함된 4개 내용요소 가운데 두 번째에 위치한 '銀 流通과 交易網(혹은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이다.⁴⁾ 동아시아의 은 유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내용요소는 朝貢-冊封 체제를 언급하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혹은 국제관계와 외교 활동)' 및 근대 이후 개항 및 제국주의 침략에 관한 내용요소와 함께 各國史의 나열로는 서술하기 곤란하며 世界史에 대한 이해가 병행해야 하는 내용, 그래서 가장 '동아시아'적 맥락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두 종의 교과서에서 이러한 맥락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서술되고 부각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정작 그 내용이 심도 깊고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고등학교 역사교사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있는지 향후 치밀하게 진행해야 할 분석 내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필자는 교육현장에서 解釋되고 教育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에 앞서 먼저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대단히 매력적인 제목의 내용요소가 고등학생을 비롯한 한국인 일반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집중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먼저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탄

-
- 3)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모두 6개의 대단원과 26개의 내용요소로 기획되었다. 최종적으로 통과된 두 종의 교과서 가운데 천재출판사에서 출간된 것은 26개의 내용요소를 모두 담고 있으나, 교학사에서 출간된 것은 국민국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5번째 대단원에서 하나의 내용요소를 생략하였다. 구성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후술. 이하 천재출판사의 『동아시아사』를 '천재판', 교학사의 『동아시아사』를 '교학판'으로 약칭한다.
- 4) 두 종의 교과서 가운데 교학판은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제목을, 천재판은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체적인 지향점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제목을 사용하는데, 이는 교과서의 내용 차이가 아니라 처음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발의되고 논의되는 과정 및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동북아역사재단 내부자료, 2009)에서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생' 경위를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긴박한 '탄생' 과정이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참신한' 내용요소의 설정과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내용요소의 설정에는 점점 부각되고 있는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의 연구 성과와 이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Ⅲ장에서 이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두 종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취급하는 '은 유통과 교역망'의 내용 분석을 최근까지 진행된 16~18세기 동아시아 경제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근거로 진행한다. 마지막에는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할 때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사' 그리고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가 포착될 수 있는지, 더 궁극적으로는 한국에서 제작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한국인의 관점이 살아 있는지 혹은 살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자 한다.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언급할 것은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동아시아사'에 대한 구분이다. 이 글은 교육 차원에서 운위되는 『동아시아사』와 연구 차원에서 운위되는 '동아시아사'를 『』와 ' '의 구분을 가지고 서술하며, 필요에 따라 교과목 자체를 강조할 경우 <>로 표기할 것이다.

II.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탄생'과 그 구성적 특징

2012년 현재 한국中等교육의 역사과 편제는 기본적으로 1997년에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의 범주에 속해 있으나, 실제는 2006년 11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⁵⁾을 근거로 진행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5) 사회과 안에서 역사를 독립과목으로 한다는 것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중학교 사회과는 <사회>(지리와 일반사회)와 <역사>(한국사와 세계사) 두 과목으로 각각 170시간씩 배정되었다. 고등학교 <역사>는 시수를 6단위(주당 3시간)로 확대되어 7차 교육과정에서의 4단위(2시간)에 비하여 중요성이 높아졌다. 여기에는 일본 우익 교과

놓여 있다.⁶⁾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역사>가 <사회>에서 완전히 독립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회과 과목과 분리되어 독립 과목이 된 것, 한국사와 세계사의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역사>라는 과목명을 사용한 것, '국사' 대신 '한국사'로 용어를 바꾼 것, 심의 과정이 國定에서 檢定으로 변환된 것,⁷⁾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턴 선택 과목으로 기존의 세계사에 해당하는 <세계 역사의 이해>에 덧붙여 <한국문화사>와 <동아시아사>가 신설된 것을 꼽을 수 있다. 이때 선택 과목으로 거론되었던 3과목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⁸⁾을 통해 <한국문화사>가 사라지고 2과목(<동아시아사>와 <세계사>)만 남게 되었다. 물론 당시 고등학교 <역사> 과목은 <한국사>로 과목명이 변경됨과 동시에 필수에서 선택 과목으로 강등되었으나, 2011년 언론사와 여론의 비난을 받고 2012년부터 다시 필수 과목으로 환원되었다.

이 가운데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2006년에서 2007년으로 넘어가는 무렵에 '급속하게' 등장한 <동아시아사>이다.⁹⁾ 구체적으로 <동아시아사>는 2006년 11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한 뒤 같은 해 12월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의 종합토론에서 처음 토론의 대상이 되었고, 이듬해인 2007년 1월 하순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이 제시된 뒤, 같은 해 2월 22일 개정교육과정으로 확정 고시되었다. 그야말로 일반 역사학자뿐 아니라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 3개월 만에 교과목으로 결

서의 역사왜곡,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불거진 역사 분쟁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 6) 이하 역사 교육과정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김한중, 2008, 「역사 교육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김한중, 2011,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4 참조.
- 7) 國史와 함께 國語, 道德 교과서도 이 시기 함께 國定에서 檢定制로 전환되었다.
- 8)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당시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교과서 개정 작업의 결과이기도 했다. 2009년 12월 17일 총론이 발표되었다.
- 9) 이하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등장과 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안병우 외, 2006,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과제 연구결과보고서); 황지숙, 2008,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참조.

정된 것이다.

교과서의 모형 단위 역시 교육과정으로 확정된 이후인 2007년 6월부터 개발이 착수되어 2008년 2월 전체 26개 내용요소 가운데 4개 내용요소에 대한 결과물이 배포되었다.¹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출간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는 2008~2009년 사이에 완성되어 2009년 10월에 각 출판사 및 집필을 희망하는 연구자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2010년부터 3개 출판사에서 『동아시아사』에 대한 집필팀이 꾸려져 집필이 시작되었으나 1개 출판사는 다른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서 포기하고, 나머지 2개 출판사에서 기획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모두 2011년 8월 검정을 통과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2007년 2월 고등학교 역사과 선택과목의 하나로 등장한 <동아시아사>가 4년 6개월 만에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형태로 완성된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동아시아사>가 공론화되고 교과목의 하나로 결정되는 과정은 3개월로 대단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2006년 12월 공론화되기 이전인 2003년 전국역사교사모임에서 <동아시아사> 개설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이후 교과서와는 별개로 ‘동아시아사’ 서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논의는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었다.¹¹⁾ 그리고 2005년 새로운 역사과 교육과정이 개발되던 초기, 연구진들이 세계사 과목의 하나로 구상했던 과목이자 전근대 시기 한국사와 세계사를 통합하는 한 방안으로 <동아시아사>의 개설이 제안된

-
- 10) 교육인적자원부, 2008, 『역사교과서 모형단위 개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조. 4개 내용요소는 전근대에 해당하는 II단원의 ‘1.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과 ‘4.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와 근대에 해당하는 V단원의 ‘1. 개항의 의미와 국민국가 수립의 양상’과 ‘5.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이다.
- 11)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 16쪽. 이에 따르면 ‘동아시아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은 크게 세 가지 동인으로 전개되는데, ① 균형 있는 세계사 교과서 서술을 위한 방안, ② 국사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필요성, ③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실천 운동의 일환에서의 필요성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민간 차원으로 한·중·일 공동 역사교재를 발간하거나 한·일 간의 공동 역사수업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정인, 2007,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역사교육』 101 참조.

바도 있다.¹²⁾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기존 역사 교육의 한계에 대한 여러 개선 방안의 하나로 언급된 것이나 역사보다는 미래 지향적인 학문적 담론의 수준일 뿐, 결코 교과서의 '탄생'을 염두에 둔 공식적인 논의나 토론은 아니었다.

물론 이처럼 급진적으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탄생'한 근본 배경에는 영토 분쟁을 비롯한 한·중·일 삼국 사이의 첨예한 역사문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전쟁과 관련한 과거사를 정리하고 영토 분쟁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고 교육함에 있어 민족주의적 자국사의 틀을 벗어난 '동아시아사'라는 지역사의 설정은 일국사로 포괄하기 어려운 설명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틀로 인식될 수 있었다.¹³⁾ 관련하여 3분법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유럽 통합 이후 등장한 『유럽의 역사』(1992)와 國家史-地域史(유럽사)-世界史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즉, 국민국가의 정체성을 담지하되 일국의 역사로 포착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역사'로서 '유럽사'가 기획되었던 것처럼,¹⁴⁾ 『동아시아사』가 기획되었던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삼국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강조하기보다는 국제교류와 우호의 관점에서 서술해 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동아시아사>의 신설에 작용했다. 이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총괄목표'와 제Ⅵ단원에 설정된 내용요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일본의 나카무라 사토루 역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2000년까지 사용된 한국·중국·일본·대만의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후 고등학교에 <동북아시아사>의 신설을 통해 3분법을 주창한 바 있다.¹⁵⁾ 어쨌든 그 결과 출간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세계 최초'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되었

12) 신성곤, 2005, 「역사 교과서의 국사와 세계사 편제 - 다양한 통합 방안의 모색」(역사교과서 체제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13) 안병우 외, 2006,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1쪽

14) 유용태, 2006,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환호 속의 경중-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478~482쪽

15) 이는 국제적인 상호이해를 심화하는 역사교육을 이루기 위함으로, 국제교류와 우호의 역사를 중시함과 동시에 인접국과의 대립 및 침략의 슬픈 과거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므로써 동아시아 속에서 일본이 수행한 양면성을 교육하기 위함이다.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옮김, 200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에디터, 298~304쪽 참조.

고,¹⁶⁾ 이로써 한국의 역사교육 역시 自國史-地域史(동아시아사)-世界史라는 3분법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모양새는 기존에 역사교육의 문제로 누차 지적되어 온 '자국사와 세계사의 분리'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듯하나, 이에 대한 장밋빛 평가를 내리기에는 다소 이른 듯하다.¹⁷⁾ 한편 중국에서 '동아시아' 혹은 '동양'의 개념을 가진 연구와 관심이 그동안 많지 않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중국에서든 서구에서든 '동아시아(east asia)'라고 했을 때 늘 中國을 그 기본 개념이자 바탕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¹⁸⁾

『동아시아사』의 구조를 다음의 <표 1>을 통해 살펴보자.¹⁹⁾

- 16) 물론 공시 중·고등학교 教科書의 제목으로는 한국의 『동아시아사』가 세계 최초로 라고 계산될 수 있겠지만, 실제 연구 분야로서의 '동아시아사'는 일본에서 '大東亞共榮圈'이나 '동아시아세계론' 등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음은 周知의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仁井田陞, 1968, 『東洋とは何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스테판 다나카, 1995,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등 엮음, 『동아시아사,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西嶋定生 지음, 李成市 엮음, 송원범 옮김, 2008, 『일본의 고대사인식: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李成市, 2012, 「일본 역사학계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학계와의 대화로부터」,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2012. 10. 6,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참조.
- 17) 강선주, 2012, 「고등학교 동아시아 과목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연계 방안」,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2012. 10. 6, 서울대학교)
- 18) 가령 미국의 고전적인 동아시아사 개론서인 John King Fairbank, Edwin O. Reischauer, Albert M. Craig, 1978, *East Asia, tradition & transform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존 K. 페어뱅크·에드윈 O. 라이샤워·앨버트 M. 크레이그 지음, 김한규·전용만·윤병남 옮김, 1999, 『동양문화사』, 을유문화사)이나 최근 대학 교재로 많이 이용되는 Rhoads Murphey, 2010, *East Asia: A New History*, 5th ed., Boston: Longman(초판 2001 → 羅玆·墨菲 著, 林震譯, 2012, 『東亞史』, 北京: 世界圖書出版) 등을 보면 기본적으로 중국사가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속에서 일본사가 비교사적으로 서술되고(약 20%), 10% 정도를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에 배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가장 최근 출간된 Patricia Ebrey, Anne Walthall, James Palais, 2009, *East Asia: 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초판 2006)은 상호교류의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저자들이 중국·일본·한국에 대한 서술 분량을 대략 50·30·20%로 정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에서 균형감을 맞추려는 시도가 눈에 띈다.
- 19) 이하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성곤, 2008,

〈표 1〉 『동아시아사』 교과서 목차 비교

대단원	내용요소 (천재판)	내용요소 (교학판)	해당 시기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학습	1. 동아시아 세계와 자연환경	선사~ 기원전후
	2. 선사 문화의 전개	2. 동아시아의 선사 문화	
	3.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	3. 농경과 목축, 문명을 낳다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1.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	1.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기원 전후~ 10세기
	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2. 불교의 확산과 정착	
	3. 율령 체계의 수용	3.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4. 국제 관계와 외교 활동	4.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1. 북방 민족의 성장	1. 북방 민족과 국제 질서의 개편	10~ 16세기
	2. 농업의 발전과 소농 경영	2.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	
	3.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3. 문신과 무인	
	4.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4. 성리학의 전개	
IV.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16~ 18세기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2. 은 유통과 교역망	
	3. 인구 증가와 도시화	3. 인구 증가와 도시화	
	4. 전통 사회의 완성	4. 서민 문화와 각국의 독자적 전통	
V. 국민국가의 수립(천재) V. 국민국가의 모색(교학)	1. 개항과 국민 국가 수립 노력	1. 개항과 국민 국가	19세기~ 1945년
	2. 제국주의 침략과 피해	2. 침략 전쟁의 확대와 민중의 피해	
	3.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3. 반침략 저항 운동	
	4. 평화를 향한 노력		
	5.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4.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의 변화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1.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1.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1945년 이후
	2. 냉전과 전쟁	2. 내전 속의 열전	
	3. 경제 성장과 역내 교역 활성화	3. 경제 성장과 지역 내 교류	
	4. 민주화와 사회 변화	4.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와 사회	
	5.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5. 동아시아 역사 갈등과 화해	

모두 6개의 대단원과 25개 혹은 26개의 내용요소로 구성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조적 특징은, 대단원은 6단계의 시기별 고려가 되어 있으나 그 안에 포함된 4~6개의 내용요소는 주제별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원전후 시기부터 10세기를 포괄하는 Ⅱ 단원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에 속해 있는 ‘국제 관계와 외교 활동’이라는 내용요소의 경우, 조공-책봉 체제에 대한 개념과 주제 설명에 주안점을 두되 반드시 시대에 국한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前漢 시대(B.C. 202~A.D. 9) 중원 지역과 匈奴의 대결 구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주로 7세기 전후의 다원적인 외교 관계에서 논의가 그치지만, 이 시기에 그 원형이 마련된 조공-책봉 체제는 19세기 후반까지 중국과 주변국 사이의 외교적 의례(protocol)로 작동되었고, 따라서 Ⅲ장의 ‘북방 민족의 성장/북방 민족과 국제 질서의 개편’이나 Ⅳ장의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에서도 언제든지 원용이 가능한 ‘열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열린’ 구조는 이 글에서 주목하려는 Ⅳ장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의 두 번째 내용요소인 ‘은 유통과 교역망/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Ⅳ장은 대체로 16~18세기를 설명하는 장이지만, 동아시아 교역망에 대한 언급을 위해서는 이전 시기인 14세기 후반, 즉 明朝 전반기의 海禁政策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가 없다. 또한 동아시아의 은 유통은 16세기 후반기가 그 전성기에 해당하지만 이때 형성된 유통망과 그 거리의 방향은 18세기까지 이어지고, 결국 19세기 충돌과 개항이라는 주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은 유통과 교역망’에 대한 학습은 이후 Ⅴ장의 ‘개항과 국민 국가’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된다.²⁰⁾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연민수 등,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 참조.

20) 유용태, 2012,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관련하여』(2012. 10. 6,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 90쪽에서도 “개항 이후의 역사를 각국의 17-19세기 역사와 상호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

이처럼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시간적인 구성과 주제별 접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농경과 목축 문명을 낳다', '인구 이동과 교류의 증대/지역 간 인구 이동과 전쟁',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문신과 무인', '인구 증가와 도시화', '평화를 위한 노력',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등의 내용요소는 모두 그 제목만으로는 어느 시대에 대입해 놓아도 적용이 가능한 '열린' 제목이다. 모든 내용요소가 '열린' 구조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이러한 주제별 접근을 지향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시대순에 따라 기술된 기존의 〈한국사〉나 〈세계사〉 교과서와의 차별점이기도 하다.

아마도 이는 〈동아시아사〉가 가장 최근에 생겨난 교과목이라는 점, 기존의 〈한국사〉 및 〈세계사〉와 일정한 차별성을 확보해야 했던 필요성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구조적 특징은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 익숙한 교사 및 학생들에게 처음에는 상당히 낯설게 다가왔을 것이고,²¹⁾ 그 결과 교육 과정에서 일정한 혼란이나 새로운 發想(혹은 着想)을 가능케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은 유통과 교역망'이 이러한 혼란 혹은 발상의 전환을 가장 많이 야기했을 내용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장을 바꾸어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자.

고 있다.

- 21) 시기별 대단원 안에 담긴 주제별 내용요소라는 형식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단계부터 ① 일관성이 부족하고, ② 내용이 학습자에게 지나치게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③ 공통적이고 연관성 있는 요소를 각 주제별로 모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19·23·26쪽).

Ⅲ. ‘은 유통과 교역망’의 참신성과 ‘글로벌 히스토리’

‘은 유통과 교역망/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은 그 제목부터 ‘참신’하다. 가장 ‘참신’한 접근은 은 유통(silver trade)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아시아 교역망의 형성 및 서구와의 교류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다. 2007년과 2009년에 각각 발표된 학습내용 성취기준을 보자(〈표 2〉).

핵심적인 용어는 은 유통, 동아시아 교역망, 그리고 서구와의 교류 세 가지인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근본은 역시 銀 유통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은 유통에 대한 이야기 소재가 풍부해야 이 내용요소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음은 不問可知的 일인데, 과연 기존의 〈한국사〉와 〈세계사〉 교과에서 은 유통을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어 왔는지는 의문이다. 2003년에 발간된 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3종)를 보면 중국의 一條鞭法 시행을 언급하거나 유럽의 신헌로게적 및 가격혁명, 그리고 阿片戰爭에 대한 부분에서 은과 관련한 서술이 있을 뿐, 이를 동아시아적 맥락과 연결해서 설명한 부분은 없었다.²²⁾ 하지만

〈표 2〉 『동아시아사』 교과서 ‘은 유통과 교역망’ 성취기준

2007년 교육과정	2009년 교육과정
Ⅳ.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Ⅳ.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② 은 유통의 활성화와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 서구와의 교류를 이해한다.	④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역 관계가 변화하고, 은을 매개로 서구와 교류하였음을 이해한다.

22) 2003년 출간된 7차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서 은이 언급된 쪽수와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판사	내용	쪽수
고등학교 세계사 (발행 연도 2003)	지학사	명청시대 경제	168
		명청시대 조세제도	169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지배	213

2011년도에 발행된 고등학교 『한국사』(6종)와 2012년도에 발행된 고등학교 『세계사』(4종)를 보면, '은의 이동으로 본 세계무역 변화', '중국으로 유입되는 세계의 은', '은유통과 세계교역망의 통합' 등의 내용요소가 등장하고 이전에 비해 은 유통에 대한 언급이 대폭 증가했다. 물론 2011년에 출간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동아시아사』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내용요소의 설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2007년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탄생'하고 은 유통에 관한 항목이 설정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학계에서 은 유통이 쟁점으로 취급되고 논의되었던 적이 있었나? 16~18세기의 은 유통이라면 한국의 朝鮮時代, 중국의 明清時代, 일본의 에도 幕府, 그리고 서양의 '大航海時代'의 연구사에서 그 학술사적 맥락을 찾아야 할 텐데, 은 유통을 언급한 소수의 논문이 있을 뿐 한국의 한국사·동양사·서양사 학계에서 이 문제가 쟁점화되거나 관심 있게 주목받았던 적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²³⁾

고등학교 세계사 (발행 연도 2003)	지학사	신항로개척과 자본주의의 성장	217
		아편전쟁	259
	금성	명청시대 사회, 조세제도	158
		아메리카 문명 파괴	196
		가격혁명, 상업혁명	199
		아편전쟁	226
	교학사	명대 사회경제, 청대 사회경제	182
		신항로 개척의 결과	232
		에스파냐의 아메리카 정복	234
		아편전쟁	267, 268

- 23) 기존 연구 가운데 은 유통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와 서양사 연구자 가운데 일부 나온 바 있다. 한명기, 1992, 「17세기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 『奎章閣』 15; 한명기, 2004, 「16,17세기 明清交替와 한반도-「再造之恩」, 銀, 그리고 쿠데타의 변주곡」, 『明清史研究』 22; 오두환, 2004, "The Silver Trade and Silver Currency in Chosun Korea", *Acta Koreana*, Vol. 7, No. 1; 원유한, 2006,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이정수·김희호, 2006,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출판부; 전성호, 2008, 「임진왜란과 세계화의 기원과의 관계-한

그렇다면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어떤 근거로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은 유통을 내용요소의 전면에 내세우면서 16~18세기의 '동아시아사'를 서술하려 했던 것일까? 일견 떠오르는 이유는 세계 사학계에서 점차 각광을 받고 있는 '글로벌 히스토리'와의 관련성이다.

'글로벌 히스토리'란 기본적으로 세계화(globalization)가 가속화된 20세기 이후에 등장한 개념이자 역사 방법론으로, 기존의 '세계사(world history)'와 달리 '달에서 조망'하는 것과 같은 지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역사적 관점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자인 레프텐 스타브리아노스(L. S. Stavrianos, 1913~2004)의 『글로벌 히스토리(A Global History: From Prehistory to the 21st Century)』는 그 상징적인 저작물로, 1971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후 1999년까지 모두 7차례 개정판이 나왔고, 2005년 중국의 北京大學出版社에서 번역·출간되어 현재 北京大·復旦大 등 중국의 주요 대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²⁴⁾ '달에서 조망'하는 지구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그의 신조는 이후 마셜 호지슨(Marshall G. S. Hodgson), 윌리엄 맥닐(William H. McNeill), 필립 커틴(Philip D. Curtin) 등과 함께 '지구사(Global History)' 연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²⁵⁾ 최근 출간된 로버트 핀레이(Robert Finlay)의

국의 은유통을 중심으로, 『이순신연구논총』, Vol. 10, No. 1/2; 주경철, 2008, 『대항해 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중국사 연구자 가운데는 李俊甲, 1999, 「청 중기 사천의 銀流通 擴大와 白蓮教反亂」, 『中國史研究』 6이 있으나 중국 내부에서의 은 유통에 대한 언급이지 대외 관계 혹은 동아시아와의 관련성을 다룬 글이 아니다. 일본사 연구자 가운데는 윤병남, 2007, 『구리와 사무라이 - 아키타번을 통해 본 일본의 근세』, 소나무에서 일부 은 생산 및 외부 유출에 관한 언급이 있다.

- 24) 曹永憲, 2009, 「文明崛起와 '제3세계' - 200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세계사 인식」, 『역사교육』 112, 75~78쪽
- 25) 조지형, 2008, 「21세기 역사학의 쟁점과 전망: 지구사의 미래와 역사의 재개념화」, 『역사학보』, 202쪽; 김원수, 2009,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히스토리」,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푸른역사, 72쪽. 최근에는 滿洲學과 清代史 전공자인 파멜라 카일 크로스리(Pamela Kyle Crossley)가 저술한 『글로벌 히스토리란 무엇인가(What is Global History?)』(강선주 옮김, 2010, 휴머니스트)가 번역되었는데, 기존의 세계사를 '분기(divergence)', '수렴(convergence)', '전염(contagion)', '체제(systems)'라는 네 가지 범주로 재조명하

『순례하는 예술: 세계사 속의 陶瓷 문화』는 중국, 인도, 이슬람 세계, 유럽, 일본, 한국, 동남아, 동부 아프리카를 越境하는 천여 년에 걸친 도자기의 역사를 그야말로 '글로벌'하게 묘사했다.²⁶⁾ 한국에서는 '地球史'로 번역되기도 하고 필자처럼 '글로벌 히스토리'로 사용하는 논자도 있으나 중국에서는 '全球史'로 번역·사용하고 있다.²⁷⁾

이 글에서 주목하는 은 유통 역시 국가나 지역을 초월하는 초지역성과 이동성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기에 '글로벌 히스토리'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 분야 중의 하나가 되었다. 윌리엄 애트웰(William Atwell)이나 데니스 플린(Dennis Flynn)은 그 대표적인 연구자로, 이미 1980년대부터 세계적인 차원의 은 유통을 언급하면서 주요 은 수입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에 주목해 왔다.²⁸⁾ 요컨대 16세기 중엽 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굴된 은이 일부는 유럽이나 마닐라를 거쳐, 혹은 다른 일부는 직접 중국의 동남부 지역으로 대량 유입된 반면 그 대가로 중국의 차·비단·도자기 등이 유럽으로 유출되었다는 구조 속에서의 다양한 논의였다. 그 과정에서 17세기 전반기 명조 경제의 하락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였다.

- 26) Robert Finlay, 2010,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California World Histor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27) 중국의 '全球史' 수용 과정 및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學術研究』 2005年 第1期에 〈전구사가 中國史學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 하의 7편의 소논문이 정리되어 있다. 다만 '全球史'라는 용어는 같은 한자 문화권인 한국 및 일본 학계와 통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2008년 5월 중국 天津에서 창립된 아시아세계사학회(AAWH)의 학회 명칭 사용에서도 각국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지형, 2008, 앞의 글, 209~210쪽 참조.
- 28) William S. Atwell, 1982, "International Bullion Flows and The Chinese Economy CIRCA 1530~1650", *Past and Present* 95; William S. Atwell, 1986, "Some Observations on the "Seventeenth-Century Crisis" in China and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5, No. 2; Dennis O. Flynn & Arturo Giraldez, 1985, "Arbitrage, China and the World Trade in the Early Modern Period",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 38, No. 4, 1985; Dennis O. Flynn & Arturo Giraldez, 1995,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6, No. 2 등

의 경제 상황과 연동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에 집중된 각종 자연재해가 17세기 전지구적으로 진행된 ‘소빙기(Little Ice Age)’와 연결되었다는 사실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즉, 明朝의 몰락과 淸朝의 등장에서 왕조 지배자의 도덕적 해이 내지는 시스템의 문제 외에 대외적인 요인(경제적, 환경적)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른바 ‘17세기 위기론(Seventeenth-Century Crisis)’에 관한 논쟁이었다.²⁹⁾

문제는 은 유통의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즉, 16세기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 등지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은의 경로와 대략적인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실제 지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은이 이동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연구자들은 잘 알려진 단편적인 몇몇 자료를 근거로 추론을 할 뿐이다. 가령 아메리카에서 마닐라로 이동한 은 가운데 어느 정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나누어 유통되었는지,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유통되던 은 가운데 다시 어느 정도가 다시 중국으로 유입되었는지 사실상 확인된 바는 거의 없다. 따라서 당시 동아시아의 은 유통을 언급할 경우에도, 시기별로 대략적인 은 이동 경로만 확인할 뿐 어느 정도의 양과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각 세기별 유통량의 범위와 균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그럼에도 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의 은 유입을 강조하면서 월러스틴(I. Wallerstein)과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등의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

29) 이 문제에 관하여 대외적이고 지구적인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William S. Atwell, 1986, 위의 글; William S. Atwell, 1990, “A Seventeenth-Century ‘General Crisis’ in East Asia?” *Modern Asian Studies* 24, No. 4라면, 중도적인 입장은 Frederic Wakeman Jr., 1986, “China and the Seventeenth-Century World Crisis”, *Late Imperial China* 7, No. 1 → Frederic E. Wakeman Jr.; selected and edited by Lea H. Wakeman, 2009, *Telling Chinese History: a selection of essay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이며, 실제 은 유입량과 관련된 대외적 요인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비판하는 입장은 Richard von Glahn, 1996, “Myth and Reality of China’s Seventeenth-Century Monetary Crisi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6, No. 2이다.

사 인식과 차별된 세계사 인식을 추구했던 안드레 군더 프랑크의 『리오리엔트 (ReORIENT)』는 동아시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프랑크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럽 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아닌 글로벌 경제의 시야를 확보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결과물이며, 특히 1500년 이후 유럽이 세계사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강고한 기존 관점에 대한 비판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비유럽 세계의 핵심지역으로 중국을 부각시켰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1500년이 아니라 적어도 18세기 중엽까지 지속되었음을 논증하였다.³⁰⁾ 그는 이것을 장기적인 팽창국면으로 파악했으며, 대표적인 증거는 당시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전 세계의 화폐인 은이었다. 이러한 은의 흐름을 야기한 근본 원인은 중국이 생산했던 비단·도자기·차의 경쟁력에 있었고, 유럽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메울 수 있는 마땅한 상품이 없었으나 신대륙에서 채굴한 은이 그 역할을 대체했다고 해석했다. 이처럼 프랑크의 논의는 세계사 서술의 유럽 중심성을 공격하며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의 역할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결론에 대한 수궁 여부를 떠나, 동아시아에 대한 역사 서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즉, 은 유통은 세계사적인 맥락과 연결된 동아시아를 그려내는 동시에 이를 ‘유럽 중심주의’적 시각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소재로 부각된 것이다. 동아시아적 권역을 강조하면서도 세계사와의 관련성을 확보하려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제목의 내용요소가 포함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하지만 당시 중국으로 유입된 은이 과연 명청시대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했다.³¹⁾

30) 안드레 군더 프랑크 저, 이희재 역, 2003, 『리오리엔트』, 이산; 강진아, 2004, 「16-19세기 중국 경제와 세계체제 - 19세기 분기론과 ‘중국 중심론’」, 『이화사학연구』 31; 강성호, 2010, 「안드레 군더 프랑크」,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역사가들: E. H. 카에서 하워드 진까지』, 역사비평사

31) 가령 ‘상대가치상품(귀금속 등의 사치품)’인 은에 대한 대가로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절대가치상품(비단, 자기, 차 등)’의 교환 구조가 고착되면서, 중국 경제는 일시적인 번영을 맞보는 대신 민족 전체가 서양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李憲堂, 2009, 「명청 사회경제에서 白銀의 기능에 관한 試論 - 프랑크와 포머란츠의

무엇보다 프랑크의 논의는 동아시아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이 빠져 있어, 결국은 중국이 다시 천하질서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것처럼 해석될 위험성도 농후하다.³²⁾ 따라서 교과서에도 은 유통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도 이 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다시 중국 중심주의로 환원되지 않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IV. ‘은 유통과 교역망’의 내용 분석

이번에는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내용요소가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었는지 현행 두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서, 각 교과서의 장단점과 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표 2>에서 보았듯, ‘은 유통과 교역망’의 주된 내용은 은 유통, 동아시아 교역망, 서구와의 교류로 정리된다. 大綱化의 원칙에 입각하여 더 이상 교과부에서 지정한 서술 지침이 제시된 것은 없으나, 2009년 10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배포한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내부자료, 2009)가 교과서 집필진에게 참조될 수 있었다.³³⁾

두 교과서에서 ‘은 유통과 교역망’은 모두 대단원 ‘IV.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의 두 번째 내용요소로 배치되어 있다. 두 교과서의 구성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글로벌 경제 관점”에 대한 평을 겸하여, 『2009년 明清史學會 國際學術大會 “清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2009. 7. 2~4, 안동대학교).

32) 강성호, 2010, 앞의 글, 318~322쪽; 김기봉, 2012, 「서양의 거울에 비친 중국」, 『철학과 현실』 95, 159쪽

33) 이 안내서는 사실상 <동아시아사>의 내용 개발과 연구를 책임지고 있던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에게 의뢰하고 수차례의 팀별 회의를 거쳐 발행한 결과물로서, 26개 내용요소별로 ‘성취기준’, ‘서술상의 관점과 유의사항’, ‘주요 내용’, ‘참고문헌’을 배치하였다. 단, 이는 교과서 서술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아니라 각 내용요소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가급적 교과서 집필자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서술된 자료집이다.

〈표 3〉 두 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 구성

은 유통과 교역망 (교학판)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천재판)
<p>핵심 용어: 은, 중개 무역, 일조편법, 은 경제권, 귀금속 유통, 대동법</p>	<p>핵심 용어: 해금 정책, 중계 무역, 향신료 무역, 은광, 은 수입</p>
<p>1) 동아시아 세계의 은 유통과 중국 (2쪽) *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모이다 * 은, 중국 사회를 바꾸다 ◎ 탐구활동: 김육이 본 중국인과 은</p> <p>2) 일본의 화폐 제도와 은 유통 (2쪽) * 일본의 은광 개발, 은의 길로 이어지다 * 에도 시대 일본의 화폐 경제 ◎ 열린 자료, 열린 생각: 금·은·동전과 오늘날의 물가 ◎ 열린 자료, 열린 생각: 연은분리법과 은광 개발</p> <p>3) 조선의 유통 체계와 은 (2쪽) * 은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조선 * 조선의 은 유통이 확대되다 ◎ 열린 자료, 열린 생각: 임진 전쟁 이후 강조된 중상론 ◎ 열린 자료, 열린 생각: 임진 전쟁 시기 명군과 은</p> <p>4) 동아시아 삼국의 교역과 교류 (3쪽) * 조공·책봉 관계 속의 한·중 교류 * 왜관과 통신사를 통한 한·일 교류 * 명·청과 일본의 교류 ◎ 탐구활동: 조천사, 연행사 그리고 칙사 ◎ 탐구활동: 통신사 ◎ 열린 자료, 열린 생각: 중국 무역선과 무역품 ■ 역사는 흐른다: 중개 무역으로 변영한 유구 (1쪽)</p>	<p>*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 (2쪽) ◎ 더 알아보기: 류큐 왕국의 중계 무역 *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2쪽) ◎ 이야기 속으로: 홍차, 우연한 산물? * 무역의 발달과 은 유통의 활성화 (2쪽) ◎ 더 알아보기: 조선의 은 정련법 ◎ 그때 세계는: 아스텍 문명의 파괴 ● 교역의 거점, 항구 도시 (1쪽) ● 동아시아 사람들: 서구의 과학 기술을 전한 유럽인 (1쪽) ● 주제 탐구 (2쪽) ① 은의 유통과 조선의 상황 ② 동아시아에 온 유럽인 ③ 국외로 이주한 중국인과 일본인 ④ 동아시아에 전래된 작물 ⑤ 세계 지도와 인식의 변화</p>

외형적인 구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章節의 구성이다. 교학판이 1번에서 4번까지의 중주제를 제시하고 다시 그 하위 단위의 소주제를 각각 2~3개씩 제시했던 반면 천재판은 세 가지 소주제를 번호 매김 없이 제시했을

뿐이다. 따라서 제목으로만 볼 경우, 교학관은 13개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일람만 해도 그 구조가 쉽게 이해되지만 천재관은 단 3개의 주제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본문과 참고자료까지 읽어보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괄목할 만한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다. 우선 두 교과서 모두 10쪽을 ‘은 유통과 교역망’에 할애했다. 즉, 주제 제목에서 13대 3으로 큰 차이가 나지만 총 분량은 같았다. 이는 천재관에서 본문 이후로 1쪽 분량의 <교역의 거점, 항구 도시>와 <동아시아 사람들: 서구의 과학 기술을 전한 유럽 인>이라는 자료를 넣고, 다시 2쪽 분량의 <주제 탐구>를 첨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천재관은 <주제 탐구>를 내용요소의 후반부에 2쪽 분량으로 집중시킨 반면, 교학관은 본문 하단에 세 차례의 <탐구 활동>과 다섯 차례의 <열린 자료 열린 생각>을 통해 다양한 질문을 분산시켰다.

구체적인 내용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교과서의 제목의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학관은 ‘은 유통과 교역망’, 천재관은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으로 선후 관계가 반대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같은 내용이라 볼 수도 있겠으나, 본문 서술 역시 이러한 제목 상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즉, 교학관의 시작은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모이다’로 시작하는 등 중국·일본·조선의 유통 체계를 언급할 때 모두 銀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다. 반면 천재관의 시작은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이라는 주제이며 후반부에 가면서 은 유통이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요약하면 교학관은 은 유통의 확대가 동아시아 교역망을 활성화시켰다는 논지인 반면, 천재관은 동아시아의 교역망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이 개입됨으로써 세계 경제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으로 차이가 발견된다.³⁴⁾

34) 이러한 차이점은 두 교과서 곳곳에서 발견된다. 가령 교학관에서 동아시아 삼국의 유통 체제에서 은의 비중을 모두 강조하지만 천재판에는 이러한 강조점이 결여되어 있다. 반면 천재판에서는 <동아시아 사람들>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은 유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박연, 마테오 리치, 알렉상드르 드로드 신부, 윌리엄 애덤스를 소개했는데, 이는 교역망을 통해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핵심 용어에서도 중요한 개념상의 차이 혹은 오류가 발견된다. 교학판에서 ‘중개 무역’으로, 천재판에서 ‘중계 무역’이라는 개념상의 차이로, 각 교과서는 동일한 류큐(琉球)의 무역 행위를 서로 다른 용어를 시종일관 사용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더 적절한가? 仲介 무역은 ‘merchandising trade’이고 中繼 무역은 ‘intermediary trade’에 해당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중개 무역이란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여 수입대금과 지급 금액의 차액을 취하는 무역 형태를 말하는 반면, 중계무역은 최초 수출업자나 최종 수입업자의 대리인으로 거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취득하는 무역 형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³⁵⁾ 즉, 仲介 무역은 부동산 거래와 같이 매도자와 매수인의 사이에 중개인이 끼여 있는 일종의 3자간의 거래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은 유통과 각종 무역 형태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다만 교학판(131쪽)에서 유구의 또 다른 역할로 언급한 명과 일본 사이의 조서를 전달하는 경우는 상황적으로 문서 전달을 ‘중개’한 것이 옳은 표현이지만, 교역망을 언급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교학판의 ‘중개 무역’ 표현은 전체적으로 ‘중계 무역’으로 수정되는 것이 적절하다.

내용 분석으로 먼저 교학판을 보자. 본문의 서두에 제시된 〈생각 열기〉의 내용은 은 유통이 중요하다는 언급과 함께 “은은 당시 동아시아 삼국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질문으로 마무리된다. 약간 무거운 듯한 느낌이 들지만 큰 무리는 없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왼쪽에 제시된 그림과 〈일본의 수입품〉이라는 간단한 설명은 대단히 불친절하다. 즉, 사진도 아니고 아마도 民書 가운데 일부를 캡처해 온 그림만을 보고 어디에서 수입된 어떠한 종류의 물품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며, 이것이 〈생각 열기〉의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모호하기만 하다.

1) 동아시아 세계의 은 유통과 중국: 이 단락에서는 세계적인 차원으로 진행된 은 유통에서 중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강조한 것은 좋지만, “1630년대까지 해마다 250~265톤

3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176&mobile&categoryId=518>

정도의 외국 은이 들어오면서 중국은 ‘외국 은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였다.” (122쪽)는 언급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매년 250~265톤의 은이 유입된 것이 언제부터 1630년대까지인지 서술하지 않았기에, 즉 은 유입의 하한년도만 있을 뿐 상한년도가 없기 때문에 중국적으로 중국에 유입된 은의 전체 비중과 세계에서의 위상을 가늠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외국 은의 무덤’이라는 표현은 분명 당시 유럽인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고, 따라서 16~18세기 중국 경제를 대단히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체제로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외국 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명의 경제는 은 유입량의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혹은 “스페인이 쇠퇴하면서 은 유입이 줄자 명의 경제도 위기에 빠질 정도”(123쪽)라는 언급은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17세기 위기론’의 주된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를 반영했다는 의미부여는 되겠지만, 명 중기 이후 활성화된 명의 경제가 후기에 쇠퇴한 이유를 스페인의 쇠퇴→은 유입의 감소→명 경제의 위기, 즉 세계 경제로 편입된 중국 경제의 취약성으로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왜곡 가능성을 오히려 높여 놓았다. 명의 경제가 쇠락하게 된 다양한 설명방식(가령 황제의 무능과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환관의 발호, 국방비 증가, 자연재해의 집중 등) 가운데 하나로 은 유입의 감소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³⁶⁾ 또한 중국 역사에서 가장 海禁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明朝의 해금 정책³⁷⁾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청은 무역을 통제하여 …… 거래 또한 공행이라 불리는 어용 상인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되었다.”(123쪽)고 서술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들은 명조에 비해 청조의 대외 무역이 더 위축되었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³⁸⁾

36) Richard von Glahn, 1996,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Univ. of California Press, ch. 6~7 참조.

37) 檀上寛, 2004, 「明代海禁觀念の成立とその背景 - 違禁下海から下海通番へ」, 『東洋史研究』 63-3

38) 실제 청의 대외무역 기조는 청초 反淸 세력(鄭氏) 진압을 위해 실시했던 일시적인 遷界令을 해제하고 4곳에 海關을 설치(1684)하면서 이전에 비해 한층 대담하고 개방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었다(岩井茂樹, 2010, 「華夷變態後の國際社會」,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近世的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48~49쪽).

2) 일본의 화폐 제도와 은 유통: 이 부분에서는 이와미[石見] 은광이 개발되면서 일본 역시 동아시아 은 유통망에 들어오게 된 사실과 일본의 화폐 제도를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金-銀-銅錢의 교환 비율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 물가를 오늘날의 물가와 비교한 부분(124쪽)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왜 중국과 한국의 화폐 제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또한 '금 1냥=은 60문=동전 4~6관'이라는 설명의 경우, 냥(兩)·문(文)·관(貫)이라는 화폐 단위가 학생들에게 무게 단위와 혼동 없이 전달될 것인지 의문이며, 1:60:4~6이라는 교환 비율 역시 16~18세기 내내 변동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리고 조선에서 개발된 鉛銀分離法이 일본에 전달되어 활용된 언급을 하면서 "연은분리법이 조선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제시했는데, 학생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역사 교사도 제대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다. 오히려 이 질문은 "연은분리법의 전달 이후 조선과 일본 사회는 각각 어떻게 변화되어 갔을까?"라는 이후의 사회 변화로 학생들의 사고를 이어가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

3) 조선의 유통 체계와 은: 이 부분에서는 16세기 후반까지 현물이 화폐로 사용되기에 은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조선 전기 상황과 壬辰戰爭 이후 은 유통이 확대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천재판과 달리 교학판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壬辰戰爭 시기 明軍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상당한 양의 명나라 은이 조선으로 유입되었을 뿐 아니라 戰後 복구를 위한 자원 마련을 위해 重商論이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학계의 연구 성과를 잘 반영한 것이지만,³⁹⁾ 반면 조선 후기의 경제사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실제 이후 전개된 화폐 경제

1757년 실시된 청조의 一口通商 정책으로 인해 서양에 개방하는 항구는 한 곳으로 줄어들었지만, 廣東13行의 활동과 청조의 대외무역이 위축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李國榮 편저, 이화승 옮김, 2008, 『제국의 상점 - 중화주의와 중상주의가 함께 끈 동상이몽, 광주13행』, 소나무 참조.

39) 한명기, 1992, 「17세기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 『奎章閣』 15; 한명기, 2004, 「16, 17세기 明清交替와 한반도 - '再造之恩', 銀, 그리고 쿠데타의 변주곡」, 『明清史研究』 22

에 대한 조선 사회의 전체적인 반응을 고려할 때 균형감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급기야 18세기 대동법 시행 이후 “국내 거래와 소액 거래에는 동전이 주로 유통되고 대외 무역과 고액 거래에는 은이 사용되는 이원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127쪽)고 하는데, 과연 은과 동전의 이원적 통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국가 학계에서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4) 동아시아 삼국의 교역과 교류: 이 부분에서는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 관계를 한·중 교류, 한·일 교류, 중·일 교류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면서, 특히 연행사(혹은 조천사)와 통신사를 강조하고 있다. 각각 중국과 일본을 往來地域으로 하는 두 使行團은 본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의미 있는 배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연행사와 통신사는 ‘은 유통과 교역망’이 아닌 다른 내용요소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이므로⁴⁰⁾ 어떤 내용요소에 더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중·일 교류에 대한 언급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로마치 막부 시기 明朝와 조공 무역이 재개된 지 약 150년 만에 단절된 것(즉, 15세기 초반~16세기 중엽까지)과 이후 일본은 중국의 조공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⁴¹⁾ 아쉽게도 교과서는 “무로마치 막부 때 시작된 명·일 무역

40) 가령 천재판에서는 연행사와 통신사를 ‘은 유통과 교역망’이 아니라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에서 제시하였다. 교학판 129쪽에 위치한 <통신사 행렬도>는 천재판 136~137쪽에 걸쳐 큰 그림으로 제시해 놓았는데, 그 결과 통신사라는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천재판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이를 한일 사이의 전쟁과 연관해 기억하게 될 것이고, 교학판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한일 양국의 교역망과 관련하여 상기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두 부분에서 모두 통신사를 연상해내는 것이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한 내용요소에서 강조하여 설명한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요소에서 관련 쪽수를 제시하면서 짧게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1) 명과 무로마치 幕府 사이의 朝貢貿易 관계, 즉 永樂年間 조공이 재개되었다가 1523년 寧波爭功을 통해 분열이 심화되어 결국 1547년 策彦周良 사절단을 마지막으로 끊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曹永憲 譯註, 2011, 『日本傳』, 동북아역사재단 역음, 『明史 外國傳 譯註1- 外國傳 上』, 동북아역사재단, 187~218쪽 참조. 中·日 관계의 변화에서 寧波爭功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佐久間重男, 1992, 『日明關係史

은 16세기 중반에 중단되었다.”라는 간략한 언급만 하고 그 이후 시대의 상황만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공무역 체제가 유지되던 시기 양국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공식적인 문서였던 勘合符는 소개조차 되지 않은 반면 청대에 도쿠가와 막부가 발행했던 信牌는 청조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문서가 아님에도 설명과 사진까지 소개된 점(130쪽)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일정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⁴²⁾ 중·일 무역관계에서 일본 측의 필요(need)가 더 강력했던 시기에서 중국 측의 필요가 더 부각되는 18세기의 변화 국면을 세심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 역시 국가 차원의 변화라기보다는 연안 지역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투영된 부분이기엔 설부른 일반화는 곤란하다.

두 번째 내용 분석으로 천재판을 보자. 본문의 서두에 제시한 그림은 일본에 도착한 유럽 인의 모습을 담은 병풍도로,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라는 질문을 병기했다. 그림과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본 내용요소에서 다루게 될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된 교역망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었으리라 예상된다. 다만 이는 동아시아와 유럽 세계의 거대한 교역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인데, 이는 동아시아 내부의 은 유통보다 세계적 차원의 교역망 형성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천재판의 관점이 투영된 것이라 여겨진다.

1)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 이 부분에서는 明代 동아시아 무역이 朝貢과 海禁이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밀무역이나 琉球의 중계

의研究』, 東京: 吉川弘文館, 第3章 참조.

42) 信牌란 중국에서 오는 무역선에 대해서 막부가 발행했던 일종의 교역 허가증으로, 일본의 銀과 銅의 중국 유출을 막기 위해 1715년 막부가 반포한 正徳新例의 일환이었다. 이를 통해 막부는 일본의 화폐 가치와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長崎貿易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했던 것이다. 信牌 발행이 중국 연안 지역의 상인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에도 막부 주도의 교역 정책과 信牌를 淸朝가 公認했다기보다는 默認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18세기 中日 관계의 특징을 강조하면서 이를 당시 동아시아의 광범위한 互市체제로 파악하려는 경향은 어디까지나 일본 연구자의 입장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互市체제에 대해서는 上田信, 2005, 『海と帝國: 淸朝時代』(中國の歴史), 東京: 講談社, 349~365쪽을, 明代와 다른 淸代 中日 무역 관계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松浦章, 2002, 『淸代海外貿易史の研究』, 朋友書店 참조.

무역이 활성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당시 동아시아 교역망의 본질을 朝貢과 海禁이라는 키워드로 풀어내는 방식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한 서술이라고 판단되며,⁴³⁾ 일본의 막부가 나가사키를 개방함으로써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하게 되었음을 강조한 것도 동시기 한국 및 중국과 대조를 이루고 있어 동아시아라는 단위로 하더라도 유사한 환경 속에서 나라별로 서로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음을 잘 지적한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143쪽에서 무로마치 막부가 16세기 중반까지 명과 조공 관계를 맺었다고 언급한 직후 “이후 조공 관계를 단절하였다가 16세기 말~17세기 초에 무역을 허가하는 슈인장을 발급하여 교역을 통제하면서 큰 이익을 얻었다.”고 함으로써, 어법상 막부의 슈인장(朱印狀) 발급이 마치 조공 관계가 재개되어 발생한 현상으로 오해할 소지가 생겼다.⁴⁴⁾ 또한 조선과 명의 무역 관계를 설명하는 단락의 마지막에 “류큐와 시암, 자와 등의 동남아시아 상인들도 조선에 와서 교역하였다.”(143쪽)고 언급하는데, 과연 이러한 교역의 횡수와 분량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그리고 일본 및 중국의 동남아시아와의 교역량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밝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여기서는 14세기 이후 동아시아 교역망이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유럽과 연결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은 유통에 대한 본격적인 서술로 들어가기에 앞서 은 유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세계적 차원의 교역망 형성을 제시했다는 점은 교학판과 두드러진 차이점이지만, 16세기에 본격화되는 동아시아의 은 유통을 언급하기도 전에 18세기 중엽 영국으로

43) 檀上寛, 1997, 「明初の海禁と朝貢－明朝専制支配の理解に寄せて」,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中國史學の基本問題 シリーズ 4), 汲古書院; 楊軍·張乃和 主編, 2006, 『東亞史－從史前至20世紀末』, 長春出版社, 第4編 封貢體制(13世紀末-1874年); David C. Kang, 2010,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Contemporary Asia in the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ch. 4

44) 실제 勘合 무역을 전제로 한 중국과 일본의 조공 관계는 1547년 일본에서 중국으로 파견된 策彦周良의 遣明船을 마지막으로 종결되었다. 이를 통해 밀무역이 활성화되고 후기 倭寇가 창궐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는 田中健夫, 2012, 『倭寇: 海の歴史』, 講談社, 111~116쪽 참조.

인해 발생하는 아편과 은 유통까지 언급해버림으로써(145쪽)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방해할 가능성이 생겨버렸다. 또한 사진 자료를 통해 일본의 '아리타(이마리) 자기'와 '독일의 마이센 자기'를 제시한 것은 본문의 서술 방향과 관련해 적절했으나, 사진에 대한 캡션 설명이 전혀 달려 있지 않아 이러한 자기의 文樣과 技術이 동아시아 교역망의 운영원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시기 도자기의 유행을 선도해 나갔던 중국 景德鎮 도자기의 사진과 이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고 시기별로 후기에 발전한 일본과 독일의 자기를 배치한다면 제시된 사진에 대한 이해가 훨씬 쉽고 명쾌해질 것이다.⁴⁵⁾ 중국에서도 18세기 중반부터 티롤리언(Tyrolean, 독일·스위스·이탈리아와 국경을 접하는 오스트리아 서부의 알프스 지방) 복식을 착용한 인물들을 모방한 자기를 제작 수출했는데, 교과서 145쪽에 제시된 <독일 마이센 자기>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 사진의 제작처가 마이센인지 중국인지는 분명치 않다.⁴⁶⁾

3) 무역의 발달과 은 유통의 활성화: 여기서는 중국의 조세 은납화가 진행되는 것과 일본과 아메리카에서 생산된 은이 중국으로 유입되면서 형성된 세계적 차원의 은 유통의 활성화를 설명하였다. 교학판과 다른 점은 은 유통이 세계적인 무역 시장의 흐름과 연동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며, 그 이유로 16세기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유럽과 중국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함으

45) 임진왜란 기간 일본 아리타 지방으로 끌려간 이삼평 등의 기술로 발전한 일본의 아리타 자기(이 자기의 수출 항구가 이마리)가 17세기 중반부터 유럽으로 흘러들어 가, 17세기 후반 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지에서 인기를 끌고, 18세기 초 비로소 제대로 된 도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한 마이센 지방에서 아리타 자기의 문양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당시 유럽에서 9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중국의 자기가 아니라 갓 100년 정도 전부터 생산된 일본의 자기 문양을 먼저 모방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는 당시 유럽인들의 취향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Oliver Impey, 1984, "Japanese Export Arts of Edo period and its Influence on European Art", *Modern Asian Studies* 18-4, pp. 690~695

46) 당시 수출용 인형과 동물 장식품 자기는 景德鎮보다 광동 廣州 佛山鎮에 위치한 石灣窯에서 제작된 것이 많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방병선, 2012, 『중국 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574~566, 580~584쪽 참조.

로써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⁴⁷⁾ 하지만 동아시아 내부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방향의 은 유통에 대한 내용은 소략하여, 147쪽에 조선과 일본에서 중국 쪽으로 이동했던 은 유통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리고 146쪽에 제시된 지도 〈은의 유통과 유입〉을 보면 지구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은 유통의 방향과 이동량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도에서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중국이 ‘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뿐인데, 이와미 銀鑛과 포토시 銀山에서 이 정도의 은이 이동한 시기는 16세기 후반부(늦어도 17세기 초기까지)에 해당하므로, 지도에는 시기를 적시하는 ‘16세기 후반’이라는 표현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두 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은 성취기준으로 제시된 은 유통, 동아시아 교역망, 서구와의 교류라는 세 요소를 빠짐없이 담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강조점은 달랐다. 은 유통에 주목하고 있는 교학판과 서구와의 교류에 주목하고 있는 천재판의 차이는 전체 서술 구조, 본문 내용, 참고자료의 사례 선정의 차이로 연결되어 나타났다. 16세기가 유라시아 규모의 세계경제라는 틀에 내실이 다져지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경제를 논할 수 있게 된 의미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⁴⁸⁾ 천재판의 서술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작 그 내실을 갖추는 動力이 되었던 은이 동아시아 내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 流動性을 발휘하고 있었음은 교학판에서 훨씬 구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묘사되었다. 따라서 향후 교과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16세기 은 유통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되, 그 구체적인 양상과 흐름은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구조와 서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글로벌 히스토리’의 연구 성과와도 부합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한국사〉와 〈세계사〉 교과과의 분리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내용요소는 V장 ‘국민

47) 금과 은의 서로 다른 교환 가치로 인해 대량의 은이 중국에 유입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경철, 2005, 「해양시대의 화폐와 귀금속」, 『서양사연구』 32 참조.

48) 미야지마 히로시, 2003, 「근대를 다시 본다」, 『역사비평』 2003년 여름호, 265~279쪽

국가의 수립'의 시작인 開港의 '필요성'과 '폭력성'을 이해하는데도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V. 餘論: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사, 동아시아 속의 한국사

이상과 같이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탄생' 과정과 그 배경으로서 '글로벌 히스토리'에 관한 관심의 증대, 그리고 두 종류의 교과서에 담긴 '은 유통과 교역망'에 대한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럼에도 남은 문제는 『동아시아사』, 그중에서도 '은 유통과 교역망'이라는 참신한 내용요소 가운데 韓國, 즉 16~19세기 朝鮮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떠한가라는 '실존적'인 질문이다. 환언하면 한국에서 저술된 『동아시아사』에서 한국인의 관점이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물론 한국에서 저술된 『동아시아사』 교과서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이 모든 내용요소마다 주도적인 위치를 점해야 한다거나 한·중·일 삼국의 상황이 동일한 분량으로 서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으며, 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⁴⁹⁾ 반면 내용요소에서 다루는 주제마다(혹은 시대마다) 한국의 역할과 위상은 끊임없이 변화되었고, 따라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역사적 현실을 반영하는 '불균질성'이 오히려 한국판 『동아시아사』의 독창

49)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획 단계부터 실제 천재판 교과서의 집필에도 참여한 바 있는 정연은 교과서의 출간 직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한국사 서술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했는데, 두 교과서 모두 대략 전체 내용의 1/3에서 1/4 정도를 한국사 서술 분량에 할당했다고 지적했다(정연, 201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검토」,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연구』 14, 14쪽). 그렇다면 결국 『동아시아사』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30% 내외의 분량을 차지하고(아마도 중국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했을 것이다)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과 서양이 10% 정도를 차지했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황금비율'이 과연 진정한 '동아시아사'를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물인지 의문이다.

성(originality)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⁵⁰⁾ 가령 내용요소 가운데 ‘문신과 무인’, ‘성리학의 전개’ 혹은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에서 차지하는 한국사의 분량이 전체에서 삼분의 일 이상을 차지하거나 동아시아에서 한국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장려할 만하다. 하지만 ‘은 유통과 교역망’에서 묘사되는 조선의 지정학적 특성과 海禁과 鎖國을 고집하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媒介的 기능, 그럼에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대되는 해양 중심의 세계 교역망에서 조금씩 ‘소외되는 듯’ 보이는 조선의 위상⁵¹⁾은 은폐해야 할 약점이나 유럽 중심주의(혹은 중국 중심주의)에 압도된 시각의 투영이 결코 아니다. 동시에 일본의 우익 사학자들이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일본 교과서의 서술을 비판할 때마다 사용하는 “自虐史觀”이라는 표현 역시, 이러한 측면에 함부

50) 반면 중국에서 출판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2003년 교육부가 발표한 『普通高中歷史過程標準』(實驗)에 따라 중국과 세계의 내제적 연계 내지 중국사와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사와의 통합적 인식을 추구하고 있지만, ‘동아시아’라는 지역 개념이나 전근대사에서 주변국, 특히 한국에 관한 내용은 거의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지훈 외 지음,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에 실린 각 시대별 분석 논문을 참조. 특히 이은자,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분석」, 187쪽 참조. 같은 맥락에서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202~219쪽에 따르면, 이미 1993년부터 사용된 ‘9년의무교육역사교과재부터 敎學 내용의 現代化라는 명분으로 대다수 교과서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항목이 사라지는 대신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과 그로 인한 중국과 서양의 경제적·문화적 교류 내용이 추가·강조됨으로써 전근대 한국에 대한 서술은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51) John Lee, 1999, “Trade and Economy in Preindustrial East Asia, c. 1500–c. 1800: East Asia in the Age of Glob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8, No. 1; 荒野泰典, 2010, 「近世的世界の成熟」,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近世的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9쪽의 지도 〈17세기 후반~19세기 중반의 동아시아 무역과 일본〉 및 同書에 실린 原田博二, 「長崎と廣州」 참조. 또한 고대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교류를 닫힌 체제로 인식하고 각국의 발전 편차를 주목하는 이성규 역시, 魚叔權의 말을 인용하면서, 발전 편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은 유통이 활성화된 동아시아 세계에서 조선은 그 체제 안에서 은의 유통과 생산을 통제하였을 뿐 일본보다 먼저 알고 있던 鉛銀분리법(=灰吹法)으로 중국과 유럽의 폭발적인 은 수요에 적극 대응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이성규, 2007,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과 닫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경제 문화 네트워크』, 태학사, 175~180쪽).

로 적용할 수 없다. 오히려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정직한 대면과 성찰을 통해 19세기 개항과 국민국가 수립 과정에서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세계가 일정 부분 공유해야 했던 고통과 왜곡된 상호 인식의 뿌리를 더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이와 동시에 '은 유통과 교역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동아시아와 한국은 21세기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와 그 속에서 수입과 수출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한 前兆이기도 하다. 오늘날의 달러에 해당하는 은, 거스를 수 없으나 때로는 두렵기까지 한 자본주의에 해당하는 동아시아 무역망과 세계 무역망의 연계, 그리고 달러의 흐름을 좌우하는 신기술 및 상품에 해당하는 자기·비단·차·인삼 등. 이러한 상황에서 '은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던 명과淸의 중국과 지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가장 가까웠기에 그 영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던 朝鮮의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무역의 逆調 현상을 거스르기 위해 벌이는 일본·네덜란드·영국·미국 등의 경쟁 국면은 '은 유통과 교역망'에서 언급하는 시대나 오늘날이나 그 강도와 유형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유사하다.

19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 이러한 제국 혹은 강대국 사이에 끼여 일종의 困境에 처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은 좀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열강의 힘겨루기 속에서도 한국인은 '他者'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하려는 根性を 보여주었다.⁵³⁾ 15세기까지 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비교적 쉽게 정체성을 확립해 왔던 한국은 19세기에 이르러 저물어가는 중국과 떠오르는 일본이라는 두 제국 사이에 끼여 복잡한 자기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후 강력한 서양과 일본, 그리고 여전히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은 중국

52) 이 점에서 동아시아 삼국이 近世 이후, 해양을 통한 왕래를 차단하고 자국어 발전에 따른 공통어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므로 인해 상호 疏遠하게 되었다는 高柄翹의 오래전 지적은 타견이라 할 것이다. 高柄翹, 1995, 「동아시아 나라들의 相互 疏遠과 통합」, 정문길 등 엮음, 『동아시아사,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23~40쪽

53) 앙드레 슈미드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63~66쪽

사이에서 더욱 어려워진 ‘정체성 유지’라는 과업을 끝내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15세기적 국면이 19세기적 국면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바로 이 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은 유통과 교역망’이 확대되던 시기였다. 중국 일본도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던 한국의 대외 교역망이 바야흐로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서구를 비롯한 세계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일정한 한계가 동시에 목도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과 한계는 비단 한국만의 특수성은 아니었고, 동시기 중국 명과清的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바이다.⁵⁴⁾ 이에 대한 반면교사 내지는 비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나라는 일본이겠지만, 이 역시 19세기 메이지유신의 ‘성공’과 양무운동의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인식 틀에서 벗어나 다시 판도가 많이 바뀐 21세기적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가령 15~19세기가 ‘육지의 아시아’에서 ‘바다의 아시아’로 그 화두가 변화되는 시기였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오랜 기간 위협적인 대상이었던 육지(가령 한반도 지역과 운남의 티베트 등)의 안보 문제에 최우선의 가치를 둔 반면 바다는 관심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⁵⁵⁾ 물론 이는 바다의 아시아에서 자신의 위상을 자리매

54) 이러한 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에서 지적되어 온 바지만, 2000년 이후 출간되는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서도 조심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가령 정화의 대원정에 대해서 이것이 유럽의 대항해시대보다 앞선 쾌거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식민지 개척에 소극적이었고 그 이후에 극단적인 해금정책으로 전환됨으로써 결국 중국이 서양에 뒤처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적하였다(김성규,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10-15세기 서술의 내용과 특징」, 김지훈 외 지음,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148~151쪽). 또한 명청시대 경제사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맹아에 대한 강조 일변도였던 기존의 서술에서 벗어나, 오히려 왜 자본주의로 발전하지 못했는지를 重農抑商 정책, 海禁 정책, 一口通商이었던 광둥무역체제 등을 자세히 언급하면서 설명하고 있다(이은자, 2010, 앞의 글, 191~195쪽).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된 중국으로의 막대한 은 유입 현상에 대한 언급이 결여되어 있어, 해금과 은 유입이라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현상에 대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순성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 학계가 제시하는 동아시아의 互市시스템과 중국의 ‘沈默 외교’에 대해서는 岩井茂樹, 2007, 「清代の互市と“沈默外交”」, 夫馬進 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참조.

55) 白石隆, ハウ・カロライン, 2012, 『中國は東アジアをどう變えるか: 21世紀の新

김해야 하는 일본의 21세기적 시각이 강조된 것이고 정작 논의 속에 한국에 대한 진지한 고려는 많지 않으므로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은 유통과 교역망’의 시대, 그리고 그 속의 한국을 서술할 때 한번쯤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관점이 아닌가 싶다. 대륙과 해양의 점점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특성과 실제 역할은 ‘육지의 아시아’를 강조하건 아니면 ‘바다의 아시아’를 강조하건 간과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내 것과 네 것의 명확한 경계를 구분하려 하고 모든 것을 우리 민족과 국가의 틀 안에서 보려는 역사해석의 틀에서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근대 이후에야 비로소 주권 개념을 적용할 수 있고 여전히 어느 누구에게도 배타적인 점유의 공간이 될 수 없는 바다와 바다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한층 유연하고 풍성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⁵⁶⁾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르고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의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하는 자세”를 함양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총괄 목표⁵⁷⁾에 부합할 수 있는 한 방안이 아니겠는가? 물론 해양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글로벌 히스토리의 전개가 대륙 패러다임 속의 북중국과 만주·몽골·한국 등 이웃 지역의 역사 전개를 후진적·전근대적·전자본주

地域システム』, 中央公論新社, 152~166쪽

56) 이와 관련하여 케네스 로빈슨, 2007, 「조선을 통해서 본 15-16세기 해양 동아시아의 형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역음, 『동아시아 경제 문화 네트워크』, 태학사는 동아시아 해양 세계에서 조선의 역할이 비중 있게 취급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로 주목된다. 또한 독일인 교수 앙겔라 쇼텐하머(Angela Schottenhammer)가 주도하는 인터넷 저널 *Crossroad- Studies on the History of Exchange Relations in the East Asian World* 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창간된 사실과, 그녀가 책임 편집인으로 출간되는 동아시아 해양 교류 총서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마치 인적·물적·지적 교류가 활발했던 지중해로 파악하는 입장은 관심을 끈다. Angela Schottenhammer ed., 2005, *Trade and Transfer Acros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Wiesbaden: Harrassowitz; Angela Schottenhammer ed., 2008,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s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Wiesbaden: Harrassowitz 등 참조.

57)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동북아역사재단 내부자료, 2009), 344쪽

의적으로 간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⁵⁸⁾ 거란-여진-몽골-만주로 이어지는 천년의 동아시아 북방민족 제국의 역사를 복원해 나가는 동아시아상에 대한 제안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⁵⁹⁾ 요컨대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사’와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를 균형감 있게 포착할 수 있는 『동아시아사』를 지향한다면,⁶⁰⁾ ‘은 유통과 교역망’과 그 시대에 대한 한국 학계의 관점을 담은 연구와 담론을 지금부터라도 과감하면서도 진지하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



- 58) 이정일, 2012, 「구미 중국사 학계의 지구사(Global History) 서술과 한국사-조선 후기 정체성 연구로의 시사」, 『동아시아역사의 실체와 새로운 청사연구의 방향을 찾아서』(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주최 학회, 2012. 10. 19), 38~39쪽
- 59) 박원호, 2012, 「북방민족 역사상의 복원을 통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교육논집』 49, 431~435쪽
- 60) 이와 유사한 관점을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위한 마지막提言」,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관련하여』(2012. 10. 6, 서울대학교 신양인문학술정보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가령 “동아시아사의 一國일 뿐인 한국의 역사를 동아시아 전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국과 ‘對外關係’의 窓口를 통해서만 서술하는 것이 ‘韓國史’를 잘 이해하는 지름길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사 연구자는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동양사 연구자는 ‘세계사 속에서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서양사 연구자는 ‘유럽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동서양을 결합한 새로운 역사방법론을 모색하는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재호의 ‘我와 非我의 투쟁’으로 점철되었던 한국사를 극복하고 ‘세계 속의 한국사’라는 목표를 위해 그 중간 단계로 ‘기억의 장’으로서의 동아시아사를 주창했던 김기봉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김기봉, 2006, 앞의 책, 182~198쪽).

참고문헌

1. 저서

- 교육인적자원부, 2008, 『역사교과서 모형단원 개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서울특별시 교육청
- 김기봉, 2006, 『(역사를 통한)동아시아공동체만들기』, 푸른역사
- 김지훈 외 지음,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 나카무라 사토루 편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 옮김, 200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에디터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09,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동북아역사재단 내부 자료)
- 방병선, 2012, 『중국 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중국의 근대성을 묻는다』, 창작과비평사
- 西嶋定生 지음, 李成市 엮음, 송완범 옮김, 2008, 『일본의 고대사인식: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 안드레 군데 프랑크 지, 이희재 역, 2003, 『리오리엔트』, 이산
- 앙드레 슈미드 지음, 정여울 옮김,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휴머니스트
- 역사학회 편, 2012,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역사학회 창립6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2012. 10. 6, 서울대학교)
- 원유한, 2006,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 윤병남, 2007, 『구리와 사무라이 - 아키타번을 통해 본 일본의 근세』, 소나무
- 李國榮 편저, 이화승 옮김, 2008, 『제국의 상점 - 중화주의와 중상주의가 함께 낀 동상 이몽, 광주13행』, 소나무
- 이정수 · 김희호, 2006, 『조선의 화폐와 화폐량』, 경북대학교출판부
- 정문길 등 엮음, 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 정문길 외 엮음, 1995, 『동아시아,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주경철, 2008, 『대항해 시대: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원식, 2009, 『제국 이후의 동아시아』, 창비
- 최원식 등 엮음, 2009, 『동아시아의 오늘과 내일』, 논형
- 파멜라 카일 크로스리(Pamela Kyle Crossley), 강선주 옮김, 2010, 『글로벌 히스토리

란 무엇인가』, 휴머니스트

楊軍·張乃和 主編, 2006, 『東亞史－從史前至20世紀末』, 長春出版社

白石隆, ハウ・カロライン, 2012, 『中國は東アジアをどう變えるか: 21世紀の新地域システム』, 中央公論新社

上田信, 2005, 『海と帝國: 明清時代』(中國の歴史), 講談社

松浦章, 2002, 『清代海外貿易史の研究』, 朋友書店

仁井田陞, 1968, 『東洋とは何か』, 東京大學出版會

田中健夫, 2012, 『倭寇: 海の歴史』, 講談社

佐久間重男, 1992, 『日明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Ebrey, Patricia, Walthall, Anne & James Palais, 2009, *East Asia: A Cultural, Social, and Political History*,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Fairbank, John King, Reischauer, Edwin O., & Craig, Albert M., 1978, *East Asia, tradition & transform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Finlay, Robert, 2010, *The Pilgrim Art: Cultures of Porcelain in World History* (California World History Librar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Kang, David C., 2010,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Contemporary Asia in the World), Columbia University Press

Murphey, Rhoads, 2010, *East Asia: A New History*, 5th ed., Boston: Longman

Schottenhammer, Angela ed., 2005, *Trade and Transfer Across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Wiesbaden: Harrassowitz

Schottenhammer, Angela ed., 2008, *The East Asian Mediterranean: maritime crossroads of culture, commerce and human migration*, Wiesbaden: Harrassowitz

von Glahn, Richard, 1996, *Fountain of Fortune: Money and Monetary Policy in China, 1000-170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 논문

강선주, 2012, 「고등학교 동아시아 과목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연계 방안」, 『역사학

- 회 창립6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 강성호, 2010, 「안드레 군더 프랑크」,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역사가들: E.H.카에서 하워드 진까지』, 역사비평사
- 강진아, 2004, 「16-19세기 중국 경제와 세계체제-‘19세기 분기론’과 ‘중국 중심론」, 『이화사학연구』 31
- 고병익, 1995, 「동아시아 나라들의 相互 疏遠과 통합」, 정문길 등 엮음, 『동아시아사,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김기봉, 2007, 「탈근대에서 국사와 동아시아사」, 『역사학보』 197
- 김기봉, 2012, 「서양의 거울에 비친 중국」, 『철학과 현실』 95
- 김성규,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10-15세기 서술의 내용과 특징」, 김지훈 외 지음,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 김성수, 2007, 「동아시아론의 전개와 역사 텍스트 속의 동아시아」, 『역사교육』 102
- 김원수, 2009,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히스토리」,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푸른역사
- 김정인, 2007, 「동아시아 공동 역사교재 개발, 그 경험의 공유와 도약을 위한 모색」, 『역사교육』 101
- 김한중, 2008, 「역사 교육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 김한중, 2011, 「중등 역사교과서 개편의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64
- 미야지마 히로시, 2003, 「근대를 다시 본다」, 『역사비평』 2003년 여름호
- 박명규, 2005, 「한국 동아시아 담론의 지식사회학적 이해」, 김시업·마인섭 엮음, 『동아시아학의 모색과 지향』,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위한 마지막提言」,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 박원호, 2012, 「북방민족 역사상의 복원을 통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사교육논집』 49
- 백영서, 2007,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196
- 송요후, 2008, 「중화권 교과서의 조선시대 서술 분석」, 임상선 등, 『중국과 타이완·홍콩 역사교과서 비교』, 동북아역사재단

- 스테판 다나카, 1995, 「근대 일본과 '동양'의 창안」, 정문길 등 엮음, 『동아시아사, 문제와 시각』, 문학과지성사
- 신성곤, 2005, 「역사 교과서의 국사와 세계사 편제 - 다양한 통합 방안의 모색」 (역사교과서 체제 모색을 위한 워크숍 자료)
- 신성곤, 2008, 「한국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구성과 그 특징」, 연민수 등, 『동아시아 역사교과서의 주변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 안병우 외, 2006,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2006년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 과제 연구결과보고서)
- 오두환, 2004, "The Silver Trade and Silver Currency in Chosun Korea", *Acta Koreana*, Vol. 7, No. 1
- 유용태, 2006,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환호 속의 경종 -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 유용태, 2012,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 이성규, 2006, 「무엇을 위한 '동아시아'인가?」, 『인문학연구』 36(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이성규, 2007,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열림과 닫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엮음, 『동아시아 경제 문화 네트워크』, 태학사
- 李成市, 2012, 「일본 역사학계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학계와의 대화로부터」, 『역사학회 창립60주년기념 추계학술대회: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 이은자, 2010,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청대사 서술 분석」, 김지훈 외 지음, 『중국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현황과 특징』, 동북아역사재단
- 이정일, 2012, 「구미 중국사 학계의 지구사(Global History) 서술과 한국사 - 조선후기 정체성 연구로의 시사」, 『동아시아역사의 실체와 새로운 청사연구의 방향을 찾아서』(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주최 학회)
- 이준갑, 1999, 「청 중기 사천의 銀流通 擴大와 白蓮教反亂」, 『中國史研究』 6
- 李憲堂, 2009, 「명청 사회경제에서 白銀의 기능에 관한 試論 - 프랑크와 포머란츠의 "글로벌 경제 관점"에 대한 평을 겸하여」, 『2009년 明清史學會 國際學術大會 "清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전성호, 2008, 「임진왜란과 세계화의 기원과의 관계 - 한국의 은유통을 중심으로」, 『이

순신연구논총』, Vol. 10, No. 1/2

-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
- 정연, 201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검토」, 한국역사교육학회, 『역사교육 연구』 14
- 조영현, 2009, 「『文明崛起』와 '제3세계' - 2000년 이후 중국 고등교육의 세계사 인식」, 『역사교육』 112
- 조영현 譯註, 2011, 「日本傳」, 동북아역사재단 역음, 『明史 外國傳 譯註1-外國傳 上』, 동북아역사재단
- 조지형, 2008, 「21세기 역사학의 쟁점과 전망: 지구사의 미래와 역사의 재개념화」, 『역사학보』
- 주경철, 2005, 「해양시대의 화폐와 귀금속」, 『서양사연구』 32
- 케네스 로빈슨, 2007, 「조선을 통해서 본 15-16세기 해양 동아시아의 형성」,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역음, 『동아시아 경제 문화 네트워크』, 태학사
- 한명기, 1992, 「17세기초 은의 유통과 그 영향」, 『奎章閣』 15
- 한명기, 2004, 「16, 17세기 明清交替와 한반도 - '再造之恩」, 銀, 그리고 쿠데타의 변주곡」, 『明清史研究』 22
- 황지숙, 2007, 「상대화 시각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교육방안」, 『역사교육연구』 5
- 황지숙, 2008,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휴머니스트
- 檀上寬, 1997, 「明初の海禁と朝貢 - 明朝專制支配の理解に寄せて」, 『明清時代史の基本問題』(中國史學の基本問題 シリーズ 4), 汲古書院
- 檀上寬, 2004, 「明代海禁觀念の成立とその背景 - 違禁下海から下海通番へ」, 『東洋史研究』 63-3
- 岩井茂樹, 2007, 「清代の互市と“沈黙外交”」, 夫馬進 編, 『中國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岩井茂樹, 2010, 「華夷變態後の國際社會」,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近世的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 原田博二, 2010, 「長崎と廣州」,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近世的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 荒野泰典, 2010, 「近世的世界の成熟」, 荒野泰典・石井正敏・村井章介 編, 『近世的世界

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 Atwell, William S., 1982, "International Bullion Flows and The Chinese Economy CIRCA 1530-1650", *Past and Present* 95
- Atwell, William S., 1986, "Some Observations on the "Seventeenth-Century Crisis" in China and Japa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45, No. 2
- Atwell, William S., 1990, "A Seventeenth-Century 'General Crisis' in East Asia?" *Modern Asian Studies* 24, No. 4
- Flynn, Dennis O. & Arturo Giraldez, 1985, "Arbitrage, China and the World Trade in the Early Modern Period",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Vol. 38, No. 4
- Flynn, Dennis O. & Arturo Giraldez, 1995, "Born with a 'silver spoon': the Origin of World Trade in 1571", *Journal of World History* 6, No. 2
- Impey, Oliver, 1984, "Japanese Export Arts of Edo period and its Influence on European Art", *Modern Asian Studies* 18-4
- Lee, John, 1999, "Trade and Economy in Preindustrial East Asia, c. 1500-c. 1800: East Asia in the Age of Global Integr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58, No. 1
- von Glahn, Richard, 1996, "Myth and Reality of China's Seventeenth-Century Monetary Crisis",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Vol. 56, No. 2
- Wakeman, Frederic Jr., 1986, "China and the Seventeenth-Century World Crisis", *Late Imperial China* 7, No. 1

[ABSTRACT]

“Silver Trade and Its Networks” in the High School
Textbook *Tong Asiasa*: Background and Rationale

Cho Younghun

In 2007, the textbook entitled *Tong Asiasa*(*East Asian History*) was introduced for use in a newly established high school elective course in history in South Korea. The course was offered to high school students starting in the first semester of the 2012 school year, an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Tong Asiasa* textbook, high school history programs adopted a curriculum composed of three components, “Korean History,” “East Asian History,” and “World History.” However, whether or not the textbook successfully bridged the existing gap between “Korean History” and “World History,” and whether it presents unbiased perspectives of the controversial “East Asian History” remains unclear and requires re-evaluation.

This study seeks to re-evaluate the contents of the “East Asian History” textbook. Of the 26 content topics, the chapter entitled “Silver Trade and Its Networks” was selected for additional analysis and evaluation. This chapter did not merely contain a list of historical events fro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Rather, it was more focused on the transnational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of silver viewed from both an East Asian perspective and a global perspective. The inclusion of such a novel topic in the “East Asian History” textbook could be attributed to two principal explanations: the uncommon

urgency in the introduction of the “East Asian History” textbook and the growing research interest in global history.

Upon examining two textbooks, the “Silver Trade and Its Network” chapter was found to effectively portray the locality of East Asia. However, the chapter failed to adequately explain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Joseon in the period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barter system for silver in East Asia.

In terms of Korea as an East Asian country, this chapter should highlight the limitations and the potential associated with the silver network in Korea’s foreign trade, which had been mainly constricted by China for a long time, but which, at the same time, extended to Japan and Southeast Asia, and ultimately to the rest of the world. If the goal of “East Asian History” is to depict a balanced viewpoint between “East Asian history inside world history” and “Korean history inside East Asian history,” additional research and positivistic approaches from the Korean perspective are required on the topic of the silver trade and its networks as related to history from the six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century.

Keywords

East Asian history, silver, trade, networks, global history

만주국의 국민 만들기의 이상과 현실

- 국적법 논쟁을 중심으로 -

김기훈 | 육군사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I. 머리말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은 1932년 3월 중국의 동북지역에 만주국을 건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침략성과 괴뢰성을 분식하기 위하여 일본은 재만 중국 민족들이 민족 자결의 입장에서 중국 본토에서 분리 독립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새로운 만주국이 민족협화를 이상으로 하는 독립국가임을 내외에 선전하였다. 만주국은 협화회라는 국가적인 동원 조직을 구성하여 복합민족으로 이루어진 만주국 주민들에게 ‘국민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국민 만들기’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¹⁾ 그러나 만주국의 국민 만들기는

※ 투고일: 2012년 11월 22일, 심사일: 2013년 2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3년 2월 22일

1) 협화회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로는 임성모, 1997, 『滿洲國 協和會의 總力戰體制 構想 研究 - '國民運動'路線의 摸索과 그 性格』(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를 들 수 있고, 일본의 연구로는 山本有造 編, 1993, 『滿洲國의 研究』(京都大學 人文科學研究所)에 지방통치에 기여하였던 협화회 조직의 활동상을 분석한 奥村弘의 논문 「地方統治におけるの滿洲國協和會の位置」 등을 들 수 있다.

이름만의 국민 만들기에 그치고 말았다. 만주국의 국민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국적법을 만주국이 폐망할 때까지도 제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근대국가의 기본적인 삼대 구성 요소로서 흔히 주권과 영토와 국민을 거론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만주국은 ‘고유의 국민’을 갖지 못한 불완전한 근대국가로 끝나고 말았다.²⁾ 만주국이 왜 국적법 제정에 실패하였을까? 본 연구는 이 문제를 그 당시 기초되었던 입안 서류들을 검토·분석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만주국의 국적법 문제는 만주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적법 연구사에서 볼 때 비교적 최근에 주목을 받기 시작한 연구 주제다. 많은 연구가 만주사변 직전의 조선인 귀화권이나 이중국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중국이 벌이던 공방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³⁾ 만주국 시기의 국적법 연구는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국적법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아사노 도요미[淺野豊美]는 그의 십여 년의 연구 성과를 묶어서 최근에 『帝國日本の植民地法制』(2008)로 출판한 바 있는데, 만주국 국적법만이 아니라 조선·타이완 등 식민지 전체의 국적법 문제를 다루고 있다. 만주국 국적문제는 치외법권 철폐문제와 연관하여 동시에 살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⁴⁾ 젊은 연구자인 엔도 마사타카[遠藤正敬]도 이러한 경향을 이어받아 일본

-
- 2) 만주국사의 원로 연구자 야마무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 “4천 3백 몇 만이라고 하는 만주국 거주자 가운데 법적으로는 단 한 사람의 만주국 국민도 없었다”라는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山室信一 著, 윤대석 역,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283쪽
 - 3) 만주사변 전인 1920년대의 재만조선인 사회를 다룬 논문은 대부분 조선인의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예를 들면, 박영석, 1995, 「일본 제국주의와 재만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문제-1931년 만주사변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 朴慶輝, 1993, 「在中朝鮮族의 法的地位에 대한 歷史的考察」, 『韓國民族運動史研究』 7 [동일한 제목의 논문 『백산학보』 44호(1994)에 전재됨] 등이다. 최근에 국적법을 집중적으로 다룬 논문으로 참고할 만한 것은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5); 白榮勛, 2002, 「滿洲朝鮮人の國籍問題と法的地位」 『明治文學研究論文集』 16); 손승희, 2004, 「만주사변 전야 만주 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 일본의 대응」 『중국사연구』 등을 손꼽을 수 있다.
 - 4) 淺野豊美, 2008, 『帝國日本の植民地法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만주국의 국적법과 치외법권을 연결시키는 그의 구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淺野豊美(1998), 「『滿洲國』における治外法權問題と國籍法」, 『濼澤研究』 第11號

제국 전체의 법제사적인 관점에서 만주국의 국적법을 다루고 있다. 그의 연구는 국적법을 호적법과 연관하여 다룸으로써 다른 연구자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⁵⁾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 국적에 관한 연구들도 최근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개척적인 연구를 진행한 다나카 류이치[田中隆一]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몇 편의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⁶⁾

국적법 제정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 기술상의 문제’⁷⁾에서 ‘재만 일본인의 마음’⁸⁾이라는 정서적 원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의견이 일제 관리, 일본 이민, 재만 상공업자 등 재만 일본인의 국적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적인 어려움으로 손꼽고 있다.⁹⁾ 그러나 최근에는 재만 조선인 문제를 그 어려움의 한 원인으로 부각한 연구¹⁰⁾도 있고, 그동안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백계 러시아인들의 문제를 분석한 연구¹¹⁾도 등장

- 5) 遠藤正敬, 2010,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國籍と戸籍－滿洲・朝鮮・臺灣』, 東京: 名石書店
- 6) 田中隆一, 1996, 「對立と統合の鮮滿關係－「內鮮一體」・「五族協和」・「鮮滿一如」の諸相」, 大阪歴史學會, 『History』 152; 田中隆一, 2007, 『滿洲國 日本帝國支配』, 東京: 有志舎. 그 외의 연구로 孫春日・朴興鎮, 2002, 「偽滿洲國『國籍法』的難産與在滿朝鮮人的國籍問題」, 『明治大學文學研究論文集』 第16號; 孫春日, 2001, 「偽滿時期日本對無籍朝鮮人的就籍措施」,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34-4; 呂秀一, 2006, 「『滿洲國』における朝鮮人國籍問題の考察」, 『廣島法學』 第30卷 第1號 등이 있다. 조선인의 국적문제가 만주국의 민족협화 담론과 조선총독부의 내선일체 이데올로기가 충돌 조절되는 구조 속에서 결정되었다는 주장을 펴는 다나카 기이치의 논문은 본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 7) 일본의 국제법학자였던 가나자와 교수는 1942년의 논문에서 “친족법의 미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일제 관리, 일본 이민의 이중국적 문제, 항상 이동하는 산동 쿠리의 문제 등 기술적 곤란이 매우 심하다”고 하면서 제정 실패의 이유를 ‘입법 곤란’이라고 주장하였다. 金澤理康, 1942, 『滿洲國籍法提言』, 『早稻田法學』 第21卷(滿洲國法制研究), 8쪽
- 8) 아마무로는 국적법 제정이 안 된 이유를 입법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국적을 떠나 만주국적으로 옮기기를 격렬하게 거부해 왔던 재만 일본인의 마음’으로 보았다. 山室信一 저, 윤대석 역, 2009, 앞의 책, 283쪽
- 9) 淺野豊美의 연구들이 대표적인 예다.
- 10) 만주국 시기 조선인의 국적 문제를 다루는 모든 연구가 이러한 주장을 한다.
- 11) 遠藤正敬, 2010, 앞의 책, 236~245쪽. 백계 러시아인의 국적문제를 소련과 만주국, 일본의 국제적 환경 속에 위치시켜 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업적을 기반으로 하면서, 당시의 입안 서류들에 반영되었던 쟁점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만주국의 국적법 제정의 파탄 원인을 살펴보려는 것이다.¹²⁾ 협화회라는 특수한 조직을 만들면서까지 복합 다민족 국가의 ‘국민 통합’을 그렇게 외쳐 왔던 만주국이 국민의 충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국적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아이러니다. 그러므로 국적법 제정 실패의 원인 추구는 탄생부터 모순투성이었던 만주국의 이상과 현실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도 될 것이다.

국적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만주국 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은 논의와 입안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건국 초기의 일로서 대체로 1932~1936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논의는 사실상 만주국 국적법 제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든 쟁점이 거의 대부분 망라되고 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입안 내용과 과정들을 분석하는 것으로도 만주국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한 큰 줄거리를 거의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도 이 시기의 입안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자료는 1932~1936년에 입안된 다음과 같은 9개의 자료들이다. ① 滿洲國外交部, 「公民權法案」(1932. 5), ② 滿鐵經濟調査會第五部法制班, 「滿洲國の國籍問題」(1932. 7), ③ 滿鐵經濟調査會田所委員, 「滿洲國國籍に關する意見」(1932. 8), ④ 大平善悟(東京商科大學教授), 「滿洲國の國籍問題」(1932. 9), ⑤ 關東軍特務部 第五委員會, 「滿洲國國籍法制定に關する件」(1934. 1), ⑥ 關東軍特務部 第五委員會, 「滿洲國國籍法制定に關する件」(1934. 3), ⑦ 滿鐵經濟調査會第五部法制班, 「滿洲國の國籍問題」(1934. 9), ⑧ 朝鮮總督官房外事課, 「國籍問題に關する私見」(1935.

12) 이 연구가 법적인 문제 자체를 다루지는 않지만, 국적법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일정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였다. 다음 자료들의 도움으로 본 연구에 필요한 개념들을 비교적 명백하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명순구 외, 2010,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임상원, 1999, 『이중국적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⑨ 松葉秀文, 「滿洲國國籍問題の一考察」(1936. 5).¹³⁾ 이 9건의 자료들을 그 입안 주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만주국 측 2개 안¹⁴⁾과, 만철 경제조사회의 3개 안, 관동군 측 2개 안, 조선총독부 측 2개 안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만주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직전 국적법과 관련되어 논의된 내용을 살펴본 다음 만주국 성립 이후 등장한 입안 자료들의 생산 배경과 과정 및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그런 연후에 입안 자료들에서 취급된 주요 쟁점들과 그 쟁점들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만주국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하였던 원인을 본격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II. 만주국 건국 직전의 국적법 논쟁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시하라 간지[石原莞爾] 등 관동군 지휘부의 초기 구상은 만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통치하는 ‘만몽영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10월 2일경에 이러한 구상은 육군 당국과 일본 정부가 신 ‘독립국’을 건설하려는 방침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전환은 9개국 조약 위반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회피하면서 만주사변을 수습하기 위한 고육책의 결과였다.¹⁵⁾ 따라서 만주사변 중에도 관동군은 직접적인 군정을 실시하지

13) 大平善悟, 1933. 3, 「滿洲國の國籍問題」, 『東京商科大學研究年報 法學研究二』, 283~319쪽; 朝鮮總督官房外事課, 1935, 「國籍問題に關する私見」, 『日政文書 政務總監滿洲出張關係鐵』(大韓民國政府記錄保存所所藏); 松葉秀文, 1936, 「滿洲國國籍問題の一考察」, 『滿鐵調査月報』第16卷 第5號. 나머지 자료는 滿鐵經濟調査會, 1935. 9, 『滿洲國國籍並會社國籍及資本方策』(약칭 『方策』)(昭和十年九月立案調査書類第二十六編第一卷) 속에 들어 있는 자료를 분석하였다.

14) 大平善悟의 안이 개인적인 연구논문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토대는 만주국 사법부의 위촉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만주국 측의 입안 문서로 간주하였다.

15) 山室信一, 1998, 「植民帝國・日本の構成と滿洲國一統治樣式の遷移と統治人才の周流」, 피터·도우스/小林英夫 編, 『帝國という幻想-「大東亞共榮圈」의

않았다. 친일 중국인을 동원하여 지방유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하여 각종 행정시설과 중요 기업 등을 접수하게 함으로써 중화민국의 일부 주민들이 스스로 자결하여 독립을 이루어 나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滿洲青年聯盟과 大英雄會 등 재만 일본인 단체 회원들 중 일부가 이 과정에 지방유지 위원회의 顧問 또는 諮議라는 신분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본인들이 고문이라는 자격으로 참여하던 입장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31년 12월에는 일본인을 고문 외의 형태로 개입하여 ‘인적 세력을 침투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 다음해인 1932년 1월 관동군 참모 합동회의에서 일본의 ‘희망과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기구로서 중앙에 參議府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이 마침내 1932년 1월 22일 결의된 ‘건국 대강’에서 일본인이 만주국 내부에 직접 들어가 관리가 되어 근무한다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우게 된다.¹⁶⁾ 만주국을 일본의 의지대로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하여 ‘일본인 고문’이라는 간접적인 제도보다는 ‘일제 관리’라는 보다 더 직접적인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국적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인이 만주국 내부에서 외국인 고문이라는 입장을 취할 때와 직접 만주국 관리가 되는 경우는 그 양상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외국인 고문일 경우 만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제 주민이 직접 만주국 관리로 임명될 경우 국적을 둘러싼 문제는 매우 복잡해진다. 일제 관리가 외국인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혹은 만주국 국적을 취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는 곧 만주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일본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또는 이탈할 것인가 하는 소위 이중국적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것은 아사노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가 되었다.¹⁷⁾

내부적으로 신생국가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만주국에 일본인 관리를 부식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을 때, 만주 현지의 국적법에 관한 여론으로는 때

思想と現實』, 東京: 青木書店, 165쪽

16) 山室信一, 1998, 위의 글, 166~171쪽

17) 淺野豊美, 1998, 앞의 글, 20쪽

우 급진적인 의론이 대두되고 있었다. 1931년 11월 30일부로 외무성에 타전된 모리시마 모리토[森島守人] 봉천 총영사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이 호기에 편승하여 만몽에 신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영원히 사실상 아국의 보호하에 둔다”는 여론이 유력해지고 있고, 관동군의 의견에 제동을 거는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군적 및 국적을 이탈하여 신국가 건설에 향해 나갈 것”이라는 ‘극언’도 나오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932년 1월 12일부의 타전에서는 현지의 일반 여론이 “장래 일만관계의 영속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동주 및 부속지를 환부하고, 동부 4성에 日鮮滿蒙漢 5족이 混一融和한 낙토를 건설하고 內鮮人也 나아가서 신국가의 국적을 취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유력해지고 있는 정세”라고 보고하였다.¹⁸⁾

이러한 발상의 중심에 선 인물은 바로 만주사변의 주역이었던 관동군 참모 이시하라 간지였다. 1932년 1월 11일 봉천의 朝日新聞社가 ‘신만몽건설’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日支名士座談會’ 석상에서 이시하라는 “새로운 국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본국의 국적에서 이탈하여 그 국가로 국적을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이시하라의 급진적인 견해는 노구치 [野口] 봉천 거류민 회장으로 부터 “일본의 국체상·감정상 아무래도 국적을 이탈하여 일본인이 신국가에 예속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는 반발을 불러일으켰다.¹⁹⁾ 이와 같이 국적법을 둘러싼 대립된 주장이 표면화되자 관동군은 국적법 문제에 대한 언론 통제를 관동청과 척무성에 의뢰하였고, 그것이 수락되어 더 이상 국적법 문제가 공개적인 언론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²⁰⁾

귀화를 통하여 공무를 담당하게 하려는 관동군의 안에 대한 재만 일본인의 부정적인 입장은 만주국 국적 취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본인들이 새로운 국가에 참여한다는 구상, 즉 ‘公民權’ 구상과 같은 대안이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

18) 遠藤正敬, 2010, 앞의 책, 201~202쪽에서 재인용.

19) 淺野豊美, 1998, 앞의 글, 21~22쪽

20) 淺野豊美, 2008, 앞의 책, 406~407쪽; 遠藤正敬, 2010, 앞의 책, 204~205쪽

다. 친일적인 건국운동 단체인 자치지도부가 1932년 1월 중에 관동군에 제출한 「만몽신국가 건설에 관한 의견서」에는 참정권을 포함한 ‘공민권’을 국적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각 민족에게 부여한다는 구상을 건의하고 있다. 비슷한 구상은 만주국 건국운동의 이론가로 유명한 다치바나 시라키(橘樸) 같은 재만 인사들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 다치바나는 그가 운영하던 『만주평론』의 1932년 1월호 기고문에서, 외국인에게도 일률적으로 공민권을 향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²¹⁾ 이러한 방안들이 지향하는 바는 말할 것도 없이 일본인이 만주국에서 관리로 취임될 수 있는 권리를 합법화하려는 것이었다. 국적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민권 구상은 만주국 건국 이후에도 일시 계속되어, 만주국 외교부에서 정식으로 입안되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국 직전 초창기의 국적법에 관한 논의들은 대체로 이상론적이고 또한 급진적이었다. 건국 후에 입안되는 내용들과 비교해 볼 때, 법리적인 면에서 볼 때도 부족한 점도 많았다. 그러나 간단하고 투박하기 때문에 그 생각들 속에 담겨진 내면 구조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면에서는 ‘독립국’ 혹은 ‘오족 협화’ 등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면적으로는 실질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구조가 노골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Ⅲ. 만주국 건국 이후의 국적법 논쟁

1932년 3월 1일 ‘만주국 건국선언’이 발표되고, 청조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溥儀]가 집정에 취임함으로써 일본 주도의 신국가인 ‘만주국’이 공식적으로 성립하였다. 일본 정부는 1932년 3월 12일 각의에서 “점차 독립국가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유도하고, 장래 국제적 승인의 기운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

21) 遠藤正敬, 2010, 위의 책, 204쪽에서 재인용.

할 것”을 주안으로 하는 「만몽신국가 성립에 수반한 대외관계처리요강」을 결정하였다. 이어서 1932년 9월 15일에 「일만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만주국을 독립국가로 승인하였다. 만주국은 건국 선언 이후 동월 9일에 敎諭이라는 일종의 행정명령을 통하여 정부조직법·인권보장법 등 일련의 기본법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선언과 법령의 반포가 나올 즈음에 만주국과 제만 일본 기관들은 만주국 국민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국적법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병행하고 있었다.

국적법을 입안하는 과정에는 만주국만이 아니라 경제조사회와 관동군 특무부가 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관동군의 ‘경제 참모’라고 불리던 만주철도주식회사(만철로 약칭)의 경제조사회는 1932년 1월 관동군의 요청에 따라 만철 내부에 설립된 조사연구 기관이었다. 1936년 10월 해체되어 만철 산업부로 재편될 때까지 경제조사회는 관동군에서 의뢰받는 만주의 산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와 정책 입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조사회는 6부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제5부는 식민반과 법제반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만주국의 국적법에 관한 연구 조사는 제5부 법제반에서 도맡아 진행하였다.²²⁾

관동군은 만주사변 직후 새로 세울 국가의 건국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을 조사 입안하기 위하여 문관으로 구성된 통치부를 조직하였다. 특무부는 이 통치부를 대신하여 건국 직전인 1932년 1월에 신설된 입안 연구기관으로 1934년 3월경 특무부 인원은 24명에 달하고 있다. 만철 경제조사회에서 입안된 정책은 이 특무부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은 다시 관동군 3과(만주국의 내면지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던 정무기관)를 통하여 총무청에 요망 내지는 지시 사항으로 전달되었다. 특무부장은 관동군 참모장이 겸임하고, 예하에 5개 위원회를 두어 만주국의 산업개발, 금융, 이민 등 각종 경제개혁 정책의 기본 지침을 결정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그중 법제 및 사회정책을 담당하는

22) 原 郎, 1972, 「1930年代の滿洲經濟統制政策」, 滿洲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東京: 御茶水書房, 12~37쪽

제5위원회에서 국적법 입안을 담당하였다.²³⁾

본격적으로 만주국 국적법의 주요 쟁점을 살피기 전에 우선 만주국 시기에 입안 혹은 제안된 국적법 관련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입안된 시기와 입안 주체에 따라 그 배경 및 과정, 특징 등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 한다.

1_ 만주국 외교부의 「국민권 법안」(1932. 5)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서 외양을 갖춘 만주국은 건국 이래 일찍부터 국적법 제정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다른 긴급한 국무 등에 쫓겨 제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졌었다. 그러다가 1932년 5월 중순에 이르러 만주국 외교부가 「국민권 법안」을 기초하였다.²⁴⁾ 다시로 [田代] 장춘 영사의 보고에 따르면, 이 법안은 치외법권을 가진 일본인이 다수 관리가 되면 만주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도 법률 및 과세에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만주국 주민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이 안에서는 그 해결 방안으로 일본인이 치외법권으로 면제되어 있는 특권을 포기한다는 선서를 할 경우 국민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안은 국무회의에 상정은 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하였다. 오히라[大平] 교수는 그 이유를 ‘너무나도 단순’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불완전’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만주국의 국무총리인 정샤오슈(鄭孝胥)와 같은 중국인 정부 요인이 국적법 제정에 매우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다시로 영사의 보고에 따르면, 정

23) 山室信一, 1993, 「滿洲國統治過程論」,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人文科學研究所, 106~107쪽. 이 특무부는 만주국 정부에 일본인 전문 행정관료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정책 입안의 일원화를 방해하는 ‘이중정부’라는 비판의 표적이 됨에 따라 1936년에 폐지된다.

24) 滿洲國外交部, 1932. 5, 「公民權法案」. 원래 이 안은 『만주국 공보』 제1호에 실린 내용으로서 이 글에서는 大平善悟 교수의 논문에 들어 있는 내용을 참고하고 있다. 大平善悟, 1933. 3, 앞의 글, 286~287쪽

샤오쉬는 1932년 5월 15일 그와의 대화에서 당시 국적을 이탈해 가면서 귀화를 희망할 일본인 관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만주국이 발전하여 “만주인으로서의 생활에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국적법을 제정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국적법 제정에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표명하였다고 한다.²⁵⁾

2_ 만철 경제조사회의 국적법 입안(1932)

1) 경제조사회의 「만주국의 국적문제」(1932. 7)

만철 경제조사회 제5부에서 1932년 7월에 「만주국의 국적문제」라는 조사보고서(이후 경조회안으로 약칭)를 작성하였다.²⁶⁾ 이 안은 경제조사회가 1932년 1월 조직된 후 처음 입안한 것으로서 이후 만주 국적법 논의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분야를 상당 부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안은 구체적인 국적법 초안을 입안한 것은 아니고, 장차 국적법이 시행될 경우에 준거가 될 만한 원칙들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안은 만주국 국적법이 당면할 수 있는 주요 핵심 쟁점들을 조기에 체계적으로 부각하고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주국 시기의 입안 과정 논의에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 경조회 안은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견해를 소개한 다음 경조회 측의 주장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개 과정을 모두 소개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여기서는 주요 분야별로 경조회가 주장하는 바를 소개하는 데 머물고자 한다. 첫 번째, 중국 본토에서 분리 독립된 지역(즉, 만주국 지역)의 원주민 국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는 한족·만주족·몽고족으로 구성

25) 大平善悟, 1933. 3. 위의 글, 287~288쪽

26) 滿鐵經濟調査會第五部 法制班, 1932, 「滿洲國の國籍問題」, 滿鐵 經濟調査會 (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6~14쪽. 이 안의 쪽수를 인용시에는 經調會案, 1932로 약칭한다.

된 원래의 중화민국인은 새로운 국적 변경으로 만주국의 기본 국민이 된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중화민국 이외의 재만 외국인의 국적 취득 문제이다. 경조회 안은 일정기간 거주한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거주법이 아니라, 만주 국민이 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귀화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거주법은 국적 강제 부여 문제만이 아니라, 이중국적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치외법권을 가진 재만 일본인이 거주법에 따라서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받을 경우 ‘공적인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매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을 각별하게 경고한다. 세 번째, 재만 일본인의 국적문제로서 귀화한 재만 일본인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주국 일계 관리에게는 특례법의 적용으로 임명과 동시에 귀화한 것으로 간주해 주며, 모든 귀화자는 원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일본제국 신민의 지위를 잃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이 경우 발생하는 이중국적 문제는 불가피한 것으로 허용하는 입장이며, 다만 ‘치외법권의 혜택을 포기’ 하겠다는 서약으로 과도한 부조리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재만 일본인 이외의 민족, 즉 재만 조선인과 백계 러시아인에게는 귀화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 조선인의 경우는 귀화를 할 수 있도록 일본 국적법의 조선 시행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만주국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 만주 국민을 누구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 당시 만주에 체류하던 재만 외국인의 국적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건국 이전부터 쟁점이 되었던 재만 일본인의 국적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가 고루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제시된 원칙과 방향은 그것이 그대로 입법화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 국적법 제정을 위해 앞으로 전개될 다양한 논쟁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선에 머물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경제조사회 다도코로[田所] 위원안: 「만주국 국적에 관한 의견」(1932. 8)

이 안은 1932년 8월 경제조사회의 다도코로라는 위원이 “만주국 국적의 관념

은 그 특수한 사정과 환경에 응해서 완전히 독특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 개인적인 사안이다.²⁷⁾ 다도코로는 ‘만주국의 영토에 定住하는 모든 인류’의 국적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한 달 전인 7월에 입안된 경조회의 공식 안에서 극력 비판하던 ‘거주법’을 다시 들고 나왔다. 그가 이런 안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경조회의 7월안이 만주국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안은 전반적으로 매우 과격하고 비상식적이다. 그 과격성과 비상식성은 국민을 3계급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으로 공민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²⁸⁾ 혹자는 이 안을 ‘극히 솔직하고 적나라한 형태로 치외법권 대신 계급제도를 도입하는 안’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²⁹⁾ 당시 국적법 논의가 얼마나 다양한 위상에서 혼잡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는 사실 이외에는 그다지 국적법 논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 같지 않다.

3_ 오히라 젤고[大平善悟] 교수안: 「만주국의 국적문제」(1932. 9)

동경상과대학의 국제법학자인 오히라 젤고는 1932년 여름 만선 여행을 하던 중에 약 2개월간 만주국 사법부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어 건국 당시 사법제도를 연구하던 중 치외법권 철폐 준비의 일환으로 국적법을 기초해 보라는 위촉을 받았다. 그리하여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만주국적법 초안」으로 오히라는 이 안을 1932년 9월 말 사법부 및 국무원 법제국에 제출하였다. 만주국 사법부의 부탁에 따라 만들어지고, 또한 만주국 측에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안의 입안 주체를 만주국 정부로 분류하였다. 이 초안(중문과 일문)은 귀국 후에 오히라가 동경상과대학의 『법학연구』(1933. 3)에 게재함으로써 그 내용

27) 滿鐵 經濟調査會 田所委員, 1932, 「滿洲國國籍に関する意見」, 滿鐵 經濟調査會, 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15~17쪽. 田所案, 1932로 약칭.

28) 田所案, 1932, 16~17쪽

29) 淺野豊美, 2008, 앞의 책, 414쪽

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³⁰⁾

오히라 교수가 입안서를 작성할 시기인 1932년 여름은 국가의 체제가 완비되어 가고 있으나, 국가 주권이 지배할 대상인 인민의 범위가 아직 법적으로 불분명하던 시점이었다. 즉, '만주국에 전일적으로 종속할 인민'은 아직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재만 거주자가 스스로 만주인인가 아닌가'도 제대로 모르는 실정이었다.³¹⁾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초된 오히라의 초안은 국적 창설, 국적 취득, 국적 상실, 국적 회복, 부칙 등 5장으로 나눈 구체적인 법안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주국 외교부의 공민권 법안이 지나치게 간단하고, 법안으로서의 구체성을 결하고 있었고, 경제조사회의 입안 역시 국적법 제정을 위한 원칙만을 제시하였을 뿐, 구체안을 만든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라안은 최초의 법률 형식을 모두 갖춘 국적법 초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동년 7월의 경제조사회 안과 비교할 때, 기본적인 만주 국민의 조건이나, 조선인을 포함한 재만 외국인이 귀화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게 하는 안 등은 대동소이하다. 가장 대조되는 것은 경조회 안이 모든 재만 일본인의 귀화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비하여 일제 관리만 귀화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중국적의 문제를 만주국 관리로 임명된 자들만의 문제로 최소화시키려는 취지이다.³²⁾

지금까지 소개한 만주국이나 경조회, 그리고 오히라 교수의 안을 보면 국적법 입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였다. 따라서 만주국 건국 초기에 국적법 제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일본인 자체의 합의된 의견이 도출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관동군 특무부의 입안 과정에서도 발견된다.

30) 大平善悟, 1933, 앞의 글, 283~319쪽. 이 논문은 滿鐵 經濟調査會, 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18~50쪽에도 재인용되고 있다. 大平案, 1933으로 약칭.

31) 大平案, 1933, 284쪽

32) 大平案, 1933, 305쪽

4_ 관동군 특무부 안: 「만주국 국적법 제정에 관한 건」(1934년 1월 안, 동년 3월 안)

관동군 특무부 제5위원회는 그동안 만주국, 경제조사회 등 관계기관에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1934년 1월 26일 「만주국 국적법 제정에 관한 건」을 입안하였다.³³⁾ 이 안은 ‘소위 오족을 기본 자국인으로 하되 …… 또 경제 및 문화 건설을 위하여 官民 모든 분야에서 인재를 널리 흡수하기 위하여 일본인 등에 대해서 만주국인과 같은 특전 혹은 신분을 부여하는 길을 열고, 치외법권을 유보하는 한편 일본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하고, 귀화 후의 공권 제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한’ 안이다.³⁴⁾ 기본 민족을 오족으로 하고, 치외법권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이다.

그러나 특무부는 1월 안이 발표된 후 내외적인 비판을 참고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한 다음 2개월 후인 1934년 3월에 동일한 제목의 입안 자료를 새로 작성하였다.³⁵⁾ 3월 안에서는 특히 ‘일본 국적법에 준거하여 만주국 국적법을 만들 것’이라는 요지의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³⁶⁾ 1934년 초반에 이르면 관동군의 만주국 국적법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월 안과 3월 안을 종합하여 국적법에 관한 관동군의 주요 방침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 국민은 원래의 중화민국인으로 하고, 그들에게 국적 선택권을 부여한다. 둘째, 재만 일본인은 귀화에 따라서 만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일본과 만주국 양국의 이중국적을 갖는다. 그중 만주국에 취임하는 관공리는 임명과 동시에 귀화하지 않더라도 국적을 취득하게

33) 關東軍特務部 第五委員會, 1934, 1, 「滿洲國國籍法制定に關する件」,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1~5쪽, 特務部案, 1934, 1로 약칭.

34) 特務部案, 1934, 1, 1쪽

35) 關東軍特務部 第五委員會, 1934, 3, 「滿洲國國籍法制定に關する件」,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5쪽, 特務部案, 1934, 3으로 약칭.

36) 特務部案, 1934, 3, 5쪽

되며, 이때 치외법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세 번째, 재만 조선인은 귀화하되, 재만 일본인과 달리 만주국 단일국적만을 갖는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이 귀화할 수 있도록 일본 국적법을 조선에 시행한다. 네 번째, 그 외의 외국인(백계 러시아인)도 귀화를 허용한다.

관동군 특무부라는 당시 만주국 영토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기관에서 이러한 방침을 제시하였지만, 그것이 바로 만주국 국적법 제정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몇 가지 원칙을 토대로 '만주국 국적법을 만들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특무부 안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국적법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본 식민기관 사이에 몇 가지 쟁점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예민한 쟁점은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가 갖는 원초적인 문제(불가능한 이중 충성), 치외법권을 지닌 일제 관리의 문제(만주국의 '독립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권만 향유하고 의무는 지지 않는' 특권계층의 출현으로 '민족 협화'와 상반되는 문제), 그리고 조선인 귀화 문제(일본인과 다른 취급) 등이었다. 다음에 소개할 경제조사회와 조선총독부의 국적법 관련 자료들 속에 이런 쟁점들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5_ 경제조사회 히라이 쇼이치[平井庄晄]의 「만주국의 국적문제」 (1934. 9)

1934년 3월 1일 집정 푸이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만주국은 만주제국으로 국체가 바뀌었다. 그럼에도 국적법 제정이 되지 않아 만주국 인민의 범주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를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비록 관습적으로 사실상의 만주국 구성원들을 만주국 인민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나, 내외국인의 구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법률적인 성문화는 되어 있지 못하였다. 특히 일만 양국의 특수관계와 독립국의 '체면 유지'를 동시에 고려할 때 발생하는 복잡한 국적관계를 법률적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시 치외법권 철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근대국가인 만주국이 "한 나라의 헌법적 사항인 국적법을 영원히 불문법으로 남겨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이었다. 만주국의 국적법 제정은 그야말로 '초미의 급무'로 인식되었다.³⁷⁾ 이런 인식하에 경제조사회 5부

법제반은 1934년 9월에 국적법에 관한 입안 자료를 작성하였다. 동 조사회에서 1932년 입안서를 작성한 바가 있어 이번 안은 두 번째 입안 자료인 셈이다. 1934년 안은 법제반의 히라이 쇼이치가 작성한 것으로서 그동안 논의된 국적법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비판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³⁸⁾ 1934년 중반기까지 일본인들에게 인식되던 쟁점과 그에 관한 논리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매우 요긴한 자료다.

히라이의 1934년 입안 보고서(이하 히라이 안)는 대부분 1932년 7월 경제조사회의 입안 보고서와 주장이 일치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현격히 다른 점도 발견된다. 예를 들면 히라이는 일본인을 외국인 신분 자격으로 만주국의 관리로 임용할 것을 제안한다. 히라이에 따르면 기존에 논의된 안 중 치외법권 포기를 전제로 일제 관리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안은 법적인 효력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일제 관리가 될 일본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포기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는 “일제 관리를 이중국적을 갖게 하는 것도 불가하고,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 만주국 국적만 취득하게 하는 것도 역시 곤란하다면 자국 관리인 일제 관리를 일본인 즉 외국인으로 대우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영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라크에서 다수의 영국인이 관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고 있다.³⁹⁾

일본인을 외국인 신분 그대로 만주국의 관리가 되게 하자는 히라이의 방책은 이론적으로는 이중국적의 틈에 빠지지 않게 하고, 현실적으로는 만주국에 귀화하려는 일본인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내린 ‘궁여지책’이다. 스스로 인정하듯이 이 안은 만주국의 독립국으로서의 ‘체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방

37) 平井庄壹, 1934, 「滿洲國の國籍問題」,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52~53쪽

38) 滿鐵 經濟調查會 第五部 法制班 平井庄壹, 1934, 「滿洲國の國籍問題」,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51~74쪽. 平井案, 1934로 약칭.

39) 平井案, 1934, 63~64쪽

안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안을 주장하는 히라이는 자신이 이런 방안밖에 찾지 못하고, 또한 국적법이 제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법제상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만주국의 '독립성'과 일만 간의 '특수관계'가 구조적으로 타협 불가능한 모순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⁴⁰⁾ 히라이가 국적법 제정상의 곤란을 '구조적 모순'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한 것은 매우 탁월한 통찰이라고 생각되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글에서도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한 원인을 이런 시각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동군과 만철 경제조사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적법 논의는 1934년 말에 이르러 일단 보류하게 된다. 1934년 말에 취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 관동군 사령관이 '국적문제'에 대한 논의를 일단 보류하라는 방침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만주국 건국 정신인 오족협화의 이상을 구현하고, 법제상의 근거로 정치적 사상적 귀추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국적법의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조문을 확정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므로 우선은 관례에 의존하여 오족협화의 실제 효과를 제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은 잠정적인 혹은 부분적인 임시 조치를 취하고, 늦어도 헌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국적법을 성문화한다.⁴¹⁾

오족협화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상의 근거로 국적법 제정이 필요하지만 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곤란'한 문제들로 인해서 헌법 제정 시기 이전으로 그 성문화를 미룬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방침이 정해진 결과인지 1935~1936년에 더 이상 경제조사회나 관동군 측에서 국적법 관련 입안서를 작성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관동군의 방침이 아니더라도 이 시기는 치외법권 철폐와 관련된 법률 입안으로 인하여 국적법에 직접적인 관심을 기

40) 平井案, 1934, 64쪽

41) 「南次郎關於貫徹對滿政策的意見」(1934, 12, 30), (中央檔案館 外 合編, 1994, 『偽滿傀儡政權』, 北京: 中華書局), 76쪽

울일 여력도 그다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때 그동안 만주국의 국적 논의를 관망하던 조선총독부 측에서 공식적으로 조선인의 국적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만주국 국적법 제정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새로운 요소가 강력하게 대두된 것이다.

6_ 조선총독부의 「만주 국적에 관한 사건」(1935. 6)

관동군 특무부의 국적법 방침에서 보듯이 만주국에서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국적 방침은 일본의 국적법을 조선에 시행하여 조선인의 만주국 귀화가 가능한 방도를 강구하되,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재만 일본인과 달리 단일국적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침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구별하여 취급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왔다. 그러한 반발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안이 1935년 6월에 작성된 「만주국적에 관한 사건」이다. 이 문서는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이마이다[今井田]가 1935년 6월에 만주국 출장을 가게 되었을 때 총독부 관방 외사과에서 작성한 안이다.⁴²⁾

총독부는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재만 조선인의 법적 지위가 '재만 조선 백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선 통치상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여 실로 제국의 중대한 국책 문제'라고 인식한다. 이런 입장에서 조선총독부는 '내지인과 조선인을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별개로 취급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별개로 취급함의 부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타국의 국적 문제에 관하여 일본인 중 특히 조선인만을 구별하여, 그에 대하여 국적 상실을 강요하는 것은, 병합 이래 강조해온 內鮮一家의 대의에 반하고 이천만 동포들에게 조선 통치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이르러' 조선총독부는 '단연코'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조선 통치 과정에서 '민족적 반감에 기인한

42) 朝鮮總督府官房外事課, 1935. 6, 「國籍問題に關する私見」, 『日政文書 政務總監滿洲出張關係鐵』(大韓民國政府記錄保存所所藏). 겉표지 외에 4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總督府案, 1935로 약칭.

불평이 최고로 치열한 민족운동을 유발'하였다는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런 조치는 '민심 동요의 위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일시동인'의 성지와 '조선 통치상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조선총독부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만주국 국적문제에 관하여서는 내선인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모두 일반 이중국적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다.⁴³⁾

그런데 이마이다 정무총감이 만주국과 관동군 요로에 제시한 이 '사건'은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관한 조선총독부의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만주국의 국적법을 포괄적으로 입안한 자료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조선총독부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만주국 국적법 시안을 제시한 것은 마쓰바 히데후미[松葉秀文]의 입안서라고 해야 할 것이다.

7_ 마쓰바 히데후미의 「만주국 국적문제의 일고찰」(1936. 5)

조선총독부 외사과원이던 마쓰바 히데후미⁴⁴⁾는 『만철조사월보』 1936년 5월호에 「만주국 국적문제의 일고찰」이라는 국적법 시안을 투고하였다.⁴⁵⁾ 이 시안이 작성된 시점은 1934년 황제의 취임으로 만주국의 정체가 확립되고, 제도적 정비도 많이 이루어졌고, 더구나 1935년 8월 점진주의적인 치외법권 철폐를 선언한 이후 1936년 7월부터 실행에 들어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는 한 해 전인 1935년 '사건'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제국 신민인 일본인과 조선인을 서로 구별하지 말고, 동일하게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제정이 필요함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국적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자 총독부 외사과 직원이던 마쓰바는 '만주국이 국적법을 제정하고, 만

43) 總督府案, 1935, 3~4쪽

44) 마쓰바[松葉]는 이후 만주국 외교부로 진출되어 나갔다. 그가 만주국 외교부에서 국적법 입안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추정은 가능하지만(遠藤正敬, 2010, 앞의 책, 387쪽, 尾注 63번), 아직 명확한 입증 자료가 발견된 적은 없다.

45) 松葉秀文, 1936, 「滿洲國國籍問題の一考察」, 『滿鐵調査月報』第16卷 第5號. 松葉案, 1936으로 약칭.

주 국민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는 일은 독립국가로서의 필요불가결한 요건⁴⁶⁾이라는 대전제하에 이 시안을 기초하여 공개하기에 이른 것이다. 만주국 국적법 시안 중에서 가장 늦게 출현한 이 마쓰바 안은 만주국의 이중국적 채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중국적을 조선인도 취득할 수 있게 법제화함으로써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마쓰바 안의 첫 번째 특징은 이중국적에 대한 공개적인 옹호론을 전개한 것이다. 마쓰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국적 및 이중국적 회피론은 ‘국가가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던 종래의 국제관념의 입장에서는 이론적으로 지당한 말’이지만, ‘그와 달리, 일국의 독립이 전면적으로 타국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원칙상 일치하게 되므로, 그들 양국 간에서는 개인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일을 직접 배척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논지를 전개한다.⁴⁷⁾ 지금 남아 있는 입안서 중에서 이 마쓰바 안만큼 가장 적나라하게 이중국적 옹호론을 펴고 있는 입안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마쓰바 안의 두 번째 특징은 재만 조선인 문제에 관한 특별한 배려와 그것의 법제화다. 이런 경향은 마쓰바가 총독부 외사과 직원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예상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시안 속에서도 그것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재만 조선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본 私案에서 항상 내선 일시동인의 원칙을 채택하여 그 사이에 어떤 구별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일한 병합에 관한 聖旨를 잘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⁴⁸⁾ 이런 생각을 그는 국적법 조항 속에 현실화시키고 있다. 마쓰바의 시안에는 귀화로 인하여 이전의 국적을 상실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이것은 재만 조

46) 松葉案, 1936, 135쪽

47) 松葉案, 1936, 138쪽. 松葉의 공개적인 이중국적 옹호론은 몇 년 뒤인 1942년 가나자와 교수의 논문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주장된다. 이중국적 허용론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거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金澤理康, 1942, 「滿洲國籍法提言」, 『早稻田法學』 第21卷, 12~14쪽

48) 松葉案, 1936, 145쪽

선인이 재만 일본인처럼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치밀하게 의도된 조치였다. 즉, 조선인이 귀화로 인하여 국적 상실 혹은 이탈을 신청할 수 없는 당시 ‘조선인의 일본 국제법상의 지위를 고려’하여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아도 재만 조선인이 만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⁴⁹⁾

국적법 입안 자료로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된 조선총독부의 ‘사건’과 총독부 외사과 직원이었던 마쓰다가 작성한 국적법 시안은 그 포괄성이나 형식면에서는 크게 다르다. 그러나 두 안 모두 조선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위하여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를 재만 일본인과 차별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전개함으로써 만주국 국적법 제정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중일전쟁과 더불어 조선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일본으로서는 만주국 국적법 문제를 논의하면서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혹은 주변의 문제만으로 취급될 수 없게 되었다.

IV. 국적법 제정의 이상과 현실: 주요 쟁점의 구조

지금까지 만주국 국적법에 관한 9개의 입안 자료를 작성된 시간 순으로 간략하게 배경과 특징적인 점을 소개해 보았다. 이제는 그 입안 자료들 속에 제기된 쟁점과 그 배경이 된 논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과정에서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한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개별적인 입안서들이 여러 가지 주장과 논리를 전개하고 있지만, 그중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크게 볼 때 초기 국민 확정 문제와 재만 외국인 국적 취득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⁵⁰⁾

49) 松葉案, 1936, 147쪽

50) 그 외에 다른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생래적 국적 취득 문제에서 혈통

1_ 초기 국민 확정 문제

초기 국민 확정 문제란 새로운 국가로서 출발하는 만주국이 기반으로 삼아야 할 국민이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이다. 중국 본토에서 '분리하여 독립'한 형식을 띠고 있는 만주국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만주국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원 중화민국인들이 만주국의 기본 국민이 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쟁점은 건국 당시 만주 지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을 기본 국민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만주 지역에 정주하던 모든 민족(특히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초기 국적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는 소위 '거주법' 주장과 재만 일본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귀화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는 소위 '귀화법'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거주법' 주장자들은 만주국이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민족협화'의 입장에서 모든 거주 민족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취지로 자신들의 견해를 정당화하였다. 건국 초기에는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으나, 이중국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일시 사라진 듯하였다. 그러나 1934년 1월의 관동군 특무부 안, 1936년의 마쓰바[松葉] 안에서 다시 이런 주장이 등장할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주장이었다.

반면에 '귀화법' 주장자들은 초기 만주국 국민은 원래의 중화민국인(한족, 만주족, 몽고족)에 한정하고, 그 외의 모든 민족은 외국인으로 간주하며, 귀화를 통해서만 국적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조사사회와 국제법 전문가인 오히라 교수 등이 '귀화법'의 대표적인 지지자들이다. 이들은 '거주법'을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적을 강제로 부여하게 되며, 다양한 외교적 충돌의 원인이 되는 이중국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비판한다. 경조

주의와 출생지주의의 논쟁도 고려해 볼 만한 쟁점이었다. 그러나 출생자의 국적 취득 원칙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한 이중국적 문제는 '소극적 저축'으로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며, 국적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결된다. 따라서 해결할 수 없는 견해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글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회의 오히려 안(1934)은 거주법 주장자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오족협화’의 이상은 ‘국적 유무에 관계없이 내외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면 달성할 수 있으며, 결코 가장 현실적인 입장에서 판단되어야 할 국적법 제정의 원칙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가하기도 한다.⁵¹⁾ 또한 오히려 교수는 중화민국인만을 만주 국민의 ‘基體’로 삼는 것은 ‘민국인의 자주적 독립과 자발적 건국의 의미’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강조한다.⁵²⁾ 이러한 ‘귀화법’ 주장자들은 중화민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되 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동시에 부여하도록 입안하여, 이중국적 회피만이 아니라 국적 비강제주의와 같은 국제적인 관행도 대체로 준수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초기 국민 획정 문제 논쟁의 근거에는 이중국적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거주법은 바로 이 문제로 인하여 귀화법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논의될 재만 일본인 문제도 역시 이중국적 문제가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만주국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중국적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2_ 재만 외국인 국적 취득 문제

국적법과 관련하여 재만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집단은 통상 일본인, 조선인, 백계 러시아인 그리고 산동 쿠리[苦力] 등 네 부류였다. 그들은 모든 입안자들의 관심거리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가장 큰 의견차를 보이면서 쟁점이 된 집단은 재만 일본인과 재만 조선인이었다. 다른 두 집단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일치하였다. ‘무국적’ 백계 러시아인에 대해서는 소련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특별취급을 하지 않고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귀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방안을 공통적으로 제안한다. 중화민국 국적을 가진 산동 쿠리는 만주국의 주요 민족인 漢族과 동족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 취급하기에는

51) 平井案, 1934, 73~74쪽

52) 大平案, 1933, 305쪽

정치적인 고려 요소가 매우 많은 집단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입안자들은 법률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입만 노동자 중에서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주한 자들 즉 '이민'에 한하여 귀화를 허가하도록 조치하는 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백계 러시아인이나 산둥 쿠리의 국적문제는 중요성이 없다는 점이 아니라 입안자들 사이에 견해의 차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적법 제정상의 쟁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⁵³⁾ 이 글에서는 이 두 외국인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두 집단, 즉 재만 일본인과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쟁점을 살펴보려 한다.

1)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 '독립성'과 '일만 특수관계'의 모순

관동군이 1932년 1월의 「건국 대강」에서 새로 건국되는 만주국을 일본의 의지대로 확실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 일제 관리를 만주국에 임명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부터⁵⁴⁾ 재만 일본인의 국적문제는 매우 복잡해졌다. 일제 관리를 외국인 국적을 갖도록 할 것인가 혹은 귀화하여 만주국 국적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만주국 국적을 갖게 될 경우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 단일국적을 갖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여 이중국적을 갖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분리불가결한 문제로 뒤따랐다. 이후 일본 국적을 이탈할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 곧 이중국적 문제는 재만 일본인 국적문제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계속되었다. 앞에서 소개한 모든 입안서에서 이중국적 문제가 키워드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1932~1936년에 작성된 만주 국적법 입안서를 분석해 보면 재만 일본인 관련 이중국적 문제는 크게 배척론, 중간론(일부 혹은 조건부 허용), 완전 허용론

53) 遠藤正敬는 국제관계가 국적법 제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 백계 러시아인의 국적 문제를 크게 취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백계 러시아인의 국적 문제에 대한 견해차로 인하여 만주국 국적법 제정이 어려워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遠藤正敬, 2010, 앞의 책, 236~245쪽

54) 山室信一, 1998, 앞의 글, 166~171쪽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국적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비판하고 나선 입안서는 1932년 경조회 안이다. ‘거주법’의 불합리함을 입증하는 논리의 하나로 이중국적의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경조회 안에 따르면, 국적은 개인이 국가에 대한 ‘절대 복종’의 근거이다. 그런데 양국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동시에 국민 의무를 완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한 나라에 충실한 국민이 다른 나라에는 반역자가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경조회는 이런 모순적인 이중국적 방안이 만주국의 국적법 제정에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다가 치외법권을 가진 일본인의 이중국적은 더욱 문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권리는 향유하면서 의무는 없는’ 특권을 가진 계층을 탄생시켜 ‘인민 융화의 대 방침’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⁵⁵⁾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1932년의 경조회 안은 귀화하는 형식을 취하는 일본인에게는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다만, 만주국 관리가 되는 자로 하여금 충성서약과 치외법권 포기 선언을 하게 하여, 치외법권을 지닌 이중국적자의 폐단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1932년의 경조회 안은 이중국적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하였지만, 결국 만주국의 일제 관리가 개인적인 충성서약을 조건으로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한 조건부 허용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허용론은 1932년의 오히라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히라는 만주국 관리로 임명된 일본인들만 귀화하여 이중국적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일반 일본인들은 귀화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다. 즉, 선별적인 귀화와 이중국적 일부 허용안을 주장한 것이다.

이중국적 배척론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안서는 아마 1934년의 히라이 안일 것이다. 1932년 경조회가 동시 충성이 불가능한 점을 이중국적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처럼, 히라이도 동일한 이유로 만주국에 임용된 일제 관리는 ‘만주국이나 일본 어느 하나의 국적만을’ 갖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

55) 經調會案, 1932, 9쪽

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일제 관리가 일본의 국적을 이탈하여 만주국으로 귀화하는 것은 불가능함도 인정한다. 이중국적도 안 되고, 귀화도 기대되지 않는 이상과 현실의 모순된 상황을 타파하고자 그가 제안한 대안은 일 본인 관리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관직에 취임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 제안의 적합성 여부는 별도로 치고, 이와 같이 일관되게 이중국적 배척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 이 히라이안의 특징이었다.

이중국적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만 일본인 특히 일제 관리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하자는 방안은 점차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었다. 예를 들면 1934년 1월의 관동군 특무부 안은 통상적인 귀화의 조건인 국적 상실 조항을 삭제하게 함으로써 이중국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936년의 마쓰바안은 단순히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라 허용론을 옹호하는 논리까지 제공한다. 즉, 마쓰바는 이중국적을 회피하는 국제적 관례는 ‘국가가 이해관계를 달리하던 종래의 국제 관념’의 결과라고 규정하고, ‘이해관계가 원칙상 일치’하는 일본과 만주국과 같은 특수관계하에서는 ‘개인이 이중국적을 보유하는 일을 직접 배척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설사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이와 같이 밀접한 양국 간에는 얼마든지 협의에 따라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완전히 허용해도 문제가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⁵⁶⁾

일제 관리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처럼 배척에서 허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만주국의 ‘독립국’으로서의 명분을 얼마나 고려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배척론을 주장하는 히라이안은 이 점을 가장 잘 지적하고 있다. 근대의 독립국가라면 ‘관리의 직무에 취임하는 권리는 자국신민의 특권으로 하고, 자국의 국적을 가진 자만이 그를 향유하게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그러므로 만주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면 일제 관리도 마땅히 이중국적이 아니라 만주국의 단일국적만을 가져야 하는

56) 松葉案, 1936, 138쪽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⁵⁷⁾ 그러나 히라이도 이것이 만주국의 ‘독립성’이라는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이상론이며, 현실은 ‘일만관계의 특수성’이라는 반대의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한편, 일제 관리의 국적 문제를 ‘일만관계의 특수성’이라는 구도 속에만 전일적으로 위치시키면서 이중국적의 허용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예가 마쓰바 안이었다. 마쓰바는 일만의 특수한 관계를 ‘일국의 독립이 전면적으로 타국에 의존하는 경우’로 파악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는 원칙상 일치’하게 되므로 이중국적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⁵⁸⁾ 여기서 관찰되는 것은 만주국의 정치적 위상을 ‘독립국’이라는 명분보다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철저히 관철되어야 하는 ‘종속국’이라는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입장에 서면 이중국적 허용론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한꺼번에 고려하였을 때 각종의 중간론이 등장한다. 독립국의 ‘체면 유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만주국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려는 현실적인 필요를 동시에 고려하였을 때 이중국적을 조건부로 혹은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즉, 만주국의 ‘독립성’과 ‘일만관계의 특수성’이라는 양 극단에 각각 이중국적 배척론과 이중국적 허용론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조건부 허용이나 일부 허용 등 다양한 중간론이 존재하였다.

만주국 국적법 논란의 핵심은 사실상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논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만 일본인의 국적문제 논쟁이 이중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듯이, 사실상 앞서 언급한 초기 국민 획정 문제가 쟁점으로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재만 외국인의 이중국적 문제였다. 만주에 거주하는 오족 혹은 모든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자는 ‘거주법’론자들이 ‘귀화법’론자들에게서 받은 비판의 핵심이 바로 이중국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중국적 문제는 이런 의미에서 만주국 국적법 논쟁의 핵심이며, 이 문제가 풀렸더라면 국적법 제정도 조기에 가능하였을지도 모른다.

57) 平井案, 1934, 62~63쪽

58) 松葉案, 1936, 138쪽

그러나 국적법 제정은 계속 지연되었다. 그것은 이중국적의 공식적인 허용에 대한 만주국이나 일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만주제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인 『滿洲建國十年史』는 만주국과 일본의 분리불가분의 특수관계를 설명하면서 그때(1942)까지도 “세상에는 우리 만주국이 일본국과 불가분 일체의 독립국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드디어는 만주국의 독립을 일시 방편 혹은 위장된 것이라고 하는 자도 없지 않으나(하략)”⁵⁹⁾ 라는 말을 남기고 있다. 일본과 ‘불가분의 일체’라는 ‘특수관계’이지만, 동시에 ‘독립국’으로서의 위상도 계속 지니고 있다고 강변하는 만주국의 입장은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것은 비록 허용일지라도 ‘독립국’이라는 명분은 결코 손쉽게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외적인 관계를 고려한 명분일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漢民族 등 원래의 주거민족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한 이념적 장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독립국’으로서의 명분을 유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중국적 허용을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한 예를 또한 『滿洲建國十年史』가 제공해 주고 있다. 재만 일본인의 지위에 대해 만주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신민으로서 동시에 만주의 중핵적 구성요소’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만주국인의 특수적 지위’를 얻게 된 것은 일본인들이 ‘일만양국을 불가분 일체가 되게 하는 살아 있는 끈(紐帶)’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이 지위는 ‘결코 소위 이중국적이라는 말과 같이 법률적 개념적 관계’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있다.⁶⁰⁾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을 공식화하기에 부담스러워하는 만주국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토로되고 있다.

만주국이 재만 일본인의 지위를 ‘특수적 지위’-현실적으로는 이중국적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이중국적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지위-라고 정의한 데서 만주국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다. 만철 경제조사회는 만주국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한 이유를

59) 滿洲帝國政府 編, 1969,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10쪽

60) 滿洲帝國政府 編, 1969, 위의 책, 9~10쪽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개 만주국은 일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가이고, 일국의 헌법적 사항에 속하는 국적법의 제정은 만주국의 독립성과 일만 특수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곤란함에서 유래한다.⁶¹⁾

이러한 진단은 경제조사회 위원인 오히라 겐고가 제창한 바 있는 것으로서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이 통찰적인 시각을 이용하여 만주국 국적법이 끝내 제정되지 못하였던 원인을 재정의해 본다면, 그것은 ‘독립성과 특수관계의 모순’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히라는 국적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독립성과 특수관계의 부조화’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그 부조화가 해결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난 원인은 말하지 않는다. 부조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 왜냐하면 독립의 명분을 세워 주려는 이상과 특수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일본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현실은 본질상 모순적이고 대립적인 구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제국의 위정자들은 결국 그 모순 대립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그 결과가 항상 ‘부조화’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다시 국적법 제정을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렇듯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에 투영된 ‘독립성과 특수관계의 모순’이 국적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을 때 그 곤란함을 더욱 가중시킨 것이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였다.

2)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 ‘민족협화’와 ‘내선일체’의 모순

만주국 건립 이전 재만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분쟁은 중일 간의 외교적

61) 滿鐵 經濟調査會, 1935. 9,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昭和十年九月立案調査書類第二十六編第一卷), 서언. 이러한 분석은 경제조사회 위원인 平井庄壺가 그의 입안서에서 가장 강조하던 내용이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平井이 책임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平井庄壺, 1934, 앞의 글, 74쪽 참조.

중요 사안이었다. 일제의 식민지 조선에는 일본의 국적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제가 된 것은 재만 조선인들의 귀화문제였다. 일본 국적법에는 국적 이탈과 귀화 규정이 구비되어 있었으나, 이것이 조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만 조선인이 일본제국의 대륙 침략의 전위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한 중국 정부는 조선인의 귀화를 촉진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1929년에 국적법을 개정하여 귀화하더라도 자기의 원 국적을 이탈하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조선인은 일본 법률상 그 귀화를 허가하지 않음에도 중국에 귀화할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고, 그 결과 발생한 것이 중일 간에 서로 조선인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며 충돌한 이중국적 문제였다.⁶²⁾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입안자들은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대하여 두 종류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만주사변 이전에 귀화한 조선인을 중화민국인으로 인정하여 국적을 자연 취득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일반 재만 조선인의 국적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만주사변 이전의 귀화 조선인 문제는 대부분이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정식으로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지방정부에서 '잠행 귀화증'을 발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입안자들은 중국 중앙정부는 설령 조선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더라도 일본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일본의 치외법권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귀화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지방 관헌들이 일본 영사관헌 및 경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도록 하고 또 귀화세에 의한 수입을 얻기 위하여 다수의 조선인에게 중국 귀화를 강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입안자들은 중국 중앙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또한 자유의사가 아닌 중국 관헌의 압박에 의하여 귀화한 것으로 해석하여, 귀화 조선인의 중화민국 국적 취득을 일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침을 제

62) 白榮勛, 2002, 「滿洲朝鮮人の國籍問題と法的地位」, 『明治文學研究論文集』 16; 손승희, 2004, 「만주사변 전야 만주 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 일본의 대응」, 『중국사연구』, 재만 조선인의 이중국적 문제를 다룬 연구는 많지만, 이들의 연구가 최근의 연구 성과를 잘 집약하고 있다.

안한 것이다.⁶³⁾

일반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에 대한 논의는 만주국 측의 조선인 단일국적 안과 이에 반발한 조선총독부 측의 이중국적 안으로 크게 대별된다. 경조회 안(1932)은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를 귀화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선행 요건으로 일본 국적법이 조선에 시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⁶⁴⁾ 오히라 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재만 조선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적 상실을 전제로 한 귀화 규정을 두고 있어, 조선인의 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대만과 사할린과 같이 조선에 국적법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⁶⁵⁾ 조선에서의 일본 국적법의 시행, 조선인의 일본 국적 이탈 허용, 귀화법에 따라 만주국 국적 취득이라는 제안은 1934년의 特務部 안(1934. 1),⁶⁶⁾ 오히라 안(1934)⁶⁷⁾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안들이 하나같이 조선인이 일본 국적을 이탈하여 만주국으로 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만주국 단일국적 취득을 염두에 두고 한 제안이다. 재만 일본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여 일만 양국의 이중국적을 갖게 하려는 방침과는 구별되는 것이었다. 국적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던 관동군 실무 참모 가타구라 다다시[片倉衷]도 이러한 구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滿洲國に於ける國籍問題に就て」(1934. 7. 12)에서 “건국의 목적, 일만 불가분 관계, 일본국의 사명, 일본인의 발전, 그 성격 등을 감안하여, 결국 이중국적의 취득에 의하여 그를 논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이유에서 일본인의 이중국적을 인정하는 반면, “조선인에 관해서는 제국 내지 국적법, 기타 국내법이 조선에 적용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아도, 대체로 전술한 요지를 준용하고, 또한 재만 무호적 조선인에 대하여는 필요하다면 만주국 단일국적을 취득하게

63) 大平案, 1933, 290·306쪽; 平井案, 1934, 65쪽; 松葉案, 1936, 145쪽

64) 經調會案, 1932, 11쪽

65) 大平案, 1933, 318쪽

66) 特務部案, 1934, 1, 5쪽

67) 平井案, 1934, 64~65쪽

하는 것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다.⁶⁸⁾ 일본인 이중국적은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조선인에 대해서는 약간 모호하다. 그러나 지향은 단일국적 안이라는 것을 행간에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인의 법적 지위를 일본인의 지위와 구별하는 것은 재만 조선인을 ‘오족협화’의 민족적 구조 속에 위치시키기 때문이다. 오족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협화의 구조는 모든 민족의 ‘기계적인 평등’ 구조가 아니다.⁶⁹⁾ 만주제국 정부의 공간서인 『십년사』도 이를 명백하게 정리하고 있다. ‘민족협화’의 진정한 의미는 ‘평면적 융화관계가 아니고 指導的 先達的 민족, 즉 일본인의 건국 이상 실현을 향한 奉仕精進을 중심으로 타민족이 追從 勞力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⁷⁰⁾ 다시 말하면 일본 민족을 지도 민족으로 하는 수직적인 구조 속에서 추종하는 네 민족 간의 협화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협화’의 실질적 의미라는 주장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조선인이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만주국 측에서 이같이 ‘민족협화’의 이념하에 조선인의 단일국적 안을 강구해 나가자 조선총독부 측이 ‘내선일체’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조선총독부는 1935년 ‘사건’을 통하여 동일한 ‘제국 신민’임에도 만주국적 문제를 차별 취급하는 방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침은 일본 천황의 ‘일시동인’이라는 성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제국의 최대 식민지인 조선 통치상에도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총독부는 ‘내선인 동일 취급’을 하여 모두 ‘일만 이중국적’을 부여하는 안을 대신 주장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주장은 그 다음해인 1936년 외사과원 마쓰바 안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전개되

68) 片倉衷, 1934, 7, 「滿洲國に於ける國籍問題に就て」, 『片倉衷關係文書』(東京大學教養學部社會科學科資料室所藏)

69) 金澤理康, 1942, 앞의 글, 39쪽. 가나자와[金澤] 교수는 만주국에서의 민족 간의 평등을 “능력에 따른 차액적 평등이지 기계적 평등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만주국의 ‘민족 협화’ 개념을 묘사하는데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인용하였다.

70) 滿洲帝國政府 編, 1969, 앞의 책, 21쪽

었다. 마쓰바 안은 조선인에게 이중국적을 부여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최소한 두 가지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첫째, 만주국의 기본 국민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오랜 세월 경작하면서 농업개발을 위하여 공헌한 눈물겨운 재만 백만 조선인의 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⁷¹⁾ ‘농업 개발에 공헌한 자’라는 항목을 첨가하였다. 두 번째, ‘조선인의 일본 국적법상 지위를 고려하여’⁷²⁾ 본래의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도 귀화할 수 있도록 귀화 규정을 만들었다. 가장 노골적인 이중국적 허용론 주장자인 마쓰바는 조선인에게도 그 지위를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쟁점화된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는 만주국 국적법 제정을 어렵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 논쟁은 일본제국의 두 영역-공식적인 식민지와 비공식적인 식민지- 사이에 전개된 정책 논쟁으로서 그 바탕에는 제국 통치가 갖는 또 하나의 모순 구조가 존재한다. 식민지 조선의 통치를 위해 개발하였던 이념인 ‘내선일체’는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제국 신민인 조선인과 일본인의 평등을 항상 부르짖었다. 그런데 복합 민족 국가인 만주국 통치를 위해 일본이 고안한 ‘오족협화’는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평등관계를 거부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 상호 모순된 통치 구조가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단일국적이냐 이중국적이냐-로 투영되어 나타났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와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는 만주국 국적법 제정 과정에서 등장하였던 가장 뚜렷하고 심각한 쟁점이었다. 이러한 쟁점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었던 원인은 재만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에는 ‘독립성과 특수관계의 모순’이, 그리고 재만 조선인의 국적문제에는 ‘오족협화와 내선일체의 모순’이 그 내면에 구조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모순들은 크게 보면 결국 만주국이라는 ‘비공식 식민지’와 조선이라는 ‘공식 식민지’를 가진 제국 일본의 통치상의 모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71) 松葉案, 1936, 144쪽

72) 松葉案, 1936, 147쪽

V. 맺음말

만주국은 왜 국적법 제정을 하지 못하였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금까지 남아 있는 입법 시안들을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 대상이 된 자료들은 그 입안 주체를 중심으로 본다면, 만주국 측 2개 안과, 만철 경제사회의 3개 안, 관동군 측 2개 안, 조선총독부 측 2개 안 등 모두 9개 입안 자료들이었다. 입안의 형태와 분량은 서로 다르고, 연구 수준도 동일하지 않았으며,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외적인 특징을 지닌 입안 자료들을 우선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이슈들을 추출하여 주요 쟁점으로 삼아 그 논쟁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국적법 제정을 어렵게 하였던 문제가 무엇이었던가를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었다.

입안 자료들에서 반복되는 주요 쟁점은 분야로 나누어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초기 국민 획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재만 외국인, 그중에서도 재만 일본인과 재만 조선인의 국적 취득 문제였다. 국민 획정 문제는 '오족협화' 차원에서 건국 당시 거주하던 모든 민족을 국민으로 간주하자는 '거주법' 방안과, 원래의 중화민국인들이만 초기 국민으로 삼고 나머지는 모두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귀화에 따라서 국적을 취득케 하자는 '귀화법' 방안이 대립하였다. 대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거주법'이 이중국적 문제를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 이 문제는 재만 일본인의 국적문제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다. 입안자들은 이중국적에 대하여 철저한 배척론에서 중간론 그리고 완전 허용론에 이르는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재만 조선인 국적문제는 조선인의 지위를 단일국적으로 위치시키려는 만주국 측에 대하여 이중국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조선총독부의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총독부 측은 내지인과 조선인의 차별적인 취급이 '일시동인'의 '聖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조선 통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 일본인과 동등하게 이중국적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였다.

국적법 제정을 둘러싼 궁극적인 쟁점은 결국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논쟁과 일한 민족 간 차별 취급 문제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된다. 이 글에서는 만철 경제조사회의 진단을 토대로 하여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는 ‘독립성’과 ‘일만 특수관계’의 모순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만 조선인 국적문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하여 만주국 지배를 위한 ‘오족협화’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 통치를 위한 ‘내선일치’ 이데올로기 간의 모순 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종류의 모순 구조를 만주국 국적법 제정을 난관에 봉착하게 한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937년 시작된 중일전쟁의 장기화는 ‘충성’이 담보되는 국민 동원의 필요성을 시급하게 요청하였다. 일본제국 신민은 일본 내지인, 조선인 가릴 것 없이 본토와 외국 거주 불문하고, 병역 의무를 지워야 할 국민으로 남아야 했다. 어떤 식의 만주국 국적을 갖게 되는가 아닌가는 문제는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졌다. 이런 가운데 만주국 국적법 제정 문제는 전시동원에 필요한 인원들의 주거를 파악하는 수단인 민적법 제정(1940)으로 대체되었고, 중국에는 아예 실종되고 말았다. 그 결과 만주국 패망까지 국적법은 끝내 제정되지 않았다.⁷³⁾ 만주국은 법적인 국민 만들기에 결국 ‘실패’하고 만 것이다.

73) 1936년 이후의 국적법 제정 시도와 민적법으로의 대체, 그리고 궁극적인 제정 실패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할 수 있다. 淺野豊美, 2008, 앞의 책, 475~482쪽; 遠藤正敬, 2010, 앞의 책, 249~329쪽; 田中隆一, 2007, 앞의 책, 138~141쪽; 呂秀一, 2006, 앞의 글, 120~122쪽. 이런 연구들이 있음에도 중일전쟁 이후 국적법 논의가 거의 실종된 배경은 아직도 충분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점은 또한 이 글의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關東軍特務部 第五委員會, 1934. 1, 「滿洲國國籍法制定に關する件」,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 關東軍特務部 第五委員會, 1934. 3, 「滿洲國國籍法制定に關する件」,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 金澤理康, 1942, 「滿洲國籍法提言」, 『早稻田法學』第21卷(滿洲國法制研究)
- 南次郎, 1934, 「南次郎關於貫徹對滿政策的意見」, 中央檔案館 外合編(1994), 『僞滿傀儡政權』, 北京: 中華書局
- 大平善悟, 1933. 3, 「滿洲國の國籍問題」, 『東京商科大學研究年報 法學研究 二』
- 滿洲帝國政府 編, 1969,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 滿鐵 經濟調查會, 1935. 9,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약칭 『方策』)(昭和十年九月 立案調查書類第二十六編第一卷)
- 滿鐵 經濟調查會 田所委員, 1932, 「滿洲國國籍に關する意見」,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 滿鐵 經濟調查會 第五部 法制班, 1932, 「滿洲國の國籍問題」,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 滿鐵 經濟調查會 第五部 法制班, 1934, 「滿洲國の國籍問題」, 滿鐵 經濟調查會(1935), 『滿洲國國籍竝會社國籍及資本方策』
- 松葉秀文, 1936, 「滿洲國國籍問題の一考察」, 『滿鐵調查月報』第16卷 第5號
- 朝鮮總督官房外事課, 1935, 「國籍問題に關する私見」, 『日政文書 政務總監滿洲出張關係鐵』(大韓民國政府記錄保存所所藏)
- 片倉衷, 1934. 5, 「五族協和具現要領案」, 『片倉衷關係文書』(東京大學教養學部社會科學科資料室所藏)
- 片倉衷, 1934. 7, 「滿洲國に於ける國籍問題に就て」, 『片倉衷關係文書』(東京大學教養學部社會科學科資料室所藏)

2. 참고 자료

- 권영준, 2003, 「근대 중국의 국적법과 조선인 귀화정책」, 『한일민족문제연구』 5집
- 명순구 외, 2010, 『국적과 법, 그 기원과 미래』, 서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朴慶輝, 1993, 「在中朝鮮族의 法的 地位에 대한 歷史的 考察」, 『韓國民族運動史研究』 7집 [동일한 제목의 논문 『백산학보』 44호(1994)에 전재됨]
- 박영석, 1995, 「일본 제국주의와 재만한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문제-1931년 만주사변 이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1
- 山室信一 著, 윤대석 역, 2009, 『키메라-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 손승희, 2004, 「만주사변 전야 만주 한인의 국적문제와 중국, 일본의 대응」, 『중국사연구』
- 임상원, 1999, 『이중국적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성모, 1993, 「만주국 협회회의 대민지배 정책과 그 실태」, 『동양사연구』
- 滿洲國史刊行會 編, 1971, 『滿洲國史 各論』, 滿蒙同胞援護會
- 白榮勳, 2002, 「滿洲朝鮮人の國籍問題と法的地位」, 『明治文學研究論文集』 16
- 山本有造 編, 1993,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 山室信一, 1993, 「滿洲國統治過程論」,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人文科學研究所
- 山室信一, 1998, 「植民帝國・日本の構成と滿洲國-統治樣式の遷移と統治人才の周流」, पीター・ドウス/ 小林英夫 編, 『帝國という幻想-「大東亞共榮圈」の思想と現實』, 東京: 青木書店
- 孫春日, 2001, 「偽滿時期日本對無籍朝鮮人的就籍措施」,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34-4
- 孫春日・朴興進, 2001, 「偽滿洲國 國籍法的 難産與在滿朝鮮人的國籍問題」, 『東疆學刊』 8-2
- 孫春日・朴興鎮, 2002, 「偽滿洲國『國籍法』的難産與在滿朝鮮人的國籍問題」, 『明治大學文學研究論文集』 16
- 呂秀一, 2006, 「『滿洲國』における朝鮮人國籍問題の考察」, 『廣島法學』 第30卷 第1號
- 吳欣哲, 2010, 『日本殖民主義下的滿洲國法制』, 國立政治大學(臺灣)
- 遠藤正敬, 2010,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國籍と戶籍-滿洲・朝鮮・臺灣』, 東京: 名石書店
- 原 郎, 1972, 「1930年代の滿洲經濟統制政策」, 滿洲史研究會 編, 『日本帝國主義下の滿洲』, 東京: 御茶水書房

- 田中隆一, 1996, 「對立と統合の鮮滿關係 - 「內鮮一體」・「五族協和」・「鮮滿一如」の諸相」, 大阪歴史學會, 『History』 152
- 田中隆一, 2007, 『滿洲國 日本 帝國支配』, 東京: 有志舎
- 淺野豊美, 1998, 「「滿洲國」における治外法權問題と國籍法」, 『澁澤研究』 第11號
- 淺野豊美, 2008, 『帝國日本の植民法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Ideal and the Reality in the Nation Building of
Manchukuo: Issues Surrounding the Nationality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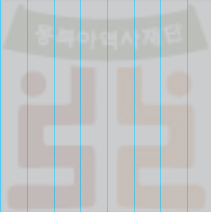
Kim Kihoon

Manchukuo, founded as a multi-national state, made various efforts toward national integration. But ironically,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Law, which would legally define that country's people, failed. This study analyzes the nine extant drafts of the law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failure. The ultimate two issues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Law were those of the dual nationality of the Japanese in Manchuria and the discrimination of legal positions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in Manchuria.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ssue of dual nationality of Japanese resulted from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ndependence" of Manchukuo and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Manchukuo." The nationality issue of Koreans in Manchuria occurred because of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deologies of "the concord of the five nations" of Manchukuo and "the oneness of Japanese and Koreans" of colonial Korea. These contradictions ultimately hindere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Law of Manchukuo.

Keywords

Manchukuo, Nationality Law, dual nationality, Japanese in Manchuria, Koreans in Manchuria, the concord of the five nations, the oneness of Japanese and Koreans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크로드의 현장 신장의 역사

이광태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연구교수

최근 미국 조지타운 대학 제임스 A. 밀워드 교수의 저서 『신장의 역사-유라시아의 교차로』¹⁾가 우리말로 번역되었다. 이 책은 출간 당시부터 화제를 모았다. 여러 논평자들의 지적처럼 본서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신장(新疆)의 역사를 개괄한 최초의 통사라는 점이 그 이유였다. 중국에서는 물론 일찍부터 신장의 역사를 다룬 통사가 출간되었지만 이들은 모두 중국의 신장 지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등 객관성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밀워드 교수의 저서를 최초의 신장 통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본서가 세인의 주목을 끈 보다 큰 이유는 저자가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신장의 역사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데 있다.

신장, 오늘날 중국 영토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가장 큰 省으로 과거 중국인

1) 제임스 A. 밀워드 지음, 김찬영·이광태 옮김, 2013, 『신장의 역사-유라시아의 교차로』, 사계절; 원제 James A. Millward, 2007, *Eurasian Crossroads: A History of Xinjiang*,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들이 西域이라 불렀던 곳이다. 신장은 '새로운 영토'라는 뜻으로 18세기 중엽 청의 건륭제가 이곳을 통합한 후 생긴 지명이다. 따라서 이 두 지명은 중국의 관점이 짙게 투영된 이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원래 인도유럽계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9세기 중엽 이후 북방에서 투르크계 민족들이 대거 이주한 결과 현재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카자흐족·키르기스족 등 투르크계 민족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중세기 이슬람 작가들은 이곳을 투르크스탄(Türkestan, 투르크인들의 땅)이라 불렀는데 서양학자들은 현재도 주로 이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지명을 사용하든 이 지역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이 유라시아의 정중앙에 위치한 중간지대(betweenness)라는 점이다. 그래서 고대로 수많은 사람과 물건, 종교와 사상이 이곳을 지나갔고 이곳에서 다시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어 주변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신장은 주변으로부터 정치·경제·문화·종교적으로 강한 영향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현재와 같이 복잡한 민족, 언어, 종교 지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신장의 역사와 문화는 현지 거주민들과 그 주변 제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혼합 역사 또는 혼성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지어 자료와 함께 주변 여러 민족의 자료를 널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신장에 관한 수많은 연구서가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사가 나오지 못한 것도 상당 부분 여기에 기인한다. 이런 점에서 밀워드 교수의 작업은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본서가 전적으로 1차 자료에 의거한 것만은 아니다. 18세기 이전 부분은 대체로 기존의 연구 성과에 의존하고 18세기 이후는 상당 부분 저자 본인의 연구를 토대로 삼았다. 이와 함께 저자는 기존 연구나 자료를 새롭게 해석하고, 또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조사 자료를 통하여 보완하여 개설서와 연구서로서의 질적 제고에 힘을 쏟았다. 이하 본서의 내용과 특징 그리고 이에 대한 필자의 몇 가지 소견을 개진한다.

II.

본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 모두 9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반부인 1~3장이 19세기 중후반까지를, 나머지 4~7장이 그 후 현재까지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책의 구성을 통하여 우선 저자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는 저자가 주로 18세기 이후 신앙의 역사를 연구해 온 탓도 있지만 이와 아울러 그의 현재 신앙 문제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을 통하여 자신이 제시하고자 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첫째는 ‘신앙의 중간적 위치 및 導管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신앙의 역사에서 북방 유목세력의 남방 오아시스에 대한 지배구조가 반복된 점에 주목하고 그 이유를 이 지역의 ‘지리와 환경의 역할’에서 찾아보고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역사상 신앙에 거주한 민족들이 다양한 방식에 따라 사회를 조직한 점에 주목하고 각 시대 주민들이 어떤 사회조직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제1장은 선사시대에서 8세기까지의 신앙의 역사를 총괄하는데 저자는 여기서 신앙 역사의 한 특징으로서 몽골고원, 중가르(Zungar) 분지 등 북방 유목세력이 남쪽 오아시스 주민을 지배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제2장은 9~16세기에 중앙유라시아를 지배한 유목세력의 흥망과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던 오아시스의 사정을 설명하는데, 저자는 이 시기에 신앙이 언어적으로 투르크화, 종교적으로 이슬람화한 결과 이곳의 언어 및 종교 지형이 현재와 유사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제3장은 16~19세기의 역사를 다루는데, 낙슈반디 교단(Naqshbandiya) 등 수피들의 활동으로 이 지역이 17세기까지 완전히 이슬람 세계로 변모하는 과정, 중가르와 청조의 항쟁으로 18세기 중엽 이 지역이 ‘새로운 영토’로서 청조에 편입된 과정 그리고 100여 년 후 청 지배에 저항한 현지 투르크계 무슬림들의 반란과 이에 편승한 야쿱 벅(Ya'qub Beg)의 신앙 지배 경위를 서술한다.

제4장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에 걸쳐 신앙이 중국 ‘內地’에 통합되는 과정과 서방(중앙아시아)으로부터 유입된 신사상에 의하여 이 지역 투르크계

무슬림들의 민족의식이 각성되어 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제5장은 1910~1940년대 民國 시기에 일어난 각종 사건을 투르크계 무슬림과 漢人 지배자 등 신장 내부세력과 중국·소련 등 외부세력의 영향 두 측면에서 서술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1933년 신장 남부 카슈가르와 1944년 신장 북부 일리에서 성립된 ‘동투르키스탄공화국’에 대한 서술이 논의의 중심이 된다.

제6장은 1950~1980년대에 걸쳐 40년 동안 일어난 정치사건과 그 배경 및 영향을 서술하는데, 여기서 저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초기 공산당이 신장의 특수한 민족구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지에서 수행된 정책의 일방적 적용을 자제한 점을 특기한다.

제7장은 1990~2000년대에 일어난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치 및 상업적 관계, 서북대개발에 따른 한인의 이주, 경제개발에 수반된 인구증가와 환경의 악화, 위구르족의 폭동 및 위구르 분리주의 운동의 국제 문제화 등 현재로 이어지는 제반 문제를 다루는데, 이 대목에서 저자는 이른바 ‘신장 문제’에서 민족주의 관점을 배제하고 객관적 실체에의 접근을 강조한다.

III.

본서는 신장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룬 통사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전근대 부분은 대체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지만 근현대 이후는 선행연구에 자신의 독자적인 연구를 더하여 책의 학술적 가치를 제고하였다. 특히 방대한 문헌자료(현지사료, 한문사료), 저자 자신의 현지조사 자료 그리고 한어, 일어, 영어, 기타 언어로 된 연구 결과가 총 동원된 1980년대 이후 신장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신장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중 하나가 이 시기 위구르 민족운동의 배경에 관한 저자의 독특한 설명이다. 저자는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일어난 위구르 민족운동은 중국 당국의 말

대로 이슬람 과격파 또는 분리주의자와의 관련만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명목 뿐인 민족자치에 대한 불만, 이슬람 등 위구르 전통문화에 대한 폄하, 개혁 개방 이후 한인의 신장 이주에 따른 한인과 위구르족의 경제 및 문화적 갈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비록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자가 위구르 민족운동을 종교문제보다도 자신들에 대한 대우와 생존권 문제에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논평자²⁾의 지적대로 이러한 필자의 견해는 좀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지만 아무튼 그동안 정치 또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만 논의되어 왔던 위구르 민족운동에 대하여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이는 또 다른 논평자³⁾의 지적처럼 감정을 자제하고 구체적 역사 사실과 해석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 저자의 참을성 있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 당국과 위구르인들 사이에는 역사해석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 중국 측은 신장이 기원전 1세기 이후 일관되게 중국의 불가분의 일부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에 배치될 뿐 아니라 제3자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다. 저자는 이처럼 신장 문제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는 대신 학술적 분석을 시도한다. 저자가 서문에서 자신을 “한족과 위구르족 모두의 친구로 생각하고자 한다”고 말했듯이 그는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언제나 공정하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렇다고 저자가 특정 사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주장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저자는 漢代에 신장이 중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주장이나 1884년 신장성[新疆省]이 수립되면서 이곳이 완전히 중국의 불가분리의 영토가 되었다는 비합리적 견해 모두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고 있다.

본서의 또 하나의 특점은 수많은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하여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신장의 역사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정리한 저자의 탁월한 능력이다.

2) 清水 由里子, 2008, 「書評」, 『イスラーム世界研究』 1, 303쪽

3) Colin Mackerras, 2007, “Reviews Books, Asia”,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112, No. 5, p. 1514; Nicolas Becquelin, 2007, “Book Reviews”, *The China Quarterly*, No. 191, p. 779

이 과정에서 필자는 지난 2000년에 걸친 신장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몇 가지 틀을 찾아보려고 하였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했듯이 북방 유목세력이 남쪽 오아시스를 지배한 정치구도의 반복, 서역(즉, 신장)을 두고 싸우던 흉노와 한의 대립이 중가르 제국과 청의 대립에서 재현된 점 그리고 민국 시기에 소련이 신장 문제에 개입하면서 결과적으로 북쪽과 동쪽의 주변세력이 신장을 두고 싸우는 초기 역사의 구도가 반복된 점을 요령 있게 설명한다.

이러한 일반화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자는 적절한 일화를 들고 이야기 식 서술을 통하여 독자를 설득한다. 예를 들면 문화대혁명기의 이슬람 탄압에 대한 상징적 사례로서 저자는 돼지라는 동물을 처음 본 한 위구르인의 회고담(308쪽)을 소개한다.⁴⁾ 또한 그는 후난성[湖南省]에서 온 거지노인의 말(408~409쪽)을 인용하여 1990년대 이후 서북대개발의 물결 속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한족의 이주 실태를 전한다.⁵⁾ 특히 결론 부분에서 저자는 지루한 설명 대신 현대 신장을 대표하는 세 사람에 대한 인물평⁶⁾을 통하여 신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개진한 대목은 문학으로서의 역사서술의 백미라고 할 만하다.

아마도 이 점이 본서가 출간된 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호평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신장에 관심이 있는 대중과 전문가 모두를 독자층으로 보고 본서를 집필했다는 저자의 뜻이 어느 정도 충족된 셈이다.

-
- 4) 문혁기에 모스크를 폐쇄하고 그곳을 돼지우리로 사용했는데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위구르인들이 이때 처음 돼지를 보았다는 일화다.
 - 5) 거지조차도 신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개발 이익으로 신장에 돈이 돈다는 것을 상징한다.
 - 6) 자수성가로 부를 이루지만 정치범이 되어 미국에 망명 중인 '모든 위구르인의 어머니' 라비에 카디르, 신장으로 이주하여 거부가 된 한족 쑨광신[孫廣信], 위구르 전통 줄타기 다와즈(dawaz)의 명인 아딜 호슈르가 그 주공이다.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 저자는 어렵지만 신장에서 태어나 신장을 지키는 아딜 호슈르를 위구르인의 운명이자 의무로 보는 듯하다.

IV.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다. 그중 하나가 신장의 주요 민족인 위구르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과 같이 위구르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다. 당연하지만 현재 신장의 위구르인들은 자신들을 ‘위구르’라고 칭한다. 그리고 위구르 민족이 고대부터 존재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상기한 것처럼 9세기 중엽 투르크계 유목민들이 신장 남부로 이주하기 전 이곳은 인도유럽계 주민들의 터전이었으며 언어와 민족적으로 투르크화한 이후에도 신장 남부 오아시스 거주민들은 민족 명칭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異教徒에 대해서는 무슬림, 이방인에 대해서는 에를릭(erlik, 토착민)이라 자칭하고, 때로는 호탄, 카슈가르 등 오아시스 이름을 이름의 일부로 사용하였다. 이들에게 위구르라는 민족명이 부여된 것은민국 시기 성스차이[盛世才]가 신장을 지배하고 있던 1935년⁷⁾인데 이때 처음으로 ‘웨우얼[維吾爾]’이라는 한자식 표기가 붙여졌다. 이것이 신장 오아시스 거주민들의 민족의식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이 지금도 명확하지 않고 저자 역시 이 부분에 대하여 사실 기술 외에 별다른 설명을 않고 있다.

저자는 또한 2001년 9·11테러가 “신장의 분리주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이고 널리 알려진 입장을 뒤집기 위한 기회로 활용했다”(462쪽)고 하여 이를 기점으로 중국 정부의 신장 정책이 획기적으로 변화했음을 강조한다. 한 논평자⁸⁾의 지적대로 중국 당국이 9·11사건을 자신의 목적에 맞춰 활용한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장 정책은 그 이전부터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사실에 보다 가깝다. 이는 테러리즘, 분리주

7) 19세기 후반 제정 러시아 학자들이 신장 오아시스 무슬림들을 ‘위구르’라고 부르고, 1921년 알마아타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신장 출신자들을 위구르족이라고 부르자는 러시아 학자 세르게이 말로프의 제안에 따라 이 명칭이 우어곡절을 거쳐 현재 신장의 투르크계 무슬림들의 민족명이 되었다.

8) Colin Mackerras, 2007, 앞의 글, p. 1514

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방지하는 것이 2001년 7월 중국 주도하에 창설된 '상하이 협력기구(SCO)'의 설립 목적의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도 확인된다.

그렇다고 이 책의 학술적 가치가 결코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본서의 등장으로 우리들은 고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신장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민족갈등 등 현재 신장 문제의 역사적 배경을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아가 중국의 기타 소수민족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유용한 지침서를 얻었다. 끝으로 본서를 우리말로 옮긴 김찬영·박광태의 노고도 저자 못지않게 치하를 받을 만하다. 정확한 번역, 무수히 등장하는 소수민족 언어의 우리말 표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 매끄러운 문장이 어우러진 우리말 번역본은 또 하나의 창작이라 할 만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할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다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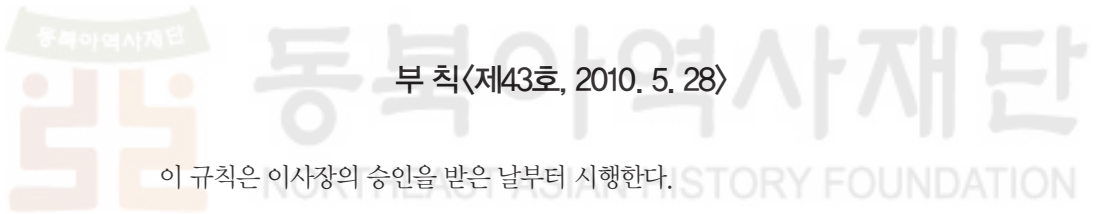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중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雍,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9호(2013. 3)

초판 1쇄 인쇄 2013년 3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3월 31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